KB금융그룹 | 국민의 행복생 금융파트너

자동차상품파트 2026년 9월 6일 개정
승인일자 : 2026년 7월 27일
승인번호 : 자동차26-41049-1-06

KB다이렉트
(인터넷)
개인용 자동차보험

KB손해보험



세상을 바꾸는 작은 노력! 'KB스마트 안내 수신 동의'를 통해
환경을 지킬 수 있습니다.

KB다이렉트(인터넷) 개인용 자동차보험

자동차보험 약관 이용 가이드북

1. 보험약관이란? ····· 8
2. 한눈에 보는 약관의 구성 ····· 8
3. 편리한 정보 이용을 위한 QR코드 ····· 8
4. 약관의 핵심체크항목 안내 ····· 9
5. 약관을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꿀팁 ····· 10

약관의 주요 내용 요약

자동차보험증권에서 확인하실 사항들 ····· 12
의무보험과 보험만기 안내 제도 ····· 13
교통사고 처리 절차 안내 ····· 14
긴급출동 매직카서비스 ····· 15
콜센터 이용 안내 ····· 16
자동차보험료·가입경력인정자 안내 ····· 17
운전가능자를 제한하는 특별약관 ····· 18
주요 할인 특별약관 ····· 19
자동차보험의 구성 ····· 20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 주요 사례 ····· 26
자주하는 질문 ····· 27
주요 용어 내용 설명 ····· 28

보통약관

제1편 용어의 정의 및 자동차보험의 구성 ····· 30
제1조(용어의 정의) ····· 30
제2조(자동차보험의 구성) ····· 33

제2편 자동차보험에서 보상하는 내용 ····· 34

제1장 배상책임 ····· 34

제1절 대인배상Ⅰ ····· 34
제3조(보상하는 손해) ····· 34
제4조(피보험자) ····· 34
제5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 34
제2절 대인배상Ⅱ와 대물배상 ····· 34
제6조(보상하는 손해) ····· 34
제7조(피보험자) ····· 35
제8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 35
제3절 배상책임에서 공통으로 적용할 사항 ····· 36
제9조(피보험자 개별적용) ····· 36
제10조(지급보험금의 계산) ····· 36
제11조(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마약·약물운전 또는 사고발생시의 조치의무 위반

관련 사고부담금) ····· 37
제2장 배상책임 이외의 보장종목 ····· 38
제1절 자기신체사고 ····· 38
제12조(보상하는 손해) ····· 38
제13조(피보험자) ····· 38
제14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 38
제15조(보험금의 종류와 한도) ····· 39
제16조(지급보험금의 계산) ····· 39
제2절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 40
제17조(보상하는 손해) ····· 40
제18조(피보험자) ····· 40
제19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 40
제20조(지급보험금의 계산) ····· 41
제3절 자기차량손해 ····· 41
제21조(보상하는 손해) ····· 41
제22조(피보험자) ····· 42
제23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 42
제24조(지급보험금의 계산) ····· 43
제3편 보험금 또는 손해배상의 청구 ····· 44
제1장 피보험자의 보험금 청구 ····· 44
제25조(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 ····· 44
제26조(청구 절차 및 유의 사항) ····· 44
제27조(제출 서류) ····· 45
제28조(가지급금의 지급) ····· 46
제2장 손해배상청구권자의 직접청구 ····· 46
제29조(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 ····· 46
제30조(청구 절차 및 유의 사항) ····· 47
제31조(제출 서류) ····· 47
제32조(가지급금의 지급) ····· 48
제3장 보험금의 분담 등 ····· 48
제33조(보험금의 분담) ····· 48
제34조(보험회사의 대위) ····· 49
제35조(보험회사의 불성실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 49
제36조(합의 등의 협조.대행) ····· 50
제37조(공탁금의 대출) ····· 50
제4편 일반사항 ····· 50
제1장 보험계약의 성립 ····· 50
제38조(보험계약의 성립) ····· 50
제39조(약관 교부 및 설명의무 등) ····· 51
제40조(설명서 교부 및 보험안내자료 등의 효력) ····· 51
제41조(청약의 철회) ····· 52
제42조(보험기간) ····· 52
제43조(사고발생지역) ····· 53
제2장 보험계약자 등의 의무 ····· 53

제44조(계약 전 알릴 의무) ····· 53
제45조(계약 후 알릴 의무) ····· 53
제46조(사고가 발생한 때 의무) ····· 54
제3장 보험계약의 변동 및 보험료의 환급 ····· 54
제47조(보험계약 내용의 변경) ····· 54
제48조(피보험자동차의 양도) ····· 55
제49조(피보험자동차의 교체) ····· 55
제50조(보험계약의 취소) ····· 56
제51조(보험계약의 효력 상실) ····· 56
제52조(보험계약자의 보험계약 해지.해제) ····· 56
제52조의2(위법계약의 해지) ····· 57
제53조(보험회사의 보험계약 해지) ····· 57
제54조(보험료의 환급 등) ····· 58
제4장 그 밖의 사항 ····· 59
제55조(약관의 해석) ····· 59
제56조(보험회사의 개인정보이용 및 보험계약 정보의 제공) ····· 59
제57조(피보험자동차 등에 대한 조사) ····· 59
제58조(예금보험기금에 의한 보험금 등의 지급보장) ····· 59
제59조(보험사기행위 금지) ····· 60
제60조(분쟁의 조정) ····· 60
제61조(관할법원) ····· 60
제62조(준용규정) ····· 60
[별표1]대인배상,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지급 기준 ····· 61
[별표2]대물배상 지급 기준 ····· 70
[별표3]과실상계 등 ····· 74
[별표4]동승자 유형별 감액비율표 ····· 75
[별표5]자기신체사고 지급기준 ····· 75
[붙임]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별표1] ····· 77
[붙임]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별표2] ····· 85

특별약관 Ⅰ

Ⅰ. 운전 가능자에 대한 제한 ····· 90
1. 운전자연령 만 21/22/24/26/28/30/35/43/48세 이상 한정운전 특별약관 ··· 90
① 운전자 연령 만 45세 이하 한정운전 추가 특별약관 ····· 90
② 운전자 연령 만 58세 이하 한정운전 추가 특별약관 ····· 91
③ 운전자 연령 만 65세 이하 한정운전 추가 특별약관 ····· 93
④ 운전자 연령 만 73세 이하 한정운전 추가 특별약관 ····· 94
2. 가족 및 형제자매 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 ····· 95
3. 가족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 ····· 96
4. 부부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 ····· 97
5. 기명피보험자 한정운전 특별약관 ····· 97
6. 기명피보험자 및 지정1인 한정운전 특별 약관 ····· 98
7. 가족 및 지정 1인 한정운전 특별약관 ····· 99
8. 부부 및 지정 1인 한정운전 특별약관 ····· 99
9. 부부 및 자녀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 ····· 100
10. 기명피보험자 및 자녀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 ····· 101
11. 자녀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 ····· 102

12. 단기운전자확대 특별약관 ····· 102
13. 실시간단기운전자확대 특별약관 ····· 103
14. 명절임시운전담보 특별약관 ····· 103
15. 대리운전/취급업자 운전중 위험담보 특별약관 ····· 104
16. 임직원 운전자한정 특별약관 ····· 105

Ⅱ. 보험료 납입 ····· 107
1. 보험료 분할납입 특별약관 ····· 107
2. 신용카드 및 전자결제 납입 특별약관 ····· 108
3. 보험료 자동납입 특별약관 ····· 108

Ⅲ. 긴급출동서비스 ····· 110
1. 매직카서비스(견인 10Km) 특별약관 ····· 110
2. 매직카서비스(견인 10Km)슬림형 특별약관 ····· 113
3. 뉴매직카서비스(견인 70Km) 특별약관 ····· 116
4. 매직카서비스(수소/전기차(견인 100Km)) 특별약관 ····· 120

특별약관 Ⅱ

Ⅳ. 보장 범위 변경 ····· 126

(1) '배상책임' 관련 보장 범위 변경

1. 법률비용지원 벌금확장 기본형/고급형/최고급형 특별약관 ····· 126
2. 법률비용지원 벌금확장 최고급형 특별약관(보장확대형) Ⅱ ····· 129
3. 의무보험 일시담보 특별약관 ····· 132
4. 대물배상 가입금액 확장 특별약관('대물배상'대체 특별약관) ····· 133
5. 외산차 충돌 확대보상 특별약관('대물배상'대체 특별약관) ····· 133
6. 반려동물 교통사고 위로금 기본형/고급형 특별약관 ····· 134

(2) '자기신체사고' 관련 보장 범위 변경

7. 자동차상해 특별약관('자기신체사고'대체 특별약관) ····· 135
8. 부상가입금액 확장 특별약관 ····· 137
9. 여성 Care 특별약관 ····· 138
10. 부부 Care 특별약관 ····· 139
11. 실버 Care 특별약관 ····· 140
12. 자녀 Care 특별약관 ····· 141
13. 안전벨트 착용 상해 특별약관 ····· 144
14. 주말 자기신체사고 위로금 특별약관 ····· 144
15. 간병비 지원 특별약관 ····· 145
16. 자기신체사고 상급병실 이용 보상 특별약관 ····· 146
17. 수요일.주말 보상확대 특별약관('자기신체사고'대체 특별약관) ····· 146
18. 지정기부 특별약관 ····· 148

(3)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관련 보장 범위 변경

19.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별약관 ····· 149
① 다른 자동차 차량손해 추가 특별약관 ····· 150
①-1 다른 자동차 자녀운전자 추가 특별약관 ····· 152
①-2 다른 자동차 부모운전자 추가 특별약관 ····· 153
② 실시간 다른 자동차 차량손해 추가 특별약관 ····· 154

(4) '자기차량손해' 관련 보장 범위 변경
20. 자기차량손해 포괄 특별약관('자기차량손해'대체 특별약관) ····· 156
① 프리미엄 차량담보 추가 특별약관 ····· 159
21. 차량 수리비 확장 특별약관 ····· 160
22. 렌터카대여비용 특별약관 ····· 161
23. 레저용품 담보 특별약관 ····· 162
24. 신차전부손해확대 보상 특별약관 ····· 163
25. 원격지사고비용 특별약관 ····· 163
26. 지진 위험담보 특별약관 ····· 165
27. 전손 시 대체차량 취·등록세 비용지원 특별약관 ····· 165
28. 차량기준가액 확대보상 특별약관 ····· 166

V. 친서민 / 친환경 ····· 167
1. 희망나누기/희망나눔자동차 특별약관 ····· 167
2. 친환경부품사용 특별약관 ····· 168
3. 품질인증부품사용 특별약관 ····· 169
4. 마일리지 할인 특별약관(사진전송방식) ····· 171
5. 마일리지 할인 특별약관(운행정보 확인장치 방식) ····· 173
6. 마일리지 선할인 특별약관(사진전송방식) ····· 176
7. 마일리지 선할인 특별약관(운행정보 확인장치 방식) ····· 179
8. 전자우편 특별약관 ····· 182
9. 전자우편(보험증권 서면수령형) 특별약관 ····· 183
10. 실버교통안전교육 이수 할인 특별약관 ····· 184
11. 대중교통 이용 할인 특별약관 ····· 185
12. 전기차 사고시 배터리 신가보상 특별약관 ····· 186
13. 전기차 충전중 자기신체사고 보상 특별약관 ····· 187
14. 하이브리드차 사고시 배터리 신가보상 특별약관 ····· 188
15. 차량5부제 특별약관 ····· 188

VI. 기 타 ····· 192
1. 유상운송 위험담보 특별약관 ····· 192
2. 가족교통상해 특별약관 ····· 192
3. 지정대리청구 특별약관 ····· 194
4. 블랙박스장착 특별약관 ····· 195
5. 자녀할인 특별약관 ····· 196
6. 보험대차 운전 중 사고보상 특별약관 ····· 197
7. 이동통신단말장치 안전운전 할인 특별약관 ····· 198
8. 커넥티드카 할인 특별약관 ····· 200
9. 커넥티드카 안전운전 할인 특별약관 ····· 201
10. 첨단안전장치 장착 특별약관 ····· 203
11. 장애인 전용 보험 전환 특별약관 ····· 204
12. 마일리지 환급금 자동적용 특별약관 ····· 206
13. 걸음 수 할인 특별약관 ····· 207
14. 어라운드 뷰 모니터 장착 특별약관 ····· 208
15. 후측방충돌방지장치 장착 특별약관 ····· 209
16. 급발진사고 변호사 선임비용 지원 특별약관 ····· 210
17. 스마트크루즈 컨트롤 장치 장착 특별약관 ····· 212
18. 헤드업디스플레이 장착 특별약관 ····· 213

자동차보험 약관 이용 가이드북

자동차보험 약관 개념과 구성을 간략하게 소개하고, 약관 주요내용 등을 쉽게 찾아보실 수 있도록 만들어진 가이드북입니다.

1. 보험약관이란?

보험약관은 가입하신 보험계약의 내용 및 조건 등을 미리 정하여 놓은 계약 조항으로 보험계약자와 보험회사의 권리 및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청약철회, 계약취소, 보험금 지급 및 지급제한 사항 등 약관의 중요사항에 대한 설명이 들어 있으니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2. 한 눈에 보는 약관의 구성

약관 이용 가이드북	약관을 쉽게 잘 이용할 수 있도록 약관의 구성, 쉽게 찾는 방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지침서
시각화된 약관 요약서	약관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계약 주요내용 및 유의사항 등을 시각적 방법을 이용하여 간단 요약한 약관
보험약관 (보통약관 및 특별약관)	• 보통약관 : 자동차보험의 공통 사항을 정한 기본약관 • 특별약관 : 보통약관에 정한 사항 외 선택 가입한 보장내용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한 약관

3. 편리한 정보 이용을 위한 QR코드

QR(Quick Response) 코드란?
스마트폰으로 QR 코드를 스캔하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약관해설 영상	보험금 지급절차	전국 지점

4. 약관의 핵심 체크항목 안내

보험약관 핵심사항 등과 관련된 해당 조문, 쪽수 및 영상자료 등을 안내 드립니다.
회사로부터 약관을 수령한 후, 해당 내용을 반드시 확인·숙지하시기 바랍니다.

① 보상하는 손해 *본인이 가입한 특약을 확인하여 가입특약별 보상하는 손해도 반드시 확인할 필요	대인배상Ⅰ	제3조	p. 34	
	대인Ⅱ·대물배상	제6조	p. 34	
	자기신체사고	제12조	p. 38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제17조	p. 40	
	자기차량손해 ※ 차대차·단독 사고 설명 필요	제21조	p. 41	
② 보상하지 않는 손해 *본인이 가입한 특약을 확인하여 가입특약별 보상하지 않는 손해도 반드시 확인할 필요	대인배상Ⅰ	제5조	p. 34	
	대인Ⅱ·대물배상	제8조	p. 35	
	자기신체사고	제14조	p. 38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제19조	p. 40	
	자기차량손해 ※ 차대차·단독 사고 설명 필요	제23조	p. 42	
③ 청약 철회	제41조(청약의 철회)		p. 52	
④ 계약 전 알릴 의무	제44조(계약 전 알릴 의무)		p. 53	
⑤ 계약 후 알릴 의무	제45조(계약 후 알릴 의무)		p. 53	
⑥ 사고발생 시 의무	제46조(사고가 발생한 때 의무)		p. 54	
⑦ 보험계약의 취소	제50조(보험계약의 취소)		p. 56	
⑧ 보험계약자의 보험계약 해지·해제	제52조(보험계약자의 보험계약 해지·해제)		p. 56	
⑨ 보험회사의 보험계약 해지	제53조(보험회사의 보험계약 해지)		p. 57	

5. 약관을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꿀팁

아래 5가지 꿀팁을 활용하시면 약관을 보다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① 시각화된 '약관의 주요 내용 요약'을 활용하시면 계약 일반사항, 가입시 유의사항, 민원사례 등 약관을 보다 쉽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약관의 주요 내용 요약 p. 11
② 약관 내용 중 어려운 보험용어는 용어의 정의, 약관본문 내 용어설명 및 예시 등을 참고하시면 약관 이해에 도움이 됩니다.	제1조(용어의 정의) p. 30
③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인식하면 약관해설 동영상, 보험금 지급절차, 전국 지점 등을 쉽게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큐알코드 p. 8
④ '관련 법 조문' 항목을 활용하시면 약관에서 인용한 법률 조항 및 규정을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관련 법 조문 p. 215
⑤ 약관조항 등이 음영·컬러화 되거나 진하게 된 경우 보험금 지급 등 약관 주요 내용이므로 주의 깊게 읽기 바랍니다.	

※ 문의사항은 당사 홈페이지(www.kbinsure.co.kr)또는 고객 콜센터(1544-0114)를 이용해 주세요

※ 보험상품 거래단계별 필요한 금융꿀팁 또는 핵심정보 등은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정보 포탈(FINE, fine.fss.or.kr)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약관의 주요 내용 요약

자동차보험증권에서 확인하실 사항들



자동차보험증권

❶ 계약번호	KB매직카 개인용 2020-2******	계약일	2020 년 ** 월 ** 일
피보험자	홍길동	피보험자코드	850923-1******
계약자	홍길동	계약자코드	850923-1******

보험 가입 자동차		보험료 납입사항	
❷ 차량번호	11가 **** / KNAL******** 연식:2017	❸ 납입하신 보험료 의무보험	원
차명	0000	임의보험	원
차량가액	**** 만원 무속물가액 ** 만원	연간적용보험료	원
❹ 의무보험기간	2020 년 ** 월 ** 일 24:00 부터 2021 년 ** 월 ** 일 24:00 까지		
임의보험기간	2020 년 ** 월 ** 일 24:00 부터 2021 년 ** 월 ** 일 24:00 까지		
자료보험료	일시납 2020 - ** - ** 원		

❺ 가입담보	보험가입금액
대인배상1	자배법 시행령에서 정한 금액
대인배상2	1인당 무한
대물배상	합계 1사고당 대물1억/외산차2억원한도 (의무가입 1사고당 자배법 한도) (임의가입 1사고당 자배법 한도 초과액)
자기신체사고	사망 / 부상 / 후유장해 1인당 3000 / 1500 / 3000만원 한도
무보험차상해	1인당 2억원한도
자기차량손해 (자기부담금)	차량가입금액: 2735만원 손해액20%(최소 20만원 / 최대 50만원) 공제
배직카서비스	24시간 긴급 출동 서비스
계약관리담당 계약지점	김** 07-****-****

❻ 적용되는 특별약관		
만30세이상운전	기명피보험자한정	기명피보험자한정
일시납	배직카서비스	배직카서비스
다른자동차운전담보	다른자동차차량손해	다른자동차차량손해
전화박스특별약관	E-mail배직터치	E-mail배직터치
마일리지후할인(사진)	대중교통이용할인특약	대중교통이용할인특약
자기차량손해보험		

※ 최저연령운전자: 주민등록상 1987년 06월 19일 이전 출생자만 운전가능 (기명)

※ 마일리지 특약 사항
· 최초누적주행거리 0km / 약정주행거리 10000km
· 마일리지후할인(사진) 할인율: 21%할인 (보험료: 21만 7800원)
※ 대물배상 자배법한도는 기존 1천만원에서 2016.4.1부터 2천만원으로 적용됨
※ 물적사고할증기준금액: 200만원 (사고시 영신보험료 할증될 수 있음)
※ 배직카서비스: 서비스 5회 이용시 자동해지 (1544-0114)

※ 뒷면의 유의사항을 꼭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❶ 기명피보험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가 실제와 일치하는지 확인하세요.
❷ 피보험자동차의 차량번호와 차량명을 확인하세요.
❸ 실제 납입한 보험료와 증권상 보험료가 일치하는지 확인하세요.
❹ 보험기간은 보험시작일의 24시~마지막날 24시까지이나, 의무보험·자동차보험에 처음 가입하는 경우는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회사의 보상책임이 발생합니다.
(보험기간 이전 보험료 납부 시 보험시작일 0시부터 시작)
❺ 가입하신 담보별 보험가입금액을 체크하세요.
❻ 가입하신 특별약관을 체크하세요. 운전자를 제한하는 특별약관은 보상과 직결됩니다.
꼼꼼히 확인하세요.

- 계약사항 관련 보험회사에 알려주신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않으신 경우 보험계약이 해지되거나 보험사고 발생시 보상받지 못하실 수도 있습니다.
- 보험계약 내용이 청약 내용 또는 사실과 다를 경우 계약 담당자 또는 고객 콜센터(1544-0114)를 통해 계약 내용을 정정해 주세요.

의무보험과 보험만기 안내 제도

⊙ 의무보험 안내

대인배상 I 과 대물배상(2천만원)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 5조에 따라
반드시 가입하셔야 하는 의무보험입니다.

⊙ 과태료 안내 (비사업용 자동차 기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 36조에 의해 의무보험을 가입하지 않으신 경우,
가입하지 않으신 기간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구분	과태료		
	10일 미가입	10일 초과시	최고액
대인배상 I	1만원	1일당 4천원	60만원
대물배상	5천원	1일당 2천원	30만원

⊙ 보험기간 만기일 안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 6조에 따라 고객님의 보험계약 만기일을 안내해 드립니다.

안내차수	안내시기	안내방법
1차안내	만기일 75일~30일 전	우편발송
2차안내	만기일 30일~10일 전	우편발송 또는 문자LMS

- 보험기간 1개월 미만의 계약은 안내가 생략될 수도 있습니다.
- 주소가 변경된 경우 콜센터나 담당설계사를 통해 꼭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자우편 특별약관에 가입하신 경우 만기안내도 전자우편으로 보내드립니다.

전자우편 특별약관

보험계약 안내자료를 E-mail 또는 모바일을 통해 받으시는 고객님께
보험료를 할인해 드립니다.

교통사고 처리 절차 안내

⊙ 사고 발생 시 조치사항



• 정지 후 부상자 확인

사고가 나면 바로 멈추고 다친 사람이 없는지 확인하세요. 다친 사람이 있으면 적절한 응급조치를 취하시고 필요한 경우 119에 신고하세요.



• 사고상황 증거 확보

다양한 각도에서 현장 사진을 찍으시고 목격자를 확보하세요.
블랙박스가 있는 경우 사고 영상을 확보하세요.



• 차량 이동 후 신고 접수

차량을 안전한 장소로 옮기세요!
사람이 다친 사고는 경찰에 반드시 신고하세요!

⊙ 보험회사의 처리 절차



• 사고 접수

KB손해보험에 사고를 접수하세요.
☎ 콜센터 :1544-0114, 홈페이지, 스마트폰 어플



• 담당자 배정 / 사고조사

사고 처리 담당자가 사고 내용과 피해 상황을 조사하고 고객님께 진행 상황을 알려드립니다.



• 보험금 결정 지급

약관 지급 기준에 따라 보험금을 산정하여 피해자 또는 고객님에게 지급합니다.



• 처리종결안내

사고 처리 종결 후 고객님께 보험금 지급내역과 보상처리 과정을 안내 드립니다.

긴급출동 매직카서비스

차량에 문제가 생겨 도움이 필요할 때, 매직카 서비스를 이용하세요!

⊙ 매직카서비스(견인 10km)/매직카서비스(견인 10km)슬림형



⊙ 뉴매직카서비스(견인 70km)



⊙ 매직카서비스(수소/전기차(견인 100km))

- 수소/전기차 가입에 한함



❶ 사용횟수와 주의사항 안내

	매직카서비스 (견인 10km)	매직카서비스 (견인 10km)슬림형	뉴매직카서비스 (견인70km)	매직카서비스 (수소/전기차 (견인 100km))
연간사용가능횟수 (1년계약기준)	6회	2회	10회	6회

- 각 서비스는 1일 1회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 직전 계약이 보험기간 1년의 당사 계약이면서 매직카서비스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서비스 이용 횟수 2회를 추가하여 제공합니다. (단, 매직카서비스(견인 10km)슬림형 제외)
- 차량과 상황에 따라 일부 서비스는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일부 서비스는 고객 추가 부담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이렉트 이용 안내

1544-0077 | 1544-8516

자동차보험 해결사 KB손해보험 콜센터로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 **사고접수**

교통 사고가 발생했을 때



• **긴급출동**

차량에 이상이 생겨 긴급출동이 필요할 때



• **가입 후 변경사항 통보 시**

보험기간 중에

- 주소 및 연락처 변경
- 자동차 교체
- 운전자의 연령 또는 범위가 변경됐을 때
- 자동차의 구조가 변경됐을 때 반드시 콜센터 또는 담당설계사에게 알려 주세요!



• **증명서 발급**

아래의 서류들을 직접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사고사실 확인서
- 자동차 가입증명서
- 소득공제용 납입증명서

KB손해보험 대표 홈페이지 www.kbinsure.co.kr 에서 사고접수,
모바일 홈페이지 m.kbinsure.co.kr 에서 사고접수와
긴급출동 접수가 가능합니다.

자동차보험료 • 가입경력인정자 안내

⊙ 보험료는 운전자와 자동차에 따라 달라집니다.



운전자

- 나이
- 성별
- 사고발생 여부
- 교통법규위반경력
- 자동차보험가입경력



자동차

- 차종
- 모델
- 배기량
- 부속품
- 차량연식
- 안전장치

⊙ 가입경력인정자 안내 (종피보험자 가입 경력 인정)

기명피보험자 뿐만 아니라 보험계약자가 지정하는 추가 2인의 가입경력인정자도 추후 기명피보험자가 될 경우 가입경력인정자로 있던 기간을 보험가입경력기간으로 인정받습니다.

• 가입경력인정자 인정범위

자동차보험계약의 운전자한정 및 연령한정에 위배되어서는 안되며 운전면허발급일자 이후에만 가입경력인정자로 인정됩니다.

운전 가능자 제한 특별약관명	인정범위
누구나운전가능(특별약관 미가입)	가족
부부 한정 운전 특별약관	배우자
가족 한정 운전 특별약관	가족
가족 및 형제자매 한정운전 특별약관	가족 또는 형제자매 중 2인
기명피보험자 및 지정 1인 한정운전 특별약관	지정 1인
부부 및 지정 1인 한정운전 특별약관	배우자 및 지정 1인
가족 및 지정 1인 한정운전 특별약관	가족 또는 지정 1인 중 2인
부부 및 자녀운전자 한정 운전 특별약관	배우자 또는 자녀 중 2인
기명피보험자 및 자녀운전자 한정 운전 특별약관	자녀
자녀운전자 한정 운전 특별약관	자녀

운전가능자를 제한하는 특별약관

⊙ 운전가능범위한정운전 특별약관

차를 운전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를 정하는 특별약관**입니다.

- 기명피보험자/부부/가족/가족 및 형제자매 한정 특별약관 등
- 약관 본문 특별약관 편 **운전 가능자에 대한 제한 부분**을 참고하세요.

기명피보험자의 조부모, 손자, 형제·자매는 가족한정 특별약관의 운전가능자 범위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가족한정운전 특약의 범위



⊙ 운전자연령한정 특별약관

차를 운전할 수 있는 사람의 **나이를 제한하는 특별약관**입니다.

- 만 21 / 22 / 24 / 26 / 28 / 30 / 35 / 43 / 48세 이상 한정운전 특별약관

※ 연령은 주민등록상의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하는 **만 나이**를 말합니다.

운전자의 연령과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이 운전할 경우 대인배상 I 을 제외한 담보는 보상되지 않습니다.

주요 할인 특별약관

⊙ 대중교통*이용 할인 특별약관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시는 고객님의 보험료를 할인해 드립니다.



할인 대상	
기명피보험자 한정운전 특별약관 가입고객	3개월간 기명피보험자본인의 신용카드 대중교통 이용실적이 일정금액 이상일 때
부부 한정운전 특별약관 가입고객	3개월간 기명피보험자와 배우자 본인의 신용카드 대중교통 이용실적이 합산하여 일정금액 이상일때

※ **대중교통이란?** : 여객수송용 전철, 지하철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 3조의 시내버스, 농어촌버스, 마을버스를 말합니다.

⊙ 자녀할인 특별약관

만 13세 이하의 자녀가 있거나 출산 예정인 고객님들의 보험료를 할인해 드립니다.



할인 대상
출산 예정이거나 만 13세 이하 자녀가 있는경우

※ 자녀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 가입할 경우 제외

⊙ 마일리지할인 특별약관 (후할인)

연간 주행거리에 따라 보험료를 할인해 드립니다.



할인 대상
보험계약이 끝나는 시점의 1년간 주행거리가 일정거리 이하일 때

※ 의무보험의 보험기간이 1년인 보험에 가입한 경우

⊙ 이동통신단말장치 안전운전할인 특별약관

안전운전 프로그램(티맵, 네이버지도)을 이용해 안전운전 하시는 고객님의 보험료를 할인해 드립니다.



할인 대상
기명피보험자 명의 핸드폰의 안전운전 프로그램(티맵, 네이버지도)을 이용한 주행거리와 안전운전점수가 일정 기준 이상일 때

※ 자녀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 및 커넥티드카 안전운전 할인 특별약관을 가입할 경우 제외

KB개인용 자동차보험의 구성

자동차보험약관은 보통약관과 고객님이 선택하여 가입하는 특별 약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보통약관



대인배상(Ⅰ,Ⅱ)

상대방이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었을 때



대물배상

다른 사람의 재물을 파손했을 때



대인자기신체사고

피보험자 본인이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었을 때



자기차량손해

피보험자동차가 파손 도난 등 손해를 입었을 때



무보험자동차상해

무보험자동차에 사고를 당했을 때

특별약관

운전자한정 특별약관

연령 한정 특별약관,
운전자 범위 한정 특별약관

보험료 할인 특별약관

대중교통할인특별약관,
이동통신단말장치안전운전할인특별약관,
마일리지할인특별약관,
자녀할인특별약관,
블랙박스할인특별약관

고보장 특별약관

배상책임/자기신체사고/
무보험차상해/자기차량
손해 관련 고보장
특별약관

대인배상(Ⅰ,Ⅱ)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다른 사람을 사망케 하거나 상해를 입혀 법률상 손해배상 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합니다.



⊙ 대인배상 Ⅰ

의무보험으로 다음의 한도 내에서 실제 손해액을 지급해 드립니다.

구분	보장내용	지급한도
사망	실제손해액 (장례비, 위자료, 상실수익액)	최고 1억 5천만원~최저 2천만원
부상	상해등급별 실제손해액 (위자료, 치료비, 휴업손해)	3천만원(1급)~50만원(14급)
후유장애	장애등급별 실제손해액 (위자료, 상실수익액, 간호비)	1억 5천만원(1급)~1천만원(14급)

⊙ 대인배상Ⅱ

대인배상 Ⅰ 의 한도를 초과하는 손해를 보상해 드립니다.

- 가입금액 **무한/1억/2억/3억** 중 선택

⊙ 법률비용지원 벌금확장 기본형/고급형 /최고급형 /최고급형(보장확대형) 특별약관



피보험자가 사고로 인해 다른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하여 형사상 책임을 지는 경우 **합의금지원금 / 벌금지원금 / 변호사 선임 비용** 등 법률행위에 소용되는 비용을 지원해 드립니다.

대물배상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남의 재물을 파손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 피해자의 직접손해와 간접손해를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보상합니다.



⊙ 가입금액

1사고당 **2천만원**(의무보험)

⊙ 대물배상가입금액 확장 특별약관 (대물배상 대체 특별약관)

대물배상 담보의 가입금액을 확장해 드립니다.

- **3천만원 / 5천만원 / 7천만원 / 1억원 / 2억원 / 3억원 / 5억원 / 10억원 20억원** 중 선택하여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 외산차 충돌 확대보상 특별약관

외산차*와 사고가 났을 때 대물배상의 가입금액 한도를 확장 (대물배상 가입금액의 2배 한도)해 드립니다.

※ **외산차란?** : 외국 자동차 제조회사에 의해 대한민국 내가 아닌 곳에서 제조되어 수입, 판매되는 자동차를 말합니다.

자기신체사고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사망하거나
다쳤을경우 보험가입금액에 따라 보상해 드립니다.



구분	보장내용
사망	보험증권 기재된 가입금액 정액 지급
부상	상해급수별 가입금액 한도 내 실제치료비지급
후유장애	장애급수별 가입금액 정액 지급

※ 쌍방 과실 사고 등으로 공제액(배상의무자가 존재하여 대인배상이나 무보험차상해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있는 경우 사망은 가입금액한도, 부상과 후유장애는 실제손해액에서 공제액을 제외하고 지급합니다.

⊙ 부상가입금액확장 특별약관

자기신체사고의 부상 가입금액의 한도를 확장해 드립니다.

- 가입금액에 따른 상해급수별 한도 금액은 약관 본문 특별약관편 **부상가입금액확장 특별약관**의 '〈별표〉상해구분 및 급별 보험가입금액표'를 확인하세요.

⊙ 자동차상해 특별약관 (자기신체사고 대체 특별약관)

자기신체사고 담보를 대체하는 특별약관으로 대인배상 지급기준에 따라 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보험금을 지급해 드립니다.

구분	보장내용
사망 또는 후유장애	위자료, 상실수익액 등 대인배상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
부상	위자료, 휴업손해액, 치료비 대인배상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

※ 지급기준은 약관 본문 〈별표1〉 '대인배상,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지급기준'을 참고하세요.
※ '공제액'이 발생할 경우 보험금에서 공제액은 제외하고 지급해 드립니다.
약관 본문 특별약관편 **자동차상해 특별약관**의 공제액을 확인하세요.

무보험자동차 상해

피보험자가 무보험자동차에 사고를 당하여 사망하거나 다쳤을 때 입은 손해를 보상해 드립니다.



- 무보험자동차 상해 담보는 대인배상 Ⅰ, Ⅱ와 자기신체사고에 모두 가입하는 경우에 한해 가입할 수 있습니다.

무보험자동차란?

- 뺑소니로 인해 확인이 불가능한 가해 차량
- 보험가입을 아예 하지 않았거나 대인배상 Ⅰ만 가입한 차
- 자세한 사항은 보통약관 제1조 용어정의를 참고하세요.

⊙ 가입금액

1인당 **2억원/3억원/5억원/7억원/10억**원 중에 선택하여 가입이 가능합니다.

⊙ 다른자동차운전담보 특별약관

무보험자동차 가입 시 자동 가입됩니다.
피보험자가 다른 자동차*를 운전 중 사고가 났을 때 해당 자동차를 피보험자동차로 간주하여 보상해드립니다.

- **적용담보** : 대인배상Ⅱ,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 **다른 자동차** : 피보험자동차와 동일 차종으로 약관 본문 특별약관편의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별약관에서 정의한 자동차를 말합니다.

다른 자동차 차량손해 추가 특별약관

피보험자가 운전한 다른 자동차를 자기차량손해 포괄약관 특별약관의 피보험자동차로 간주하여 보상해 드립니다.(선택 가입 특별약관)

- 개인인 피보험자가 7일 이하로 대여한 렌터카도 동일 차종일 경우 보상해 드립니다.(휴차료 포함)
- 자세한 내용은 보험 약관 본문 특별약관 편의 **다른 자동차 차량손해** 추가 특별약관을 참고하세요.

자기차량손해+자기차량손해 포괄 특별약관

자기차량손해에서는 피보험자동차에 생긴 직접 손해를 보상해 드립니다.
(단독 사고는 제외합니다.)

직접손해란?

- 다른 차 또는 물체와의 충돌 접촉 추락 전복 또는 차량의 침수로 인해 손해
- 화재, 폭발, 낙뢰, 날아온 물체, 떨어지는 물체에 의한 손해 또는 풍력에 의해 차체에 생긴 손해
- 피보험자동차 전부의 도난으로 인한 손해(일부 부분품, 부속품의 도난은 제외)

⊙ 자기차량손해 포괄 특별약관 (자기차량 손해 대체 특별약관)

피보험자동차의 단독사고도 보상해 드립니다.

구분	다른 차량과의 사고	단독사고	가해자불명 사고
자기차량손해	○	X	X
자기차량손해 포괄 특별약관	○	○	○

● 자기차량손해의 지급보험금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지급보험료 = 피보험자동차에 생긴 손해액 + 비용 −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기부담금

- **피보험자동차에 생긴 손해액** : 사고 당시 차량의 보험가액을 기준으로 가입한 보험금액을 한도로 보상해 드립니다.(보험가입금액 〉 차량의 보험가액일 경우 보험가액을 한도로 보상)
- **자기부담금** : 증권에 기재된 고객 부담비율, 상한 / 하한 부담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시	차량손해액	고객 부담비율 20% 시	하한/상한부담액	자기부담금
	300만원	300만원×20%=60만원	20만원/50만원	50만원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 주요 사례

01 고의로 사고를 일으켰을 때



02 자동차를 이용하여 영업행위를 했을 때



03 자동차를 시험, 경기용으로 운행했을 때



04 **운전한정특별약관을 위반했을 때**

운정한정특별약관상 가능범위에 있지 않거나 운정한정연령에 해당 하지 않는 사람이 운전했을 때 대인배상 I 만 보상이 가능합니다.



05 **음주 운전 / 무면허 운전 / 마약, 약물운전 / 뺑소니 사고의 경우**

대인배상 / 대물배상의 경우 다음과 같이 자기부담금을 납부하셔야 보험처리가 가능합니다.



담보명		자기부담금
대인배상 I		지급보험금 전액
대인배상 II		1사고당 1억원
대물배상	2천만원 이내 손해	지급보험금 전액
	2천만원 초과 손해	1사고당 5천만원

※ 위 사례 외에 각 담보 별 보상하지 않는 손해는 약관 본문을 참고하세요.

QnA 자주하는 질문

Q : 운전자/연령 한정 특약의 범위를 위반해 운전중 사고가 난 경우 보상이 안 되나요?

A : 가입하신 운전자/연령 한정운전특약에서 정한 연령 및 범위 외의 사람이 운전할 경우 자동차보험에서 보상하지 않습니다. 다만, 대인배상 Ⅰ은 운전자 한정특약 외 범위의 사람이 운전한 경우에도 보상합니다

Q : 운전자/연령 한정운전 특약 외의 사람이 운전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A : 단기 운전자확대특약 및 실시간 단기 운전자확대특약을 통해 일시적으로 운전자 범위를 확대하실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 담당자나 당사 콜센터(1544-0114, 1544-8516) 및 당사 대표앱에서 가입하실 수 있으며, 단기 운전자확대특약에 의해 확대된 운전자 범위는 해당일 24시(다음날 00시)부터 적용되고, 실시간 단기 운전자확대특약에 의해 확대된 운전자 범위는 보험료를 받은 시점부터 적용됩니다.

Q : 자동차보험 가입 시 차량가액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A : 보험개발에서 정한 분기별 차량기준가액표에 의해 정해집니다. 사고 시 자기차량손해의 보험가액은 사고 시점 기준 최근의 차량기준가액표에 따라 결정됩니다.

Q : 보험료를 낮추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 운전자의 연령 또는 범위를 한정할 경우 보험료를 줄일 수 있습니다. 마일리지 할인 특약에 가입하신 경우 주행거리에 따라 보험료를 할인 받으실 수 있습니다.

Q : 보험회사에 알리지 않은 자동차 부속품도 보상받을 수 있나요?

A : 자기차량손해 담보에서 보험회사에 알려주지 않은 자동차의 부속품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내비게이션 등 차량에 새로운 부속품을 장착한 경우 부속품 종류와 가액을 사고 발생 전에 보험회사에 알려 계약 내용을 변경하셔야 합니다. 계약 변경으로 부속품 가액 포함 시 보험료는 변동될 수 있습니다.

주요 용어 내용 설명

용어	내용
기명피보험자	보험가입 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 보험증권 등의 기명피보험자란에 기재되어 있는 사람
공제계약	공제조합이 각자 조합원으로부터 받은 출자금을 자본으로 조합원의 자동차사고 시에 공제금을 지급하여 돕는 공제사업에 의한 계약 (예:전국택시공제조합)
의무보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대인배상 I 및 1사고당 2천만원의 보상한도 금액을 담보하는 대물배상(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해 과태료가 부과됨)
보통약관	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의 사고에 대해 구체적인 보상내용 및 보험계약의 성립에서 소멸까지의 보험계약자와 보험회사 간의 권리와 의무사항을 정한 내용
특별약관	자동차보험 가입 시 선택해서 가입함으로써 보통약관에서 보장하는 내용에 추가 또는 축소하여 보상,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내용
보험료	보험계약에 따라 계약자가 지불하는 금액
보험금	보험회사가 약관에 따라 피보험자 또는 보험금청구권자에게 지급하는 보상액
자기부담금	보험금 지급 시 일정금액에 대해서는 보험회사가 아닌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금액
보험가액	보험개발원이 정한 차량기준가액표에 따른 차량가격
보험가입금액	보험금을 지급하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회사가 지급하는 보험금의 한도액
상해등급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별표1에서 정한 상해의 구분과 보험금 등을 정한 등급(보통약관 참고)
후유장애등급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별표2에서 정한 후유장애의 구분과 보험금을 정한 등급
정부보장사업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정부에서 뺑소니, 무보험자동차로 인해 사고를 당한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운영하는 사회보장제도

KB다이렉트(인터넷)개인용자동차보험 보통약관

KB다이렉트(인터넷)개인용자동차보험은 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보상하는 보험으로, 구체적인 보상내용 및 자동차보험계약의 성립에서 소멸까지의 보험계약자와 보험회사간의 권리와 의무사항은 다음의 자동차보험 약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1편 용어의 정의 및 자동차보험의 구성

1조 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가지급금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보험회사가 피보험자에 대한 보상책임이나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확정하기 전에 그 비용의 일부를 피보험자 또는 피해자에게 미리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2. 단기요율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보험계약에 적용되는 보험요율[1]을 말합니다.

3. 마약 또는 약물 등

「도로교통법」 제45조에서 정한 '마약, 대마, 향정신성의약품[2] 그 밖의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4. 무면허운전(조종)

「도로교통법」 또는 「건설기계관리법」의 운전(조종)면허에 관한 규정에 위반되는 무면허 또는 무자격운전(조종)을 말하며, 운전(조종)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황이거나 운전(조종)이 금지된 상황에서 운전(조종)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5. 무보험자동차[3]

무보험자동차: 피보험자동차가 아니면서 피보험자를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자동차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경우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건설기계, 「군수품관리법」에 의한 차량, 「도로교통법」에 의한 원동기장치자전거 및 개인형이동장치, 「농업기계화촉진법」에 의한 농업기계를 말하며, 피보험자가 소유한 자동차를 제외합니다.

가. 자동차보험 「대인배상Ⅱ」나 공제계약[4]이 없는 자동차

나. 자동차보험 「대인배상Ⅱ」나 공제계약에서 보상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는 자동차

다. 이 약관에서 보상될 수 있는 금액보다 보상한도가 낮은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Ⅱ」나 공제계약이 적용되는 자동차. 다만, 피보험자를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자동차가 2대 이상이고 각각의 자동차에 적용되는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Ⅱ」 또는 공제계약에서 보상되는 금액의 합계액이 이 약관에서 보상될 수 있는 금액보다 낮은 경우에 한하는 그 각각의 자동차

라. 피보험자를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자동차가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경우 그 자동차(「도로교통법」에 의한 개인형이동장치는 제외)

6. 부분품, 부속품, 부속기계장치

가. 부분품: 엔진, 변속기(트랜스미션) 등 자동차가 공장에서 출고될 때 원형 그대로 부착되어 자동차의 조성부분이 되는 재료를 말합니다.

나. 부속품: 자동차에 정착[5] 또는 장비[6]되어 있는 물품을 말하며, 자동차 실내에서만 사

---

1) 요율은 '요금의 정도나 비율'을 말합니다. 보험요율은 보험료 계산 시 가입조건에 따라 적용되는 보험료 수준 등을 의미합니다.

2) 향정신성의약품이란 인간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약물로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인체에 심각한 위해가 있다고 인정되는 의약품을 말합니다.

3) 무보험자동차상해에서는 대인배상Ⅰ만 가입한 경우에도 무보험자동차에 해당합니다.

4) 공제조합이 각자 조합원으로부터 받은 출자금을 자본으로 조합원의 자동차사고 시에 공제금을 지급하는 공제사업에 의한 계약을 말합니다. 예)일반택시운송사업자가 전국택시공제조합과 체결한 계약

5) 정착: 볼트, 너트 등으로 고정되어 있어서 공구 등을 사용하지 않으면 쉽게 분리할 수 없는 상태

6) 장비: 자동차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기 위해 갖추어 두고 있는 상태 또는 법령에 따라 자동차에 갖추어 두고 있는 상태

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서 자동차에 고정되어 있는 내비게이션이나 고속도로통행료단말기[7]를 포함합니다. 다만 다음의 물품을 제외합니다.

(1) 연료, 보디커버, 세차용품
(2) 법령[8]에 의해 자동차에 정착하거나 장비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는 물건
(3) 통상 장식품으로 보는 물건
(4) 부속기계장치

다. 부속기계장치: 의료방역차, 검사측정차, 전원차, 방송중계차 등 자동차등록증상 그 용도가 특정한 자동차에 정착되거나 장비되어 있는 정밀기계장치를 말합니다.

7. 운전(조종)

「도로교통법」상 도로{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제45조(과로한 때 등의 운전 금지)·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제1항·제148조(벌칙) 및 제148조의2(벌칙)의 경우에는 도로 외의 곳을 포함)}에서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8. 운행

사람 또는 물건의 운송 여부와 관계없이 자동차를 그 용법에 따라 사용하거나 관리하는 것을 말합니다(「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2조 제2호).

(운전과 운행 비교 설명)

'**운전**'은 도로교통법상 도로로 정의되는 공간에서 차마(차량)을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조종을 포함)을 말하는 것이며, '**운행**'은 자동차손해배상법에서 정의되는 행위로 장소와 관계없이 자동차를 그 용법에 따라 사용, 관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운행은 운전보다 넓은 개념에 해당합니다**.

9. 음주운전(조종)

「도로교통법」에 정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조종)하거나 음주측정에 불응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10. 의무보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에 따라 자동차보유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보험을 말합니다.

11. 자동차보유자

자동차의 소유자나 자동차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자로서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를 말합니다(「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2조 제3호).

12. 자동차 취급업자

자동차정비업, 대리운전업, 주차장업, 급유업, 세차업, 자동차판매업, 자동차탁송업 등 자동차를 취급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를 말하며 이들 또는 이들의 피용자[9]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이사와 감사를 포함합니다.

13. 피보험자

보험회사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자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하며, 구체적인 피보험자의 범위는 각각의 보장종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가. 기명피보험자: 피보험자동차를 소유·사용·관리하는 자 중에서 보험계약자가 지정하여 보험증권의 기명피보험자란에 기재되어 있는 피보험자를 말합니다.

나. 친족피보험자: 기명피보험자와 같이 살거나 살림을 같이 하는 친족[10]으로서 피보험자동차를 사용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자를 말합니다.

---

7) 고속도로통행료단말기 : 고속도로 통행료 등의 지급을 위해 고속도로 요금소와 통행료 등에 관한 정보를 주고받는 송수신장치(예 : 하이패스 단말기)

8) '법령'은 자동차관리법 제3장 제29조를 말하며, '금지되어있는 물건'이란 자동차 운행에 있어 본인 및 다른 차량의 운행에 지장을 주는 것으로 적법하지 않은 튜닝품, 경광등 사이렌, 번호판 가림장치 등을 말합니다.

9) 피용자란 직업 종류에 관계없이 사업이나 사업장에 노동력 등을 제공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사용자와 피용자의 관계는 '유효한 고용관계'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을 위해 그 지휘, 감독 아래 그 의사에 따라 사업을 집행하는 관계에 있을 때에도 성립될 수 있습니다.

10) 같이 살거나 살림을 같이 하는 친족이란 기명피보험자와 동일가옥에 살거나 민법 제777조(친족: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배우자)에 의해 생계를 같이하거나 부양관계에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다. 승낙피보험자: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얻어 피보험자동차를 사용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자를 말합니다.

라. 사용피보험자: 기명피보험자의 사용자 또는 계약에 따라 기명피보험자의 사용자에 준하는 지위를 얻은 자. 다만, 기명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사용자[11]의 업무에 사용하고 있는 때에 한합니다.

마. 운전피보험자: 다른 피보험자(기명피보험자, 친족피보험자, 승낙피보험자, 사용피보험자를 말함)를 위하여 피보험자동차를 운전중인 자(운전보조자를 포함)를 말합니다.

14. 피보험자동차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동차를 말합니다.

15. 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

가. 피보험자의 부모: 피보험자의 부모, 양부모를 말합니다.

나. 피보험자의 배우자: 법률상의 배우자[12] 또는 사실혼[13]관계에 있는 배우자를 말합니다.

다. 피보험자의 자녀: 법률상의 혼인관계에서 출생한 자녀, 사실혼관계에서 출생한 자녀, 양자 또는 양녀를 말합니다.

16. 휴대품,인명보호장구 및 소지품

가. 휴대품: 통상적으로 몸에 지니고 있는 물품으로 현금, 유가증권, 만년필, 소모품, 손목시계, 귀금속, 장신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물품을 말합니다.

나. 인명보호장구 : 외부충격으로부터 탑승자의 신체를 보호하는 특수기능이 포함된 것으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2조에서 정하는 승차용 안전모 또는 전용의류[14]를 말합니다.

다. 소지품: 휴대품을 제외한 물품으로 정착[15]되어 있지 않고 휴대할 수 있는 물품을 말합니다.[16]

17. 사고발생 시의 조치의무 위반

「도로교통법」에서 정한 사고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다만, 주·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18. 보험가액

가.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보험계약 체결 당시 보험개발원이 정한 최근의 자동차보험 차량기준가액표(적용요령 포함)에 정한 가액을 말합니다.

나. 보험계약 체결 후 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사고 발생 당시 보험개발원이 정한 최근의 자동차보험 차량기준가액표(적용요령 포함)에 정한 가액을 말합니다.

19. 마약·약물운전

마약 또는 약물 등의 영향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을 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20. 새 부분품

「자동차관리법」 제58조 제5항 제2호에 따른 신부품(자동차제작사가 주문하여 생산한 부품이나 품질인증부품을 포함한 대체부품 중 사용되지 아니한 부품)을 말합니다.

---

11) 근로자, 피용자에게 지휘 명령를 하는 자로서 사업주, 경영담당자 등을 말합니다.

12) 법률상의 배우자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 및 수리된 배우자를 말합니다.

13) 사실혼: 혼인 신고를 하지 않았으나 당사자간 혼인의 의사가 있는 상태로 함께 살며 생계를 같이 하는 남녀 관계

14) 예: 바이크 전용 슈트, 에어백 등 (라이더자켓・팬츠・부츠 등 이와 유사한 일반의류는 제외)

15) 정착: 볼트, 너트 등으로 고정되어 있어서 공구 등을 사용하지 않으면 쉽게 분리할 수 없는 상태

16) 예: 휴대전화기, 노트북, 캠코더, 카메라, 음성재생기(CD 플레이어, MP3 플레이어, 카세트테이프 플레이어 등), 녹음기, 전자수첩, 전자사전, 휴대용라디오, 핸드백, 서류가방, 골프채 등

2조 자동차보험의 구성

① 보험회사가 판매하는 자동차보험은 「대인배상Ⅰ」, 「대인배상Ⅱ」,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자기차량손해」의 6가지 보장종목과 특별약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② 보험계약자는 다음과 같은 방법에 의해 자동차보험에 가입합니다.

1. 의무보험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에 의해 보험에 가입할 의무가 있는 자동차 보유자는 「대인배상Ⅰ」과 「대물배상」(「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서 정한 보상한도에 한함)을 반드시 가입하여야 합니다.
2. 임의보험 : 의무보험에 가입하는 보험계약자는 의무보험에 해당하지 않는 보장종목을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③ 각 보장종목별 보상 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상세한 내용은 제2편 자동차보험에서 보상하는 내용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1. 배상책임: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

보장종목	보상하는 내용
가. 「대인배상Ⅰ」	자동차사고로 다른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경우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서 정한 한도에서 보상
나. 「대인배상Ⅱ」	자동차사고로 다른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경우, 그 손해가 「대인배상Ⅰ」에서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손해를 보상
다. 「대물배상」	자동차사고로 다른 사람의 재물을 없애거나 훼손한 경우에 보상

2. 배상책임 이외의 보장종목: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를 보상

보장종목	보상하는 내용
가. 「자기신체사고」	피보험자가 상해[17]를 입은 경우에 보상
나.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무보험자동차에 의해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은[8] 경우에 보상
다. 「자기차량손해」	피보험자동차에 생긴 손해를 보상

④ 자동차보험료는 보험회사가 금융감독원에 신고한 후 사용하는 '자동차보험요율서'에서 정한 방법에 의하여 계산합니다.

<예 시>
납입할보험료 = 기본보험료 × 특약요율 × 가입자특성요율 × 특별요율
× 우량할인·불량할증요율 × 사고건수별 특성요율

구분	내용
기본보험료	차량의 종류, 배기량, 용도, 보험가입금액, 성별, 연령 등에 따라 미리 정해놓은 기본적인 보험료
특약요율	운전자의 연령범위를 제한하는 특약, 가족으로 운전자를 한정하는 특약 등 가입시에 적용하는 요율
가입자특성요율	보험가입기간이나 법규위반경력에 따라 적용하는 요율
특별요율	자동차의 구조나 운행실태가 같은 종류의 차량과 다른 경우 적용하는 요율
우량할인·불량할증요율	사고발생 실적에 따라 적용하는 요율
사고건수별 특성요율	직전 3년간 사고유무 및 사고건수에 따라 적용하는 요율

17) 피보험자의 신체에 이상이 있는 점을 뒷받침할 수 있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제2편 자동차보험에서 보상하는 내용

제1장 배상책임

제1절 대인배상 I

3조 보상하는 손해

「대인배상Ⅰ」에서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합니다.

4조 피보험자

「대인배상Ⅰ」에서 피보험자라 함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하며, 다음에서 정하는 자 외에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자동차보유자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인배상Ⅰ」의 피보험자로 봅니다.

1. 기명피보험자
2. 친족[18]피보험자
3. 승낙피보험자
4. 사용피보험자
5. 운전피보험자

5조 보상하지 않는 손해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로[19] 인한 손해는 「대인배상Ⅰ」에서 보상하지 않습니다. 다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피해자가 보험회사에 직접청구를 한 경우, 보험회사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령에서 정한 금액을 한도로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다음 지급한 날부터 3년 이내에 고의로 사고를 일으킨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그 금액의 지급을 청구합니다.[20]

제2절 대인배상 II와 대물배상

6조 보상하는 손해

① 「대인배상Ⅱ」에서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사용·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다른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하여 법률상 손해

18) 친족이란 혈연관계에 있거나 혼인으로 맺어진 사람으로서 민법 제 777조에서 규정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를 말합니다.

19) 고의란 자신의 행위로 인해서 발생할 결과를 인식하면서도 그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하며, 일정한 결과 발생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감히 행하는 '미필적 고의'를 포함합니다.

20) 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한 손해 발생시 피해자 구제를 위한 절차는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1. 피보험자 고의에 의한 사고, 보험회사는 손해배상금 미지급
2. 피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자기부담을 통해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피해자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 10조에 따라 가해자의 보험회사에 손해배상금 지급 청구
3. 피보험자의 보험회사는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
4. 보험회사는 피해자에게 지급한 손해배상금에 대해 피보험자에게 청구(3년 이내)
5. 피보험자는 보험회사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손해배상금 전액을 보험회사에 지급

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대인배상Ⅰ」에서 보상하는 손해를 초과하는 손해에 한함)를 보상합니다.

② 「대물배상」에서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사용·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다른 사람의 재물을 없애거나 훼손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합니다.

7조 피보험자

「대인배상Ⅱ」와 「대물배상」에서 피보험자라 함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

1. 기명피보험자
2. 친족피보험자
3. 승낙피보험자. 다만, 자동차 취급업자가 업무상 위탁[21]받은 피보험자동차를 사용하거나 관리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로 보지 않습니다.
4. 사용피보험자
5. 운전피보험자. 다만, 자동차 취급업자가 업무상 위탁받은 피보험자동차를 사용하거나 관리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로 보지 않습니다.

8조 보상하지 않는 손해

①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해는 「대인배상Ⅱ」와 「대물배상」에서 보상하지 않습니다.

1. 보험계약자 또는 기명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한 손해
2. 기명피보험자 이외의 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한 손해
3. 전쟁, 혁명, 내란, 사변[22], 폭동[23], 소요[24] 또는 이와 유사한 사태로 인한 손해
4. 지진, 분화, 태풍, 홍수, 해일 등 천재지변으로 인한 손해
5. 핵연료물질의 직접 또는 간접적인 영향으로 인한 손해
6. 영리를 목적으로 요금이나 대가를 받고 피보험자동차를 반복적으로 사용하거나 빌려준 때에 생긴 손해. 다만,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합니다.
   가. 임대차계약(계약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함)에 따라 임차인이 피보험자동차를 전속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다만, 임차인이 피보험자동차를 영리를 목적으로 요금이나 대가를 받고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나. 피보험자와 동승자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한 날의 출·퇴근 시간대(오전 7시부터 오전 9시까지 및 오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를 말함)에 실제의 출·퇴근 용도로 자택과 직장 사이를 이동하면서 '승용차 함께 타기'를 실시한 경우
7. 피보험자가 제3자와 손해배상에 관한 계약을 맺고 있을 때 그 계약으로 인하여 늘어난 손해[25]
8. 피보험자동차를 시험용, 경기용 또는 경기를 위해 연습용으로 사용하던 중 생긴 손해. 다만, 운전면허시험을 위한 도로주행시험용으로 사용하던 중 생긴 손해는 보상합니다.

②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죽거나 다친 경우에는 「대인배상Ⅱ」에서 보상하지 않습니다.

---

21) 업무상 위탁이란 취급업자가 업무를 위해 피보험자동차의 사용 및 관리책임을 맡는 것을 말합니다.(예: 자동차정비업자에게 정비를 위해 피보험자동차를 맡겨놓은 상태)

22) 사변: 전쟁까지 이르지는 않았으나 경찰의 힘으로는 막을 수 없어 무력을 사용하게 되는 난리를 말합니다.

23) 폭동: 다수인이 집단 행동을 통해 사회의 안녕과 질서 등을 저해하는 것을 말합니다.

24) 소요: 폭동과 유사하나 보다 소규모의 행위로 소동, 시위를 말합니다.

25)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사고발생시 일정 금액을 지급하기로 별도 약정을 했어도 보험회사는 그와 관계없이 약관에 따른 보험금만 지급한다는 뜻입니다. (예: 버스회사가 승객에게 사고발생시 일정금액을 동일하게 지급한다는 별도 약정을 해도 보험회사는 이에 상관없이 자동차보험 약관에 따라 산정된 금액만 지급)

1. 피보험자 또는 그 부모, 배우자 및 자녀
2. 배상책임이 있는 피보험자의 피용자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 다만, 그 사람이 입은 손해가 같은 법에 의한 보상범위를 넘어서는 경우 그 초과손해를 보상합니다.
3. 피보험자동차가 피보험자의 사용자의 업무에 사용되는 경우 그 사용자의 업무에 종사중인 다른 피용자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 다만, 그 사람이 입은 손해가 같은 법에 의한 보상범위를 넘는 경우 그 초과손해를 보상합니다.[26]

③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해는 「대물배상」에서 보상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 또는 그 부모, 배우자나 자녀가 소유・사용・관리하는 재물에 생긴 손해
2. 피보험자가 사용자의 업무에 종사하고 있을 때 피보험자의 사용자가 소유・사용・관리하는 재물에 생긴 손해
3. 피보험자동차에 싣고 있거나 운송중인 물품에 생긴 손해
4. 다른 사람의 서화, 골동품, 조각물, 그 밖에 미술품과 탑승자와 통행인의 의류나 휴대품에 생긴 손해. 그러나 탑승자의 신체를 보호할 인명보호장구에 한하여 피해자 1인당 200만원의 한도에서 실제 손해를 보상합니다.
5. 탑승자와 통행인의 분실 또는 도난으로 인한 소지품에 생긴 손해. 그러나 훼손된 소지품에 한하여 피해자 1인당 200만원의 한도에서 실제 손해를 보상합니다.

④ 제①항 제2호와 관련해서 보험회사가 제9조(피보험자 개별적용) 제①항에 따라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하는 경우, 보험회사는 손해배상액을 지급한 날부터 3년 이내에 고의로 사고를 일으킨 피보험자에게 그 금액의 지급을 청구합니다.

제3절 배상책임에서 공통으로 적용할 사항

9조 피보험자 개별적용

① 이 장의 규정은 각각의 피보험자마다 개별적으로 적용[27]합니다. 다만 제8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제①항 제1호, 제6호, 제8호를 제외합니다.

② 제①항에 따라 제10조(지급보험금의 계산)에 정하는 보험금의 한도가 증액되지는 않습니다.

10조 지급보험금의 계산

① 「대인배상Ⅰ」, 「대인배상Ⅱ」, 「대물배상」에서 보험회사는 이 약관의 '보험금지급기준에 의해 산출한 금액'과 '비용'[28]을 합한 금액에서 '공제액'을 공제한 후 보험금으로 지급하되 다음의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1. 「대인배상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
2. 「대인배상Ⅱ」, 「대물배상」: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

---

26) 업무 중 등의 사고 시 피용자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그 경우 만약 해당 피용자가 입은 손해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상부분을 넘는 경우 그 초과손해분에 한해 보상한다는 내용입니다.

27) '피보험자 모두에게 개별적으로 적용'이란 한 사고로 배상책임을 지는 피보험자가 복수로 존재할 경우 각각의 피보험자마다 면책사유가 적용되는지 확인하여 한 피보험자와의 관계에서 면책사유가 적용된다 하더라도 다른 피보험자의 보험금청구권이 발생하면 보험회사의 보상책임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기명피보험자 A가 친구인 B에게 차량을 빌려주었고 B의 종업원 C가 회사의 일을 위하여 차량을 운전하다가 그 회사 업무에 종사 중이던 다른 종업원 D를 사상케 한 경우 배상책임을 지는 피보험자로는 A와 B 그리고 운전자 C가 됩니다. 그런데 승낙피보험자 B의 배상책임에 대하여는 피용자재해면책약관, 운전자 C의 배상책임에 대하여는 동료재해면책약관에 의해 면책되지만 기명피보험자 A는 피해자 D와 사용, 피용관계나 동료관계에 있지 않아 A가 피해자에게 지는 배상책임에 대해 보험사의 보상책임은 발생하게 됩니다.

28) 비용은 손해의 감소를 위해 타당하게 사용된 금액입니다. 지급보험금 산출식에 의해 계산된 보험금이 보험가입금액을 초과하더라도 비용에 해당하는 항목은 보상해 드립니다.

지급 보험금	=	'보험금지급기준에 의해 산출한 금액' 또는 '법원의 확정판결 등[29]에 따라 피보험자가 배상하여야 할 금액'	+	비용	-	공제액

② 소송(민사조정, 중재를 포함)이 제기되었을 경우에는 대한민국 법원의 확정판결 등에 따라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배상하여야 할 금액(지연배상금을 포함)을 제1항의 '보험금지급기준에 의해 산출한 금액'으로 봅니다.

③ 제①항의 '비용'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이 비용은 보험가입금액과 관계없이 보상하여 드립니다.

1. 손해의 방지와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긴급조치비용을 포함)[30]
2. 다른 사람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보전과 행사를 위하여 지출한 필요비용 또는 유익한 비용[31]
3. 그 밖에 보험회사의 동의를 얻어 지출한 비용

④ 제①항의 '공제액'은 다음의 금액을 말합니다.

1. 「대인배상Ⅱ」: 「대인배상Ⅰ」에서 지급되는 금액 또는 피보험자동차가 「대인배상Ⅰ」에 가입되지 않은 경우에는 「대인배상Ⅰ」에서 지급될 수 있는 금액
2. 「대물배상」: 사고차량을 고칠 때에 엔진, 변속기(트랜스미션), 모터, 구동용배터리 등 부분품을 교체한 경우 교체된 기존 부분품의 감가상각에 해당하는 금액

11조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마약 · 약물운전 또는 사고발생시의 조치의무 위반 관련 사고부담금

① 피보험자 본인이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 또는 마약·약물운전을 하는 동안에 생긴 사고 또는 사고발생 시의 조치의무를 위반한 경우 또는 기명피보험자의 명시적·묵시적[32] 승인하에서 피보험자동차의 운전자가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 또는 마약·약물운전을 하는 동안에 생긴 사고 또는 사고발생 시의 조치의무를 위반한 경우로 인하여 보험회사가 「대인배상Ⅰ」, 「대인배상 Ⅱ」 또는 「대물배상」에서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 피보험자는 다음에서 정하는 사고부담금을 보험회사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1. 「대인배상 Ⅰ」 : 「대인배상Ⅰ」 한도 내 지급보험금
2. 「대인배상 Ⅱ」 : 1사고당 1억원
3. 「대물배상」
   - 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자동차보유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대물배상」 보험가입금액 이하 손해 : 지급보험금
   - 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자동차보유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대물배상」 보험가입금액 초과 손해 : 1사고당 5,000만원

② 피보험자는 지체 없이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마약·약물운전 또는 사고발생 시의 조치의무위반 사고부담금을 보험회사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다만, 피보험자가 경제적인 사유 등으로 이 사고부담금을 미납하였을 때 보험회사는 피해자에게 이 사고부담금을 포함하여 손해배상금을 우선 지급하고 피보험자에게 이 사고부담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29) 법원의 확정판결 또는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조정결정, 중재판정 등을 말합니다.

30) 예시: 사고발생 후 응급환자 이송을 위해 타당하게 지출한 비용

31) 예시: 사고 증거(블랙박스 영상 등)의 확보, 소송의 제기 등에 소요되는 비용 등

32) 명시적, 묵시적이란 법률상 추상적인 개념으로서 사안별로 법률적 판단에 따라야 하는 내용입니다. 다만, 통상적인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명시적 승인"이란 내용이나 뜻을 분명하게 나타내어 해당 행위에 대해 승인하는 것을 말합니다.
② "묵시적 승인"이란 직접적인 말 또는 행동이 아니라 간접적으로 해당 행위에 대해 승인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2장 배상책임 이외의 보장종목

제1절 자기신체사고

12조 보상하는 손해

「자기신체사고」에서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사용·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고로 인하여 죽거나 다친 때[33] 그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1. 피보험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사고
2. 피보험자동차의 운행중 발생한 다음의 사고. 다만,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에 탑승중일 때에 한합니다.
   가. 날아오거나 떨어지는 물체와 충돌
   나. 화재 또는 폭발
   다. 피보험자동차의 낙하

13조 피보험자

① 「자기신체사고」에서 피보험자는 보험회사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으로 그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제7조(피보험자)의 「대인배상 Ⅱ」에 해당하는 피보험자
   2. 위 '1'의 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34]

14조 보상하지 않는 손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해는 「자기신체사고」에서 보상하지 않습니다.

① 피보험자의 고의로 그 본인이 상해를 입은 때. 이 경우 그 피보험자에 대한 보험금만 지급하지 않습니다.
② 상해가 보험금을 받을 자의 고의로 생긴 때에는 그 사람이 받을 수 있는 금액
③ 피보험자동차 또는 피보험자동차 이외의 자동차를 시험용, 경기용 또는 경기를 위해 연습용으로 사용하던 중 생긴 손해. 다만, 운전면허시험을 위한 도로주행시험용으로 사용하던 중 생긴 손해는 보상합니다.
④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및 이와 유사한 사태로 인한 손해
⑤ 지진, 분화 등 천재지변으로 인한 손해
⑥ 핵연료물질의 직접 또는 간접적인 영향으로 인한 손해
⑦ 영리를 목적으로 요금이나 대가를 받고 피보험자동차를 반복적으로 사용하거나 대여한 때에 생긴 손해. 다만,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합니다.
   가. 임대차계약(계약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함)에 따라 임차인이 피보험자동차를 전속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다만, 임차인이 피보험자동차를 영리를 목적으로 요금이나 대가를 받고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나. 피보험자와 동승자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한 날의 출·퇴근 시간대(오전 7시부터 오전 9시까지 및 오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를 말함)에 실제의 출·퇴근 용도로 자택과 직장 사이를 이동하면서 '승용차 함께 타기'를 실시한 경우

33) 피보험자의 신체에 이상이 있는 점을 뒷받침할 수 있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34) 피보험자의 부모라 함은 피보험자의 부모와 양부모를 말하며, 피보험자의 배우자는 법률상의 배우자 또는 사실혼관계에 있는 배우자를 말하며, 피보험자의 자녀라 함은 법률상의 혼인관계에서 출생한 자녀, 사실혼관계에서 출생한 자녀, 양자 또는 양녀를 말합니다.

15조 보험금의 종류와 한도

보험회사가 「자기신체사고」에서 지급하는 보험금의 종류와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사망 :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은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하였을 때에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사망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② 부상 :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은 직접적인 결과로 의사의 치료를 요하는 때에는, '<별표5> 자기신체사고 지급기준'상의 '1) 상해구분 및 급별 보험가입금액표'에 따라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③ 후유장애 :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은 직접적인 결과로 치료를 받은 후에도 신체에 장애가 남은 때에는 '<별표5> 자기신체사고 지급기준'상의 '2) 후유장애구분 및 급별 보험가입금액표'에 따라, 보험증권에 기재된 후유장애 보험가입금액에 해당하는 각 장애등급별 보험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16조 지급보험금의 계산

「자기신체사고」의 지급보험금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① 「자기신체사고」의 사망, 부상, 후유장애의 지급보험금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각각 계산합니다. 다만, '비용'은 '공제액'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35]

지급보험금	=	실제손해액	+	비용	-	공제액

1. 실제손해액은 '<별표1> 대인배상,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지급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 또는 소송이 제기된 경우 확정판결금액으로써 과실상계[36] 및 보상한도를 적용하기 전의 금액을 말합니다.
2. 위 '비용'은 다음의 금액을 말합니다. 이 비용은 보험가입금액과 관계없이 보상하여 드립니다.
   ⅰ) 손해의 방지와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ⅱ) 남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보전과 행사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3. '공제액'은 다음의 금액을 말합니다.
   ⅰ) 자동차보험(공제계약 포함) 대인배상Ⅰ(정부보장사업[37] 포함) 및 대인배상Ⅱ에 의해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
   ⅱ)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에 의하여 지급될 수 있는 금액. 다만,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의 보험금 청구를 포기한 경우에는 공제하지 않습니다.
   ⅲ) 배상의무자 이외의 제3자로부터 보상받은 금액. 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해 보상받은 금액은 제3자로부터 보상받은 금액에 포함하지 않으며 이 경우 관련 내용(업무상 재해 등)확인을 위해 보험회사가 요청한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4. 위 3호의 '공제액'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망의 경우 보험증권에 기재된 사망보험가입금액, 부상의 경우 '<별표5> 자기신체사고 지급기준'상의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 피보험자가 실제 지출한 치료비(성형수술비 포함), 후유장애의 경우 보험증권에 기재된 후유장애 보험가입금액에 해당하는 각 장애등급별 보험금액을 각각 지급합니다.

② 보험회사가 사망보험금을 지급할 경우에 이미 후유장애로 지급한 보험금이 있을 때에는 사망보험금에서 이를 공제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다만 보험계약자인 기명피보험자가 본인의 사망보험금 수익자를 지정하거나 변경하고 그 사실을 보험회사에 서면으로 통지한 경우에는 그 수익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35) 공제액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보전과 행사를 위해 지출하는 비용 및 손해 방지와 경감을 위해 지출한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비용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예 : 피보험자동차의 단독사고 등)

36) 과실상계란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 피해자의 과실이 손해의 발생 또는 손해의 확대에 기여한 경우 손해의 공평분담을 위해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 피해자의 과실을 참작하는 것을 말합니다.

37)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의 보장사업으로, 정부에서 보유불명(뺑소니) 자동차 또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해 사고를 당한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운영하는 사회보장제도

제2절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는 「대인배상Ⅰ」, 「대인배상Ⅱ」, 「자기신체사고」에 모두 가입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17조 보상하는 손해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에서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무보험자동차로 인하여 생긴 사고로 죽거나 다친 때[38] 그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의무자[39]가 있는 경우에 이 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18조 피보험자

①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에서 피보험자는 보험회사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으로 그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명피보험자 및 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피보험자동차에 탑승중이었는지 여부를 불문합니다)
2. 기명피보험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모 및 자녀(피보험자동차에 탑승중이었는지 여부를 불문합니다)
3. 피보험자동차에 탑승중인 경우로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얻어 피보험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중인 자. 다만, 자동차 취급업자가 업무로서 위탁받은 피보험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로 보지 않습니다.
4. 위 '1 내지 3'에서 규정하는 피보험자를 위하여 피보험자동차를 운전중인 자. 다만, 자동차 취급업자가 업무로서 위탁받은 피보험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로 보지 않습니다.

19조 보상하지 않는 손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해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에서 보상하지 않습니다.
① 보험계약자의 고의로 인한 손해
② 피보험자의 고의로 그 본인이 상해를 입은 때. 이 경우 해당 피보험자에 대한 보험금만 지급하지 않습니다.
③ 상해가 보험금을 받을 자의 고의로 생긴 때는 그 사람이 받을 수 있는 금액
④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및 이와 유사한 사태로 인한 손해
⑤ 지진, 분화, 태풍, 홍수, 해일 등 천재지변으로 인한 손해
⑥ 핵연료물질의 직접 또는 간접적인 영향으로 인한 손해
⑦ 영리를 목적으로 요금이나 대가를 받고 피보험자동차를 반복적으로 사용하거나 대여한 때에 생긴 손해. 다만,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합니다.
   가. 임대차계약(계약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함)에 따라 임차인이 피보험자동차를 전속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다만, 임차인이 피보험자동차를 영리를 목적으로 요금이나 대가를 받고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나. 피보험자와 동승자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한 날의 출·퇴근 시간대(오전 7시부터 오전 9시까지 및 오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를 말함)에 실제의 출·퇴근 용도로 자택과 직장 사이를 이동하면서 '승용차 함께 타기'를 실시한 경우
⑧ 피보험자동차 또는 피보험자동차 이외의 자동차를 시험용, 경기용 또는 경기를 위해 연

38) 피보험자의 신체에 이상이 있는 점을 뒷받침할 수 있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39) '배상의무자'라 함은 무보험자동차로 인하여 생긴 사고로 피보험자를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함으로써 피보험자에게 입힌 손해에 대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사람을 말합니다.

습용으로 사용하던 중 생긴 손해. 다만, 운전면허시험을 위한 도로주행시험용으로 사용하던 중 생긴 손해는 보상합니다.

⑨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를 영리를 목적으로 요금이나 대가를 받고 운전하던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⑩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배상의무자일 경우에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들이 무보험자동차를 운전하지 않은 경우로, 이들 이외에 다른 배상의무자[40]가 있는 경우에는 보상합니다.

1. 상해를 입은 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
2. 피보험자가 사용자의 업무에 종사하고 있을 때 피보험자의 사용자 또는 피보험자의 사용자의 업무에 종사 중인 다른 피용자

20조 지급보험금의 계산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의 지급보험금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다만, 「도로교통법」에 의한 개인형이동장치로 인한 손해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제3조에서 정하는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지급보험금	=	보험금지급기준에 의해 산출한 금액	+	비 용	-	공제액

1. 위 '지급보험금'은 피보험자 1인당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2. 위 '비용'은 다음의 금액을 말합니다. 이 비용은 보험가입금액과 관계없이 보상하여 드립니다.
   가. 손해의 방지와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나. 남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보전과 행사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3. 위 '공제액'은 다음의 금액을 말합니다.
   가. 대인배상Ⅰ(책임공제 및 정부보장사업을 포함합니다)에 의하여 지급될 수 있는 금액
   나. 배상의무자가 가입한 대인배상Ⅱ 또는 공제계약에 의하여 지급될 수 있는 금액
   다. 피보험자가 탑승중이었던 자동차가 가입한 대인배상Ⅱ 또는 공제계약에 의하여 지급될 수 있는 금액
   라. 피보험자가 배상의무자로부터 이미 지급받은 손해배상액
   마. 배상의무자가 아닌 제3자가 부담할 금액으로 피보험자가 이미 지급받은 금액

제3절 자기차량손해

21조 보상하는 손해

① 「자기차량손해」에서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사용·관리하는 동안에 다음과 같은 사고로 인하여 피보험자동차에 직접적으로 생긴 손해를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하되 다음 제②항 내지 제⑤항의 기준에 따릅니다.

1. 타인 자동차와의 충돌로 인한 손해[41]. 단, 타인 자동차의 차량 등록번호와 운전자(또는 소유자)가 확인된 경우에만 한합니다.
2. 피보험자동차 전부의 도난으로 인한 손해

②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보험가액을 한도로 보상합니다.

③ 피보험자동차에 통상 붙어있거나 장치되어 있는 부속품과 부속기계장치는 피보험자동차의 일부로 봅니다. 그러나 통상 붙어 있거나 장치되어 있는 것이 아닌 것은 보험증권에 기재한 것에 한합니다.

---

40) '배상의무자'라 함은 무보험자동차로 인하여 생긴 사고로 피보험자를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함으로써 피보험자에게 입힌 손해에 대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사람을 말합니다.

41) 단독사고는 보상되지 않습니다.

④ 피보험자동차의 일방과실사고[42]의 경우에는 실제 수리를 원칙으로 합니다.
⑤ 경미한 손상[43]의 경우 보험개발원이 정한 경미손상 수리기준에 따라 복원수리하거나 품질인증부품[44]으로 교환수리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한도로 보상합니다.

용어풀이

타인 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 군수품관리법에 의한 차량, 도로교통법에 의한 원동기장치 자전거,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건설기계 및 농업기계화 촉진법에 의한 농업기계를 말하며, 기명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관리중인 자동차는 제외합니다.

22조 피보험자

「자기차량손해」에서 피보험자는 보험회사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보험증권에 기재된 기명피보험자입니다.

23조 보상하지 않는 손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해는 「자기차량손해」에서 보상하지 않습니다.
①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한 손해
②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및 이와 유사한 사태로 인한 손해
③ 지진, 분화 등 천재지변으로 인한 손해
④ 핵연료물질의 직접 또는 간접적인 영향으로 인한 손해
⑤ 영리를 목적으로 요금이나 대가를 받고 피보험자동차를 반복적으로 사용하거나 빌려 준 때에 생긴 손해. 다만,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합니다.
   가. 임대차계약(계약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함)에 따라 임차인이 피보험자동차를 전속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다만, 임차인이 피보험자동차를 영리를 목적으로 요금이나 대가를 받고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나. 피보험자와 동승자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한 날의 출·퇴근 시간대(오전 7시부터 오전 9시까지 및 오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를 말함)에 실제의 출·퇴근 용도로 자택과 직장 사이를 이동하면서 '승용차 함께 타기'를 실시한 경우
⑥ 사기 또는 횡령으로 인한 손해
⑦ 국가나 공공단체의 공권력 행사에 의한 압류, 징발, 몰수, 파괴 등으로 인한 손해. 그러나 소방이나 피난에 필요한 조치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보상합니다.
⑧ 피보험자동차에 생긴 흠, 마멸[45], 부식, 녹, 그 밖에 자연소모로 인한 손해
⑨ 피보험자동차에 장착 또는 장치되어 있는 일부 부분품, 부속품, 부속기계장치만의 도난으로 인한 손해
⑩ 동파로 인한 손해 또는 우연한 외래의 사고에 직접 관련이 없는 전기적, 기계적 손해
⑪ 피보험자동차를 시험용, 경기용 또는 경기를 위해 연습용으로 사용하던 중 생긴 손해. 다만, 운전면허시험을 위한 도로주행시험용으로 사용하던 중 생긴 손해는 보상합니다.
⑫ 피보험자동차를 운송 또는 싣고 내릴 때에 생긴 손해
⑬ 피보험자동차가 주정차중일 때 피보험자동차의 타이어나 튜브에만 생긴 손해.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해는 보상합니다.(타이어나 튜브의 물리적 변형이 없는 단순 오손의 경우는 제외)

42) 피보험자동차의 일방과실 사고란 쌍방과실이 확정된 경우를 제외한 모든 사고를 말합니다.
43) 외장부품 중 자동차의 기능과 안전성을 고려할 때 부품교체 없이 복원이 가능한 손상
44) 품질인증부품이란 「자동차관리법」제30조의5에 따라 인증된 부품을 말합니다.
45) 마멸이란 갈려서 닳아 없어짐을 말합니다.

1. 타인 자동차와의 충돌로 인한 손해. 단, 타인 자동차의 차량 등록번호와 운전자(또는 소유자)가 확인된 경우에만 한합니다.

⑭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또는 마약.약물운전을 하였을 때 생긴 손해

1. 보험계약자, 기명피보험자
2. 30일을 초과하는 기간을 정한 임대차계약에 의해 피보험자동차를 빌린 임차인[46]
3. 기명피보험자와 같이 살거나 생계를 같이 하는 친족

24조 지급보험금의 계산

「자기차량손해」의 지급보험금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지급 보험금	=	피보험자동차에 생긴 손해액	+	비 용	-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기부담금

① 위 '피보험자동차에 생긴 손해액'은 보험가액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결정합니다.

1.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하며, 보험가입금액이 보험사고 발생 당시 보험개발원의 자동차보험 차량기준가액표(적용요령에서 정한 기준 포함)에 정한 가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보험사고 발생 당시 가액을 한도로 보상합니다.
2. 피보험자동차의 손상을 고칠 수 있는 경우에는, 사고가 생기기 바로 전의 상태로 만드는데 드는 수리비. 다만, 잔존물이[47] 있는 경우에는 그 값을 공제합니다.
3. 피보험자동차를 고칠 때에 부득이 새 부분품으로 교환수리하는 경우에는, 조달 가능한 새 부분품 중 조달기간 및 조달가격 등을 고려할 때 비용이 최소화되는 부분품으로 교환수리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한도로 합니다. 다만, 엔진, 미션 등 중요한 부분[48]을 새 부분품으로 교환한 경우 그 교환된 기존 부분품의 감가상각에[49]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합니다.
4. 피보험자동차가 제힘으로 움직일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를 고칠 수 있는 가까운 정비공장이나 보험회사가 지정하는 곳까지 운반하는데 든 비용 또는 그 곳까지 운반하는데 든 임시수리비용 중에서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은 보상하여 드립니다.

② 위 '비용'은 다음의 금액을 말합니다. 이 비용은 보험가입금액과 관계없이 보상하여 드립니다.

1. 손해의 방지와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2. 남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보전과 행사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③ 위 '자기부담금'은 피보험자동차에 전부손해[50]가 생긴 경우 또는 보험회사가 보상하여야 할 금액이 보험가입금액 전액 이상인 경우에는 공제하지 않습니다.

④ 대물배상 책임이 발생하는 사고시 사고 당사자간 과실이 모두 있는 경우 상대방 에게 손해배상금 또는 상대방이 가입한 보험회사에서 「대물배상」 보험금을 지급받기 전에 「자기차량손해」 담보로 보험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자기차량손해」 담보에서 정한 자기부담금을 피보험자가 확정적으로 부담하는 조건으로 「자기차량손해」 보험금을 먼저 지급하여 드리며, 자기부담금을 부담한 피보험자는 상대방 또는 상대방이 가입한 보험회사에게 이 금액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자기차량손해」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회사는 지급한 보험금 범위에서 상대방 또는 상대방이 가입한 보험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합니다. 다만, 상대방 손해배상책임액이 보험회사가 구상

46)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감사 또는 피고용자(피고용자가 피보험자동차를 법인의 업무에 사용하고 있는 때에 한함)를 포함합니다.

47) 잔존물이란 피보험자동차의 손상을 수리하며 교환된 부분품 등에 자산적 가치가 남아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48) 중요한 부분이란 엔진, 미션, 캐빈, 적재함, 바디 및 전기차(하이브리드자동차 포함)의 모터, 감속기, 구동용 배터리 등 중요한 부분품을 말합니다.

49) 감가상각이란 일정기간이 지나면 상실되는 물건의 가치감소분을 빼는 것을 말합니다.

50) 피보험자동차가 완전히 파손, 멸실 또는 오손되어 수리할 수 없는 상태이거나, 피보험자동차에 생긴 손해액과 보험회사가 부담하기로 한 비용의 합산액이 보험가액 이상인 경우를 말합니다.

한 금액보다 큰 경우에 피보험자는 상대방 또는 상대방이 가입한 보험회사에 그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⑤ 「자기차량손해」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회사가 상대방 또는 상대방이 가입한 보험회사로부터 구상금을 받은 경우 (1) 피보험자가 이미 부담한 자기부담금과 (2) 실제 손해액에서 당해 구상금을 제외한 금액을 전제로 산정된 자기부담금과의 차액을 피보험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이 경우에도 피보험자가 최종적으로 부담하는 자기부담금은 최소 자기부담금 이상으로 합니다.)

⑥ 보험회사는 피보험자동차에 생긴 손해에 대하여 보험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동의를 얻어 수리 또는 대용품의 교부로써 보험금의 지급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⑦ 보험회사가 보상한 손해가 전부손해일 경우 또는 보험회사가 보상한 금액이 보험가입금액 전액 이상인 경우에는 자기차량손해의 보험계약은 사고가 발생한 때에 종료합니다.

⑧ 보험회사가 피보험자동차의 전부손해에 대하여 보험금 전액을 지급한 경우에는 피해물을 인수합니다. 이 경우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보다 적을 때에는 보험가입금액의 보험가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피해물을 인수합니다. 그러나 보험회사가 피해물을 인수하지 아니한다는 뜻을 표시하고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피해물에 대한 피보험자의 권리가 보험회사에 이전되지 않습니다.

제3편 보험금 또는 손해배상의 청구

제1장 피보험자의 보험금 청구

25조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

피보험자는 다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장종목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
1. 「대인배상Ⅰ」, 「대인배상Ⅱ」, 「대물배상」	대한민국 법원에 의한 판결의 확정, 재판상의 화해, 중재 또는 서면에 의한 합의로 손해배상액이 확정된 때
2. 「자기신체사고」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죽거나 다친 때
3.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피보험자가 무보험자동차에 의해 생긴 사고로 죽거나 다친 때
4. 「자기차량손해」	사고가 발생한 때. 다만, 피보험자동차를 도난당한 경우에는 도난사실을 경찰관서에 신고한 후 30일이 지나야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경찰관서에 신고한 후 30일이 지나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피보험자동차가 회수되었을 경우에는, 보험금의 지급 및 피보험자동차의 반환여부는 피보험자의 의사에 따릅니다.

26조 청구 절차 및 유의 사항

① 보험회사는 보험금 청구에 관한 서류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지급할 보험금액을 정하고 그 정하여진 날부터 7일 이내[51]에 지급합니다.

② 보험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52] 보험금액을 정하는 것을 지연하였거나 제①항에서 정한

51) 7일 이내란 보험금액이 최종 확정된 날(0시 기준)로부터 계산해 주말 및 법정공휴일을 포함해 7일째 되는 날을 말합니다. (단,7일째 되는 날이 주말 또는 법정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인 평일로 함)

지급기일 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때, 지급할 보험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부표>'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에 따라 연단위 복리[53]로 계산한 금액을 보험금에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피보험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54] 지급이 지연될 때에는 그 해당기간에 대한 이자를 더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③ 보험회사가 보험금 청구에 관한 서류를 받은 때부터 30일 이내에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을 거절하는 이유 또는 그 지급을 연기하는 이유(추가 조사가 필요한 때에는 확인이 필요한 사항과 확인이 종료되는 시기를 포함)를 서면(전자우편 등 서면에 갈음할 수 있는 통신수단을 포함)으로 통지하지 않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보험금액을 정하는 것을 지연한 것으로 봅니다.

④ 보험회사는 손해배상청구권자가 손해배상을 받기 전에는 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에게 지급하지 않으며,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지급한 손해배상액을 초과하여 피보험자에게 지급하지 않습니다.

⑤ 피보험자의 보험금 청구가 손해배상청구권자의 직접청구와 경합할 때에는 보험회사가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우선하여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⑥ 「대인배상Ⅰ」, 「대인배상Ⅱ」, 「자기신체사고」,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에서 보험회사는 피보험자 또는 손해배상청구권자의 청구가 있거나 그 밖의 원인으로 보험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알았을 때에는 피해자 또는 손해배상청구권자를 진료하는 의료기관에 그 진료에 따른 자동차보험 진료수가[55]의 지급의사 유무 및 지급한도 등을 통지합니다.

27조 제출 서류

피보험자는 보장종목별로 다음의 서류 등을 구비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보험금을 청구할 때 필요 서류 등	대인배상	대물배상	자기차량손해	자기신체사고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1. 보험금 청구서	○	○	○	○	○
2. 손해액을 증명하는 서류(진단서 등)	○	○	○	○	○
3. 손해배상의 이행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			
4. 사고가 발생한 때와 장소 및 사고사실이 신고된 관할 경찰관서의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등			○		○
5. 배상의무자의 주소, 성명 또는 명칭, 차량번호					○
6. 배상의무자의 「대인배상Ⅱ」 또는 공제계약의 유무 및 내용					○
7.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를 보상할 「대인배상Ⅱ」 또는 공제계약, 배상의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이미 지급받은 손해배상금이 있을 때에는 그 금액					○
8. 전손보험금을 청구할 경우 필요한 서류					
도난으로 인한 전손사고시 말소 사실증명서			○		

52) 정당한 사유란 추가적인 사고조사가 필요한 경우 등에 의한 것을 말합니다.

53) 이자 계산시 원금에 대한 이자를 원금에 더한 후 이 합산액을 새로운 원금으로 계산하는 이자계산 방법입니다.
예) 원금 100원/이자율: 연 10%
-1년 후: 100원+(100원X10%)=110원
-2년 후: 110원+(110원X10%)=121원

54) 책임있는 사유란 피보험자가 손해액 입증 자료 등의 요청 서류 또는 보험금 지급을 위한 기타 서류의 미제출 등 보험금 지급 절차에 협조하지 않는 사유를 말합니다.

55) 자동차보험진료수가란 교통사고 환자에 대한 적절한 진료를 보장하고 보험회사 등, 의료기관 및 교통사고 환자 간의 진료비에 관한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에서 정하여 고시하는 진료비 기준금액을 말합니다.

전손사고 후 이전매각시 이전서류		○	○		
전손사고 후 폐차시 폐차인수증명서		○	○		
9. 그 밖에 보험회사가 꼭 필요하여 요청하는 서류 등(수리개시 전 자동차점검 . 정비견적서, 사진 등. 이 경우 수리 개시 전 자동차점검 . 정비견적서의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은 보험회사에 구두 또는 서면으로 위임할 수 있으며, 보험회사는 수리 개시 전 자동차점검 . 정비견적서를 발급한 자동차 정비업자에게 이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수리개시 전에 회신하게 됩니다.)	○	○	○	○	○

28조 가지급금의 지급

① 피보험자가 가지급금[56]을 청구한 경우 보험회사는 이 약관에 따라 지급할 금액의 한도에서 가지급금(자동차보험 진료수가는 전액, 진료수가 이외의 보험금은 이 약관에 따라 지급할 금액의 50%)을 지급합니다.

② 보험회사는 가지급금 청구에 관한 서류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지급할 가지급액을 정하고 그 정하여진 날부터 7일 이내에 지급합니다.

③ 보험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가지급액을 정하는 것을 지연하거나 제②항에서 정하는 지급기일 내에 가지급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때, 지급할 가지급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보험개발원이 공시한 보험계약대출이자율을[57]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가지급금에 더하여 드립니다.

④ 보험회사가 가지급금 청구에 관한 서류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피보험자에게 가지급금을 지급하는 것을 거절하는 이유 또는 그 지급을 연기하는 이유(추가 조사가 필요한 때에는 확인이 필요한 사항과 확인이 종료되는 시기를 포함)를 서면(전자우편 등 서면에 갈음[58]할 수 있는 통신수단을 포함)으로 통지하지 않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가지급액을 정하는 것을 지연한 것으로 봅니다.

⑤ 보험회사는 이 약관상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책임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할 경우[59]에 가지급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⑥ 피보험자에게 지급한 가지급금은 장래 지급될 보험금에서 공제되나, 최종적인 보험금의 결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⑦ 피보험자가 가지급금을 청구할 때는 보험금을 청구하는 경우와 동일하게 제27조(제출서류)에서 정하는 서류 등을 보험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2장 손해배상청구권자의 직접청구

29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

피보험자가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사고가 생긴 경우, 손해배상청구권자는 보험회사에 직접 손해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그 사고에 관하여 가지는 항변으로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60]

56) 가지급금이란 보험회사가 피보험자에 대한 보상책임이나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확정하기 전에 자동차보험 약관에 따라 산출한 지금금액의 일부를 피보험자 또는 피해자에게 미리 지급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57) 보험개발원이 공시한 보험계약 대출이자율은 보험개발원 홈페이지(https://kidi.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58) 갈음이란 '다른 것으로 바꾸어 대신함'이라는 우리말로서 서면을 대신할 수 있는 통신수단을 포함한다는 의미입니다.

59) 객관적으로 명백할 경우란 약관의 각 보종 종목별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해당하거나, 상대방의 일방과실인 경우(후미추돌, 신호위반 등) 등 회사의 보험금 지급책임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를 말합니다.

30조 청구 절차 및 유의 사항

① 보험회사가 손해배상청구권자의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피보험자에게 통지합니다. 이 경우 피보험자는 보험회사의 요청에 따라 증거확보, 권리보전 등에 협력[61]하여야 하며, 만일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협력하지 않은 경우 그로 인하여 늘어난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② 보험회사가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지급하는 손해배상금은 이 약관에 의하여 보험회사가 피보험자에게 지급책임을 지는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③ 보험회사가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직접 지급할 때에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합니다.

④ 보험회사는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서류 등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지급할 손해배상액을 정하고 그 정하여진 날부터 7일 이내에 지급합니다.

⑤ 보험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손해배상액을 정하는 것을 지연하였거나 제④항에서 정하는 지급기일 내에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때, 지급할 손해배상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부표>'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에 따라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손해배상금에 더하여 지급합니다. 그러나 손해배상청구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지급이 지연될 때에는 그 해당기간에 대한 이자를 더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⑥ 보험회사가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서류를 받은 때부터 30일 이내에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는 것을 거절하는 이유 또는 그 지급을 연기하는 이유(추가 조사가 필요한 때에는 확인이 필요한 사항과 확인이 종료되는 시기를 포함)를 서면(전자우편 등 서면에 갈음[62]할 수 있는 통신수단을 포함)으로 통지하지 않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손해배상액을 정하는 것을 지연한 것으로 봅니다.

⑦ 보험회사는 손해배상청구권자의 요청이 있을 때는 손해배상금을 일정기간으로 정하여 정기금[63]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각 정기금의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다 지급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보험개발원이 공시한 정기예금이자율에 따라 연 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손해배상금에 더하여 드립니다.

31조 제출 서류

손해배상청구권자는 보장종목별로 다음의 서류 등을 구비하여 보험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손해배상청구권자가 직접 청구하는 경우 필요 서류 등	대인배상Ⅰ.Ⅱ	대물배상
1. 교통사고 신고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
2. 손해배상청구서	○	○
3. 손해액을 증명하는 서류	○	○
4. 그 밖에 보험회사가 꼭 필요하여 요청하는 서류 등(수리개시 전 자동차점검 . 정비견적서, 사진 등. 이 경우 수리개시 전 자동차점검 . 정비견적서의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은 보험회사에 구두 또는 서면으로 위임할 수 있으며, 보험회사는 수리개	○	○

60)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가지는 배상책임 유무와 그 범위 등의 주장(또는 항변) 사항과 동일하게 대항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61) 사고 발생 시 보험회사는 지급한 금액의 한도 내에서 피보험자가 다른 사람으로브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인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합니다. 이 경우 계약자 및 피보험자는 약관 제 46조(사고발생 시의무)에 따르는 의무사항으로서 그 권리(손해배상청구권)의 보전과 행사에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하며, 이 때에 필요하거나 유익한 비용을 말합니다.

62) '갈음'이란 '바꾸어 대신하다'의 우리말입니다.

63) '정기금'이란 손해배상액 등을 한 번에 지급받지 않고 기간을 정하여 나누어 받는 것을 말합니다.

시 전 자동차점검 . 정비견적서를 발급한 자동차 정비업자에게 이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수리개시 전에 회신하게 됩니다.)		

32조 가지급금의 지급

① 손해배상청구권자가 가지급금을 청구한 경우 보험회사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등에 의해 이 약관에 따라 지급할 금액의 한도에서 가지급금[64](자동차보험 진료수가는 전액, 진료수가 이외의 손해배상금은 이 약관에 따라 지급할 금액의 50%)을 지급합니다.

② 보험회사는 가지급금 청구에 관한 서류 등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지급할 가지급액을 정하고 그 정하여진 날부터 7일 이내에 지급합니다.

③ 보험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가지급액을 정하는 것을 지연하거나 제②항에 정한 지급기일 내에 가지급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때에는, 지급할 가지급금이 있는 경우 그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보험개발원이 공시한 보험계약대출이자율에 따라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가지급금에 더하여 드립니다.

④ 보험회사가 가지급금 청구에 관한 서류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가지급금을 지급하는 것을 거절하는 이유 또는 그 지급을 연기하는 이유(추가 조사가 필요한 때에는 확인이 필요한 사항과 확인이 종료되는 시기를 포함)를 서면(전자우편 등 서면에 갈음할 수 있는 통신수단을 포함)으로 통지하지 않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가지급액을 정하는 것을 지연한 것으로 봅니다.

⑤ 보험회사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등 관련 법령상 피보험자의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지 않거나 이 약관상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책임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할 경우에는 가지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⑥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지급한 가지급금은 장래 지급될 손해배상액에서 공제되나, 최종적인 손해배상액의 결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⑦ 손해배상청구권자가 가지급금을 청구할 때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와 동일하게 제31조(제출 서류)에 정한 서류 등을 보험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3장 보험금의 분담 등

33조 보험금의 분담

「대인배상Ⅰ.Ⅱ」, 「대물배상」,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자기신체사고」, 「자기차량손해」에서는 다음과 같이 보험금을 분담합니다.

1. 이 보험계약과 보상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가 중복되는 다른 보험계약(공제계약을 포함)이 있는 경우: 다른 보험계약이 없는 것으로 가정하여 각각의 보험회사에 가입된 자동차보험계약에 의해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손해액보다 많을 때에는 다음의 산식에 따라 산출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text{손해액} \times \frac{\text{이 보험계약에 의해 산출한 보상책임액}}{\text{다른 보험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 보험계약에 의해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

2. 이 보험계약의 「대인배상Ⅰ」, 「대인배상Ⅱ」, 「대물배상」에서 동일한 사고로 인하여 이 보험계약에서 배상책임이 있는 피보험자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제10조(지급보험금의 계산)에 의한 보상한도와 범위에 따른 보험금을 각 피보험자의 배상책임의 비율에 따라 분

64) 자동차 사고 피해자에 대한 의료비 등과 같이 급히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보상책임이 있을 경우 보험금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지급할 보험금의 범위 내에서 손해배상액의 일부를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미리 지급해 주는 보험금을 말합니다.

담하여 지급합니다
3.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자동차취급업자가 가입한 보험계약에서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보험금을 초과하는 손해를 보상합니다.

※ 중복 보험계약 가입할 경우(계약A, 계약B 중복가입) 보험금 분담 예시
계약A: 대물배상 가입금액 2,000만원 / 계약B: 대물배상 가입금액 2,000만원 /
대물배상 손해액 : 2,000만원
-> 계약A보험회사 : 1,000만원 지급 = 2,000만원 × 2,000만원 / (2,000만원 + 2,000만원)
-> 계약B보험회사 : 1,000만원 지급 = 2,000만원 × 2,000만원 / (2,000만원 + 2,000만원)

※ 배상책임에 따른 보험금 분담 예시
피보험자A 배상책임 비율 : 60% / 피보험자B 배상책임 비율 : 40% /
대인사고 손해액 : 1억원
-> 피보험자A의 배상책임 : 6,000만원, 피보험자B의 배상책임 : 4,000만원

34조 보험회사의 대위[65]

① 보험회사가 피보험자 또는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보험금 또는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지급한 보험금 또는 손해배상금의 범위에서 제3자에 대한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합니다. 다만, 보험회사가 보상한 금액이 피보험자의 손해의 일부를 보상한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그 권리를 취득합니다.
② 보험회사는 다음의 권리는 취득하지 않습니다.
1. 「자기신체사고」의 경우 제3자에 대한 피보험자의 권리[66]. 다만, 보험금을 '<별표 1> 대인배상,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지급 기준'에 의해 지급할 때[67]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합니다.
2. 「자기차량손해」의 경우 피보험자동차를 정당한 권리에 따라 사용하거나 관리하던 자에 대한 피보험자의 권리.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합니다.
가. 고의로 사고를 낸 경우, 무면허운전이나 음주운전을 하던 중에 사고를 낸 경우, 또는 마약 또는 약물 등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을 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을 하던 중에 사고를 낸 경우
나. 자동차 취급업자가 업무로 위탁받은 피보험자동차를 사용하거나 관리하는 동안에 사고를 낸 경우
3. 피보험자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에 대하여 갖는 권리. 다만, 손해가 그 가족의 고의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합니다.
③ 피보험자는 보험회사가 제①항 또는 제②항에 따라 취득한 권리의 행사 및 보전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또한 보험회사가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5조 보험회사의 불성실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① 보험회사는 이 보험계약과 관련하여 임직원,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에게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 관계 법률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65) '대위(代位)'란 보험회사가 피보험자의 법률상의 지위를 대신하여 권리를 취득하거나 행사하는 일을 말합니다.
66) '「자기신체사고」의 경우 제3자에 대한 피보험자의 권리'란 피보험자에게 자기신체사고 보험금을 지급한 이후, 보험회사가 피보험자 대신 행사할 수 있는 제3자에 대한 손배배상청구권 등의 권리를 말합니다.
67) '<별표 1> 대인배상,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지급 기준'에 의해 지급할 때 : 사고시 공제액이 있는 사고로 인해 실제손해액으로 보험금을 계산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예: 상대방이 있는 자동차사고로 상대방으로부터 대인배상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 등)

② 보험회사가 보험금의 지급여부나 지급금액에 관하여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곤궁, 경솔 또는 무경험[68]을 이용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합의를 한 경우에도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36조 합의 등의 협조 · 대행

① 보험회사는 피보험자의 협조 요청이 있는 경우 피보험자의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확정하기 위하여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청구권자와 행하는 합의·절충·중재 또는 소송(확인의 소를 포함)에 대하여 협조하거나, 피보험자를 위하여 이러한 절차를 대행합니다.
② 보험회사는 피보험자에 대하여 보상책임을 지는 한도(동일한 사고로 이미 지급한 보험금이나 가지급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공제한 금액. 이하 같음) 내에서 제①항의 절차에 협조하거나 대행합니다.
③ 보험회사가 제①항의 절차에 협조하거나 대행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는 보험회사의 요청에 따라 협력해야 합니다.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협력하지 않는 경우 그로 인하여 늘어난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④ 보험회사는 다음의 경우에는 제①항의 절차를 대행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청구권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액이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을 명백하게 초과하는 때
2.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협력하지 않는 때

37조 공탁금의 대출

보험회사가 제36조(합의 등의 협조·대행) 제①항의 절차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에 대하여 보상책임을 지는 한도에서 가압류[69]나 가집행을[70] 면하기 위한 공탁금을 피보험자에게 대출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상합니다. 이 경우 대출금의 이자는 공탁금에 붙여지는 것과 같은 이자율로 정하며, 피보험자는 공탁금[71](이자를 포함)의 회수청구권[72]을 보험회사에 양도하여야 합니다.

제4편 일반사항

제1장 보험계약의 성립

38조 보험계약의 성립

① 이 보험계약은 보험계약자가 청약을 하고 보험회사가 승낙을 하면 성립합니다.
② 보험계약자가 청약을 할 때 '제1회 보험료(보험료를 분납하기로 약정한 경우)' 또는 '보험료 전액(보험료를 일시에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이하 '제1회 보험료 등'이라 함)을 지급하였을 때, 보험회사가 이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의 통지를 발송하지 않으면 승낙한 것으로 봅니다.

---

68) '피보험자의 곤궁, 경솔 또는 무경험'이란 피보험자의 경제적인 어려움, 정보 부족 등을 말하며, 보험회사는 이를 이용하여 불공정한 합의를 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의미합니다.
69) 가압류란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여 현상을 보전하고, 그 변경을 금지하여 장래의 강제집행을 보전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70) 가집행이란 민사소송법상 확정되지 않은 종국판결에 대하여 확정판결과 동일한 집행력을 인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71) '공탁금'이란 법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은행이나 공탁소에 맡기는 돈을 말합니다.
72) 회수청구권이란 공탁금을 대출해준 보험회사가 갖는 권리로 공탁금(이자를 포함)에 대한 회수 권리를 말합니다.

③ 보험회사가 청약을 승낙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보험증권을 보험계약자에게 드립니다. 그러나 보험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 등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④ 보험계약이 성립되면 보험회사는 제42조(보험기간)의 규정에 따라 보험기간의 첫 날부터 보상책임을 집니다. 다만, 보험계약자로부터 제1회 보험료 등을 받은 경우에는, 그 이후 승낙 전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도 청약을 거절할 사유가 없는 한 보상합니다.

39조 약관 교부 및 설명의무 등

①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가 청약을 한 경우 보험계약자에게 약관 및 보험계약자 보관용 청약서(청약서 부본[73])를 드리고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74] 설명하여 드립니다.
② 통신판매 보험계약에서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다음 중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약관을 교부하고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 드립니다.
1. 사이버몰(컴퓨터를 이용하여 보험거래를 할 수 있도록 설정된 가상의 영업장)을 이용하여 모집하는 경우: 사이버몰에서 약관 및 그 설명문(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알 수 있도록 설명한 문서)을 읽거나 내려 받게 하는 방법. 이 경우 보험계약자가 이를 읽거나 내려 받은 것을 확인한 때에는 약관을 드리고 중요한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봅니다.
2. 전화를 이용하여 모집하는 경우: 전화를 이용하여 청약내용, 보험료납입, 보험기간, 계약 전 알릴의무, 약관의 중요한 내용 등 계약 체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질문하거나 설명하는 방법. 이 경우 보험계약자의 답변과 확인내용을 음성 녹음함으로써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봅니다.
③ 보험회사는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계약자가 원하는 방법을 확인하여 지체 없이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제공하여 드립니다. 만약, 회사가 전자우편 및 전자적 의사표시로 제공한 경우 계약자 또는 그 대리인이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 등을 수신하였을 때에는 해당 문서를 드린 것으로 봅니다.
1. 서면교부
2. 우편 또는 전자우편
3.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
④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계약자는 계약체결일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의무보험은 제외합니다.
1. 보험계약자가 청약을 했을 때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에게 약관 및 보험계약자 보관용 청약서(청약서 부본)를 드리지 않은 경우
2. 보험계약자가 청약을 했을 때 보험회사가 청약한 때 보험계약자에게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은 경우
3.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청약서에 자필서명[75]을 하지 않은 경우
⑤ 제④항에 따라 계약이 취소된 경우 보험회사는 이미 받은 보험료를 보험계약자에게 돌려 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보험개발원이 공시한 보험계약대출이자율에 따라 연 단위 복리로[76]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40조 설명서 교부 및 보험안내자료 등의 효력

① 회사는 일반금융소비자에게 청약을 권유하거나 일반금융소비자가 설명을 요청하는 경우 보험상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계약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계약자가 이해하

73) '부본'이라 함은 원본과 내용이 동일한 문서를 말합니다.
74) 약관의 중요한 내용이란 사회통념에 비추어 고객이 계약체결의 여부나 대가를 결정하는 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말합니다.(청약철회, 계약취소, 보험금 지급 및 제한사유 등)
75) 자필서명에는 날인(도장을 찍음) 또는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방식을 포함합니다.
76) 연단위 복리란 이자 계산 시 원금에 대한 이자를 원금에 가산시킨 후 이 합계액을 새로운 원금으로 계산하는 이자 계산 방법입니다. <예시> 원금 100원, 이자율 10% - 1년 후 원금: 110원(100원+(100원*10%)

였음을 서명, 기명날인 또는 녹취 등을 통해 확인받아야 하며, 설명서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② 설명서, 약관, 청약서 부본 및 증권의 제공 사실에 관하여 계약자와 회사간에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회사가 이를 증명하여야 합니다.

③ 보험회사가 보험모집과정에서 제작.사용한 보험안내자료(서류.사진.도화 등 모든 안내자료를 포함)의 내용이 보험약관의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보험계약자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보험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77]

41조 청약의 철회

① 일반금융소비자[78]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과 청약을 한 날부터 30일 중 먼저 도래하는 기간 내에 보험계약의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② 제①항에서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증권을 드린 것에 관해 다툼이 있으면 보험회사가 이를 증명합니다.

③ 제①항에도 불구하고 다음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의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1. 전문금융소비자[79]가 보험계약의 청약을 한 경우
2.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의무보험(다만, 일반금융소비자가 동종의 다른 의무보험에 가입한 경우는 제외)
3. 보험기간이 90일 이내인 보험계약

④ 청약철회는 계약자가 전화로 신청하거나, 철회의사를 표시하기 위한 서면, 전자우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이하 '서면 등'이라 합니다)를 발송한 때 효력이 발생합니다. 계약자는 서면 등을 발송한 때에 그 발송 사실을 회사에 지체없이 알려야 합니다.

⑤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의 청약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받은 보험료를 보험계약자에게 돌려 드립니다.

⑥ 청약을 철회할 당시에 이미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으나 보험계약자가 보험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청약 철회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⑦ 보험회사가 제④항의 보험료 반환기일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 반환기일의 다음날부터 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은 보험개발원이 공시한 보험계약대출이자율에 따라 연 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다만, 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납입한 계약의 청약을 철회하는 경우에 회사는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해당 신용카드회사로 하여금 대금청구를 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이 경우 회사는 보험료를 반환한 것으로 봅니다.

42조 보험기간

보험회사가 피보험자에 대해 보상책임을 지는 보험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보험기간
1. 원칙	①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기간의 첫날 24시부터 마지막 날 24시

77) 보험모집과정에서 사용된 보험 안내자료의 내용이 보험약관의 내용과 다른 경우 다음과 같이 적용해 보험계약자의 불이익이 없도록 합니다.
1. 보험 안내자료의 내용이 약관에 비해 보험계약자에게 유리한 경우: 유리한 내용으로 보험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적용.
2. 보험 안내자료의 내용이 약관에 비해 보험계약자에게 불리한 경우: 약관에 따라 보험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적용.

78) '일반금융소비자'라 함은 전문금융소비자가 아닌 계약자를 말합니다.

79) '전문금융소비자'라 함은 보험계약에 관한 전문성, 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보험계약에 따른 위험감수능력이 있는 자로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은행, 금융회사, 주권상장법인 등을 포함하며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 제9호에서 정하는 전문금융소비자를 말합니다.

	까지. 다만, 의무보험(책임공제를 포함)의 경우 전(前) 계약의 보험기간과 중복되는 경우에는 전 계약의 보험기간이 끝나는 시점부터 시작합니다. ②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의2 제3항에 따라 보험기간을 유예할 경우 보험회사가 유예를 승인한 날부터 운행개시일의 전일까지의 기간을 보험기간에서 제외하고, 해당 기간만큼 보험기간의 마지막 날을 연장합니다.
2. 예외 : 자동차보험에 처음 가입하는 자동차[80] 및 의무보험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마지막 날 24시까지. 다만,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기간 이전에 보험료를 받았을 경우에는 그 보험기간의 첫날 0시부터 시작합니다.

43조 사고발생지역

보험회사는 대한민국(북한지역을 포함) 안에서 생긴 사고에 대하여 보험계약자가 가입한 보장종목에 따라 보상해 드립니다.

제2장 보험계약자 등의 의무

44조 계약 전 알릴 의무

① 보험계약자는 청약을 할 때 다음의 사항에 관해서 알고 있는 사실을 보험회사에 알려야 하며, 제3호의 경우에는 기명피보험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1. 피보험자동차의 검사에 관한 사항
2. 피보험자동차의 용도, 차종, 등록번호(이에 준하는 번호도 포함하며 이하 같음), 차명, 연식, 적재정량, 구조 등 피보험자동차에 관한 사항
3. 기명피보험자의 성명, 연령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보험청약서에 기재된 사항 중에서 보험료의 계산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② 보험회사는 이 보험계약을 맺은 후 보험계약자가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추가보험료를 더 내도록 청구하거나, 제53조(보험회사의 보험계약 해지) 제①항 제1호, 제4호에 따라 해지할 수 있습니다.

45조 계약 후 알릴 의무

①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을 맺은 후 다음의 사실이 생긴 것을 알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보험회사에 그 사실을 알리고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 경우 그 사실에 따라 보험료가 변경되는 경우 보험회사는 보험료를 더 받거나 돌려주고 계약을 승인하거나, 제53조(보험회사의 보험계약 해지) 제①항 제2호, 제4호에 따라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용도, 차종, 등록번호, 적재정량, 구조 등 피보험자동차에 관한 사항이 변경된 사실
2. 피보험자동차에 화약류, 고압가스, 폭발물, 인화물 등 위험물을 싣게 된 사실
3. 그 밖에 위험이 뚜렷이 증가하는 사실이나 적용할 보험료에 차이가 발생한 사실

② 보험계약자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때에는 지체 없이 보험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보험계약자가 이를 알리지 않으면 보험회사가 알고 있는 최근의 주소로 알리게 되므로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80) '자동차보험에 처음 가입하는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 판매업자 또는 그 밖의 양도인 등으로부터 매수인 또는 양수인에게 인도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처음으로 그 매수인 또는 양수인을 기명피보험자로 하는 자동차보험에 가입하는 신차 또는 중고차를 말합니다. 다만, 피보험자동차의 양도인이 맺은 보험계약을 양수인이 승계한 후 그 보험기간이 종료되어 이 보험계약을 맺은 경우를 제외합니다.

③ 보험계약자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의2 제3항에 따라 보험기간 유예를 신청하고자 할 경우 또는 신청 이후 유예기간의 원인 사실이 변경된 경우 지체 없이 보험회사에 그 사실을 알리고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보험계약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알리지 않은 경우 보험기간 유예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46조 사고가 발생한 때 의무

①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사고가 생긴 것을 알았을 때에는 다음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1. 지체 없이 손해의 방지와 경감에 힘쓰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그 권리(공동불법행위[81]에서 연대채무자[82] 상호간의 구상권[83]을 포함하며 이하 같음)의 보전과 행사에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2. 다음 사항을 보험회사에 지체 없이 알려야 합니다.
   가. 사고가 발생한 때, 곳, 상황(출·퇴근 시 승용차 함께 타기 등) 및 손해의 정도
   나. 피해자 및 가해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사고에 대한 증인이 있을 때에는 그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라. 손해배상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내용
3. 손해배상의 청구를 받은 경우에는 미리 보험회사의 동의 없이 그 전부 또는 일부를 합의하여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피해자의 응급치료, 호송 그 밖의 긴급조치는 보험회사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4. 손해배상청구의 소송을 제기하려고 할 때 또는 제기 당한 때에는 지체 없이 보험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5. 피보험자동차를 도난당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경찰관서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6. 보험회사가 사고를 증명하는 서류 등 꼭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를 요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제출하여야 하며, 또한 보험회사가 사고에 관해 조사하는 데 협력하여야 합니다.

②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제①항에서 정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그로 인하여 늘어난 손해액이나 회복할 수 있었을 금액을 보험금에서 공제하거나 지급하지 않습니다[84].

제3장 보험계약의 변동 및 보험료의 환급

47조 보험계약 내용의 변경

① 보험계약자는 의무보험을 제외하고는 보험회사의 승낙을 얻어 다음에 정한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승낙을 서면 등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1. 보험계약자. 다만, 보험계약자가 이 보험계약의 권리·의무를 피보험자동차의 양수인에게 이전함에 따라 보험계약자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제48조(피보험자동차의 양도)에 따릅니다.

81) 공동불법행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불법행위를 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는 것을 뜻합니다. 불법행위를 행한 사람들은 손해배상에 있어 연대하여 책임을 지는 연대채무자가 됩니다.

82) 연대채무자: 공동불법행위로 인해 배상책임을 지게 된 당사자들로서 동일한 손해배상책임에 대해 각각 독립하여 채무의 전부를 변제할 의무를 가집니다. 연대채무자 중 1명이 채무 전부를 변제할 경우 다른 채무자의 채무도 소멸합니다.

83) 상호간의 구상권: 연대채무자 중 채무 전부를 변제한 사람은 본인이 대신하여 변제한 다른 연대체무자의 부담부분에 대하여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집니다.

84)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청구를 받은 후 보험회사의 동의 없이 피해자와 합의한 금액이 법령에 의해 계산된 손해배상금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된 손해배상금은 보험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 등의 경우를 말합니다.

2. 보험가입금액, 특별약관 등 그 밖의 계약의 내용

② 보험회사는 제①항에 따라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보험료가 변경된 경우 보험계약자에게 보험료를 반환하거나 추가보험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③ 보험계약 체결 후 보험계약자가 사망한 경우 이 보험계약에 의한 보험계약자의 권리·의무는 사망시점에서의 법정상속인[85]에게 이전합니다.

48조 피보험자동차의 양도

① 보험계약자 또는 기명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동차를 양도한 경우에는 이 보험계약으로 인하여 생긴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권리와 의무는 피보험자동차의 양수인[86]에게 승계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보험계약자가 이 권리와 의무를 양수인에게 이전하고자 한다는 뜻을 서면 등으로 보험회사에 통지하여 보험회사가 승인한 경우에는 그 승인한 때부터 양수인에 대하여 이 보험계약을 적용합니다.

② 보험회사가 제①항에 의한 보험계약자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보험계약자에게 통지하지 않으면, 그 10일이 되는 날의 다음날 0시에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87]

③ 제①항에서 규정하는 피보험자동차의 양도에는 소유권을 유보한 매매계약에 따라 자동차를 '산 사람' 또는 대차계약에 따라 자동차를 '빌린 사람'이 그 자동차를 피보험자동차로 하고, 자신을 보험계약자 또는 기명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이 존속하는 동안에 그 자동차를 '판 사람' 또는 '빌려준 사람'에게 반환하는 경우도 포함합니다. 이 경우 '판 사람' 또는 '빌려준 사람'은 양수인으로 봅니다.

④ 보험회사가 제①항의 승인을 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동차의 양수인에게 적용되는 보험요율에 따라 보험료의 차이가 나는 경우 피보험자동차가 양도되기 전의 보험계약자에게 남는 보험료를 돌려드리거나, 피보험자동차의 양도 후의 보험계약자에게 추가보험료를 청구합니다.

⑤ 보험회사가 제①항의 승인을 거절한 경우 피보험자동차가 양도된 후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⑥ 보험계약자 또는 기명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망하여 법정상속인이 피보험자동차를 상속하는 경우 이 보험계약도 승계된 것으로 봅니다. 다만, 보험기간이 종료되거나 자동차의 명의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법정상속인을 보험계약자 또는 기명피보험자로 하는 새로운 보험계약을 맺어야 합니다.

49조 피보험자동차의 교체

① 보험계약자 또는 기명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기존의 피보험자동차를 폐차 또는 양도한 다음 그 자동차와 동일한 차종의 다른 자동차로 교체한 경우에는, 보험계약자가 이 보험계약을 교체된 자동차에 승계시키고자 한다는 뜻을 서면 등으로 보험회사에 통지하여 보험회사가 승인한 때부터 이 보험계약이 교체된 자동차에 적용됩니다. 이 경우 기존의 피보험자동차에 대한 보험계약의 효력은 보험회사가 승인할 때에 상실됩니다.

② 보험회사가 서면 등의 방법으로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①항에 의한 승인 여부를 보험계약자에게 통지하지 않으면, 그 10일이 되는 날의 다음날 0시에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

③ 제①항에서 규정하는 '동일한 차종의 다른 자동차로 교체한 경우'라 함은 개인소유 자가용승용자동차 간에 교체한 경우를 말합니다.

④ 보험회사가 제①항의 승인을 하는 경우에는 교체된 자동차에 적용하는 보험요율에 따라 보험료의 차이가 나는 경우 보험계약자에게 남는 보험료를 돌려드리거나 추가보험료를

85) 상속에 관해 민법에서 규정된 바에 따라 정해진 상속인을 말합니다.

86) 양수인은 타인의 권리 재산 등을 넘겨받는 사람을 말합니다. 반대로 양도인은 권리 재산 등을 타인에게 넘겨주는 사람을 말합니다.

87) 보험계약자가 통지한 사항에 대해 보험회사가 "승인"하지 않은 경우 피보험자동차가 양도된 이후부터 승인되기 전까지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기존의 피보험자동차를 말소등록한 날 또는 소유권을 이전등록한 날부터 승계를 승인한 날의 전날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일할로 계산하여 보험계약자에게 반환하여 드립니다.

⑤ 보험회사가 제①항의 승인을 거절한 경우 교체된 자동차를 사용하다가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예시> 일할계산의 사례[88]

$$\text{이미 납입한 보험료 총액} \times \frac{\text{해당기간}}{365(\text{윤년:}366)}$$

50조 보험계약의 취소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사기에 의해 보험계약을 체결한 점을 증명한 경우, 보험회사는 보험기간이 시작된 날부터 6개월 이내(사기 사실을 안 날부터는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89]

51조 보험계약의 효력 상실

보험회사가 파산선고를 받은 날부터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3개월이 지난 경우에는 보험계약이 효력을 상실합니다.

52조 보험계약자의 보험계약 해지 · 해제

① 보험계약자는 언제든지 임의로 보험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지[90]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의무보험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피보험자동차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 제4항에 정한 자동차(의무보험 가입대상에서 제외되거나 도로가 아닌 장소에 한하여 운행하는 자동차)로 변경된 경우
2. 피보험자동차를 양도한 경우. 다만, 제48조(피보험자동차의 양도) 또는 제49조(피보험자동차의 교체)에 따라 보험계약이 양수인 또는 교체된 자동차에 승계된 경우에는 의무보험에 대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3. 피보험자동차의 말소등록으로 운행을 중지한 경우. 다만, 제49조 (피보험자동차의 교체)에 따라 보험계약이 교체된 자동차에 승계된 경우에는 의무보험에 대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4. 천재지변, 교통사고, 화재, 도난 등의 사유로 인하여 피보험자동차를 더 이상 운행할 수 없게 된 경우. 다만, 제49조(피보험자동차의 교체)에 따라 보험계약이 교체된 자동차에 승계된 경우에는 의무보험에 대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5. 이 보험계약을 맺은 후에 피보험자동차에 대하여 이 보험계약과 보험기간의 일부 또는 전부가 중복되는 의무보험이 포함된 다른 보험계약(공제계약을 포함)을 맺은 경우
6. 보험회사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7.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의2에서 정하는 '보험 등의 가입의무 면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8.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해당 자동차·자동차등록증·등록번호판 및 봉인을 인수하고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한 경우
9.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건설기계해체재활용업자가 해당 건설기계와 등록번호표를 인수하고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한 경우

② 이 보험계약이 의무보험만 체결된 경우로서, 이 보험계약을 맺기 전에 피보험자동차에

88) 일할계산의 사례 예시: 기 납입 보험료가 100만원이고 보험기간이 30일 남은 시점에 대체한 경우 100만원*30/365=82,191원

89) 계약이 취소된 경우 보험회사는 이미 받은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90) 유효하게 성립된 계약의 효력을 (보험계약자 또는 보험회사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장래에 대하여 소멸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하여 의무보험이 포함된 다른 보험계약(공제계약을 포함하며 이하 같음)이 유효하게 맺어져 있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자는 그 다른 보험계약이 종료하기 전에 이 보험계약을 해제[91]할 수 있습니다. 만일, 그 다른 보험계약이 종료된 후에는 그 종료일 다음날부터 보험기간이 개시되는 의무보험이 포함된 새로운 보험계약을 맺은 경우에 한하여 이 보험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③ 다른 사람을 위한 보험계약에서 보험계약자는 기명피보험자의 동의를 얻거나 보험증권을 소지한 경우에 한하여 제①항 또는 제②항의 규정에 따라 보험계약을 해지하거나 또는 해제할 수 있습니다.

52조의2 위법계약의 해지

① 계약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 및 관련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체결에 대한 회사의 법위반사항이 있는 경우 계약체결일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서 계약자가 위반사항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계약해지요구서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위법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의무보험에 대해 해지 요구를 할 때에는 동종의 다른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만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해지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수락여부를 계약자에 통지하여야 하며, 거절할 때에는 거절 사유를 함께 통지하여야 합니다.

③ 계약자는 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의 요구를 따르지 않는 경우 해당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 회사는 제54조(보험료의 환급) 제3항 제1호에 따른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⑤ 계약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기간에도 불구하고 민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률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53조 보험회사의 보험계약 해지

① 보험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발생하였을 때,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월 이내에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1호·제2호·제4호·제5호에 의한 계약해지는 의무보험에 대해 적용하지 않습니다

1.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을 맺을 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92]로 제44조(계약 전 알릴 의무) 제①항의 사항에 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알리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을 해지하지 못합니다.
   가. 보험계약을 맺은 때에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가 알려야 할 사실을 알고 있었거나 과실로 알지 못하였을 때
   나. 보험계약자가 보험금을 지급할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보험청약서의 기재사항에 대하여 서면으로 변경을 신청하여 보험회사가 이를 승인하였을 때
   다.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을 맺은 날부터 보험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6개월이 지난 때
   라. 보험을 모집한 자(이하 "보험설계사 등"이라 합니다)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이행할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하였거나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실대로 알리는 것을 방해한 경우, 또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 대해 사실대로 알리지 않게 하였거나 부실하게 알리도록 권유했을 때. 다만, 보험설계사 등의 행위가 없었다 하더라도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실대로 알리

91) 유효하게 성립한 계약의 효력을 (보험계약자 또는 보험회사의 정당한 의사표시에 의하여) 소급하여 없애는 것을 의미합니다.

92) 중대한 과실이란 주의의무위반이 현저한 과실, 즉 극히 근소한 주의만 기울였더라도 결과 발생을 예견할 수 있음에도 부주의로 이를 예견하지 못한 것을 의미합니다.

지 않거나 부실하게 알린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마. 보험계약자가 알려야 할 사항이 보험회사가 위험을 측정하는 데 관련이 없을 때 또는 적용할 보험료에 차액이 생기지 않은 때

2.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을 맺은 후에 제45조(계약 후 알릴 의무) 제①항에 정한 사실이 생긴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지체 없이 알리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 다만, 보험계약자가 알려야 할 사실이 뚜렷하게 위험을 증가시킨 것이 아닌 때에는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을 해지하지 못합니다.
3. 보험계약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령에 정한 자동차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4. 보험회사가 제44조(계약 전 알릴 의무) 제②항, 제45조(계약 후 알릴 의무) 제①항, 제48조(피보험자동차의 양도) 제④항, 제49조(피보험자동차의 교체) 제④항 등에 따라 추가보험료를 청구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보험계약자가 그 보험료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을 해지하지 못합니다.

가. 보험회사가 제44조(계약 전 알릴 의무) 제①항에서 규정하는 계약 전 알릴의무 위반 사실은 안 날부터 1월이 지난 경우

나.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로부터 제45조(계약 후 알릴 의무) 제①항에서 정하는 사실을 통지받은 후 1월이 지난 경우

5. 보험금의 청구에 관하여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수령하는 자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사기행위가 발생한 경우.

②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가 계약 전 알릴 의무 또는 계약 후 알릴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제①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보험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해지 이전에 생긴 사고에 대해서도 보상하지 않으며, 이 경우 보험회사는 지급한 보험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 전 알릴 의무 또는 계약 후 알릴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사고의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이 증명된 때에는 보험회사는 보상합니다.

③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가 다른 보험의 가입내역을 알리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알렸다는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54조 보험료의 환급 등

① 보험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보험료가 변경된 때에는 변경 전 보험료와 변경 후 보험료의 차액을 더 받거나 돌려 드립니다.

② 보험회사의 고의.과실로 보험료가 적정하지 않게 산정되어 보험계약자가 적정보험료를 초과하여 납입한 경우, 보험회사는 이를 안 날 또는 보험계약자가 반환을 청구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적정보험료를 초과하는 금액 및 이에 대한 이자(납입한 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해 보험개발원이 공시한 보험계약대출이자율에 따라 연 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보험회사에게 고의.과실이 없을 경우에는 적정보험료를 초과한 금액만 돌려드립니다.

③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이 취소되거나 해지된 때, 또는 그 효력이 상실된 때에는 다음과 같이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1.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책임 없는 사유에 의하는 경우 : 제39조 제4항에 의해 계약이 취소된 때에는 보험회사에 납입한 보험료의 전액, 효력 상실되거나 해지(제52조의2에 따른 위법계약 해지를 포함한다)된 경우에는 경과하지 않은 기간에 대하여 일단위로 계산한 보험료
2.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책임 있는 사유에 의하는 경우: 이미 지난 기간에 대하여 단기요율로 계산한 보험료를 뺀 잔액
3. 보험계약이 해지(제52조의2에 따른 위법계약 해지를 포함한다)된 경우, 계약을 해지하기 전에 보험회사가 보상하여야 하는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를 환급하지 않습니다.

④ 제③항에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라 함은 다음의 경우를 말합니다.

1.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임의 해지하는 경우(의무보험의 해지는 제외)
2. 보험회사가 제50조(보험계약의 취소) 또는 제53조(보험회사의 보험계약 해지)에 따라 보험계약을 취소하거나 해지하는 경우
3. 보험료 미납으로 인한 보험계약의 효력 상실

⑤ 보험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는 보험료 전액을 환급합니다.

⑥ 이 약관에 의해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가 낸 보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드리는 경우에는 보험료를 반환할 의무가 생긴 날부터 3일 이내에 드립니다.

⑦ 보험회사가 제⑥항의 반환기일이 지난 후 보험료를 반환하는 경우에는 반환기일의 다음 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은 보험개발원이 공시한 보험계약대출이자율에 따라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드립니다. 다만, 이 약관에서 이자의 계산에 관해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제4장 그 밖의 사항

55조 약관의 해석

① 보험회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93] 따라 공정하게 약관을 해석하여야 하며 보험계약자에 따라 다르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② 보험회사는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계약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합니다.

③ 보험회사는 보상하지 않는 손해 등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불리하거나 부담을 주는 내용은 확대하여 해석하지 않습니다.

56조 보험회사의 개인정보이용 및 보험계약 정보의 제공

① 보험회사는 제27조(제출서류) 제5호, 제6호의 배상의무자의 개인정보와 제46조(사고가 발생한 때 의무) 제2호 나목, 다목의 피해자, 가해자 및 증인의 개인정보를 보험사고의 처리를 위한 목적으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②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에 의한 의무의 이행 및 관리를 위한 판단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내지 제24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의 동의를 받아 다음의 사항을 다른 보험회사 및 보험관계단체에 제공할 수 있습니다.
1. 기명피보험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와 피보험자동차의 차량번호, 형식, 연식
2. 계약일시, 보험종목, 보장종목, 보험가입금액, 자기부담금 및 보험료 할인.할증에 관한 사항, 특별약관의 가입사항, 계약을 해지한 때 그 내용 및 사유
3. 사고일시 또는 일자, 사고내용 및 각종 보험금의 지급내용 및 사유

57조 피보험자동차 등에 대한 조사

보험회사는 피보험자동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거나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필요한 설명 또는 증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은 이러한 조사 또는 요구에 협력하여야 합니다.

58조 예금보험기금에 의한 보험금 등의 지급보장

보험회사가 파산 등으로 인하여 보험금 등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예금자보호법[94]에서

93) 신의성실의 원칙이란 계약관계에 있는 당사자들이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할 때 상대방의 정당한 이익을 배려해야 하고 신뢰를 저버리지 않도록 행동해야 하는 원칙을 말합니다.

94) 예금자보호법에서 정하는 바란 금융기관이 예금 등 채권의 지급정지 후 파산하게 되는 경우, 예금보험공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을 보장합니다.

59조 보험사기행위 금지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피해자 등이 보험사기행위를 행한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형사처분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60조 분쟁의 조정

① 이 보험계약의 내용 또는 보험금의 지급 등에 관하여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손해배상청구권자, 그 밖에 이해관계에 있는 자 사이에 분쟁이 있을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에 설치된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을 받을 수 있으며, 분쟁조정 과정에서 계약자는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기록 및 유지·관리하는 자료의 열람(사본의 제공 또는 청취를 포함한다)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일반금융소비자인 계약자가 조정을 통하여 주장하는 권리나 이익의 가액이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2조에서 정하는 일정 금액 이내인 분쟁사건에 대하여 조정절차가 개시된 경우에는 관계 법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61조 관할법원

이 보험계약에 관한 소송 및 민사조정은 계약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합니다. 다만, 회사와 계약자가 합의하여 관할법원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62조 준용규정

이 계약은 대한민국 법에 따라 규율되고 해석되며,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상법, 민법 등 관계 법령을 따릅니다.

사가 예금자 1인당 보호금융상품의 원금과 이자를 합하여 최고 1억원까지 보장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별표1 대인배상,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지급 기준[95]

가. 사 망

각 보장종목별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다음의 금액을 지급함.

항목	지급 기준
1. 장례비	지급액: 5,000,000원
2. 위자료	가. 사망자 본인 및 유족의 위자료 (1) 사망 당시 피해자의 나이가 65세 미만인 경우 : 80,000,000원 (2) 사망 당시 피해자의 나이가 65세 이상인 경우 : 50,000,000원 나. 청구권자의 범위 및 청구권자별 지급기준 : 민법상 상속규정에 따름
3. 상실수익액	가. 산정방법: 사망한 본인의 월평균 현실소득액(제세액공제)에서 본인의 생활비(월평균현실소득액에 생활비율을 곱한 금액)를 공제한 금액에 취업가능월수에 해당하는 호프만 계수를 곱하여 산정[96].(단, 사망일부터 취업가능연한까지 월수에 해당하는 호프만계수의 총합은 240을 한도로 함) <산 식> (월평균현실소득액 - 생활비)×(사망일부터 보험금지급일까지의 월수+보험금지급일부터 취업가능연한까지 월수에 해당하는 호프만 계수) ※ 호프만 계수란 상실수익액을 지급받을 경우, 장래에 대하여 받지 못하는 수익액을 미리 받는 것이므로, 해당 금액의 원금에서 단리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고 계산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나. 현실소득액의 산정방법 (1) 유직자 (가) 산정대상기간 ① 급여소득자: 사고발생 직전 또는 사망 직전 과거 3개월로 하되, 계절적 요인 등에 따라 급여의 차등이 있는 경우와 상여금, 체력단련비, 연월차휴가보상금 등 매월 수령하는 금액이 아닌 것은 과거 1년간으로 함. ② 급여소득자 이외의 자: 사고발생 직전 과거 1년간으로 하며,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계절적인 요인 등을 감안하여 타당한 기간으로 함. (나) 산정방법 1) 현실소득액을 증명할 수 있는 자 세법에 의한 관계증빙서에 따라 소득을 산정할 수 있는 자에 한하여 다음과 같이 산정한 금액으로 함. 가) 급여소득자 피해자가 근로의 대가로서 받은 보수액에서 제세액을 공제한 금액. 그러나 피해자가 사망 직전에 보수액의 인상이 확정된 경우에는 인상된 금액에서 제세액을 공제한 금액

95) 지급기준의 연령은 사고발생일을 기준으로 한 만 연령으로 합니다.

항목	지급 기준
	<용어풀이> ① '급여소득자'라 함은 소득세법 제20조에서 규정한 근로소득을 얻고 있는 자로서 일용근로자 이외의 자를 말함. ② '근로의 대가로 받은 보수'라 함은 본봉, 수당, 성과급, 상여금, 체력단련비, 연월차휴가보상금 등을 말하며, 실비변상적인 성격을 가진 대가는 제외함. ③ '세법에 따른 관계증빙서'라 함은 사고발생 전에 신고하거나 납부하여 발행된 관계증빙서를 말함. 다만, 신규취업자, 신규사업개시자 또는 사망 직전에 보수액의 인상이 확정된 경우에 한하여 세법 규정에 따라 정상적으로 신고하거나 납부(신고 또는 납부가 지체된 경우는 제외함)하여 발행된 관계증빙서를 포함함. 나) 사업소득자 ① 세법에 따른 관계증빙서에 따라 증명된 수입액에서 그 수입을 위하여 필요한 제경비 및 제세액을 공제하고 본인의 기여율을 감안하여 산정한 금액 <산 식> [연간수입액 - 주요경비[97] - (연간수입액×기준경비율[98]) - 제세공과금]×노무기여율×투자비율 ㈜ 1. 제 경비가 세법에 따른 관계증빙서에 따라 증명되는 경우에는 위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99]을 적용하지 않고 그 증명된 경비를 공제함. 2. 소득세법 등에 의해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는 기준경비율 대신 그 비율을 적용함. 3. 투자비율은 증명이 불가능할 때에는 '1/동업자수'로 함. 4. 노무기여율은 85/100를 한도로 타당한 율을 적용함. ② 본인이 없더라도 사업의 계속성이 유지될 수 있는 경우에는 위 ①의 산식에 따르지 않고 일용근로자 임금을 인정함. ③ 위 ①에 따라 산정한 금액이 일용근로자 임금에 미달한 경우에는 일용근로자 임금을 인정함. <용어풀이> ① 이 보험계약에서 사업소득자라 함은 소득세법 제19조에서 규정한 소득을 얻고 있는 자를 말함. ② 이 보험계약에서 일용근로자 임금이라 함은 통계법 제15조에 의한 통계작성지정기관(대한건설협회, 중소기업중앙회)이 통계법 제17조에 따라 조사·공표한 노임 중 공사부문은 보통인부, 제조부문은 단순노무종사원의 임금을 적용하여 아래와 같이 산정함. <산 식> (공사부문 보통인부임금 + 제조부문 단순노무종사원 임금)/2 * 월 임금을 산출할 경우 25일을 기준으로 산정 다) 그 밖의 유직자(이자소득자, 배당소득자 제외) 세법상의 관계증빙서에 따라 증명된 소득액에서 제세액을

항목	지급 기준
	공제한 금액. 다만, 부동산임대소득자의 경우에는 일용근로자 임금을 인정하며, 이 기준에서 정한 여타의 증명되는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그 소득과 일용근로자 임금 중 많은 금액을 인정함. 라) 위 가), 나), 다)에 해당하는 자로서 기술직 종사자는 통계법 제15조에 의한 통계작성지정기관(공사부문: 대한건설협회, 제조부문: 중소기업중앙회)이 통계법 제17조에 따라 조사, 공표한 노임에 의한 해당직종 임금이 많은 경우에는 그 금액을 인정함. 다만, 사고발생 직전 1년이내 해당 직종에 종사하고 있었음을 관련 서류를 통해 객관적으로 증명한 경우에 한함. <용어풀이> ① 기술직 종사자가 '관련 서류를 통해 객관적으로 증명한 경우'라 함은 자격증, 노무비 지급확인서 등의 입증 서류를 보험회사로 제출한 것을 말함. 2) 현실소득액을 증명하기 곤란한 자 세법에 의한 관계증빙서에 따라 소득을 산정할 수 없는 자는 다음과 같이 산정한 금액으로 함. 가) 급여소득자 일용근로자 임금 나) 사업소득자 일용근로자 임금 다) 그 밖의 유직자 일용근로자 임금 라) 위 가), 나), 다)에 해당하는 자로서 기술직 종사자는 통계법 제15조에 의한 통계작성지정기관(공사부문: 대한건설협회, 제조부문: 중소기업중앙회)이 통계법 제17조에 따라 조사, 공표한 노임에 의한 해당직종 임금이 많은 경우에는 그 금액을 인정함. 다만, 사고발생 직전 1년이내 해당 직종에 종사하고 있었음을 관련 서류를 통해 객관적으로 증명한 경우에 한함. 3) 미성년자로서 현실소득액이 일용근로자 임금에 미달한 자: 19세에 이르기까지는 현실소득액, 19세 이후는 일용근로자 임금 (2) 가사종사자: 일용근로자 임금 (3) 무직자(학생 포함): 일용근로자 임금 (4) 현역병 등 군 복무해당자(복무예정자 포함) : 일용근로자 임금 (5) 소득이 두 가지 이상인 자 (가) 세법에 따른 관계증빙서에 따라 증명된 소득이 두 가지 이상 있는 경우에는 그 합산액을 인정함. (나) 세법에 따른 관계증빙서에 따라 증명된 소득과 증명 곤란한 소득이 있는 때 혹은 증명이 곤란한 소득이 두 가지 이상 있는 경우에 이 기준에 따라 인정하는 소득 중 많은 금액을 인정함. (6) 외국인 (가) 유직자 ① 국내에서 소득을 얻고 있는 자로서 그 증명이 가능한 자:

항목	지급 기준
	위 1)의 현실소득액의 증명이 가능한 자의 현실소득액 산정방법으로 산정한 금액 ② 위 ① 이외의 자: 일용근로자 임금 (나) 무직자(학생 및 미성년자 포함) : 일용근로자 임금 다. 생활비율: 1/3 라. 취업가능월수 (1) 취업가능연한을 65세로 하여 취업가능월수를 산정함. 다만, 법령, 단체협약 또는 그 밖의 별도의 정년에 관한 규정이 있으면 이에 의하여 취업가능월수를 산정하며 피해자가「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이나「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일 경우(피해자가 객관적 자료를 통해 증명한 경우에 한함)에는 취업가능연한을 70세로 하여 취업가능월수를 산정함. (2) 피해자가 사망 당시(후유장애를 입은 경우에는 노동능력상실일) 62세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의「62세 이상 피해자의 취업가능월수」에 의하되, 사망일 또는 노동능력상실일부터 정년에 이르기까지는 월현실소득액을, 그 이후부터 취업가능월수까지는 일용근로자 임금을 인정함 **<62세 이상 피해자의 취업가능월수>** 피해자의 나이 / 취업가능월수 62세부터 67세 미만 / 36월 67세부터 76세 미만 / 24월 76세 이상 / 12월 (3) 취업가능연한이 사회통념상 65세 미만인 직종에 종사하는 자인 경우 해당 직종에 타당한 취업가능연한 이후 65세에 이르기까지의 현실소득액은 사망 또는 노동능력 상실 당시의 일용근로자 임금을 인정함. (4) 취업시기는 19세로 함 (5) 외국인 (가) 적법한 일시체류자(*1)인 경우 생활 본거지인 본국의 소득기준을 적용함. 다만 적법한 일시체류자가 국내에서 취업활동을 한 경우 아래 (다)를 적용함. (나) 적법한 취업활동자(*2)인 경우 외국인 근로자의 적법한 체류기간 동안은 국내의 소득기준을 적용하고, 적법한 체류기간 종료 후에는 본국의 소득기준을 적용함. 다만, 사고 당시 남은 적법한 체류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 사고일부터 3년간 국내의 소득기준을 적용함. (다) 그 밖의 경우 사고일부터 3년은 국내의 소득기준을, 그 후부터는 본국의 소득기준을 적용함. (*1) '적법한 일시체류자'라 함은 국내 입국허가를 득하였으나 취업활동의 허가를 얻지 못한 자를 말합니다. (*2) '적법한 취업활동자'라 함은 국내 취업활동 허가를 얻은 자를 말합니다. 마. 호프만 계수 : 법정이율 월 5/12%, 단리에 따라 중간이자를 공제하고 계산하는 방법

항목	지급 기준
	<산 식> $\frac{1}{1+i} + \frac{1}{1+2i} + \cdots\cdots + \frac{1}{1+ni}$ i=5/12%, n=취업가능월수

나. 부 상

각 보장종목별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다음의 금액을 지급하되, 「대인배상Ⅰ」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별표 1]에서 정한 상해급별 보상한도 내에서 지급함.

항목	지급 기준
1. 적극손해	가. 구조수색비: 사회통념상으로 보아 필요타당한 실비 나. 치료관계비: 의사의 진단 기간에서 치료에 소요되는 다음의 비용(외국에서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국내의료기관에서의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 상당액. 다만, 국내의료기관에서 치료가 불가능하여 외국에서 치료를 받는 경우에는 그에 소요되는 타당한 비용)으로 하되, 관련법규에서 환자의 진료비로 인정하는 선택진료비를 포함함. (1) 입원료 (가) 입원료는 대중적인 일반병실(이하 '기준병실'이라 함)의 입원료를 지급함. 다만, 의사가 치료상 부득이 기준병실보다 입원료가 비싼 병실(이하 '상급병실'이라 함)에 입원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여 상급병실에 입원하였을 때에는 그 병실의 입원료를 지급함. (나) 기준병실이 없어 부득이하게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상급병실에 입원하였을 때에는 7일의 범위에서는 그 병실의 입원료를 지급함. 입원일수가 7일을 초과한 때에는 그 초과한 기간은 기준병실의 입원료와 상급병실의 입원료와의 차액은 지급하지 아니함. (다) 피보험자나 피해자의 희망으로 상급병실에 입원하였을 때는 기준병실의 입원료와 상급병실의 입원료와의 차액은 지급하지 아니함. (2) 응급치료, 호송, 진찰, 전원, 퇴원, 투약, 수술(성형수술 포함), 처치, 의지, 의치, 안경, 보청기 등에 소요되는 필요타당한 실비 (3) 치아보철비: 금주조관보철(백금관보철 포함) 또는 임플란트(실제 시술한 경우로 1치당 1회에 한함)에 소요되는 비용. 다만, 치아보철물이 외상으로 인하여 손상 또는 파괴되어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원상회복에 소요되는 비용 다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별표1> 에서 정한 상해급별 구분 중 12급 내지 14급에 해당하는 교통사고 환자가 상해를 입은 날로

96) 상실수익액 계산방법 EX) '24.1.1 자동차사고로 피해자 현장 사망, 피해자연령 만 60세('64.1.1일생) 월현실소득액 300만원, 취업가능월수 60개월 호프만계수(53.4545) → 300만원 × (1-1/3) ×53.4545= 106,909,000원

97) 매입비용(재화의 매입, 가공비용, 운반비 등을 말하며 사업용 고정자산 매입은 제외), 임차료(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 및 기계장치 등 고정 자산에 대한 임차료), 인건비(종업원의 급여나 임금 및 퇴직급여) 등을 말합니다.

98) 장부를 기재하지 않는 사업자의 직전년도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기준 금액 **이상**인 경우 등에 적용하는 경비율

99) 장부를 기재하지 않는 사업자의 직전년도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기준 금액 **미만**인 경우 등에 적용하는 경비율

<table>
<tr><th>항목</th><th>지급 기준</th></tr>
<tr><td></td><td>부터 4주를 경과한 후에도 의학적 소견에 따른 향후 치료를 요하는 경우에는 의료법에 따른 진단서상 향후 치료에 대한 소견 범위에 기재된 치료기간 내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함.</td></tr>
<tr><td>2. 위자료</td><td>가. 청구권자의 범위 : 피해자 본인
나. 지급기준 : 책임보험 상해구분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급별로 인정함.
(단위: 만 원)
<table>
<tr><th>급별</th><th>인정액</th><th>급별</th><th>인정액</th><th>급별</th><th>인정액</th><th>급별</th><th>인정액</th></tr>
<tr><td>1</td><td>200</td><td>5</td><td>75</td><td>9</td><td>25</td><td>13</td><td>15</td></tr>
<tr><td>2</td><td>176</td><td>6</td><td>50</td><td>10</td><td>20</td><td>14</td><td>15</td></tr>
<tr><td>3</td><td>152</td><td>7</td><td>40</td><td>11</td><td>20</td><td></td><td></td></tr>
<tr><td>4</td><td>128</td><td>8</td><td>30</td><td>12</td><td>15</td><td></td><td></td></tr>
</table>
다. 과실상계 후 후유장애 상실수익액과 가정간호비가 후유장애 보험금 보상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부상보험금 한도 내에서 부상 위자료를 지급함.</td></tr>
<tr><td>3. 휴업손해</td><td>가. 산정방법: 부상으로 인하여 휴업함으로써 수입의 감소가 있었음을 관계 서류를 통해 증명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휴업기간 중 피해자의 실제 수입감소액의 85% 해당액을 지급함.
<용어풀이>
① '관계 서류를 통해 증명할 수 있는 경우'라 함은 세법상 관계 서류 또는 기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자료 등을 통해 증명한 경우를 말함.
<산 식>
$1일\ 수입감소액 \times 휴업일수 \times \frac{85}{100}$
나. 휴업일수의 산정
(1) 휴업일수의 산정: 피해자의 상해정도를 감안, 치료 기간의 범위에서 인정함.
(2) 사고당시 피해자의 나이가 취업가능연한을 초과한 경우, 휴업일수를 산정하지 아니함. 다만, 위 가.에 따라 관계 서류를 통해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3) 취업가능연한: 65세를 기준으로 함. 다만, 법령, 단체협약 또는 그 밖의 별도의 정년에 관한 규정이 있으면 이에 의하며 피해자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이나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일 경우(피해자가 객관적 자료를 통해 증명한 경우에 한함)에는 70세로 함.
다. 수입감소액의 산정
(1) 유직자
(가) 사망한 경우 현실소득액의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수입감소액을 산정함.
(나) 실제의 수입감소액이 위 (가)의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실제의 수입감소액으로 함.</td></tr>
</table>

항목	지급 기준
	(2) 가사종사자 (가) 일용근로자 임금을 수입감소액으로 함. <용어풀이> ① '가사종사자'라 함은 사고당시 2인 이상으로 구성된 세대에서 경제활동을 하지 않고 가사활동에 종사하는 자로서 주민등록 관계서류와 세법상 관계서류 등을 통해 해당 사실을 증명한 사람을 말함. (3) 무직자 (가) 무직자는 수입의 감소가 없는 것으로 함. (나) 유아, 연소자, 학생, 연금생활자, 그 밖의 금리나 임대료에 의한 생활자는 수입의 감소가 없는 것으로 함. (4) 소득이 두 가지 이상의 자 사망한 경우 현실소득액의 산정방법과 동일 (5) 외국인 사망한 경우 현실소득액의 산정방법과 동일
4. 간병비	가. 청구권자의 범위: 피해자 본인 나. 인정 대상 (1) 책임보험 상해구분상 1~5급에 해당하는 자 중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 인정함. (2) 동일한 사고로 부모 중 1인이 사망 또는 상해등급 1~5급의 상해를 입은 7세 미만의 자 중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 인정함. (3) 의료법 제4조의2에 따른 비용을 보험회사가 부담하는 경우에는 비용 및 기간에 관계없이 인정하지 않음. <용어풀이> ① '객관적인 증빙자료'라 함은 진단서, 진료기록, 입원기록, 가족관계증명서 등 보험회사가 상해등급과 신분관계를 판단할 수 있는 서류를 말함. 다. 지급 기준 (1) 위 인정대상 (1)에 해당하는 자는 책임보험 상해구분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상해등급별 인정일수를 한도로 하여 실제 입원기간을 인정함. (2) 위 인정대상 (2)에 해당하는 자는 최대 60일을 한도로 하여 실제 입원기간을 인정함. (3) 간병인원은 1일 1인 이내에 한하며, 1일 일용근로자 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함. (4) 위 (1)과 (2)의 간병비가 피해자 1인에게 중복될 때에는 양자 중 많은 금액을 지급함.

<table>
<tr><th>항목</th><th>지급 기준</th></tr>
<tr><td></td><td>
<table>
<tr><th>상해등급</th><th>인정일수</th></tr>
<tr><td>1급 ~ 2급</td><td>60일</td></tr>
<tr><td>3급 ~ 4급</td><td>30일</td></tr>
<tr><td>5급</td><td>15일</td></tr>
</table>
</td></tr>
<tr><td>5. 그 밖의 손해배상금</td><td>위 1. 내지 4. 외에 그 밖의 손해배상금으로 다음의 금액을 지급함.
가. 입원하는 경우
입원기간 중 한 끼당 4,030원(병원에서 환자의 식사를 제공하지 않거나 환자의 요청에 따라 병원에서 제공하는 식사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에 한함)
나. 통원하는 경우
실제 통원한 일수에 대하여 1일 8,000원</td></tr>
</table>

다. 후유장애

각 보장종목별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다음의 금액을 지급하되, 「대인배상Ⅰ」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별표 2]에서 정한 후유장애급별 보상한도 내에서 지급함.

<table>
<tr><th>항목</th><th>지급 기준</th></tr>
<tr><td>1. 위 자 료</td><td>가. 청구권자의 범위 : 피해자 본인
나. 지급기준 : 노동능력상실률에 따라 (1)항 또는 (2)항에 의해 산정한 금액을 피해자 본인에게 지급함.
(1) 노동능력상실률이 50% 이상인 경우
(가) 후유장애 판정 당시(*1) 피해자의 나이가 65세 미만인 경우: 45,000,000원 × 노동능력상실률 × 85%
(나) 후유장애 판정 당시(*1) 피해자의 나이가 65세 이상인 경우: 40,000,000원 × 노동능력상실률 × 85%
(다) 상기 (가), (나)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이 약관에 따른 가정간호비 지급 대상인 경우에는 아래 기준을 적용함.
① 후유장애 판정 당시(*1) 피해자의 나이가 65세 미만인 경우: 80,000,000원 × 노동능력상실률 × 85%
② 후유장애 판정 당시(*1) 피해자의 나이가 65세 이상인 경우: 50,000,000원 × 노동능력상실률 × 85%
(*1) 후유장애 판정에 대한 다툼이 있을 경우 최초 후유장애 판정 시점의 피해자 연령을 기준으로 후유장애 위자료를 산정합니다.
(2) 노동능력상실률이 50% 미만인 경우
(단위: %, 만 원)
<table>
<tr><th>노동능력상실률</th><th>인정액</th></tr>
<tr><td>45% 이상 50% 미만</td><td>400</td></tr>
<tr><td>35% 이상 45% 미만</td><td>240</td></tr>
<tr><td>27% 이상 35% 미만</td><td>200</td></tr>
<tr><td>20% 이상 27% 미만</td><td>160</td></tr>
<tr><td>14% 이상 20% 미만</td><td>120</td></tr>
<tr><td>9% 이상 14% 미만</td><td>100</td></tr>
<tr><td>5% 이상 9% 미만</td><td>80</td></tr>
<tr><td>0% 초과 5% 미만</td><td>50</td></tr>
</table>
</td></tr>
</table>

항목	지급 기준
	다. 후유장애 상실수익액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후유장애 위자료를 지급함. 다만, 부상 위자료 해당액이 더 많은 경우에는 그 금액을 후유장애 위자료로 지급함.
2. 상실수익액	가. 산정방법: 피해자가 노동능력을 상실한 경우 피해자의 월평균 현실소득액에 노동능력상실률과 노동능력상실기간에 해당하는 호프만 계수를 곱하여 산정함.(단, 노동능력상실일부터 취업가능연한까지 월수에 해당하는 호프만계수의 총합은 240을 한도로 함) <산 식> 월평균현실소득액×노동능력상실률×(노동능력상실일부터 보험금지급일까지의 월수+보험금지급일부터 취업가능연한까지의 월수에 해당하는 호프만계수) 나. 현실소득액의 산정방법 (1) 유직자 (가) 산정대상기간 ① 급여소득자: 사고발생 직전 또는 노동능력 상실 직전 과거 3개월로 하되, 계절적 요인 등에 따라 급여의 변동이 있는 경우와 상여금, 체력단련비, 연월차휴가보상금 등 매월 수령하는 금액이 아닌 것은 과거 1년간으로 함. ② 급여소득자 이외의 자: 사고발생 직전 과거 1년간으로 하며, 그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계절적인 요인 등을 감안하여 타당한 기간으로 함. (나) 산정방법 사망한 경우 현실소득액의 산정방법과 동일 (2) 가사종사자 사망한 경우 현실소득액의 산정방법과 동일 (3) 무직자(학생포함) 사망한 경우 현실소득액의 산정방법과 동일 (4) 현역병 등 군 복무해당자 사망한 경우 현실소득액의 산정방법과 동일 (5) 소득이 두 가지 이상인 자 사망한 경우 현실소득액의 산정방법과 동일 (6) 외국인 사망한 경우 현실소득액의 산정방법과 동일 다. 노동능력상실률 맥브라이드 식 후유장애 평가방법100)에 따라 일반의 옥내 또는 옥외 근로자를 기준으로 실질적으로 부상 치료 진단을 실시한 의사 또는 해당과목 전문의가 진단·판정한 타당한 노동능력상실률을 적용하며, 그 판정과 관련하여 다툼이 있을 경우 보험금 청구권자와 보험회사가 협의하여 정한 제3의 전문의료기관의 전문의에게 판정을 의뢰할 수 있음. 라. 노동능력상실기간 사망한 경우 취업가능월수와 동일

항목	지급 기준
	마. 호프만 계수 사망한 경우와 동일
3. 가정간호비	가. 인정 대상 치료가 종결되어 더 이상의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게 된 때에 1인 이상의 해당 전문의로부터 노동능력상실률 100%의 후유장애 판정을 받은 자로서 다음 요건에 해당하는 '식물인간상태의 환자 또는 척수손상으로 인한 사지완전마비 환자'로 생명유지에 필요한 일상생활의 처리동작에 있어 항상 다른 사람의 개호[101]를 요하는 자 (1) 식물인간상태의 환자 뇌손상으로 다음 항목에 모두 해당되는 상태에 있는 자 (가) 스스로는 이동이 불가능하다. (나) 자력으로는 식사가 불가능하다. (다) 대소변을 가릴 수 없는 상태이다. (라) 안구는 겨우 물건을 쫓아가는 수가 있으나, 알아보지는 못한다. (마) 소리를 내도 뜻이 있는 말은 못한다. (바) '눈을 떠라', '손으로 물건을 쥐어라'하는 정도의 간단한 명령에는 가까스로 응할 수 있어도 그 이상의 의사소통은 불가능하다. (2) 척수손상으로 인한 사지완전마비 환자 척수손상으로 인해 양팔과 양다리가 모두 마비된 환자로서 다음 항목에 모두 해당되는 자 (가) 생존에 필요한 일상생활의 동작(식사, 배설, 보행 등)을 자력으로 할 수 없다. (나) 침대에서 몸을 일으켜 의자로 옮기거나 집안에서 걷기 등의 자력이동이 불가능하다. (다) 욕창을 방지하기 위해 수시로 체위를 변경시켜야 하는 등 다른 사람의 상시 개호를 필요로 한다. 나. 지급 기준 가정간호 인원은 1일 1인 이내에 한하며, 가정간호비는 일용근로자 임금을 기준으로 보험금수령권자의 선택에 따라 일시금 또는 퇴원일부터 향후 생존기간에 한하여 매월 정기금으로 지급함.

별표2 대물배상 지급 기준

항목	지급 기준
1. 수리비용	가. 지급대상 원상회복이 가능하여 수리하는 경우 나. 인정기준액

100) 미국 오클라호마 의과대학 정형외과 교수였던 맥브라이드(Earl D. McBride)가 1936년에 만든 노동능력상실평가방법입니다. 직업과 장애부위의 관련표로 신체의 장애를 백분율(%)로 평가하는 방법(예: 식물인간의 경우 100% 장애율)입니다. 280여종의 직종별 계수 및 각종 신체부위 등이 연관되어 수천가지 이상의 상실율 평가가 가능하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101) 장애로 인하여 혼자서 활동이 어려운 사람을 곁에서 돌보는 것

항목	지급 기준
	(1) 수리비 (가) 사고 직전의 상태로 원상회복하는 데 소요되는 필요 타당한 비용으로서 실제 수리비용. 다만, 부득이하게 새 부분품으로 교환수리하는 경우에는, 조달 가능한 새 부분품 중 조달기간 및 조달가격 등을 고려할 때 비용이 최소화되는 부분품으로 교환수리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한도로 함 (나) 경미한 손상(*1)의 경우 보험개발원이 정한 경미손상 수리기준에 따라 복원수리하거나 품질인증부품(*2)으로 교환수리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한도로 함 (*1) 외장부품 중 자동차의 기능과 안전성을 고려할 때 부품교체 없이 복원이 가능한 손상 (*2) 품질인증부품이란 「자동차관리법」제30조의5에 따라 인증된 부품 (2) 열처리 도장료 수리할 때 열처리 도장을 한 경우 차량연식에 관계없이 열처리 도장료 전액 (3) 한도 수리비 및 열처리 도장료의 합계액은 피해물의 사고 직전 가액의 120%를 한도로 지급함. 다만, 피해물이 다음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30%를 한도로 함 (가) 내용연수(*1)가 지난 경우 (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4조 제2항에 의한 차량충당연한을 적용받는 승용자동차나 승합자동차 (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7조 제1항에 의한 차량충당연한을 적용받는 화물자동차 (*1) 보험개발원의「차량기준가액표」에서 정하는 내용연수를 말합니다.
2. 교환가액	가. 지급대상 피해물이 다음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수리비용이 피해물의 사고 직전 가액을 초과하여 수리하지 않고 폐차하는 경우 (2)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 나. 인정기준액 (1) 사고 직전 피해물의 가액 상당액 (2) 사고 직전 피해물의 가액에 상당하는 동종의 대용품을 취득할 때 실제로 소요된 필요 타당한 비용
3. 대 차 료	가. 대상 비사업용자동차(건설기계 포함)가 파손 또는 오손되어 가동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에 다른 자동차를 대신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나. 인정기준액 (1) 대차를 하는 경우 (가) 대여자동차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등록한 대여사업자에게서 차량만을 빌릴 때를 기준으로 동급(*1)의 대여자동차 중 최저요금의 대여자동차를 빌리는 데 소요되는 통상의 요금(*2). 다만, 피해차량이 사고시점을 기준으로 「여객자동차운수사

항목	지급 기준
	업법」에 따른 운행연한 초과로 동급의 대여자동차를 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피해차량과 동일한 규모(*3)의 대여자동차 중 최저요금의 대여자동차를 기준으로 함. (*1)"동급"이라 함은 배기량, 연식이 유사한 차량을 말합니다. 다만, 배기량, 연식만을 고려할 경우 차량성능을 반영하기 어려운 자동차(예 : 하이브리드 차량, 다운사이징엔진 장착 차량)에 대해서는 차량크기(길이, 너비, 높이)를 고려합니다. (*2)"통상의 요금"이라 함은 자동차 대여시장에서 소비자가 자동차대여사업자로부터 자동차를 빌릴 때 소요되는 합리적인 시장가격을 말합니다. (*3)"규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별표1 자동차의 종류 중 규모별 세부기준(경형, 소형, 중형, 대형)에 따른 자동차의 규모를 말합니다. (나) 대여자동차가 없는 차종(*1)은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사업용 해당차종(사업용 해당차종의 구분이 곤란할 때에는 사용방법이 유사한 차종으로 하며, 이하 같음) 휴차료 일람표 범위에서 실임차료. 다만, 5톤 이하 또는 밴형 화물자동차 및 대형 이륜자동차(260cc 초과)의 경우 중형승용차급 중 최저요금 한도로 대차 가능 (*1)"대여자동차가 없는 차종 "이라 함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30조에 따라 자동차대여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 자동차 외의 차종을 말합니다. (2) 대차를 하지 않는 경우 (가) 동급의 대여자동차가 있는 경우: 해당 차량과 동급의 최저요금 대여자동차 대여 시 소요되는 통상의 요금의 35% 상당액 (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운행연한 초과로 동급의 대여자동차를 구할 수 없는 경우: 위 (1)-(가) 단서에 따라 대차를 하는 경우 소요되는 대차료의 35% 상당액 (다) 대여자동차가 없는 경우: 사업용 해당 차종 휴차료 일람표 금액의 35% 상당액 다. 인정기간 (1) 수리 가능한 경우 수리를 위해 자동차정비업자에게 인도하여 수리가 완료될 때까지 소요된 기간으로 하되, 25일(실제 정비작업시간이 16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일)을 한도로 함. 다만, 부당한 수리지연이나 출고지연 등의 사유로 인해 통상의 수리기간(*1)을 초과하는 기간은 인정하지 않음. (*1)"통상의 수리기간"이라 함은 보험개발원이 과거 3년간 렌트기간과 작업시간 등과의 상관관계를 합리적으로 분석하여 산출한 수리기간(범위)을 말합니다. (2) 수리 불가능한 경우 : 10일
4. 휴 차 료	가. 지급대상 사업용자동차(건설기계 포함)가 파손 또는 오손되어 사용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에 발생하는 타당한 영업손해 나. 인정기준액 (1) 증명자료가 있는 경우 1일 영업수입에서 운행경비를 공제한 금액에 휴차 기간을 곱한 금액

항목	지급 기준
	(2) 증명자료가 없는 경우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사업용 해당 차종 휴차료 일람표 금액에 휴차 기간을 곱한 금액 다. 인정기간 (1) 수리 가능한 경우 (가) 수리를 위해 자동차정비업자에게 인도하여 수리가 완료될 때까지의 기간으로 하되, 30일을 한도로 함. (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 의하여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자가 부상으로 자동차의 수리가 완료된 후에도 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고일부터 30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운행하지 못한 기간으로 함. (2) 수리 불가능한 경우 : 10일
5. 영업손실	가. 지급대상 소득세법령에 정한 사업자의 사업장 또는 그 시설물을 파괴하여 휴업함으로써 상실된 이익 나. 인정기준액 (1) 증명자료가 있는 경우 소득을 인정할 수 있는 세법에 따른 관계증빙서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 (2) 증명자료가 없는 경우 일용근로자 임금 다. 인정기간 (1) 원상복구에 소요되는 기간으로 함. 그러나 합의지연 또는 부당한 복구지연으로 연장되는 기간은 휴업기간에 넣지 아니함. (2) 영업손실의 인정기간은 30일을 한도로 함.
6. 자동차 시세 하락손해	가. 지급대상 사고로 인한 자동차(출고 후 5년 이하인 자동차에 한함)의 수리비용이 사고 직전 자동차가액의 20%를 초과하는 경우 나. 인정기준액 (1) 출고 후 1년 이하인 자동차 : 수리비용의 20% (2) 출고 후 1년 초과 2년 이하인 자동차 : 수리비용의 15% (3) 출고 후 2년 초과 5년 이하인 자동차 : 수리비용의 10%
7. 견인비용	가. 지급대상 피해물이 자력 이동이 불가능하여 이를 정비 가능한 곳까지 운반할 필요가 있는 경우 나. 인정기준액 피해물을 고칠 수 있는 정비공장 등까지 운반하거나 그 곳까지 운반하기 위한 임시수리에 소요되는 비용 중 필요 타당한 비용

별표3 과실상계 등

항목	지급 기준
1. 과실상계	가. 과실상계의 방법 (1) (1) 이 기준의 「대인배상Ⅰ」, 「대인배상Ⅱ」, 「대물배상」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에 대하여 피해자 측의 과실비율에 따라 상계하며,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의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과실비율에 따라 상계함. (2) 「대인배상Ⅰ」에서 사망보험금은 위 (1)에 의하여 상계한 후의 금액이 2,000만원에 미달하면 2,000만원을 보상하며, 부상보험금의 경우 위 (1)에 의하여 상계한 후의 금액이 치료관계비와 간병비의 합산액에 미달하면 「대인배상Ⅰ」 한도 내에서 치료관계비(입원환자 식대를 포함)와 간병비를 보상함. (3) 「대인배상Ⅱ」 또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에서 사망보험금, 부상보험금 및 후유장애보험금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위 (1)에 의하여 상계한 후의 금액이 치료관계비와 간병비의 합산액에 미달하면 치료관계비(입원환자 식대를 포함하며, 「대인배상Ⅰ」에서 지급될 수 있는 금액을 공제)와 간병비를 보상함. 다만, 차량운전자(*1)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별표1> 에서 정한 상해급별 구분 중 12급 내지 14급의 상해를 입은 경우 위 (1)에 의하여 상계하기 전의 치료관계비가 「대인배상Ⅰ」 한도를 초과할 경우 보험회사는 과실상계 없이 우선 보상한 후, 그 초과액에 대하여 피해자 측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청구할 수 있음. (*1) "차량운전자"에서 차량이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의한 자동차(이륜자동차 제외), 군수품관리법에 의한 차량, 건설기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건설기계를 말하며, 차량운전자에는 피해자 측 과실비율을 적용받는 자를 포함합니다. 나. 과실비율의 적용기준 별도로 정한 자동차사고 과실비율의 인정기준을 참고하여 산정하고, 사고유형이 그 기준에 없거나 그 기준에 의한 과실비율의 적용이 곤란할 때에는 판결례를 참작하여 적용함. 그러나 소송이 제기되었을 경우에는 확정판결에 의한 과실비율을 적용함.
2. 손익상계	보험사고로 인하여 다른 이익을 받을 경우 이를 상계하여 보험금을 지급함.
3. 동승자에 대한 감액	피보험자동차에 동승한 자는 <별표 4>의 「동승자 유형별 감액비율표」에 따라 감액함.
4. 기왕증	가. 기왕증(*1)으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지 아니함. 다만, 당해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기왕증이 악화된 경우에는 기왕증이 손해에 관여한 정도(기왕증 관여도)를 반영하여 보상함. 나. 기왕증은 해당과목 전문의가 판정한 비율에 따라 공제함. 다만, 그 판정에 다툼이 있을 경우 보험금 청구권자와 보험회사가 협의하여 정한 제3의 전문의료기관의 전문의에게 판정을 의뢰할 수 있음. (*1)'기왕증'이라 함은 당해 자동차사고가 있기 전에 이미 가지고 있던 증상으로 특이체질 및 병적 소인 등을 포함하는 것을 말합니다.

별표4 동승자 유형별 감액비율표

1. 기준요소

동승의 유형 및 운행목적	감액비율(*1)
동승자의 강요 및 무단 동승	100%
음주운전, 무면허운전(*2), 마약·약물운전 또는 사고발생 시의 조치의무 위반 운전자의 차량 동승	40%
동승자의 요청 동승	30%
상호 의논합의 동승	20%
운전자의 권유 동승	10%
운전자의 강요 동승	0%

(*1) 다만, 피보험자와 동승자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한 날의 출·퇴근 시간대(오전 7시부터 오전 9시까지 및 오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를 말함)에 실제의 출·퇴근 용도로 자택과 직장 사이를 이동하면서 '승용차 함께 타기'를 실시한 경우에는 위 동승자 감액비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2) 무면허운전은 동승자가 운전자의 무면허 사실을 알 수 있었던 사정이 명확한 경우에 한하여 감액 적용

2. 수정요소

수정요소	수정비율
동승자의 동승과정에 과실이 있는 경우	+10~20%

별표5 자기신체사고 지급기준

1) 상해구분 및 급별 보험가입금액표

상해등급	보험가입금액	상해등급	보험가입금액
1급	1,500만원	8급	180만원
2급	800만원	9급	140만원
3급	750만원	10급	120만원
4급	700만원	11급	120만원
5급	500만원	12급	120만원
6급	400만원	13급	80만원
7급	250만원	14급	50만원

주) 상해등급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별표 1>에서 정한 상해구분에 의함

2) 후유장애구분 및 급별 보험가입금액표

장애등급	보험가입금액			
	1,500만원	3,000만원	5,000만원	1억원
1급	1,500만원	3,000만원	5,000만원	1억원
2급	1,350만원	2,700만원	4,500만원	9,000만원
3급	1,200만원	2,400만원	4,000만원	8,000만원
4급	1,050만원	2,100만원	3,500만원	7,000만원
5급	900만원	1,800만원	3,000만원	6,000만원
6급	750만원	1,500만원	2,500만원	5,000만원
7급	600만원	1,200만원	2,000만원	4,000만원
8급	450만원	900만원	1,500만원	3,000만원
9급	360만원	720만원	1,200만원	2,400만원
10급	270만원	540만원	900만원	1,800만원
11급	210만원	420만원	700만원	1,400만원
12급	150만원	300만원	500만원	1,000만원
13급	90만원	180만원	300만원	600만원
14급	60만원	120만원	200만원	400만원

주) 장애등급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별표 2>에서 정한 후유장애구분에 의함

부 표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기간	지급이자
지급기일의 다음 날부터 30일 이내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지급기일의 31일이후부터 60일 이내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 가산이율(4.0%)
지급기일의 61일이후부터 90일 이내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 가산이율(6.0%)
지급기일의 91일이후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 가산이율(8.0%)

주) 보험계약대출이율은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적용합니다.

붙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별표1]

상해의 구분과 보험금 등의 한도금액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관련)

상해 급별	보험 가입금액	상 해 부 위
1급	3,000 만원	1. 수술 여부와 상관없이 뇌손상으로 신경학적 증상이 고도인 상해(신경학적 증상이 48시간 이상 지속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2. 양안 안구 파열로 안구 적출술 또는 안구내용 제거술과 의안 삽입술을 시행한 상해 3. 심장 파열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4. 흉부 대동맥 손상 또는 이에 준하는 대혈관 손상으로 수술 또는 스탠트그라프트 삽입술을 시행한 상해 5. 척주 손상으로 완전 사지마비 또는 완전 하반신마비를 동반한 상해 6. 척수 손상을 동반한 불안정성 방출성 척추 골절 7. 척수 손상을 동반한 척추 신연손상 또는 전위성(회전성) 골절 8. 상완신경총 완전 손상으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9. 상완부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한 상해(주관절부 이단을 포함한다) 10. 불안정성 골반골 골절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11. 비구 골절 또는 비구 골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12. 대퇴부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한 상해 13. 골의 분절 소실로 유리생골 이식술 을 시행한 상해(근육, 근막 또는 피부 등 연부 조직을 포함한 경우에 해당한다) 14. 화상.좌창.괴사창 등 연부 조직의 심한 손상이 몸 표면의 9퍼센트 이상인 상해 15. 그 밖에 1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2급	1,500 만원	1. 뇌손상으로 신경학적 증상이 중등도인 상해(신경학적 증상이 48시간 이상 지속되는 경우로 수술을 시행한 경우에 해당한다) 2. 흉부 기관, 기관지 파열, 폐 손상 또는 식도 손상으로 절제술을 시행한 상해 3. 내부 장기 손상으로 장기의 일부분이라도 적출 수술을 시행한 상해 4. 신장 파열로 수술한 상해 5. 척주 손상으로 불완전 사지마비를 동반한 상해 6. 신경 손상 없는 불안정성 방출성 척추 골절로 수술적 고정술을 시행한 상해 또는 경추 골절(치돌기 골절을 포함한다) 또는 탈구로 할로베스트나 수술적 고정술을 시행한 상해 7. 상완 신경총 상부간부 또는 하부간부의 완전 손상으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8. 전완부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한 상해 9. 고관절의 골절성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비구 골절을 동반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 10. 대퇴 골두 골절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11. 대퇴골 경부 분쇄 골절, 전자하부 분쇄 골절, 과부 분쇄 골절, 경골 과부 분쇄 골절 또는 경골 원위 관절내 분쇄 골절 12. 슬관절의 골절 및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13. 하퇴부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한 상해 14. 사지 연부 조직에 손상이 심하여 유리 피판술을 시행한 상해 15. 그 밖에 2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3급	1,200 만원	1. 뇌손상으로 신경학적 증상이 고도인 상해(신경학적 증상이 48시간 미만 지속되는 경우로 수술을 시행한 경우에 해당한다). 2. 뇌손상으로 신경학적 증상이 중등도인 상해(신경학적 증상이 48시간 이상 지속되는 경우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 3. 단안 안구 적출술 또는 안구 내용 제거술과 의안 삽입술을 시행한 상해 4. 흉부 대동맥 손상 또는 이에 준하는 대혈관 손상으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5. 절제술을 제외한 개흉 또는 흉강경 수술을 시행한 상해(진단적 목적으로 시행한 경우에는 4급에 해당한다) 6. 요도 파열로 요도 성형술 또는 요도 내시경을 이용한 요도 절개술을 시행한 상

상해 급별	보험 가입금액	상 해 부 위
		해 7. 내부 장기 손상으로 장기 적출 없이 재건수술 또는 지혈수술 등을 시행한 상해(장간막 파열을 포함한다) 8. 척주 손상으로 불완전 하반신마비를 동반한 상해 9. 견관절 골절 및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10. 상완부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주관절부 이단을 포함한다) 11. 주관절부 골절 및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12. 수근부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한 상해 13. 대퇴골 또는 경골 골절(대퇴골 골두 골절은 제외한다) 14. 대퇴부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5. 슬관절의 전방 및 후방 십자인대의 파열 16. 족관절 골절 및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17. 족근관절의 손상으로 족근골의 완전탈구가 동반된 상해 18. 족근부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한 상해 19. 그 밖에 3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4급	1,000 만원	1. 뇌손상으로 신경학적 증상이 고도인 상해(신경학적 증상이 48시간 미만 지속되는 경우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 2. 각막 이식술을 시행한 상해 3. 후안부 안내 수술을 시행한 상해(유리체 출혈, 망막 박리 등으로 수술을 시행한 경우에 해당한다) 4. 흉부 또는 복합 손상으로 인공호흡기를 시행한 상해(기관절개술을 시행한 경우도 포함한다) 5. 진단적 목적으로 복부 또는 흉부 수술을 시행한 상해(복강경 또는 흉강경 수술도 포함한다) 6. 상완신경총 완전 손상으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7. 상완신경총 불완전 손상으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2개 이상의 주요 말초신경 장애를 보이는 손상에 해당한다) 8. 상완골 경부 골절 9. 상완골 간부 분쇄성 골절 10. 상완골 과상부 또는 상완골 원위부 관절내 골절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경과 골절, 과간 골절, 내과 골절, 소두 골절 등에 해당한다) 11. 요골 원위부 골절과 척골 골두 탈구가 동반된 상해(갈레아찌 골절을 말한다) 12. 척골 근위부 골절과 요골 골두 탈구가 동반된 상해(몬테지아 골절을 말한다) 13. 전완부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4. 요수근관절 골절 및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수근골간 관절 탈구, 원위 요척관절 탈구를 포함한다) 15. 수근골 골절 및 탈구가 동반된 상해 16. 무지 또는 다발성 수지의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한 상해 17. 불안정성 골반골 골절로 수술하지 않은 상해 18. 골반환이 안정적인 골반골 골절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천골 골절 및 미골 골절을 포함한다) 19. 골반골 관절의 이개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20. 비구 골절 또는 비구 골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21. 슬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22. 하퇴부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23. 거골 또는 종골 골절 24. 무족지 또는 다발성 족지의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한 상해 25. 사지의 연부 조직에 손상이 심하여 유경 피판술 또는 원거리 피판술을 시행한 상해 26. 화상, 좌창, 괴사창 등으로 연부 조직의 손상이 몸 표면의 약 4.5퍼센트 이상인 상해 27. 그 밖에 4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5급	900	1. 뇌손상으로 신경학적 증상이 중등도에 해당하는 상해(신경학적 증상이 48시간

상해 급별	보험 가입금액	상 해 부 위
	만원	미만 지속되는 경우로 수술을 시행한 경우에 해당한다) 2. 안와 골절에 의한 복시로 안와 골절 재건술과 사시 수술을 시행한 상해 3. 복강내 출혈 또는 장기 파열 등으로 중재적 방사선학적 시술을 통하여 지혈술을 시행하거나 경피적 배액술 등을 시행하여 보존적으로 치료한 상해 4. 안정성 추체 골절 5. 상완 신경총 상부 간부 또는 하부 간부의 완전 손상으로 수술하지 않은 상해 6. 상완골 간부 골절 7. 요골 골두 또는 척골 구상돌기 골절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8. 요골과 척골의 간부 골절이 동반된 상해 9. 요골 경상돌기 골절 10. 요골 원위부 관절내 골절 11. 수근 주상골 골절 12. 수근부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3. 무지를 제외한 단일 수지의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한 상해 14. 고관절의 골절성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비구 골절을 동반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 15. 고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16. 대퇴골두 골절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7. 대퇴골 또는 근위 경골의 견열골절 18. 슬관절의 골절 및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9. 슬관절의 전방 또는 후방 십자인대의 파열 20. 슬개골 골절 21. 족관절의 양과 골절 또는 삼과 골절(내과, 외과, 후과를 말한다) 22. 족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23. 그 밖의 족근골 골절(거골 및 종골은 제외한다) 24. 중족족근관절 손상(리스프랑 관절을 말한다) 25. 3개 이상의 중족골 골절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26. 족근부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27. 무족지를 제외한 단일 족지의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한 상해 28. 아킬레스건, 슬개건, 대퇴 사두건 또는 대퇴 이두건 파열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29. 사지 근 또는 건 파열로 6개 이상의 근 또는 건 봉합술을 시행한 상해 30. 다발성 사지의 주요 혈관 손상으로 봉합술 또는 이식술을 시행한 상해 31. 사지의 주요 말초 신경 손상으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32. 23치 이상의 치과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 33. 그 밖에 5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6급	700 만원	1. 뇌손상으로 신경학증상이 경도인 상해(수술을 시행한 경우에 해당한다) 2. 뇌손상으로 신경학적 증상이 중등도에 해당하는 상해(신경학적 증상이 48시간 미만 지속되는 경우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 3. 전안부 안내 수술을 시행한 상해(외상성 백내장, 녹내장 등으로 수술을 시행한 경우에 해당한다) 4. 심장 타박 5. 폐좌상(일측 폐의 50퍼센트 이상 면적을 흉부 CT 등에서 확인한 경우에 한한다) 6. 요도 파열로 유치 카테타, 부지 삽입술을 시행한 상해 7. 혈흉 또는 기흉이 발생하여 폐쇄식 흉관 삽관수술을 시행한 상해 8. 견관절의 회전근개 파열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9. 외상성 상부관절와순 파열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10. 견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11. 견관절의 골절 및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2. 상완골 대결절 견열 골절 13. 상완골 원위부 견열골절(외상과 골절, 내상과 골절 등에 해당한다) 14. 주관절부 골절 및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5. 주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16. 주관절 내측 또는 외측 측부 인대 파열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상해 급별	보험 가입금액	상 해 부 위
		17. 요골간부 또는 원위부 관절외 골절 18. 요골 경부 골절 19. 척골 주두부 골절 20. 척골 간부 골절(근위부 골절은 제외한다) 21. 다발성 수근중수골 관절 탈구 또는 다발성 골절탈구 22. 무지 또는 다발성 수지의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23. 슬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24. 슬관절 내측 또는 외측 측부인대 파열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25. 반월상 연골 파열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26. 족관절 골절 및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27. 족관절 내측 또는 외측 측부인대의 파열 또는 골절을 동반하지 않은 원위 경비골 이개 28. 2개 이하의 중족골 골절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29. 무족지 또는 다발성 족지의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30. 사지 근 또는 건 파열로 3 ~ 5개의 근 또는 건 봉합술을 시행한 상해 31. 19치 이상 22치 이하의 치과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 32. 그 밖에 6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7급	500 만원	1. 다발성 안면 두개골 골절 또는 뇌신경 손상과 동반된 안면 두개골 골절 2. 복시를 동반한 마비 또는 제한 사시로 사시수술을 시행한 상해 3. 안와 골절로 재건술을 시행한 상해 4. 골다공증성 척추 압박골절 5. 쇄골 골절 6. 견갑골 골절(견갑골극, 체부, 흉곽내 탈구, 경부, 과부, 견봉돌기, 오구돌기를 포함한다) 7. 견봉 쇄골인대 및 오구 쇄골인대 완전 파열 8. 상완신경총 불완전 손상으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9. 요골 골두 또는 척골 구상돌기 골절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0. 척골 경상돌기 기저부 골절 11.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손상 12. 요수근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수근골간관절 탈구, 원위 요척관절 탈구를 포함한다) 13. 요수근관절 골절 및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수근골간관절 탈구, 원위 요척관절 탈구를 포함한다) 14. 주상골 외 수근골 골절 15. 수근부 주상골.월상골간 인대 파열 16. 수근중수골 관절의 탈구 또는 골절탈구 17. 다발성 중수골 골절 18. 중수수지관절의 골절 및 탈구 19. 무지를 제외한 단일 수지의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20. 골반골 관절의 이개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21. 고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22. 비골 간부 골절 또는 골두 골절 23. 족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24. 족관절 내과, 외과 또는 후과 골절 25. 무족지를 제외한 단일 족지의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26. 16치 이상 18치 이하의 치과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 27. 그 밖에 7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8급	300	1. 뇌손상으로 신경학적 증상이 경도인 상해(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 2. 상악골, 하악골, 치조골 등의 안면 두개골 골절

상해 급별	보험 가입금액	상 해 부 위
	만원	3. 외상성 시신경병증 4. 외상성 안검하수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5. 복합 고막 파열 6. 혈흉 또는 기흉이 발생하여 폐쇄식 흉관 삽관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7. 3개 이상의 다발성 늑골 골절 8. 각종 돌기 골절(극돌기, 횡돌기) 또는 후궁 골절 9. 견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0. 상완골 과상부 또는 상완골 원위부 관절내 골절(경과 골절, 과간 골절. 내과 골절, 소두 골절 등을 말한다)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1. 주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2. 중수골 골절 13. 수지골의 근위지간 또는 원위지간 골절 탈구 14. 다발성 수지골 골절 15. 무지 중수지관절 측부인대 파열 16. 골반환이 안정적인 골반골 골절(천골 골절 및 미골 골절을 포함한다)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7. 슬관절 십자인대 부분 파열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8. 3개 이상의 중족골 골절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9. 수족지골 골절 및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20. 사지의 근 또는 건 파열로 1 ~ 2개의 근 또는 건 봉합술을 시행한 상해 21. 사지의 주요 말초 신경 손상으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22. 사지의 감각 신경 손상으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23. 사지의 다발성 주요 혈관손상으로 봉합술 혹은 이식술을 시행한 상해 24. 사지의 연부 조직 손상으로 피부 이식술이나 국소 피판술을 시행한 상해 25. 13치 이상 15치 이하의 치과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 26. 그 밖에 8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9급	240 만원	1. 안면부의 비골 골절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2. 2개 이하의 단순 늑골골절 3. 고환 손상으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4. 음경 손상으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5. 흉골 골절 6. 추간판 탈출증 7. 흉쇄관절 탈구 8. 주관절 내측 또는 외측 측부 인대 파열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9. 요수근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수근골간관절 탈구, 원위 요척관절 탈구를 포함한다) 10. 수지골 골절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11. 수지관절 탈구 12. 슬관절 측부인대 부분 파열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3. 2개 이하의 중족골 골절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4. 수족지골 골절 또는 수족지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15. 그 밖에 명기되지 않은 견열골절 등 제불완전골절 16. 아킬레스건, 슬개건, 대퇴 사두건 또는 대퇴 이두건 파열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7. 수족지 신전건 1개의 파열로 건 봉합술을 시행한 상해 18. 사지의 주요 혈관손상으로 봉합술 혹은 이식술을 시행한 상해 19. 11치 이상 12치 이하의 치과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 20. 그 밖에 9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10급	200 만원	1. 3cm 이상 안면부 열상 2. 안검과 누소관 열상으로 봉합술과 누소관 재건술을 시행한 상해 3. 각막, 공막 등의 열상으로 일차 봉합술만 시행한 상해 4. 견관절부위의 회전근개 파열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5. 외상성 상부관절와순 파열 중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상해 급별	보험 가입금액	상 해 부 위
		6. 수족지관절 골절 및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7. 하지 3대 관절의 혈관절증 8. 연부조직 또는 피부 결손으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9. 9치 이상 10치 이하의 치과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 10. 그 밖에 10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11급	160 만원	1. 뇌진탕 2. 안면부의 비골 골절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는 상해 3. 수지골 골절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4. 수족지골 골절 또는 수족지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5. 6치 이상 8치 이하의 치과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 6. 그 밖에 11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12급	120 만원	1. 외상 후 급성 스트레스 장애 2. 3cm 미만 안면부 열상 3. 척추 염좌 4. 사지 관절의 근 또는 건의 단순 염좌 5. 사지의 열상으로 창상 봉합술을 시행한 상해(길이에 관계없이 적용한다) 6. 사지 감각 신경 손상으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7. 4치 이상 5치 이하의 치과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 8. 그 밖에 12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13급	80 만원	1. 결막의 열상으로 일차 봉합술을 시행한 상해 2. 단순 고막 파열 3. 흉부 타박상으로 늑골 골절 없이 흉부의 동통을 동반한 상해 4. 2치 이상 3치 이하의 치과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 5. 그 밖에 13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14급	50 만원	1. 방광, 요도, 고환, 음경, 신장, 간, 지라 등 손상으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2. 수족지 관절 염좌 3. 사지의 단순 타박 4. 1치 이하의 치과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 5. 그 밖에 14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비 고

영역	내 용
공통	1. 2급부터 11급까지의 상해 내용 중 2가지 이상의 상해가 중복된 경우에는 가장 높은 등급에 해당하는 상해로부터 하위 3등급(예: 상해내용이 2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급까지) 사이의 상해가 중복된 경우에만 가장 높은 상해 내용의 등급보다 한 등급 높은 금액으로 배상한다.(이하 "병급" 이라 한다) 2. 일반 외상과 치과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가 중복된 경우에는 각각의 상해 등급별 금액을 배상하되 그 합산액이 1급의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한다. 3. 1개의 상해에서 2개 이상의 상향 또는 하향 조정의 요인이 있을 때 등급 상향 또는 하향 조정은 1회만 큰 폭의 조정을 적용한다. 다만, 상향 조정 요인과 하향 조정 요인이 여러 개가 함께 있을 때는 큰 폭의 상향 또는 큰 폭의 하향 조정 요인을 각각 선택하여 함께 반영한다. 4. 재해 발생 시 만 13세 미만일 때 소아로 인정한다. 5. 연부 조직에 손상이 심하여 유리피판술, 유경 피판술, 원거리 피판술, 국소피판술이나 피부이식술을 시행할 경우, 안면부는 1등급 상위등급을 적용하고 수부, 족부에 국한된 손상에 대하여는 한 등급 아래의 등급을 적용한다.
두부	1. 뇌손상이란 국소성 뇌손상인 외상성 두개강안의 출혈(경막상,하 출혈, 뇌실 내 및 뇌실질 내 출혈, 거미막하 출혈 등을 말한다) 또는 경막하 수활액낭종, 거미막 낭종, 두개골 골절(두개 기저부 골절 포함한다) 등과 미만성 축삭손상을 포함한 뇌좌상을 말한다. 2. 4급 이하에서 의식 이외에 뇌신경 손상이나(국소) 신경학적 이상 소견이 있는 경우 한 등급 상향조정 가능하다. 3. 신경학적 증상은 글라스고우 혼수척도(Glasgow coma scale)로 구분하며, 고도는 8점

영역	내 용
	이하, 중등도는 9 ~ 12점, 경도는 13 ~ 15점을 말한다. 4. 글라스고우 혼수척도는 진정치료 전에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5. 글라스고우 혼수척도 평가 시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기관지 삽관이 필요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6. 의무기록 상 의식상태가 혼수(coma)와 반혼수(semicoma)는 고도, 혼미(stupor)는 중등도, 기면(drowsy)은 경도로 준용한다. 7. 두피 좌상, 열창은 14급에 준용한다. 8. 만성 경막하 혈종으로 수술을 시행한 경우에는 6급 2호에 준용한다. 9. 외상후 급성 스트레스 장애는 다른 진단이 전혀 없이 단독 상병으로 외상 후 1개월 이내 발병된 경우만 적용한다.
흉.복부	1. 심장타박(6급)의 경우, ①심전도에서 Tachyarrythmia 또는 ST변화 또는 부정맥, ②심초음파에서 심낭액증가소견이 있거나 심장벽운동저하, ③심장효소치증가(CPK-MB, and Troponin T) 세가지 요구 충족 시 인정한다.
척추	1. 완전 마비는 근력등급 3 이하인 경우이며, 불완전 마비는 근력등급 4인 경우로 정한다. 2. 척추관 협착증이나 추간판 탈출증이 외상으로 증상이 발생한 경우나 악화된 경우는 9급에 준용한다. 3. 척주 손상으로 인하여 신경근증 이나 감각이상을 호소하는 경우는 9급에 준용한다. 4. 마미증후군은 척수손상에 준용한다.
상하지 공통	1. 2급부터 11급까지의 내용 중 사지 골절에서 별도로 상해 등급이 규정되지 아니한 경우, 보존적 치료를 시행한 골절은 해당 등급에서 2급 낮은 등급을 적용하며, 도수 정복 및 경피적 핀고정술을 시행한 경우에는 해당 등급에서 1급 낮은 등급을 적용한다. 2. 2급부터 11급까지의 상해 내용 중 개방성 골절 또는 탈구에서 거스틸로 2형 이상(개방창의 길이가 1cm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의 개방성 골절 또는 탈구에서만 1등급 상위 등급을 적용한다. 3. 2급부터 11급까지의 상해 내용 중 '수술적 치료를 시행하지 않은'이라고 명기되지 않은 각 등급 손상 내용은 수술적 치료를 시행한 경우를 말하며 보존적 치료를 시행한 경우가 따로 명시되지 않은 경우는 두 등급 하향 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4. 양측 또는 단측을 별도로 규정한 경우에는 병합하지 않으나, 별도 규정이 없는 양측 손상인 경우에는 병합한다. 5. 골절에 주요 말초신경의 손상 동반 시 해당 골절보다 1등급 상위 등급을 적용한다. 6. 재접합술을 시행한 절단소실의 경우 해당부위의 절단보다 2급 높은 등급을 적용한다. 7. 아절단은 완전 절단에 준한다. 8. 관절 이단의 경우 상위부 절단을 준용한다. 9. 골절 치료로 인공관절 치환술 시행할 경우 해당부위의 골절과 동일한 등급을 준용한다. 10. 사지 근 또는 건의 부분 파열로 보존적으로 치료한 경우 근 또는 건의 단순 염좌(12급)을 준용한다. 11. 사지 관절의 인공관절 재치환 시 해당 부위 골절보다 1등급 높은 등급을 적용한다. 12. 보존적으로 치료한 사지 주요관절 골절 및 탈구는 해당관절의 골절 및 탈구보다 3등급 낮은 등급을 적용한다. 13. 수술을 시행한 사지 주요 관절 탈구는 해당 관절의 보존적으로 치료한 탈구보다 2등급 높은 등급을 적용한다. 14. 동일 관절 혹은 동일 골의 손상은 병합하지 않으며 상위 등급을 적용한다 15. 분쇄 골절을 형성하는 골절선은 선상 골절이 아닌 골절선으로 판단한다. 16. 수족지 절단 시 절단부위에 따른 차이는 두지 않는다. 17. 근, 건, 인대 파열이라 함은 완전 파열을 의미하며, 부분 파열은 수술을 시행한 경우에 완전 파열로 준용한다. 18. 사지골 골절 중 불명확한 상해등급에서 별도로 명시하지 않은 사지골 골절(견열골절을 포함한다)은 제불완전골절에 준용한다. 다만, 관혈적 정복술을 시행한 경우는 해당 부위 골절 항에 적용한다. 19. 사지골 골절 시 시행한 외고정술도 수술을 한 것으로 간주한다. 20. 소아의 경우, 성인의 동일 부위 골절보다 1급 낮게 적용한다. 다만, 성장판 손상이 동반된 경우와 연부조직 손상은 성인과 동일한 등급을 적용한다. 21. 주요 동맥 또는 정맥 파열로 봉합술을 시행한 상해의 경우, 주요 동맥 또는 정맥이란 수술을 통한 혈행의 확보가 의학적으로 필요한 경우를 말하며, 다발성 혈관 손상이란 2부위 이상의 주요 동맥 또는 정맥의 손상을 의미한다.
상지	1. 상부관절순 파열은 외상성 파열만 인정한다. 2. 회전근개 파열 개수에 따른 차등을 두지 않는다.

영역	내 용
	3. 6급의 견관절 탈구에서 재발성 탈구를 초래할 수 있는 해부학적 병변이 병발된 경우는 수술 여부에 상관없이 6급을 적용한다. 4. 견봉 쇄골간 관절 탈구, 관절낭 또는 견봉 쇄골간 인대 파열은 견봉 쇄골인대 및 오구 쇄골인대의 완전 파열에 포함되고, 견봉 쇄골인대 및 오구 쇄골인대의 완전 파열로 수술한 경우 7급을 적용하며, 부분 파열로 보존적 치료를 시행한 경우 9급을 적용하고, 단순 염좌의 경우 12급을 적용한다.
하지	1. 양측 치골지 골절, 치골 상하지 골절 등에서는 병급하지 않는다. 2. 천골 골절, 미골 골절도 골반골 골절로 준용한다. 3. 슬관절 십자인대 파열은 전후방 십자인대의 동시 파열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병급하지 않으나 내외측 측부인대 동시 파열, 십자인대와 측부인대 파열, 반월상 연골판 파열 등은 병급한다. 4. 후경골건 및 전경골건 파열은 족관절 측부인대 파열로 수술을 시행한 경우의 등급을 준용한다. 5. 대퇴골 또는 경비골의 견열성 골절의 경우, 동일 관절의 인대 손상에 대해서 수술적 치료를 시행한 경우는 인대 손상 등급을 준용한다. 6. 경골 후과의 단독 골절 시 족관절 내과 또는 외과의 골절에 준용한다. 7. 고관절이란 대퇴골두와 골반골의 비구를 포함하며, 골절 탈구란 골절과 동시에 관절의 탈구가 발생한 상태를 말한다. 8. 불안정성 골반 골절은 골반환을 이루는 골간의 골절 탈구를 포함한다. 9. 하지의 3대 관절이란 고관절, 슬관절, 족관절을 말한다. 10. 슬관절의 전방 또는 후방 십자인대의 파열은 인대 복원수술을 시행하거나 완전 파열에 준하는 파열에 적용한다. 11. 골반환이 안정적인 골반골의 수술을 시행한 골절은 치골 골절로 수술한 경우 등을 포함한다.

붙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별표2]**

후유장애의 구분과 책임보험금 등의 한도금액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제3조 제1항 제3호관련)

장애 급별	보험 가입금액	신체장애 내용
1급	1억5천 만원	1. 두 눈이 실명된 사람 2. 말하는 기능과 음식물을 씹는 기능을 완전히 잃은 사람 3.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항상 보호를 받아야 하는 사람 4.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항상 보호를 받아야 하는 사람 5. 반신마비가 된 사람 6. 두 팔을 팔꿈치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7. 두 팔을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8. 두 다리를 무릎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9. 두 다리를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2급	1억3500 만원	1. 한 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시력이 0.02 이하로 된 사람 2. 두 눈의 시력이 각각 0.02 이하로 된 사람 3. 두 팔을 손목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4. 두 다리를 발목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5.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수시로 보호를 받아야 하는 사람 6.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수시로 보호를 받아야 하는 사람
3급	1억2천 만원	1. 한 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시력이 0.06 이하로 된 사람 2. 말하는 기능이나 음식물을 씹는 기능을 완전히 잃은 사람 3.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일생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 4.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일생동안 노무에 종사 할 수 없는 사람 5. 두 손의 손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4급	1억500 만원	1. 두 눈의 시력이 0.06 이하로 된 사람 2. 말하는 기능과 음식물을 씹는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은 사람 3. 고막의 전부의 결손되거나 그 외의 원인으로 인하여 두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은 사람 4. 한 팔을 팔꿈치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5. 한 다리를 무릎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6. 두 손의 손가락을 모두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7. 두 발을 족근중족(Lisfranc)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5급	9,000 만원	1. 한 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시력이 0.1 이하로 된 사람 2. 한 팔을 손목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3. 한 다리를 발목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4. 한쪽 팔을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5. 한쪽 다리를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6. 두 발의 발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7.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특별히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사람 8.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특별히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사람
6급	7,500 만원	1. 두 눈의 시력이 0.1 이하로 된 사람 2. 말하는 기능이나 음식물을 씹는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은 사람 3. 고막의 대부분의 결손되거나 그 외의 원인으로 인하여 두 귀의 청력이 모두 귀에 입을 대고 말하지 아니하면 큰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4. 한 귀가 전혀 들리지 아니하게 되고 다른 귀의 청력이 4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5. 척추에 뚜렷한 기형이나 뚜렷한 운동장애가 남은 사람 6. 한쪽 팔의 3대 관절 중 2개 관절을 못쓰게 된 사람 7.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2개 관절을 못쓰게 된 사람

장애 급별	보험 가입금액	신체장애 내용
		8. 한쪽 손의 5개 손가락을 잃거나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4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7급	6,000 만원	1. 한쪽 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시력이 0.6 이하로 된 사람 2. 두 귀의 청력이 모두 4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3. 한쪽 귀가 전혀 들리지 아니하게 되고 다른 쪽 귀의 청력이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4.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애가 남아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 5.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애가 남아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 6.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이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 이상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7. 한쪽 손의 5개의 손가락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4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8. 한쪽 발을 족근중족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9. 한쪽 팔에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운동장애가 남은 사람 10. 한쪽 다리에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운동장애가 남은 사람 11. 두 발의 발가락을 모두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12. 외모에 뚜렷한 흉터가 남은 사람 13. 양쪽의 고환을 잃은 사람
8급	4,500 만원	1. 한쪽 눈의 시력이 0.02 이하로 된 사람 2. 척추에 운동장애가 남은 사람 3.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4.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또는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이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 이상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5. 한쪽 다리가 5센티미터 이상 짧아진 사람 6. 한쪽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7.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8. 한쪽 팔에 가관절이 남은 사람 9. 한쪽 다리에 가관절이 남은 사람 10. 한쪽 발의 발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11. 비장 또는 한쪽의 신장을 잃은 사람
9급	3,800 만원	1. 두 눈의 시력이 각각 0.6 이하로 된 사람 2. 한쪽 눈의 시력이 0.06 이하로 된 사람 3. 두 눈에 반맹증.시야협착 또는 시야결손이 남은 사람 4. 두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결손이 남은 사람 5. 코가 결손되어 그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은 사람 6. 말하는 기능과 음식물을 씹는 기능에 장애가 남은 사람 7. 두 귀의 청력이 모두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8. 한쪽 귀의 청력이 귀에 입을 대고 말하지 아니하면 큰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고 다른 쪽 귀의 청력이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9. 한쪽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은 사람 10.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외의 3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11.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12. 한쪽 발의 엄지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 이상의 발가락을 잃은 사람 13. 한쪽 발의 발가락을 모두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14. 생식기에 뚜렷한 장애가 남은 사람 15.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애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 16.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애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
10급		1. 한쪽 눈의 시력이 0.1 이하로 된 사람

장애 급별	보험 가입금액	신체장애 내용
	2,700 만원	2. 말하는 기능이나 음식물을 씹는 기능에 장애가 남은 사람 3. 14개 이상의 치아에 대하여 치과보철을 한 사람 4. 한쪽 귀의 청력이 귀에 입을 대고 말하지 아니하면 큰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5. 두 귀의 청력이 모두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는 데 지장이 있는 사람 6. 한쪽 손의 둘째손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외의 2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7.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또는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또는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외의 3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8. 한쪽 다리가 3센티미터 이상 짧아진 사람 9. 한쪽 발의 엄지발가락 또는 그 외의 4개의 발가락을 잃은 사람 10. 한쪽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은 사람 11.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은 사람
11급	2,300 만원	1. 두 눈이 모두 근접반사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거나 또는 뚜렷한 운동장애가 남은 사람 2. 두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장애가 남은 사람 3. 한쪽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결손이 남은 사람 4. 한쪽 귀의 청력이 4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5. 두 귀의 청력이 모두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작은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6. 척추에 기형이 남은 사람 7. 한쪽 손의 가운데손가락 또는 넷째손가락을 잃은 사람 8. 한쪽 손의 둘째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또는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외의 2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9. 한쪽 발의 엄지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 이상의 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10.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장애가 남은 사람 11. 10개 이상의 치아에 대하여 치과보철을 한 사람
12급	1,900 만원	1. 한쪽 눈의 근접반사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있거나 뚜렷한 운동장애가 남은 사람 2. 한쪽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운동장애가 남은 사람 3. 7개 이상의 치아에 대하여 치과보철을 한 사람 4. 한쪽 귀의 귓바퀴가 대부분 결손된 사람 5. 쇄골, 흉골, 늑골, 견갑골 또는 골반골에 뚜렷한 기형이 남은 사람 6. 한쪽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애가 남은 사람 7.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애가 남은 사람 8. 장관골에 기형이 남은 사람 9. 한쪽 손의 가운데손가락이나 넷째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10. 한쪽 발의 둘째발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한쪽 발의 둘째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발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한쪽 발의 가운데발가락 이하의 3개의 발가락을 잃은 사람 11. 한쪽 발의 엄지발가락 또는 그 외의 4개의 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12. 국부에 뚜렷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 13. 외모에 흉터가 남은 사람
13급	1,500 만원	1. 한쪽 눈의 시력이 0.6 이하로 된 사람 2. 한쪽 눈에 반맹증, 시야협착 또는 시야결손이 남은 사람 3. 두 눈의 눈꺼풀의 일부에 결손이 남거나 속눈썹에 결손이 남은 사람 4. 5개 이상의 치아에 대하여 치과보철을 한 사람 5. 한쪽 손의 새끼손가락을 잃은 사람 6.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 마디뼈의 일부를 잃은 사람 7. 한쪽 손의 둘째손가락 마디뼈의 일부를 잃은 사람 8. 한쪽 손의 둘째손가락의 끝관절을 굽히고 펼 수 없게 된 사람 9. 한쪽 다리가 1센티미터 이상 짧아진 사람 10. 한쪽 발의 가운데발가락 이하의 발가락 1개 또는 2개를 잃은 사람 11. 한쪽 발의 둘째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또는 한쪽 발이 둘째발가락을

장애 급별	보험 가입금액	신체장애 내용
		포함하여 2개의 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또는 한쪽 발의 가운데발가락 이하의 발가락 3개를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14급	1천 만원	1. 한쪽 눈의 눈꺼풀의 일부에 결손이 있거나 속눈썹에 결손이 남은 사람 2. 3개 이상의 치아에 대하여 치과보철을 한 사람 3. 한쪽 귀의 청력이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4. 팔의 노출된 면에 손바닥 크기의 흉터가 남은 사람 5. 다리의 노출된 면에 손바닥 크기의 흉터가 남은 사람 6. 한쪽 손의 새끼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7.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외의 손가락 마디뼈의 일부를 잃은 사람 8.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외의 손가락 끝관절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9. 한 발의 가운데발가락 이하의 발가락 1개 또는 2개를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10.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

비 고

1. 신체장애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중한 신체장애에 해당하는 장애등급보다 한 등급 높은 금액으로 배상한다.
2. 시력의 측정은 국제식 시력표로 하며, 굴절 이상이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교정시력을 측정한다.
3. '손가락을 잃은 것'이란 엄지손가락은 지관절, 그 밖의 손가락은 제1지관절 이상을 잃은 경우를 말한다.
4.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것'이란 손가락 끝부분의 2분의1 이상을 잃거나 중수지관절 또는 제1지관절(엄지손가락의 경우에는 지관절을 말한다)에 뚜렷한 운동장애가 남은 경우를 말한다.
5. '발가락을 잃은 것'이란 발가락의 전부를 잃은 경우를 말한다.
6. '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것'이란 엄지발가락은 끝관절의 2분의1 이상을, 그 밖의 발가락은 끝관절 이상을 잃거나 중족지관절 또는 제1지관절 (엄지발가락의 경우에는 지관절을 말한다)에 뚜렷한 운동장애가 남은 경우를 말한다.
7. '흉터가 남은 것'이란 성형수술한 후에도 육안으로 식별이 가능한 흔적이 있는 상태를 말한다.
8. '항상 보호를 받아야 하는 것'이란 일상생활에서 기본적인 음식섭취, 배뇨 등을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여야 하는 것을 말한다.
9. '수시로 보호를 받아야 하는 것'이란 일상생활에서 기본적인 음식섭취, 배뇨 등은 가능하나 그 외의 일은 다른 사람에게 의존 하여야 하는 것을 말한다.
10. '항상 보호 또는 수시 보호를 받아야하는 기간'은 의사가 판정하는 노동능력상실기간을 기준으로 하여 타당한 기간으로 정한다.
11. '제대로 못쓰게 된 것'이란 정상기능의 4분의 3이상을 상실한 경우를 말하고, 뚜렷한 장애가 남은 것이란 정상 기능의 2분의1 이상을 상실한 경우를 말하며, 장애가 남은 것이란 정상기능의 4분의 1 이상을 상실한 경우를 말한다.
12.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특별히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것'이란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뚜렷한 장애로 노동능력이 일반인의 4분의 1 정도만 남아 평생 동안 특별히 쉬운 일 이외에는 노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을 말한다.
13.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애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것'이란 노동능력이 어느 정도 남아 있으나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애로 종사할 수 있는 직종의 범위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신체적 능력은 정상이지만 뇌손상에 따른 정신적 결손증상이 인정되는 경우
    나. 전간(癲癎) 발작과 현기증이 나타날 가능성이 의학적, 타각적(他覺的) 소견으로 증명되는 사람
    다. 사지에 경도(經渡)의 단마비(單痲痺)가 인정되는 사람
14.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특별히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것'이란 흉복부 장기의 장애로 노동능력이 일반인의 4분의 1 정도만 남은 경우를 말한다.
15.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애가 남아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것'이란 증등도(中等度)의 흉복부 장기의 장애로 노동능력이 일반인의 2분의 1정도만 남은 경우를 말한다.
16.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애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것'이란 중등도의 흉복부 장기의 장애로 취업가능한 직종의 범위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경우를 말한다.

KB다이렉트(인터넷)개인용자동차보험 특별약관 |

Ⅰ. 운전 가능자에 대한 제한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사람을 제한하는 특약입니다. 이 특약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으나, 운전 가능 범위 이외의 자가 운전할 경우에는 대인배상Ⅰ을 제외하고 보상을 받을 수 없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 운전자연령 만 21/22/24/26/28/30/35/43/48세 이상 한정운전 특별약관 | 90
   ① 운전자 연령 만 45세 이하 한정운전 추가 특별약관 | 90
   ② 운전자 연령 만 58세 이하 한정운전 추가 특별약관 | 91
   ③ 운전자 연령 만 65세 이하 한정운전 추가 특별약관 | 93
   ④ 운전자 연령 만 73세 이하 한정운전 추가 특별약관 | 94
2. 가족 및 형제자매 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 | 95
3. 가족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 | 96
4. 부부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 | 97
5. 기명피보험자 한정운전 특별약관 | 97
6. 기명피보험자 및 지정1인 한정운전 특별약관 | 98
7. 가족 및 지정 1인 한정운전 특별약관 | 99
8. 부부 및 지정 1인 한정운전 특별약관 | 99
9. 부부 및 자녀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 | 100
10. 기명피보험자 및 자녀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 | 101
11. 자녀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 | 102
12. 단기운전자확대 특별약관 | 102
13. 실시간단기운전자확대 특별약관 | 103
14. 명절임시운전담보 특별약관 | 103
15. 대리운전/취급업자 운전중 위험담보 특별약관 | 104
16. 임직원 운전자한정 특별약관 | 105

Ⅱ. 보험료 납입

1. 보험료 분할납입 특별약관 | 107
2. 신용카드 및 전자결제 납입 특별약관 | 108
3. 보험료 자동납입 특별약관 | 108

Ⅲ. 긴급출동서비스

1. 매직카서비스(견인 10km) 특별약관 | 110
2. 매직카서비스(견인 10km)슬림형 특별약관 | 113
3. 뉴매직카서비스(견인 70km) 특별약관 | 116
4. 매직카서비스(수소/전기차(견인 100km)) 특별약관 | 120

Ⅰ. 운전 가능자에 대한 제한

Ⅰ-1 운전자연령 만 21/22/24/26/28/30/35/43/48세 이상 한정운전 특별약관

제1조(보상내용)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동차(이하 '피보험자동차'라 합니다)에 대하여 운전할 자를 만 21/22/24/26/28/30/35/43/48세 이상으로 한정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합니다.

제2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① 회사는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만 21/22/24/26/28/30/35/43/48세 미만의 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발생된 사고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② 제①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대인배상Ⅰ
2. 회사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이 특별약관의 내용을 알려주었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대인배상Ⅱ',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자기차량손해' 및 '대물배상 가입금액 확장 특별약관', '외산차 충돌 확대보상 특별약관','자동차상해 특별약관','수요일·주말 보상확대 특별약관','자기차량손해 포괄 특별약관'의 손해
3. 피보험자동차를 도난당하였을 경우 그 도난당하였을 때로부터 발견될 때까지의 사이에 발생된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한 보통약관 '대인배상Ⅱ',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자기차량손해' 및 '대물배상 가입금액 확장 특별약관', '외산차 충돌 확대보상 특별약관','자동차상해 특별약관','수요일·주말 보상확대 특별약관','자기차량손해 포괄 특별약관의 손해
4. 관련법규에 의해 사업자등록을 한 자동차취급업자가 업무상 위탁받은 피보험자동차를 사용하거나 관리하던 중 발생된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한 손해 중에서 보통약관 제2편 「대인배상Ⅱ와 대물배상」에서 보상하는 손해. 다만, 자동차취급업자가 가입한 보험계약에서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는 경우에 그 보험금을 초과하는 손해를 보상합니다. 단 대물배상의 경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하는 금액을 한도로 보상합니다.

용어풀이

이 특별약관에서 만 21/22/24/26/28/30/35/43/48세 미만의 자란 주민등록상의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사고일 현재 만 21/22/24/26/28/30/35/43/4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합니다.

제3조(준용 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① 운전자 연령 만 45세 이하 한정운전 추가 특별약관

제1조(가입대상)
이 특별약관은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에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① '운전자연령 만 35세 이상 한정운전특별약관' 또는 '운전자연령 만 43세 이상 한정운전 특별약관'에 가입한 경우
② '기명피보험자 한정운전 특별약관' 또는 '기명피보험자 및 지정 1인 한정운전 특별약관' 또는

'부부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 또는 '부부 및 지정 1인 한정운전 특별약관'에 가입한 경우

③ 운전가능자에 속하는 자의 연령이 모두 만 45세 이하인 경우

용어풀이

이 특별약관에서 만 45세 이하는 주민등록상의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이 보험계약의 보험기간종료일에 만 45세 이하인 경우를 말합니다.

제2조(보상내용)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동차(이하 '피보험자동차'라 합니다)에 대하여 운전할 자를 만 45세 이하로 한정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합니다.

제3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① 회사는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만 46세 이상의 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발생된 사고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② 제 ①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대인배상 I
2. 회사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이 특별약관의 내용을 알려주었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대인배상II',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자기차량손해' 및 '대물배상 가입금액 확장 특별약관', '외산차 충돌 확대보상 특별약관','자동차상해 특별약관','수요일·주말 보상확대 특별약관','자기차량손해 포괄 특별약관'의 손해
3. 피보험자동차를 도난당하였을 경우 그 도난당하였을 때로부터 발견될 때까지의 사이에 발생된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한 보통약관 '대인배상II',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자기차량손해' 및 '대물배상 가입금액 확장 특별약관', '외산차 충돌 확대보상 특별약관','자동차상해 특별약관','수요일·주말 보상확대 특별약관','자기차량손해 포괄 특별약관'의 손해
4. 관련법규에 의해 사업자등록을 한 자동차취급업자가 업무상 위탁받은 피보험자동차를 사용하거나 관리하던 중 발생된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한 손해 중에서 보통약관 제2편「대인배상II와 대물배상」에서 보상하는 손해. 다만, 자동차취급업자가 가입한 보험계약에서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는 경우에 그 보험금을 초과하는 손해를 보상합니다. 단 대물배상의 경우「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제5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하는 금액을 한도로 보상합니다.

용어풀이

이 특별약관에서 만 46세 이상은 주민등록상의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사고일 현재 만 46세이상인 사람을 말합니다.

제4조(준용 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제5조(기타)

이 특별약관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운전자연령 만 35/43세 이상 한정운전 특별약관'과 동시에 적용됩니다.

② 운전자 연령 만 58세 이하 한정운전 추가 특별약관

제1조(가입대상)
이 특별약관은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에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① '운전자연령 만 35세 이상 한정운전특별약관' 또는 '운전자연령 만 43세 이상 한정운전 특별약관' 또는 '운전자연령 만 48세 이상 한정운전 특별약관'에 가입한 경우
② '기명피보험자 한정운전 특별약관' 또는 '기명피보험자 및 지정 1인 한정운전 특별약관' 또는 '부부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 또는 '부부 및 지정 1인 한정운전 특별약관'에 가입한 경우
③ 운전가능자에 속하는 자 중 적어도 한 명의 연령이 만 46세 이상인 경우
④ 운전가능자에 속하는 자의 연령이 모두 만 58세 이하인 경우

용어풀이

이 특별약관에서 만 46세 이상(만 58세 이하)는 주민등록상의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이 보험계약의 보험기간종료일에 만 46세 이상(만 58세 이하)인 경우를 말합니다.

제2조(보상내용)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동차(이하 '피보험자동차'라 합니다)에 대하여 운전할 자를 만 58세 이하로 한정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합니다.

제3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① 회사는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만 59세 이상의 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발생된 사고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② 제 ①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대인배상Ⅰ
2. 회사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이 특별약관의 내용을 알려주었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대인배상Ⅱ',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자기차량손해' 및 '대물배상 가입금액 확장 특별약관', '외산차 충돌 확대보상 특별약관','자동차상해 특별약관','수요일·주말 보상확대 특별약관','자기차량손해 포괄 특별약관'의 손해
3. 피보험자동차를 도난당하였을 경우 그 도난당하였을 때로부터 발견될 때까지의 사이에 발생된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한 보통약관 '대인배상Ⅱ',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자기차량손해' 및 '대물배상 가입금액 확장 특별약관', '외산차 충돌 확대보상 특별약관','자동차상해 특별약관','수요일·주말 보상확대 특별약관','자기차량손해 포괄 특별약관'의 손해
4. 관련법규에 의해 사업자등록을 한 자동차취급업자가 업무상 위탁받은 피보험자동차를 사용하거나 관리하던 중 발생된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한 손해 중에서 보통약관 제2편「대인배상Ⅱ와 대물배상」에서 보상하는 손해. 다만, 자동차취급업자가 가입한 보험계약에서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는 경우에 그 보험금을 초과하는 손해를 보상합니다. 단 대물배상의 경우「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제5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하는 금액을 한도로 보상합니다.

용어풀이

이 특별약관에서 만 59세 이상은 주민등록상의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사고일 현재 만 59세이상인 사람을 말합니다.

제4조(준용 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제5조(기타)
이 특별약관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운전자연령 만 35/43/48세 이상 한정운전 특별약관'과 동시에 적용됩니다.

③ 운전자 연령 만 65세 이하 한정운전 추가 특별약관

제1조(가입대상)
이 특별약관은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에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① '운전자연령 만 35세 이상 한정운전특별약관' 또는 '운전자연령 만 43세 이상 한정운전 특별약관' 또는 '운전자연령 만 48세 이상 한정운전 특별약관'에 가입한 경우
② '기명피보험자 한정운전 특별약관' 또는 '기명피보험자 및 지정 1인 한정운전 특별약관' 또는 '부부 한정운전 특별약관' 또는 '부부 및 지정 1인 한정운전 특별약관'에 가입한 경우
③ 운전가능자에 속하는 자 중 적어도 한 명의 연령이 만 59세 이상인 경우
④ 운전가능자에 속하는 자의 연령이 모두 만 65세 이하인 경우

용어풀이

이 특별약관에서 만 59세 이상(만 65세 이하)는 주민등록상의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이 보험계약의 보험기간종료일에 만 59세 이상(만 65세 이하)인 경우를 말합니다.

제2조(보상내용)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동차(이하 '피보험자동차'라 합니다)에 대하여 운전할 자를 만 65세 이하로 한정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합니다.

제3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① 회사는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만 66세 이상의 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발생된 사고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② 제 ①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대인배상Ⅰ
2. 회사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이 특별약관의 내용을 알려주었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대인배상Ⅱ',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자기차량손해' 및 '대물배상 가입금액 확장 특별약관', '외산차 충돌 확대보상 특별약관','자동차상해 특별약관','수요일·주말 보상확대 특별약관','자기차량손해 포괄 특별약관','프리미엄 차량 담보 특별약관'의 손해
3. 피보험자동차를 도난당하였을 경우 그 도난당하였을 때로부터 발견될 때까지의 사이에 발생된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한 보통약관 '대인배상Ⅱ',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자기차량손해' 및 '대물배상 가입금액 확장 특별약관', '외산차 충돌 확대보상 특별약관','자동차상해 특별약관','수요일·주말 보상확대 특별약관','자기차량손해 포괄 특별약관','프리미엄 차량 담보 특별약관'의 손해
4. 관련법규에 의해 사업자등록을 한 자동차취급업자가 업무상 위탁받은 피보험자동차를 사용하거나 관리하던 중 발생된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한 손해 중에서 보통약관 제2편 「대인배상Ⅱ와 대물배상」에서 보상하는 손해. 다만, 자동차취급업자가 가입한 보험계약에서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는 경우에 그 보험금을 초과하는 손해를 보상합니다. 단 대물배상의 경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하는 금액을 한도로 보상합니다.

용어풀이

이 특별약관에서 만 66세 이상은 주민등록상의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사고일 현재 만 66세이상인 사람을 말합니다.

제4조(준용 규정)
이 특변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제5조(기타)
이 특별약관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운전자연령 만 35/43/48세 이상 한정운전 특별약관'과 동시에 적용됩니다.

④ 운전자 연령 만 73세 이하 한정운전 추가 특별약관

제1조(가입대상)
이 특별약관은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에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① '운전자연령 만 35세 이상 한정운전특별약관' 또는 '운전자연령 만 43세 이상 한정운전 특별약관' 또는 '운전자연령 만 48세 이상 한정운전 특별약관'에 가입한 경우
② '기명피보험자 한정운전 특별약관' 또는 '기명피보험자 및 지정 1인 한정운전 특별약관' 또는 '부부 한정운전 특별약관' 또는 '부부 및 지정 1인 한정운전 특별약관'에 가입한 경우
③ 운전가능자에 속하는 자 중 적어도 한 명의 연령이 만 66세 이상인 경우
④ 운전가능자에 속하는 자의 연령이 모두 만 73세 이하인 경우

용어풀이

이 특별약관에서 만 66세 이상(만 73세 이하)는 주민등록상의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이 보험계약의 보험기간종료일에 만 66세 이상(만 73세 이하)인 경우를 말합니다.

제2조(보상내용)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동차(이하 '피보험자동차'라 합니다)에 대하여 운전할 자를 만 73세 이하로 한정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합니다.

제3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① 회사는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만 74세 이상의 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발생된 사고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② 제 ①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대인배상Ⅰ
2. 회사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이 특별약관의 내용을 알려주었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대인배상Ⅱ',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자기차량손해' 및 '대물배상 가입금액 확장 특별약관', '외산차 충돌 확대보상 특별약관','자동차상해 특별약관','수요일·주말 보상확대 특별약관','자기차량손해 포괄 특별약관','프리미엄 차량 담보 특별약관'의 손해
3. 피보험자동차를 도난당하였을 경우 그 도난당하였을 때로부터 발견될 때까지의 사이에 발생된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한 보통약관 '대인배상Ⅱ',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자기차량손해' 및 '대물배상 가입금액 확장 특별약관', '외산차 충돌 확대보상 특

별약관',’자동차상해 특별약관',’수요일·주말 보상확대 특별약관',’자기차량손해 포괄 특별약관',’프리미엄 차량 담보 특별약관’의 손해

4. 관련법규에 의해 사업자등록을 한 자동차취급업자가 업무상 위탁받은 피보험자동차를 사용하거나 관리하던 중 발생된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한 손해 중에서 보통약관 제2편 「대인배상Ⅱ와 대물배상」에서 보상하는 손해. 다만, 자동차취급업자가 가입한 보험계약에서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는 경우에 그 보험금을 초과하는 손해를 보상합니다. 단 대물배상의 경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하는 금액을 한도로 보상합니다.

용어풀이

이 특별약관에서 만 74세 이상은 주민등록상의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사고일 현재 만 74세이상인 사람을 말합니다.

제4조(준용 규정)
이 특변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제5조(기타)
이 특별약관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운전자연령 만 35/43/48세 이상 한정운전 특별약관’과 동시에 적용됩니다.

Ⅰ-2 가족 및 형제자매 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

제1조(보상내용)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동차(이하 ’피보험자동차’라 합니다)에 대하여 운전할 자를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이하 ’기명피보험자’라 합니다)와 그 가족 및 형제자매로 한정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합니다.

제2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기명피보험자와 그 가족, 형제 및 자매이외의 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발생된 사고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해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피보험자동차를 도난당하였을 경우 그 도난당하였을 때로부터 발견될 때까지의 사이에 발생된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한 보통약관 ’대인배상Ⅱ’,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자기차량손해’ 및 ’대물배상 가입금액 확장 특별약관’, ’외산차 충돌 확대보상 특별약관',’자동차상해 특별약관',’수요일·주말 보상확대 특별약관',’자기차량손해 포괄 특별약관’의 손해
2. 관련법규에 의해 사업자등록을 한 자동차취급업자가 업무상 위탁받은 피보험자동차를 사용하거나 관리하던 중 발생된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한 손해 중에서 보통약관 제2편 「대인배상Ⅱ와 대물배상」에서 보상하는 손해. 다만, 자동차취급업자가 가입한 보험계약에서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는 경우에 그 보험금을 초과하는 손해를 보상하고, 대물배상의 경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하는 금액을 한도로 보상합니다.

제3조(준용 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제4조(기타)
이 특별약관은 대인배상Ⅰ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대인배상Ⅰ은 보통약관에 의하여 보상합

니다.

용어풀이

이 약관에서 기명피보험자의 가족 및 형제자매라 함은 ① 기명피보험자의 부모와 양부모, 계부모(단, 부모, 양부모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 제외) ② 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의 부모 또는 양부모, 계부모(단, 부모, 양부모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 제외) ③ 법률상의 배우자 또는 사실혼관계에 있는 배우자 ④ 법률상의 혼인관계에서 출생한 자녀, 사실혼관계에서 출생한 자녀, 양자 또는 양녀, 계자녀(단,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가 타인과의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 제외) ⑤ 기명피보험자의 며느리 또는 사위(계자녀의 배우자 포함. 단, 자녀, 계자녀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 제외) ⑥ 법률 또는 사실혼관계상 부 또는 모를 같이하는 기명피보험자의 형제 및 자매를 말합니다.

Ⅰ-3 가족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

제1조(보상내용)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동차(이하 '피보험자동차'라 합니다)에 대하여 운전할 자를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이하 '기명피보험자'라 합니다)와 그 가족으로 한정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합니다.

제2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기명피보험자와 그 가족 이외의 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발생된 사고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해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피보험자동차를 도난당하였을 경우 그 도난당하였을 때로부터 발견될 때까지의 사이에 발생된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한 보통약관 '대인배상Ⅱ',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자기차량손해' 및 '대물배상 가입금액 확장 특별약관', '외산차 충돌 확대보상 특별약관','자동차상해 특별약관','수요일·주말 보상확대 특별약관','자기차량손해 포괄 특별약관'의 손해
2. 관련법규에 의해 사업자등록을 한 자동차취급업자가 업무상 위탁받은 피보험자동차를 사용하거나 관리하던 중 발생된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한 손해 중에서 보통약관 제2편 「대인배상Ⅱ와 대물배상」에서 보상하는 손해. 다만, 자동차취급업자가 가입한 보험계약에서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는 경우에 그 보험금을 초과하는 손해를 보상하고, 대물배상의 경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하는 금액을 한도로 보상합니다.

제3조(준용 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제4조(기타)
이 특별약관은 대인배상Ⅰ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대인배상Ⅰ은 보통약관에 의하여 보상합니다.

용어풀이

이 약관에서 기명피보험자의 가족이라 함은 ① 기명피보험자의 부모와 양부모, 계부모(단, 부모, 양부모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 제외) ② 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의 부모 또는 양부모, 계부모(단, 부모, 양부모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 제외) ③ 법률상의 배우자 또는 사실혼관계에 있는 배우자 ④ 법률상의 혼인관계에서 출생한 자녀, 사실혼관계에서 출생한 자녀, 양자 또는 양녀, 계자녀(단,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

가 타인과의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 제외) ⑤ 기명피보험자의 며느리 또는 사위(계자녀의 배우자 포함. 단, 자녀, 계자녀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 제외)를 말합니다.

Ⅰ-4 부부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

제1조(보상내용)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동차(이하 '피보험자동차'라 합니다)에 대하여 운전할 자를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이하 '기명피보험자'라 합니다)와 그 배우자로 한정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합니다.

제2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기명피보험자와 그 배우자 이외의 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발생된 사고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해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피보험자동차를 도난당하였을 경우 그 도난당하였을 때로부터 발견될 때까지의 사이에 발생된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한 보통약관 '대인배상Ⅱ',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자기차량손해' 및 '대물배상 가입금액 확장 특별약관', '외산차 충돌 확대보상 특별약관','자동차상해 특별약관','수요일·주말 보상확대 특별약관','자기차량손해 포괄 특별약관'의 손해
2. 관련법규에 의해 사업자등록을 한 자동차취급업자가 업무상 위탁받은 피보험자동차를 사용하거나 관리하던 중 발생된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한 손해 중에서 보통약관 제2편 「대인배상Ⅱ와 대물배상」에서 보상하는 손해. 다만, 자동차취급업자가 가입한 보험계약에서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는 경우에 그 보험금을 초과하는 손해를 보상하고, 대물배상의 경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하는 금액을 한도로 보상합니다.

제3조(준용 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제4조(기타)
이 특별약관은 대인배상Ⅰ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대인배상Ⅰ은 보통약관에 의하여 보상합니다.

용어풀이

이 약관에서 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라 함은 법률상의 배우자 또는 사실혼관계에 있는 배우자를 말합니다.

Ⅰ-5 기명피보험자 한정운전 특별약관

제1조(보상내용)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동차(이하 '피보험자동차'라 합니다)에 대하여 운전할 자를 기명피보험자 1인으로 한정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합니다.

제2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기명피보험자 이외의 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발생된 사고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해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피보험자동차를 도난당하였을 경우 그 도난당하였을 때로부터 발견될 때까지의 사이에 발생된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한 보통약관 '대인배상Ⅱ',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자기차량손해' 및 '대물배상 가입금액 확장 특별약관', '외산차 충돌 확대보상 특별약관','자동차상해 특별약관','수요일·주말 보상확대 특별약관','자기차량손해 포괄 특별약관'의 손해
2. 관련법규에 의해 사업자등록을 한 자동차취급업자가 업무상 위탁받은 피보험자동차를 사용하거나 관리하던 중 발생된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한 손해 중에서 보통약관 제2편「대인배상Ⅱ와 대물배상」에서 보상하는 손해. 다만, 자동차취급업자가 가입한 보험계약에서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는 경우에 그 보험금을 초과하는 손해를 보상하고, 대물배상의 경우「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제5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하는 금액을 한도로 보상합니다.

제3조(준용 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제4조(기타)
이 특별약관은 대인배상Ⅰ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대인배상Ⅰ은 보통약관에 의하여 보상합니다.

Ⅰ-6 기명피보험자 및 지정1인 한정운전 특별 약관

제1조(보상내용)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동차(이하 '피보험자동차'라 합니다)에 대하여 운전할 자를 기명피보험자를 포함하여 2인으로 고지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합니다.

제2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고지된 운전자 이외의 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발생된 사고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해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피보험자동차를 도난당하였을 경우 그 도난당하였을 때로부터 발견될 때까지의 사이에 발생된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한 보통약관 '대인배상Ⅱ',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자기차량손해' 및 '대물배상 가입금액 확장 특별약관', '외산차 충돌 확대보상 특별약관','자동차상해 특별약관','수요일·주말 보상확대 특별약관','자기차량손해 포괄 특별약관'의 손해
2. 관련법규에 의해 사업자등록을 한 자동차취급업자가 업무상 위탁받은 피보험자동차를 사용하거나 관리하던 중 발생된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한 손해 중에서 보통약관 제2편「대인배상Ⅱ와 대물배상」에서 보상하는 손해. 다만, 자동차취급업자가 가입한 보험계약에서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는 경우에 그 보험금을 초과하는 손해를 보상하고, 대물배상의 경우「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제5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하는 금액을 한도로 보상합니다.

제3조(준용 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제4조(기타)
이 특별약관은 대인배상Ⅰ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대인배상Ⅰ은 보통약관에 의하여 보상합니다.

Ⅰ-7 가족 및 지정 1인 한정운전 특별약관

제1조(보상내용)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동차(이하 '피보험자동차'라 합니다)에 대하여 운전할 자를 기명피보험자와 그 가족, 기명피보험자가 정한 '지정1인 운전자'로 한정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합니다.

제2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이 특별약관에서 정한 운전자 이외의 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발생된 사고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해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피보험자동차를 도난당하였을 경우 그 도난당하였을 때로부터 발견될 때까지의 사이에 발생된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한 보통약관 '대인배상Ⅱ',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자기차량손해' 및 '대물배상 가입금액 확장 특별약관', '외산차 충돌 확대보상 특별약관','자동차상해 특별약관','수요일·주말 보상확대 특별약관','자기차량손해 포괄 특별약관'의 손해
2. 관련법규에 의해 사업자등록을 한 자동차취급업자가 업무상 위탁받은 피보험자동차를 사용하거나 관리하던 중 발생된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한 손해 중에서 보통약관 제2편 「대인배상Ⅱ와 대물배상」에서 보상하는 손해. 다만, 자동차취급업자가 가입한 보험계약에서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는 경우에 그 보험금을 초과하는 손해를 보상하고, 대물배상의 경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하는 금액을 한도로 보상합니다.

제3조(준용 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제4조(기타)
이 특별약관은 대인배상Ⅰ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대인배상Ⅰ은 보통약관에 의하여 보상합니다.

용어풀이

1. 이 약관에서 '지정1인 운전자'라 함은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기명피보험자가 정한 1인으로서 보험증권상에 기재된 운전자를 말합니다.
2. 이 약관에서 기명피보험자의 가족이라 함은 ① 기명피보험자의 부모와 양부모, 계부모(단, 부모, 양부모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 제외) ② 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의 부모 또는 양부모, 계부모(단, 부모, 양부모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 제외) ③ 법률상의 배우자 또는 사실혼관계에 있는 배우자 ④ 법률상의 혼인관계에서 출생한 자녀, 사실혼관계에서 출생한 자녀, 양자 또는 양녀, 계자녀(단,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가 타인과의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 제외) ⑤ 기명피보험자의 며느리 또는 사위(계자녀의 배우자 포함. 단, 자녀, 계자녀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 제외)를 말합니다.

Ⅰ-8 부부 및 지정 1인 한정운전 특별약관

제1조(보상내용)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동차(이하 '피보험자동차'라 합니다)에 대하여 운전할 자를 기명피보험자와 그 배우자, 기명피보험자가 정한 "지정1인 운전자"로 한정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합니다.

제2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이 특별약관에서 정한 운전자 이외의 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발생된 사고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해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피보험자동차를 도난당하였을 경우 그 도난당하였을 때로부터 발견될 때까지의 사이에 발생된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한 보통약관 '대인배상Ⅱ',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자기차량손해' 및 '대물배상 가입금액 확장 특별약관', '외산차 충돌 확대보상 특별약관','자동차상해 특별약관','수요일·주말 보상확대 특별약관','자기차량손해 포괄 특별약관'의 손해
2. 관련법규에 의해 사업자등록을 한 자동차취급업자가 업무상 위탁받은 피보험자동차를 사용하거나 관리하던 중 발생된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한 손해 중에서 보통약관 제2편「대인배상Ⅱ와 대물배상」에서 보상하는 손해. 다만, 자동차취급업자가 가입한 보험계약에서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는 경우에 그 보험금을 초과하는 손해를 보상하고, 대물배상의 경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하는 금액을 한도로 보상합니다.

제3조(준용 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제4조(기타)
이 특별약관은 대인배상Ⅰ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대인배상Ⅰ은 보통약관에 의하여 보상합니다.

용어풀이

1. 이 약관에서 '지정1인 운전자'라 함은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기명피보험자가 정한 1인으로서 보험증권상에 기재된 운전자를 말합니다.
2. 이 약관에서 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라 함은 법률상의 배우자 또는 사실혼관계에 있는 배우자를 말합니다.

Ⅰ-9 부부 및 자녀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

제1조(보상내용)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동차(이하 '피보험자동차'라 합니다)에 대하여 운전할 자를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이하 '기명피보험자'라 합니다)와 그 배우자 및 자녀로 한정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합니다.

제2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기명피보험자와 그 배우자 및 자녀 이외의 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발생된 사고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해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피보험자동차를 도난당하였을 경우 그 도난당하였을 때로부터 발견될 때까지의 사이에 발생된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한 보통약관 '대인배상Ⅱ',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자기차량손해' 및 '대물배상 가입금액 확장 특별약관', '외산차 충돌 확대보상 특별약관','자동차상해 특별약관','수요일·주말 보상확대 특별약관','자기차량손해 포괄 특별약관'의 손해
2. 관련법규에 의해 사업자등록을 한 자동차취급업자가 업무상 위탁받은 피보험자동차를 사용하거나 관리하던 중 발생된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한 손해 중에서 보통약관 제2편「대인배

상Ⅱ와 대물배상」에서 보상하는 손해. 다만, 자동차취급업자가 가입한 보험계약에서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는 경우에 그 보험금을 초과하는 손해를 보상하고, 대물배상의 경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하는 금액을 한도로 보상합니다.

제3조(준용 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제4조(기타)
이 특별약관은 대인배상Ⅰ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대인배상Ⅰ은 보통약관에 의하여 보상합니다.

용어풀이

1. 이 약관에서 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라 함은 법률상의 배우자 또는 사실혼관계에 있는 배우자를 말합니다.
2. 이 약관에서 기명피보험자의 자녀라 함은 ① 법률상의 혼인관계에서 출생한 자녀, 사실혼관계에서 출생한 자녀, 양자 또는 양녀 ② 법률상의 혼인 관계로 인한 계자녀 ③ 기명피보험자의 며느리 또는 사위, 계자녀(사실혼관계 배우자의 자녀 제외)의 배우자를 말합니다.

Ⅰ-10 기명피보험자 및 자녀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

제1조(보상내용)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동차(이하 '피보험자동차'라 합니다)에 대하여 운전할 자를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이하 '기명피보험자'라 합니다)와 자녀로 한정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합니다.

제2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기명피보험자와 그 자녀 이외의 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발생된 사고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해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피보험자동차를 도난당하였을 경우 그 도난당하였을 때로부터 발견될 때까지의 사이에 발생된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한 보통약관 '대인배상Ⅱ',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자기차량손해' 및 '대물배상 가입금액 확장 특별약관', '외산차 충돌 확대보상 특별약관','자동차상해 특별약관','수요일·주말 보상확대 특별약관','자기차량손해 포괄 특별약관'의 손해
2. 관련법규에 의해 사업자등록을 한 자동차취급업자가 업무상 위탁받은 피보험자동차를 사용하거나 관리하던 중 발생된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한 손해 중에서 보통약관 제2편 「대인배상Ⅱ와 대물배상」에서 보상하는 손해. 다만, 자동차취급업자가 가입한 보험계약에서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는 경우에 그 보험금을 초과하는 손해를 보상하고, 대물배상의 경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하는 금액을 한도로 보상합니다.

제3조(준용 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제4조(기타)
이 특별약관은 대인배상Ⅰ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대인배상Ⅰ은 보통약관에 의하여 보상합니다.

용어풀이

이 약관에서 기명피보험자의 자녀라 함은 ① 법률상의 혼인관계에서 출생한 자녀, 사실혼관계에서 출생한 자녀, 양자 또는 양녀 ② 법률상의 혼인 관계로 인한 계자녀 ③ 기명피보험자의 며느리 또는 사위, 계자녀(사실혼관계 배우자의 자녀 제외)의 배우자를 말합니다.

Ⅰ-11 자녀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

제1조(보상내용)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동차(이하 '피보험자동차'라 합니다)에 대하여 운전할 자를 기명피보험자의 자녀로 한정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합니다.

제2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기명피보험자의 자녀 이외의 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발생된 사고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해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피보험자동차를 도난당하였을 경우 그 도난당하였을 때로부터 발견될 때까지의 사이에 발생된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한 보통약관 '대인배상Ⅱ',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자기차량손해' 및 '대물배상 가입금액 확장 특별약관', '외산차 충돌 확대보상 특별약관','자동차상해 특별약관','수요일·주말 보상확대 특별약관','자기차량손해 포괄 특별약관'의 손해
2. 관련법규에 의해 사업자등록을 한 자동차취급업자가 업무상 위탁받은 피보험자동차를 사용하거나 관리하던 중 발생된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한 손해 중에서 보통약관 제2편「대인배상Ⅱ와 대물배상」에서 보상하는 손해. 다만, 자동차취급업자가 가입한 보험계약에서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는 경우에 그 보험금을 초과하는 손해를 보상하고, 대물배상의 경우「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제5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하는 금액을 한도로 보상합니다.

제3조(준용 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제4조(기타)
이 특별약관은 대인배상Ⅰ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대인배상Ⅰ은 보통약관에 의하여 보상합니다.

용어풀이

이 약관에서 기명피보험자의 자녀라 함은 ① 법률상의 혼인관계에서 출생한 자녀, 사실혼관계에서 출생한 자녀, 양자 또는 양녀 ② 법률상의 혼인 관계로 인한 계자녀 ③ 기명피보험자의 며느리 또는 사위, 계자녀(사실혼관계 배우자의 자녀 제외)의 배우자를 말합니다.

Ⅰ-12 단기운전자확대 특별약관

제1조(보상내용)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운전자를 한정하는 특별약관이 적용된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동차(이하 '피보험자동차'라 합니다)에 대하여 이 약관에서 정한 보상책임이 발생하는 기간 동안은 운전자를 한정하는 특별약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제2조(준용 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Ⅰ-13 실시간단기운전자확대 특별약관

제1조(보상내용)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운전자를 한정하는 특별약관이 적용된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동차(이하 '피보험자동차'라 합니다)에 대하여 이 약관에서 정한 보험기간 동안은 운전자를 한정하는 특별약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제2조(보험기간)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은 보험료를 받은 시점부터 이 특별약관에서 설정한 보험기간의 마지막날 동일 시점까지입니다. 단,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보험기간의 연장을 위해 이 특별약관을 중도에 추가 가입하는 경우 보험 기간은 직전 보험기간의 종료 시점부터 마지막 날의 종료 시점까지입니다.

용어풀이

이 특별약관에서 동일시점이라 함은 보험료를 받은 시각과 동일한 시각을 말합니다.

제3조(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의무사항)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 시 보험회사가 요청하는 피보험자동차의 사진을 제출해야 합니다. 사진을 허위로 제출하거나 불명확한 사진을 제출할 경우 보통약관 제44조를 위배한 것으로 보아 보통약관 제53조 제2항에 따라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단,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의 연장을 위해 보험기간 중 이 특별약관을 추가로 가입하는 경우에는 본 항목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제4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Ⅰ-14 명절임시운전담보 특별약관

제1조(보상 내용)
① 보험회사는 운전자 한정 특별약관으로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동차에 대하여 운전할 자를 한정한 경우에도 이 특별약관에서 정한 기간 동안은 운전자 한정 특별약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② 제①항에서 '이 특별약관에서 정한 기간'이라 함은 대한민국의 명절인 설(구정) 또는 추석당일을 포함한 전후 3일간, 각 명절마다 총 7일간(첫날 0시에 시작되어 마지막 날 24시에 끝납니다)을 말합니다.

제2조(준용 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Ⅰ-15 대리운전/취급업자 운전중 위험담보 특별약관

제1조(보상내용)

①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자동차를 취급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가 피보험자의 요청에 의해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동차(이하 '피보험자동차'라 합니다)를 운전중(주차 또는 정차 중을 제외합니다)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보통약관「자기신체사고(또는 자기신체사고 대체 특약)」,「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자기차량손해(또는 자기차량손해 대체 특약)」규정하는 손해를 입은 경우, 이 특별약관에 따라 해당 자동차를 취급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를 보통약관의 피보험자로 보아 보상하여 드립니다. 또한, 이 경우에는 운전자연령한정운전 특별약관 및 운전자 한정 특별약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② 회사가 보상할 제①항의 손해에 대해 "자동차취급업자 종합보험" 또는 "대리운전업자보험" 등의 다른 보험계약에 의하여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는 경우에는 회사는 발생손해가 위 다른 보험계약에 의해 지급될 수 있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초과액만을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상합니다.

③ 회사가 보상할 제①항의 사고로 동일 담보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할 사유가 2가지 이상 발생하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용어풀이

이 특별약관에서 자동차를 취급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합니다.

① 보통약관 제1조(용어의 정의) 12.자동차 취급업자를 말함

② 피보험자동차의 등록, 정비 등을 대행하도록 요청받아 그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운전하는 보험설계사 및 보험대리점

제2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보통약관 제5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제8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제14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제19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제23조(보상하지 않는 손해)에서 정하는 사항 이외에 다음과 같은 손해에 대하여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자동차를 취급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의 신체에 생긴 손해
2. 자동차를 취급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가 사용자의 업무에 종사하고 있을 때 자동차를 취급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의 사용자 또는 자동차를 취급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의 사용자의 업무에 종사중인 다른 피용인의 신체에 생긴 손해
3. 기명피보험자의 요청한 목적에 반하여 통상적인 경로를 현저히 이탈하여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손해
4. 피보험자동차를 취급하는 자 이외의 사람이 피보험자동차를 운전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5. 이 보험계약의 보통약관에서 가입하지 않은 담보의 손해

제3조(피보험자의 범위)

이 특별약관에서 피보험자라 함은 다음에 열거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1. 기명피보험자
2. 기명피보험자의 가족

용어풀이

이 약관에서 기명피보험자의 가족이라 함은 ① 기명피보험자의 부모와 양부모, 계부모(단, 부모, 양부모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 제외) ② 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의 부모 또는 양부모, 계부모(단, 부모, 양부모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 제외) ③ 법률상의 배우자 또는 사실혼관계에 있는 배우자 ④ 법률상의 혼인관계에서 출생한 자녀, 사실혼관계에서 출생한 자녀, 양자 또는 양녀, 계자녀(단,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가 타인과의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 제외) ⑤ 기명피보험자의 며느리 또는 사위(계자녀의 배우자 포함. 단, 자녀, 계자녀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 제외)를 말합니다.

제4조(준용 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Ⅰ-16 임직원 운전자한정 특별약관

제1조(가입대상)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함)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이하 '기명피보험자'라 함)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동차(이하 '피보험자동차'라 함)에 대하여 운전할 자를 기명피보험자가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장 소속의 임직원으로 한정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합니다.

용어풀이

이 특별약관에서 임직원이라 함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① 개인사업자인 기명피보험자
② 개인사업자인 기명피보험자와 직접적인 근로계약을 체결한 직원(계약직 직원 포함, 단, 계약직 직원의 경우 피보험자와 체결한 근로계약기간에 한정)
③ 개인사업자인 기명피보험자와 직접적인 업무위탁 계약관계에 있는 자(공동사업자 대표 포함)로서 기명피보험자의 업무를 위하여 피보험자동차를 운행하는 자
④ 개인사업자인 기명피보험자의 운전자 채용을 위한 면접에 응시한 지원자

제2조(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이 특별약관에 따라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는 임직원 이외의 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발생된 사고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음 각 호의 사고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피보험자동차를 도난당하였을 경우 그 도난당하였을 때부터 발견될 때까지의 사이에 발생된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한 보통약관 「대인배상Ⅱ」, 「대물배상」,「자기신체사고」,「자기차량손해」 및 「자기차량손해 단독사고 보상 특별약관」의 손해
2. 관련법규에 의해 사업자등록을 한 자동차 취급업자가 업무상 위탁받은 피보험자동차를 사용하거나 관리하던 중 발생된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한 손해 중에서 보통약관 제2편의 「대인배상Ⅱ와 대물배상」에서 보상하는 손해. 다만, 자동차 취급업자가 가입한 보험계약에서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보험금을 초과하는 손해를 보상하고, 대물배상의 경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하는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제3조(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의무)
1. 회사는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한 자가 이 특별약관에서 정한 임직원임을 확인하는데 필

요한 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기명피보험자의 사업자등록증 등의 서류를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는 운전자가 임직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2. 회사는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가 위 '1'의 규정을 위반하여 입증서류를 회사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4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제5조(기타)
이 특별약관의 규정은 「대인배상Ⅰ」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Ⅱ. 보험료 납입

Ⅱ-1 보험료 분할납입 특별약관

제1조(보험료의 분할납입)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보험계약자가 보험료(이 보험계약의 보험기간에 해당하는 보험료 전액을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를 보험증권에 기재된 횟수 및 금액(이하 '분할보험료'라 합니다)으로 분할하여 납입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인배상Ⅰ 및 대물배상에 대하여는 이 특별약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제2조(분할보험료의 납입방법)
보험계약자는 이 보험계약을 맺으면서 제1회 분할보험료를 납입하고 제2회 이후의 분할보험료부터는 약정한 납입일자 안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제3조(분할보험료의 납입최고[102])
① 보험계약자가 약정한 납입일자까지 제2회 이후의 분할보험료를 납입하지 않는 때에는 약정한 납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단, 공동 인수 계약은 약정한 납입일자로부터 30일간) 납입최고기간을 둡니다. 회사는 이 납입최고기간 안에 생긴 사고에 대하여는 보상합니다.
② 제①항의 납입최고기간 안에 분할보험료를 납입하지 않는 때에는 납입최고기간이 끝나는 날의 24시부터 보험계약은 해지됩니다.
③ 보험계약자가 약정한 납입일자까지 분할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회사는 보험계약자 및 기명피보험자에게 납입최고기간이 끝나는 날 이전에 제①항 및 제②항의 내용을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최고합니다. 서면으로 최고할 경우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통약관 '제45조(계약 후 알릴의무)'에 따라 주소변경을 통보하지 않는 한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계약자 또는 기명피보험자의 주소를 회사의 의사표시를 수령할 지정장소로 합니다.
④ 회사가 제③항에 의한 납입최고(독촉) 등을 전자문서로 안내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 수신확인을 조건으로 전자문서를 송신하여야 하며, 계약자가 그 전자문서의 수신확인을 하기 전까지는 그 전자문서는 송신되지 아니한 것으로 봅니다. 회사는 전자문서가 수신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 되는 경우에는 ①의 납입최고기간이 끝나는 날 이전에 위 ① 및 ②의 내용을 서면(등기우편 등) 또는 전화(음성녹음)로 다시 알려드립니다.

제4조(보험료의 환급)
이 특별약관 '제3조(분할보험료의 납입최고) 제②항'에 의하여 보험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회사가 보상하여야 할 사고가 생기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이미 받은 보험료에서 해지일까지 지난 기간에 대하여 단기요율로 계산한 보험료를 공제한 나머지를 돌려드립니다.

제5조(보험계약의 부활)
① 이 특별약관 '제3조(분할보험료의 납입최고) 제②항'에 의하여 보험계약이 해지되고 해약환급금이 지급되지 아니한 경우, 보험계약이 해지된 후 30일안에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의 부활을 청구하고 해당 분할보험료를 납입한 때에는 이 보험계약은 유효하게 계속됩니다.

102) '최고'란 상대방에게 일정한 행위를 할 것을 요구하는 법률상 통지입니다. 따라서 '납입최고'란 보험계약자 등이 분할보험료를 내지 않은 경우에 회사가 그 미납보험료를 낼 것을 독촉하는 법률상 행위를 말하며, 이 때 보험계약자 등에게 주어지는 납입기간을 '납입최고기간' 이라고 합니다.

② 제①항의 경우, 회사는 보험계약이 해지된 때로부터 해당 분할보험료를 영수한 날의 24시까지에 생긴 사고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제6조(준용 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Ⅱ-2 신용카드 및 전자결제 납입 특별약관

제1조(보상내용)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보험계약자가 여신전문금융업법에서 정한 업종에서 제공하는 결제수단 및 전자금융거래법에서 정한 결제수단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단, 보험계약자 명의의 결제수단에 한합니다.

제2조(보험료의 영수)
보험계약자가 여신전문금융업법에서 정한 업종에서 제공하는 결제수단 및 전자금융거래법에서 정한 결제수단으로 보험료를 결제하고 해당 결제를 제공하는 회사의 승인을 받은 시점을 보험료의 영수시점으로 간주합니다.

제3조(사고 결제수단 계약)
① 사고 결제수단을 이용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이 보험계약은 보험자의 책임개시일로부터 그 효력을 상실합니다.
② 제①항의 사고 결제수단이라 함은 다음을 말합니다.
1. 유효기간이 지난 결제수단
2. 위조, 변조하거나 무효 또는 거래정지가 된 결제수단
3. 보유자와 이용자가 상이한 결제수단

제4조(준용 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의 규정에 따릅니다.

Ⅱ-3 보험료 자동납입 특별약관

제1조(적용대상)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보험계약자가 이 보험계약의 보험료를 보험계약자 또는 기명피보험자의 지정은행계좌를 통하여 자동이체납입하기로 약정하는 경우에 이 특별약관을 적용합니다.

제2조(보험료의 자동납입)
① 보험계약자는 보험료를 분할납입할 때는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보험증권에 기재된 회수 및 금액으로 자동이체 분할납입합니다. 그러나 대인배상Ⅰ 및 대물배상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② 보험료의 자동이체 납입일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체일자(이하 '약정이체일'이라 합니다)로 합니다.
③ 제②항의 약정이체일은 보험청약서상에 열거된 이체가능일자 중에서 보험료 납입기일 이후에 최초로 도래하는 이체일자를 말합니다. 다만, 초회보험료를 자동이체납입할 경우의 초회보험료 약정이체일은 회사와 보험계약자가 별도로 약정한 책임개시일자의 이전의 이체일자를 말합니다.
④ 지정은행계좌의 이체가능 금액이 회사가 청구한 보험료에 미달할 경우에는 보험료가 이

체납입 되지 않습니다.

제3조(분할보험료의 납입유예 및 납입최고)

① 회사는 분할보험료가 약정이체일에 납입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약정이체일로부터〈별표〉의 기간을 더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단, 공동 인수 계약은 약정이체일로부터 <별표>의) 납입유예기간을 둡니다. 회사는 이 납입유예기간 안에 생긴 사고는 보상합니다. 다만, 초회보험료에 대해서는 납입유예기간이 없으며, 책임개시일자 이전까지 초회보험료의 납입이 없을 경우에는 보험계약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② 회사는 약정이체일에 분할보험료가 이체납입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분할보험료 납입유예기간 중에는 계속하여 이체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제①항의 납입유예기간이 끝나는 날의 10일전까지 보험계약자에게 납입최고를 합니다.

④ 납입유예기간 말일까지 분할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을 경우에는 납입유예기간 말일의 24시부터 보험계약은 해지됩니다.

제4조(계약 후 알릴 의무)

보험계약자 또는 기명피보험자는 지정은행계좌의 번호가 변경되거나 거래 정지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제5조(준용 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별표〉제2회 이후의 분할보험료 납입유예기간 계산할 때 가산기간 (공동인수계약은 분할보험료 미납입에 따른 납입유예기간)

납입방법 \ 미납입보험료		2회보험료	3회보험료	4회보험료	5회보험료	6회보험료
비연속 2회납						1개월
연속납	2회납	4개월				
	3회납	2개월	4개월			
	4회납	1개월	3개월	4개월		
	5회납	1개월	2개월	3개월	4개월	
	6회납	1개월	1개월	2개월	2개월	3개월

(주) 비연속 2회납의 가산기간 1개월은 2회 보험료 납입유예기간 계산할 때 가산기간을 말합니다. (공동인수계약은 납입유예기간)

Ⅲ. 긴급출동서비스

Ⅲ-1 매직카서비스(견인 10km) 특별약관

제1조(긴급출동서비스의 종류 및 내용)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동차(이하 '피보험자동차'라 합니다)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긴급출동서비스를 필요로 하여 회사에 요청할 때에는 다음의 정의에 의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1. 긴급견인서비스 :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던 중 피보험자동차의 사고 또는 고장으로 피보험자동차가 자력으로 운행하지 못하여 수리를 위해 긴급견인을 필요로 할 경우에 10km를 한도로 견인하여 드립니다. 단, 10km 초과거리에 대해 발생한 비용은 피보험자가 부담합니다.
2. 비상급유서비스 :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던 중 연료가 소진되어 운행이 정지된 경우 회사는 긴급운행용으로 3ℓ를 한도로 연료를 가까운 주유소에서 구입하여 드립니다. 연료비는 피보험자의 부담으로 하며, 보험기간 내 최초 1회에 한하여 회사가 연료비를 부담합니다.
3. 배터리충전서비스 :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던 중 시동을 목적으로 하는 배터리(차량의 연료를 대체하는 목적 등 시동과 관련없는 배터리는 제외합니다)의 방전으로 시동이 불가능한 경우에 긴급출동하여 차량의 운행이 가능하도록 조치하여 드립니다. 단, 배터리를 교환하는 경우 실비를 받고 교환하여 드립니다.
4. 타이어교체서비스 : 타이어의 파손으로 운행을 할 수 없는 경우로서 예비타이어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파손된 타이어를 예비타이어로 교환하여 드립니다.
5. 잠금장치해제서비스 :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던 중 차량의 Key를 자동차 실내에 두고 차문을 잠근 경우 잠금장치를 해제하여 드립니다.
6. 퓨즈교환서비스 :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던 중 퓨즈단락으로 피보험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는 때에는 퓨즈를 교환하여 드립니다. 단, 국내에서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퓨즈를 기준으로 하며, 엔진룸 릴레이박스의 퓨즈 교환은 제외합니다.
7. 긴급구난서비스 :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던 중 도로를 이탈하거나 장애물로 인하여 피보험자동차가 자력으로 운행을 하지 못하여 구난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 긴급구난하여 드립니다.
8. 부동액보충서비스 : 피보험자동차의 주행중 부동액 부족으로 피보험자동차를 운행하지 못할 때에는 부동액을 2ℓ 이내로 보충하여 드립니다. 단, 국내에서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부동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9. 타이어펑크수리서비스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던 중 피보험자동차 타이어의 구멍이 뚫린 단순 펑크로 인하여 운행이 불가한 경우 타이어 펑크를 수리하여 드립니다. 타이어펑크 1개당 서비스 1회를 차감합니다.

제2조(긴급출동서비스의 제한)

① 서비스 제한 차종

보험회사는 '제1조(긴급출동서비스의 종류 및 내용)'에도 불구하고 다음에 해당하는 차량에 대하여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구 분	제한 항목
구조 변경된 차, 길이 또는 중량이 서비스제공 범위를 초과하는 자동차	1.긴급견인서비스, 4.타이어교체서비스, 7.긴급구난서비스, 9.타이어펑크수리서비스
수소·전기 자동차	2.비상급유서비스, 8.부동액보충서비스
외산자동차	5.잠금장치해제서비스
LPG연료 사용 자동차	2.비상급유서비스

② 서비스 제공이 제한되는 경우

보험회사는 '제1조(긴급출동서비스의 종류 및 내용)'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항의 경우에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1. 긴급출동서비스의 요청지가 출동/견인 차량이 도착하기 어려운 지역(비포장 도로, 해안가 모래사장, 갯벌, 늪, 진흙지대, 산기슭 등)이나 도서(제주도나 연육교로 연결된 도서지역은 제외), 산간지역 및 통신교환이 원활하지 못하는 등 회사가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지역인 경우에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2. 차량의 적재물로 인하여 긴급견인서비스, 타이어교체서비스, 긴급구난서비스 및 타이어펑크수리서비스의 제공에 제한이 생길 경우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3. 긴급견인서비스, 긴급구난서비스, 타이어펑크수리서비스에 대하여 보통약관에 의하여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는 경우에는 회사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으며 이미 제공된 서비스에 대해서는 소요된 비용을 피보험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비상급유서비스 제공에 있어서 LPG(또는 전기, 수소)를 연료로 사용하는 피보험자동차가 연료가 소진되어 운행이 정지된 경우, 배터리충전서비스제공에 있어서 일부 제조사의 전기자동차 등 배터리충전서비스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가까운 충전소 또는 정비업체로 견인하여 드립니다. 단, '제1조(긴급출동서비스의 종류 및 내용) 1.긴급견인서비스'와 동일한 기준으로 견인서비스를 제공하여 드립니다.
5. 휠을 개조한 차량이거나 특수볼트가 사용된 차량인 경우 피보험자가 휠을 교체할 수 있는 장비를 소지했을 경우에만 타이어교체서비스가 가능합니다.
6. 잠금장치 해제서비스에 있어서 트렁크 잠금장치 해제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또한 최근 출시된 국산 차량인 경우에는 특수 잠금장치(스마트키, 이모빌라이저)가 장착되어 있거나 사이드에어백의 장착 등으로 통상적인 방법으로 잠금해제가 불가능할 경우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 경우 피보험자는 회사에 잠금장치해제 전문업체 연결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때 회사는 통상적인 방법으로 잠금장치해제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소요되는 비용만을 제공하여 드립니다.
7. 긴급구난서비스는 별도의 구난장비 없이 구난 가능한 경우에 한하며, 특수한 구난을 한 경우에는 별도의 사용료가 청구됩니다.
8. 부동액보충서비스, 퓨즈교환서비스 제공에 있어서 긴급출동시 보유한 제품과 규격이 상이한 경우, 서비스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9. 타이어펑크수리서비스에 있어서 자연 마모로 인한 펑크와 타이어가 찢어진 경우에는 해당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또한 타이어펑크수리서비스의 제공이 어려운 경우에는 긴급견인서비스나 타이어교체서비스를 제공하여 드리며, 피보험자의 요청 시 타이어에 공기를 주입하여드립니다.
10. 고속도로 등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제1조(긴급출동서비스의 종류 및 내용)의 서비스(긴급견인 및 긴급구난서비스 제외)를 제공하는 경우 회사는 피보험자 및 서비스제공자의 안전을 위하여 피보험자동차를 안전한 지역까지 견인한 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견인 비용은 회사가 부담합니다.

11. 피보험자가 음주, 마약 또는 약물 등의 영향으로 피보험자동차의 정상적인 운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서비스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용어풀이

1. 이 특별약관에서 **특수한 구난**을 한 경우라 함은 ① 2.5t을 초과하는 구난형 특수자동차로 구난한 경우 ② 2대 이상의 구난형 특수자동차가 구난한 경우 ③ 구난작업을 시작하여 견인고리 연결직전까지 소요된 시간이 30분을 초과한 경우 ④ 2500cc 이상의 국산차량 및 전외제 차량을 구난한 경우 ⑤ 세이프티 로더로 구난한 경우를 말합니다.
2. 이 특별약관에서 **타이어펑크수리서비스**의 제공이 어려운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야간, 눈 또는 비가 내리는 경우 등 펑크 위치를 육안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② Run-flat Tire, 튜브형 타이어 등 펑크 수리한 때 특수장비가 필요한 타이어가 펑크난 경우
   ③ 날씨(한파, 고온), 펑크 크기, 개수, 타이어 측면 펑크 등으로 현장에서 타이어 펑크 임시 수리가 불가한 경우

제3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① 회사는 긴급출동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부득이 파손된 부분의 원상복구를 위해 소요된 비용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② 회사는 긴급출동서비스의 지연 또는 미제공으로 인하여 발생한 간접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③ 회사는 긴급출동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 부득이 발생하는 적재물의 손상, 멸실 등의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④ '제1조(긴급출동서비스의 종류 및 내용)'의 각 서비스는 1일 1회에 한합니다.

제4조(피보험자의 범위)

이 특별약관에 있어 피보험자란 보험증권에 기재된 운전할 수 있는 범위의 자를 말합니다.

제5조(특별약관의 종료)

① 이 특별약관은 피보험자가 이 보험계약 가입 후 긴급출동서비스 이용 가능 횟수를 모두 이용한 경우에는 그 시점부터 종료합니다.

조건		직전계약 긴급출동서비스 이용횟수	이용가능 횟수
보험기간 1년	직전계약이 있는 경우	0회	8회
		1회 이상	6회
	직전계약이 없는 경우	-	6회
보험기간 3개월 초과 1년미만		-	3회
보험기간 3개월 이하		-	1회

② 위 '①'에서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도 불구하고 다음을 모두 만족시키는 경우에는 긴급출동서비스를 6회 이상 제공한 때로부터 이 특별약관은 종료됩니다.
   1. 이 특별약관의 보험시작일자가 보험증권의 보험시작일자와 동일한 경우
   2.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이 11개월을 초과할 경우

용어풀이

이 특별약관에서 '직전계약이 있는 경우'라 함은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동차보험계약을 말합니다.

① 직전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와 피보험자동차가 이 보험계약의 피보험자 및 피보험자동차와 동일하고, 보험기간 만료일이 이 보험계약의 보험기간 시작일과 일치하는 동일한 보험회사의 계약인 경우

② 직전계약의 보험기간이 1년인 경우

③ 이 보험계약 직전 계약에서 당사의 긴급출동서비스를 제공하는 특별약관에 가입한 경우

제6조(특약보험료의 환급)

① 보험계약을 해지한 경우. 계약을 해지하기 전에 서비스가 한번이라도 제공된 경우에는 특약보험료를 환급하지 않습니다.

②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더라도 보험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특약보험료를 환급하지 않습니다.

제7조(준용 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Ⅲ-2 매직카서비스(견인 10km)슬림형 특별약관

제1조(가입대상)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이 1년인 경우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제2조(긴급출동서비스의 종류 및 내용)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동차(이하 '피보험자동차'라 합니다)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긴급출동서비스를 필요로 하여 회사에 요청할 때에는 다음의 정의에 의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1. 긴급견인서비스 :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던 중 피보험자동차의 사고 또는 고장으로 피보험자동차가 자력으로 운행하지 못하여 수리를 위해 긴급견인을 필요로 할 경우에 10km를 한도로 견인하여 드립니다. 단, 10km 초과거리에 대해 발생한 비용은 피보험자가 부담합니다.
2. 비상급유서비스 :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던 중 연료가 소진되어 운행이 정지된 경우 회사는 긴급운행용으로 3ℓ를 한도로 연료를 가까운 주유소에서 구입하여 드립니다. 연료비는 피보험자의 부담으로 하며, 보험기간 내 최초 1회에 한하여 회사가 연료비를 부담합니다.
3. 배터리충전서비스 :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던 중 시동을 목적으로 하는 배터리(차량의 연료를 대체하는 목적 등 시동과 관련없는 배터리는 제외합니다)의 방전으로 시동이 불가능한 경우에 긴급출동하여 차량의 운행이 가능하도록 조치하여 드립니다. 단, 배터리를 교환하는 경우 실비를 받고 교환하여 드립니다.
4. 타이어교체서비스 : 타이어의 파손으로 운행을 할 수 없는 경우로서 예비타이어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파손된 타이어를 예비타이어로 교환하여 드립니다.
5. 잠금장치해제서비스 :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던 중 차량의 Key를 자동차 실내에 두고 차문을 잠근 경우 잠금장치를 해제하여 드립니다.
6. 퓨즈교환서비스 :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던 중 퓨즈단락으로 피보험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는 때에는 퓨즈를 교환하여 드립니다. 단, 국내에서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퓨즈를 기준으로 하며, 엔진룸 릴레이박스의 퓨즈 교환은 제외합니다.

7. 긴급구난서비스 :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던 중 도로를 이탈하거나 장애물로 인하여 피보험자동차가 자력으로 운행을 하지 못하여 구난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 긴급구난하여 드립니다.
8. 부동액보충서비스 : 피보험자동차의 주행중 부동액 부족으로 피보험자동차를 운행하지 못할 때에는 부동액을 2ℓ 이내로 보충하여 드립니다. 단, 국내에서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부동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9. 타이어펑크수리서비스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던 중 피보험자동차 타이어의 구멍이 뚫린 단순 펑크로 인하여 운행이 불가한 경우 타이어 펑크를 수리하여 드립니다. 타이어펑크 1개당 서비스 1회를 차감합니다.

제3조(긴급출동서비스의 제한)

① 서비스 제한 차종

보험회사는 '제2조(긴급출동서비스의 종류 및 내용)'에도 불구하고 다음에 해당하는 차량에 대하여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구 분	제한 항목
구조 변경된 차, 길이 또는 중량이 서비스제공 범위를 초과하는 자동차	1.긴급견인서비스, 4.타이어교체서비스, 7.긴급구난서비스, 9.타이어펑크수리서비스
수소·전기 자동차	2.비상급유서비스, 8.부동액보충서비스
외산자동차	5.잠금장치해제서비스
LPG연료 사용 자동차	2.비상급유서비스

② 서비스 제공이 제한되는 경우

보험회사는 '제2조(긴급출동서비스의 종류 및 내용)'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항의 경우에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1. 긴급출동서비스의 요청지가 출동/견인 차량이 도착하기 어려운 지역(비포장 도로, 해안가 모래사장, 갯벌, 늪, 진흙지대, 산기슭 등)이나 도서(제주도나 연육교로 연결된 도서지역은 제외), 산간지역 및 통신교환이 원활하지 못하는 등 회사가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지역인 경우에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2. 차량의 적재물로 인하여 긴급견인서비스, 타이어교체서비스, 긴급구난서비스 및 타이어펑크수리서비스의 제공에 제한이 생길 경우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3. 긴급견인서비스, 긴급구난서비스, 타이어펑크수리서비스에 대하여 보통약관에 의하여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는 경우에는 회사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으며 이미 제공된 서비스에 대해서는 소요된 비용을 피보험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비상급유서비스 제공에 있어서 LPG(또는 전기, 수소)를 연료로 사용하는 피보험자동차가 연료가 소진되어 운행이 정지된 경우, 배터리충전서비스제공에 있어서 일부 제조사의 전기자동차 등 배터리충전서비스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가까운 충전소 또는 정비업체로 견인하여 드립니다. 단, '제2조(긴급출동서비스의 종류 및 내용) 1.긴급견인서비스'와 동일한 기준으로 견인서비스를 제공하여 드립니다.
5. 휠을 개조한 차량이거나 특수볼트가 사용된 차량인 경우 피보험자가 휠을 교체할 수 있는 장비를 소지했을 경우에만 타이어교체서비스가 가능합니다.

6. 잠금장치 해제서비스에 있어서 트렁크 잠금장치 해제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또한 최근 출시된 국산 차량인 경우에는 특수 잠금장치(스마트키, 이모빌라이저)가 장착되어 있거나 사이드에어백의 장착 등으로 통상적인 방법으로 잠금해제가 불가능할 경우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 경우 피보험자는 회사에 잠금장치해제 전문업체 연결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때 회사는 통상적인 방법으로 잠금장치해제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소요되는 비용만을 제공하여 드립니다.
7. 긴급구난서비스는 별도의 구난장비 없이 구난 가능한 경우에 한하며, 특수한 구난을 한 경우에는 별도의 사용료가 청구됩니다.
8. 부동액보충서비스, 퓨즈교환서비스 제공에 있어서 긴급출동시 보유한 제품과 규격이 상이한 경우, 서비스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9. 타이어펑크수리서비스에 있어서 자연 마모로 인한 펑크와 타이어가 찢어진 경우에는 해당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또한 타이어펑크수리서비스의 제공이 어려운 경우에는 긴급견인서비스나 타이어교체서비스를 제공하여 드리며, 피보험자의 요청 시 타이어에 공기를 주입하여드립니다.
10. 고속도로 등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제2조(긴급출동서비스의 종류 및 내용)의 서비스(긴급견인 및 긴급구난서비스 제외)를 제공하는 경우 회사는 피보험자 및 서비스제공자의 안전을 위하여 피보험자동차를 안전한 지역까지 견인한 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견인 비용은 회사가 부담합니다.
11. 피보험자가 음주, 마약 또는 약물 등의 영향으로 피보험자동차의 정상적인 운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서비스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용어풀이

1. 이 특별약관에서 **특수한 구난**을 한 경우라 함은 ① 2.5t을 초과하는 구난형 특수자동차로 구난한 경우 ② 2대 이상의 구난형 특수자동차가 구난한 경우 ③ 구난작업을 시작하여 견인고리 연결직전까지 소요된 시간이 30분을 초과한 경우 ④ 2500cc 이상의 국산차량 및 전 외제 차량을 구난한 경우 ⑤ 세이프티 로더로 구난한 경우를 말합니다.
2. 이 특별약관에서 **타이어펑크수리서비스**의 제공이 어려운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야간, 눈 또는 비가 내리는 경우 등 펑크 위치를 육안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② Run-flat Tire, 튜브형 타이어 등 펑크 수리한 때 특수장비가 필요한 타이어가 펑크난 경우
   ③ 날씨(한파, 고온), 펑크 크기, 개수, 타이어 측면 펑크 등으로 현장에서 타이어 펑크 임시 수리가 불가한 경우

제4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① 회사는 긴급출동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부득이 파손된 부분의 원상복구를 위해 소요된 비용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② 회사는 긴급출동서비스의 지연 또는 미제공으로 인하여 발생한 간접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③ 회사는 긴급출동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 부득이 발생하는 적재물의 손상, 멸실 등의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④ '제2조(긴급출동서비스의 종류 및 내용)'의 각 서비스는 1일 1회에 한합니다.

제5조(피보험자의 범위)

이 특별약관에 있어 피보험자란 보험증권에 기재된 운전할 수 있는 범위의 자를 말합니다.

제6조(특별약관의 종료)

회사가 피보험자에게 긴급출동서비스를 2회 이상 제공한 때로부터 이 특별약관은 종료됩니다.

제7조(특약보험료의 환급)

① 보험계약을 해지한 경우. 계약을 해지하기 전에 서비스가 한번이라도 제공된 경우에는 특약보험료를 환급하지 않습니다.

②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더라도 보험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특약보험료를 환급하지 않습니다.

제8조(준용 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Ⅲ-3 뉴매직카서비스(견인 70km) 특별약관

제1조(가입대상)

이 특별약관은 피보험자동차가 승용자동차(수소·전기자동차 제외)인 경우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제2조(긴급출동서비스의 종류 및 내용)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동차(이하 '피보험자동차'라 합니다)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긴급출동서비스를 필요로 하여 회사에 요청할 때에는 다음의 정의에 의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1. 긴급견인서비스 :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던 중 피보험자동차의 사고 또는 고장으로 피보험자동차가 자력으로 운행하지 못하여 수리를 위해 긴급견인을 필요로 할 경우에 70km를 한도로 견인하여 드립니다. 단, 70km 초과거리에 대해 발생한 비용은 피보험자가 부담합니다.
2. 비상급유서비스 :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던 중 연료가 소진되어 운행이 정지된 경우 회사는 긴급운행용으로 3ℓ를 한도로 연료를 가까운 주유소에서 구입하여 드립니다. 연료비는 피보험자의 부담으로 하며, 보험기간 내 최초 1회에 한하여 회사가 연료비를 부담합니다.
3. 배터리충전서비스 :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던 중 시동을 목적으로 하는 배터리(차량의 연료를 대체하는 목적 등 시동과 관련없는 배터리는 제외합니다)의 방전으로 시동이 불가능한 경우에 긴급출동하여 차량의 운행이 가능하도록 조치하여 드립니다. 단, 배터리를 교환하는 경우 실비를 받고 교환하여 드립니다.
4. 타이어교체서비스 : 타이어의 파손으로 운행을 할 수 없는 경우로서 예비타이어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파손된 타이어를 예비타이어로 교환하여 드립니다.
5. 잠금장치해제서비스 :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던 중 차량의 Key를 자동차 실내에 두고 차문을 잠근 경우 잠금장치를 해제하여 드립니다.
6. 브레이크/엔진/파워오일 보충서비스 :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던 중 브레이크오일, 엔진오일, 파워오일의 부족으로 피보험자동차를 운행 할 수 없는 때에는 오일의 부족분을 보충하여 드립니다. 단, 브레이크오일은 1ℓ이내, 엔진오일은 2ℓ이내, 파워오일은 1ℓ이내에 한하며, 기준량을 초과하는 경우는 실비를 받고 보충하여 드립니다. 단, 피보험자동차와 동급의 국내 제조 자동차에 사용하는 통상적인 오일을 기준으로 하여 보충하여 드립니다. 단, 국내에서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오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7. 타이어펑크수리서비스 :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던 중 피보험자동차 타이어의 구멍이 뚫린 단순 펑크로 인하여 운행이 불가한 경우 타이어 펑크를 수리하여 드립니다. 타이어펑크 1개당 서비스 1회를 차감합니다.

8. 퓨즈교환서비스 :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던 중 퓨즈단락으로 피보험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는 때에는 퓨즈를 교환하여 드립니다. 단, 국내에서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퓨즈를 기준으로 하며, 엔진룸 릴레이박스의 퓨즈 교환은 제외합니다.
9. 긴급구난서비스 :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던 중 도로를 이탈하거나 장애물로 인하여 피보험자동차가 자력으로 운행을 하지 못하여 구난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 긴급구난하여 드립니다.
10. 부동액보충서비스 : 피보험자동차의 주행중 부동액 부족으로 피보험자동차를 운행하지 못할 때에는 부동액을 2ℓ 이내로 보충하여 드립니다. 단, 국내에서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부동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11. 차량진단서비스 : 피보험자동차의 차량진단을 회사가 지정하는 정비업체에 예약하는 경우에는 무상으로 30가지 주요항목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차량진단 내역서로 제공하여 드립니다. 또한 피보험자동차가 OBD-Ⅱ시스템이 장착된 국산차인 경우에 한하여 진단기기를 사용하여, 피보험자동차의 진단결과를 추가로 제공하여 드립니다. (단, 자동차제조사의 진단코드 미제공 등으로 인해 제공 불가능한 차량종류는 제외하며, 진단기기를 구비하지 않은 정비업체에서는 해당 서비스 제공불가함) 해당 서비스는 보험기간 중 1회에 한합니다.

용어풀이

이 특별약관에서 30가지 주요항목이라 함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엔진오일, 밋션오일, 파워오일, 브레이크액, 부동액(냉각수), 타이밍벨트, 팬벨트,
2. 배터리, 스타트모터, 알터네이터, 플러그배선, 점화플러그, 클러치, 클러치실린더, 배기파이프, 소음기, 라지에타호스
3. 주차브레이크, 브레이크패드(라이닝), 에어컨벨트, 타이어공기압, 타이어마모, 예비타이어, 에어컨(히터), 헤드램프(안개등), 브레이크등, 워셔액, 와이퍼브레이드, 경음기, 실내등을 말합니다.

12. 수리차량운반서비스 : 고장으로 인해 피보험자동차를 회사가 지정하는 정비업체에서 수리할 경우, 작업시간이 1시간 이상 소요될 때에는 수리완료 후 고객이 지정하는 장소로 운반하여 드립니다. 수리차량운반 서비스는 보험기간 중 1회에 한합니다. (단, 운반거리가 10km를 초과하는 경우 10km 초과거리에 대해 발생한 비용은 고객이 부담하여야하며, 운반거리는 70km를 한도로 합니다)

제3조(긴급출동서비스의 제한)

① 서비스 제한 차종

보험회사는 '제2조(긴급출동서비스의 종류 및 내용)'에도 불구하고 다음에 해당하는 차량에 대하여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구 분	제한 항목
구조 변경된 차, 길이 또는 중량이 서비스제공 범위를 초과하는 자동차	1.긴급견인서비스, 4.타이어교체서비스, 7.타이어펑크수리서비스, 9.긴급구난서비스, 12.수리차량운반서비스
Hybrid Car	11.차량진단서비스
외산자동차	5.잠금장치해제서비스
LPG연료 사용 자동차	2.비상급유서비스

② 서비스 제공이 제한되는 경우

보험회사는 '제2조(긴급출동서비스의 종류 및 내용)'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항의 경우에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1. 긴급출동서비스의 요청지가 출동/견인 차량이 도착하기 어려운 지역(비포장 도로, 해안가 모래사장, 갯벌, 늪, 진흙지대, 산기슭 등)이나 도서(제주도나 연륙교로 연결된 도서지역은 제외).산간지역 및 통신교환이 원활하지 못하는 등 회사가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 하다고 판단되는 지역인 경우에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2. 차량의 적재물로 인하여 긴급견인서비스, 타이어교체서비스, 긴급구난서비스, 타이어펑크 수리서비스 및 수리차량운반서비스의 제공에 제한이 생길 경우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3. 긴급견인서비스, 긴급구난서비스, 타이어펑크수리서비스에 대하여 보통약관에 의하여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는 경우에는 회사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으며 이미 제공된 서비스에 대해서는 소요된 비용을 피보험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비상급유서비스 제공에 있어서 LPG를 연료로 사용하는 피보험자동차가 연료가 소진되어 운행이 정지된 경우는 가스충전소까지 견인하여 드리며, '제2조(긴급출동서비스의 종류 및 내용) 1.긴급견인서비스'와 동일한 기준으로 서비스를 제공하여 드립니다.
5. 휠을 개조한 차량이거나 특수볼트가 사용된 차량인 경우 피보험자가 휠을 교체할 수 있는 장비를 소지했을 경우에만 타이어교체서비스가 가능합니다.
6. 잠금장치해제서비스에 있어서 트렁크 잠금장치해제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또한 최근 출시된 국산 차량인 경우에는 특수 잠금장치(스마트키, 이모빌라이저)가 장착되어 있거나 사이드에어백의 장착 등으로 통상적인 방법으로 잠금해제가 불가능할 경우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 경우 피보험자는 회사에 잠금장치해제 전문업체 연결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때 회사는 통상적인 방법으로 잠금장치해제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소요되는 비용만을 제공하여 드립니다.
7. 긴급구난서비스는 별도의 구난장비 없이 구난 가능한 경우에 한하며, 특수한 구난을 한 경우에는 별도의 사용료가 청구됩니다.
8. 부동액보충서비스, 퓨즈교환서비스 제공에 있어서 긴급출동시 보유한 제품과 규격이 상이한 경우, 서비스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9. 타이어펑크수리서비스에 있어서 자연 마모로 인한 펑크와 타이어가 찢어진 경우에는 해당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또한 타이어펑크수리서비스의 제공이 어려운 경우에는 긴급견인서비스나 타이어교체서비스를 제공하여 드리며, 피보험자의 요청시 타이어에 공기를 주입하여드립니다.
10. 수리차량운반서비스는 소모품 교환 등 단순 수리의 경우에 제외됩니다.
11. 고속도로 등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제1조(긴급출동서비스의 종류 및 내용)의 서비스(긴급견인 및 긴급구난서비스 제외)를 제공하는 경우 회사는 피보험자 및 서비스제공자의 안전을 위하여 피보험자동차를 안전한 지역까지 견인한 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견인 비용은 회사가 부담합니다.
12. 피보험자가 음주, 마약 또는 약물 등의 영향으로 피보험자동차의 정상적인 운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서비스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용어풀이

1. 이 특별약관에서 **특수한 구난**을 한 경우라 함은 ① 2.5t을 초과하는 구난형 특수자동차로 구난한 경우 ② 2대 이상의 구난형 특수자동차가 구난한 경우 ③ 구난작업을 시작하여 견인고리 연결직전까지 소요된 시간이 30분을 초과한 경우 ④ 2500cc 이상의 국산차량 및 전 외제 차량을 구난한 경우 ⑤ 세이프티 로더로 구난한 경우를 말합니다.
2. 이 특별약관에서 **타이어펑크수리서비스**의 제공이 어려운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야간, 눈 또는 비가 내리는 경우 등 펑크 위치를 육안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② Run-flat Tire, 튜브형 타이어 등 펑크를 수리한 때 특수장비가 필요한 타이어가 펑크난 경우
   ③ 날씨(한파, 고온), 펑크 크기, 개수, 타이어 측면 펑크 등으로 현장에서 타이어 펑크 임시 수리가 불가한 경우

제4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① 회사는 긴급출동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부득이 파손된 부분의 원상복구를 위해 소요된 비용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② 회사는 긴급출동서비스의 지연 또는 미제공으로 인하여 발생한 간접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③ 회사는 긴급출동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 부득이 발생하는 적재물의 손상, 멸실 등의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④ '제2조(긴급출동서비스의 종류 및 내용)'의 각 서비스는 1일 1회에 한합니다.

제5조(피보험자의 범위)

이 특별약관에 있어 피보험자란 보험증권에 기재된 운전할 수 있는 범위의 자를 말합니다.

제6조(특별약관의 종료)

① 이 특별약관은 피보험자가 이 보험계약 가입 후 긴급출동서비스 이용 가능 횟수를 모두 이용한 경우에는 그 시점부터 종료합니다.

조건		직전계약 긴급출동서비스 이용횟수	이용가능 횟수
보험기간 1년	직전계약이 있는 경우	0회	12회
		1회 이상	10회
	직전계약이 없는 경우	-	10회
보험기간 3개월 초과 1년미만		-	3회
보험기간 3개월 이하		-	1회

② 위 '①'에서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도 불구하고 다음을 모두 만족시키는 경우에는 긴급출동서비스를 10회 이상 제공한 때로부터 이 특별약관은 종료됩니다.
   1. 이 특별약관의 보험시작일자가 보험증권의 보험시작일자와 동일한 경우
   2.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이 11개월을 초과할 경우

용어풀이

이 특별약관에서 '직전계약이 있는 경우'라 함은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동차보험계약을 말합니다.

① 직전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와 피보험자동차가 이 보험계약의 피보험자 및 피보험자동차와 동일하고, 보험기간 만료일이 이 보험계약의 보험기간 시작일과 일치하는 동일한 보험회사의 계약인 경우

② 직전계약의 보험기간이 1년인 경우

③ 이 보험계약 직전 계약에서 당사의 긴급출동서비스를 제공하는 특별약관에 가입한 경우

제7조(특약보험료의 환급)

① 보험계약을 해지한 경우. 계약을 해지하기 전에 서비스가 한번이라도 제공된 경우에는 특약보험료를 환급하지 않습니다.

②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더라도 보험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특약보험료를 환급하지 않습니다.

제8조(준용 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Ⅲ-4 매직카서비스(수소/전기차(견인 100km)) 특별약관

제1조(가입대상)

이 특별약관은 피보험자동차가 수소·전기자동차인 경우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용어풀이

이 특별약관에서 '수소·전기자동차'라 함은 전기에너지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로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 제 2조 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 또는 제 6호에 따른 '수소전기자동차'를 말합니다.

제2조(긴급출동서비스의 종류 및 내용)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동차(이하 '피보험자동차'라 합니다)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긴급출동서비스를 필요로 하여 회사에 요청할 때에는 다음의 정의에 의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1. 긴급견인서비스 :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던 중 피보험자동차의 사고 또는 고장으로 피보험자동차가 자력으로 운행하지 못하여 수리를 위해 긴급견인을 필요로 할 경우에 100km를 한도로 견인하여 드립니다. 단, 100km 초과거리에 대해 발생한 비용은 피보험자가 부담합니다.
2. 타이어교체서비스 : 타이어의 파손으로 운행을 할 수 없는 경우로서 예비타이어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파손된 타이어를 예비타이어로 교환하여 드립니다.
3. 타이어펑크수리서비스 :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던 중 피보험자동차 타이어의 구멍이 뚫린 단순 펑크로 인하여 운행이 불가한 경우 타이어 펑크를 수리하여 드립니다. 타이어펑크 1개당 서비스 1회를 차감합니다.
4. 잠금장치해제서비스: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던 중 차량의 Key를 자동차 실내

에 두고 차문을 잠근 경우 잠금장치를 해제하여 드립니다.

5. 긴급구난서비스 : 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던 중 도로를 이탈하거나 장애물로 인하여 피보험자동차가 자력으로 운행을 하지 못하여 구난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 긴급 구난하여 드립니다.
6. 자동차방전시 응급지원서비스 : 피보험자동차의 시동용(점프)배터리 방전으로 시동이 불가능한 경우에 시동이 가능하도록 조치하여 드립니다. 다만, 피보험자요청에 따라 시동용(점프)배터리를 교환할 경우 발생되는 비용은 피보험자의 부담으로 하며, 시동조치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견인하여 드립니다. 피보험자동차의 고전압배터리 (리튬이온전지 등) 방전(수소전기차동차의 경우 수소 연료 소진시를 말함)으로 인하여 자력으로 운행이 불가능하거나 계기판에 표시된 주행가능거리가 10km 이내인 경우, 충전기가 설치된 가장 가까운 장소까지 견인하여드립니다. 견인서비스는 '1.긴급견인서비스'와 동일한 기준으로 서비스를 제공하여 드립니다.

제3조(긴급출동서비스의 제한)

① 서비스 제한 차종

보험회사는 '제2조(긴급출동서비스의 종류 및 내용)'에도 불구하고 다음에 해당하는 차량에 대하여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구 분	제한 항목
구조 변경된 차, 길이 또는 중량이 서비스제공 범위를 초과하는 자동차	1.긴급견인서비스, 2.타이어교체서비스, 3.타이어펑크수리서비스, 5.긴급구난서비스
외산자동차	4.잠금장치해제서비스

② 서비스 제공이 제한되는 경우

보험회사는 '제2조(긴급출동서비스의 종류 및 내용)'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항의 경우에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1. 긴급출동서비스의 요청지가 출동/견인 차량이 도착하기 어려운 지역(비포장 도로, 해안가 모래사장, 갯벌, 늪, 진흙지대, 산기슭 등)이나 도서(제주도나 연륙교로 연결된 도서지역은 제외), 산간지역 및 통신교환이 원활하지 못하는 등 회사가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지역인 경우에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2. 차량의 적재물로 인하여 긴급견인서비스, 타이어교체서비스, 긴급구난서비스 및 타이어펑크수리서비스의 제공에 제한이 생길 경우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3. 긴급견인서비스, 긴급구난서비스, 타이어펑크수리서비스에 대하여 보통약관에 의하여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는 경우에는 회사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으며 이미 제공된 서비스에 대해서는 소요된 비용을 피보험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휠을 개조한 차량이거나 특수볼트가 사용된 차량인 경우 피보험자가 휠을 교체할 수 있는 장비를 소지했을 경우에만 타이어교체서비스가 가능합니다.
5. 잠금장치 해제서비스에 있어서 트렁크 잠금장치 해제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또한 최근 출시된 국산 차량인 경우에는 특수 잠금장치(스마트키, 이모빌라이저)가 장착되어 있거나 사이드에어백의 장착 등으로 통상적인 방법으로 잠금해제가 불가능할 경우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 경우 피보험자는 회사에 잠금장치해제 전문업체 연결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때 회사는 통상적인 방법으로 잠금장치해제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소요되는 비용만을 제공하여 드립니다.
6. 긴급구난서비스는 별도의 구난장비 없이 구난 가능한 경우에 한하며, 특수한 구난을

한 경우에는 별도의 사용료가 청구됩니다.

7. 타이어펑크수리서비스에 있어서 자연 마모로 인한 펑크와 타이어가 찢어진 경우에는 해당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또한 타이어펑크수리서비스의 제공이 어려운 경우에는 긴급견인서비스나 타이어교체서비스를 제공하여 드리며, 피보험자의 요청시 타이어에 공기를 주입하여드립니다.
8. 고속도로 등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제2조(긴급출동서비스의 종류 및 내용)의 서비스(긴급견인 및 긴급구난서비스 제외)를 제공하는 경우 회사는 피보험자 및 서비스제공자의 안전을 위하여 피보험자동차를 안전한 지역까지 견인한 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9. 피보험자가 음주, 마약 또는 약물 등의 영향으로 피보험자동차의 정상적인 운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서비스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용어풀이

1. 이 특별약관에서 **특수한 구난**을 한 경우라 함은 ① 2.5t을 초과하는 구난형 특수자동차로 구난한 경우 ② 2대 이상의 구난형 특수자동차가 구난한 경우 ③ 구난작업을 시작하여 견인고리 연결직전까지 소요된 시간이 30분을 초과한 경우 ④ 2500cc 이상의 국산차량 및 전 외제 차량을 구난한 경우 ⑤ 세이프티 로더로 구난한 경우를 말합니다.
2. 이 특별약관에서 **타이어펑크수리서비스**의 제공이 어려운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야간, 눈 또는 비가 내리는 경우 등 펑크 위치를 육안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② Run-flat Tire, 튜브형 타이어 등 펑크를 수리한 때 특수장비가 필요한 타이어가 펑크난 경우
   ③ 날씨(한파, 고온), 펑크 크기, 개수, 타이어 측면 펑크 등으로 현장에서 타이어 펑크 임시 수리가 불가한 경우

제4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① 회사는 긴급출동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부득이 파손된 부분의 원상복구를 위해 소요된 비용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② 회사는 긴급출동서비스의 지연 또는 미제공으로 인하여 발생한 간접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③ 회사는 긴급출동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 부득이 발생하는 적재물의 손상, 멸실 등의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④ '제2조(긴급출동서비스의 종류 및 내용)'의 각 서비스는 1일 1회에 한합니다.

제5조(피보험자의 범위)

이 특별약관에 있어 피보험자란 보험증권에 기재된 운전할 수 있는 범위의 자를 말합니다.

제6조(특별약관의 종료)

① 이 특별약관은 피보험자가 이 보험계약 가입 후 긴급출동서비스 이용 가능 횟수를 모두 이용한 경우에는 그 시점부터 종료합니다.

조건		직전계약 긴급출동서비스 이용횟수	이용가능 횟수
보험기간 1년	직전계약이 있는 경우	0회	8회
		1회 이상	6회
	직전계약이 없는 경우	-	6회
보험기간 3개월 초과 1년미만		-	3회
보험기간 3개월 이하		-	1회

② 위 '①'에서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도 불구하고 다음을 모두 만족시키는 경우에는 긴급출동서비스를 6회 이상 제공한 때로부터 이 특별약관은 종료됩니다.
1. 이 특별약관의 보험시작일자가 보험증권의 보험시작일자와 동일한 경우
2.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이 11개월을 초과할 경우

용어풀이

이 특별약관에서 '직전계약이 있는 경우'라 함은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동차보험계약을 말합니다.
① 직전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와 피보험자동차가 이 보험계약의 피보험자 및 피보험자동차와 동일하고, 보험기간 만료일이 이 보험계약의 보험기간 시작일과 일치하는 동일한 보험회사의 계약인 경우
② 직전계약의 보험기간이 1년인 경우
③ 이 보험계약 직전 계약에서 당사의 긴급출동서비스를 제공하는 특별약관에 가입한 경우

제7조(특약보험료의 환급)
① 보험계약을 해지한 경우. 계약을 해지하기 전에 서비스가 한번이라도 제공된 경우에는 특약보험료를 환급하지 않습니다.
②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더라도 보험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특약보험료를 환급하지 않습니다.

제8조(준용 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KB다이렉트(인터넷)개인용자동차보험 특별약관 II

Ⅳ. 보장 범위 변경

(1) '배상책임' 관련 보장 범위 변경
1. 법률비용지원 벌금확장 기본형/고급형/최고급형 특별약관 | 126
2. 법률비용지원 벌금확장 최고급형 특별약관(보장확대형)Ⅱ | 129
3. 의무보험 일시담보 특별약관 | 132
4. 대물배상 가입금액 확장 특별약관('대물배상'대체 특별약관) | 133
5. 외산차 충돌 확대보상 특별약관('대물배상'대체 특별약관) | 133
6. 반려동물 교통사고 위로금 기본형/고급형 특별약관 | 134

(2) '자기신체사고' 관련 보장 범위 변경
7. 자동차상해 특별약관('자기신체사고'대체 특별약관) | 135
8. 부상가입금액 확장 특별약관 | 137
9. 여성 Care 특별약관 | 138
10. 부부 Care 특별약관 | 139
11. 실버 Care 특별약관 | 140
12. 자녀 Care 특별약관 | 141
13. 안전벨트 착용 상해 특별약관 | 144
14. 주말 자기신체사고 위로금 특별약관 | 144
15. 간병비 지원 특별약관 | 145
16. 자기신체사고 상급병실 이용 보상 특별약관 | 146
17. 수요일·주말 보상확대 특별약관('자기신체사고'대체 특별약관) | 146
18. 지정기부 특별약관 | 148

(3)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관련 보장 범위 변경
19.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별약관 | 149
① 다른 자동차 차량손해 추가 특별약관 | 150
①-1 다른 자동차 자녀운전자 추가 특별약관 | 152
①-2 다른 자동차 부모운전자 추가 특별약관 | 153
② 실시간 다른 자동차 차량손해 추가 특별약관 | 154

(4) '자기차량손해' 관련 보장 범위 변경
20. 자기차량손해 포괄 특별약관('자기차량손해'대체 특별약관) | 156
① 프리미엄 차량담보 추가 특별약관 | 159
21. 차량 수리비 확장 특별약관 | 160
22. 렌터카대여비용 특별약관 | 161
23. 레저용품 담보 특별약관 | 162
24. 신차전부손해확대 보상 특별약관 | 163
25. 원격지사고비용 특별약관 | 163
26. 지진 위험담보 특별약관 | 165
27. 전손 시 대체차량 취·등록세 비용지원 특별약관 | 165
28. 차량기준가액 확대보상 특별약관 | 166

Ⅴ. 친서민 / 친환경

1. 희망나누기/희망나눔자동차 특별약관 | 167
2. 친환경부품사용 특별약관 | 168
3. 품질인증부품사용 특별약관 | 169
4. 마일리지 할인 특별약관(사진전송방식) | 171
5. 마일리지 할인 특별약관(운행정보 확인장치 방식) | 173
6. 마일리지 선할인 특별약관(사진전송방식) | 176
7. 마일리지 선할인 특별약관(운행정보 확인장치 방식) | 179
8. 전자우편 특별약관 | 182
9. 전자우편(보험증권 서면수령형) 특별약관 | 183
10. 실버교통안전교육 이수 할인 특별약관 | 184
11. 대중교통 이용 할인 특별약관 | 185
12. 전기차 사고시 배터리 신가보상 특별약관 | 186
13. 전기차 충전중 자기신체사고 보상 특별약관 | 187
14. 하이브리드차 사고시 배터리 신가보상 특별약관 | 188

15. 차량5부제 특별약관 | 188

VI. 기 타

1. 유상운송 위험담보 특별약관 | 192
2. 가족교통상해 특별약관 | 192
3. 지정대리청구 특별약관 | 194
4. 블랙박스장착 특별약관 | 195
5. 자녀할인 특별약관 | 196
6. 보험대차 운전 중 사고보상 특별약관 | 197
7. 이동통신단말장치 안전운전 할인 특별약관 | 198
8. 커넥티드카 할인 특별약관 | 200
9. 커넥티드카 안전운전 할인 특별약관 | 201
10. 첨단안전장치 장착 특별약관 | 203
11. 장애인 전용 보험 전환 특별약관 |
12. 마일리지 환급금 자동적용 특별약관 | 206
13. 걸음 수 할인 특별약관 | 207
14. 어라운드 뷰 모니터 장착 특별약관 | 208
15. 후측방 충돌방지장치 장착 특별약관 | 209
16. 급발진사고 변호사 선임비용 지원 특별약관 | 210
17.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장치 장착 특별약관 | 212
18. 헤드업디스플레이 장착 특별약관 | 213

Ⅳ. 보장 범위 변경

Ⅳ-1 법률비용지원 벌금확장 기본형/고급형/최고급형 특별약관

제1조(가입 대상)
이 특별약관은 보통약관 '배상책임(대인배상Ⅰ, 대인배상Ⅱ, 대물배상)'이 모두 체결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 법률비용 지원 벌금확장 최고급형 특별약관(보장확대형)과 중복 가입할 수 없습니다.

제2조(보상 내용)
① 보상하는 손해
1.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동차(이하 '피보험자동차'라 합니다)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남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하여 형사상 책임을 진 경우에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단, 피보험자가 합의금으로 지급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2. 다음 (ㄱ)과 (ㄴ)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형사합의금을 피해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습니다.
   (ㄱ) 피보험자와 피해자간 형사합의금액을 확정하고, 피해자가 형사합의금액을 별도로 장래에 지급받는 조건으로 형사합의를 한 경우
   (ㄴ) 보험회사가 피해자에게 형사합의금을 직접 지급하는 경우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에 따라 피해자에게 직접 지급되는 보험금(형사합의금)에 상응하는 청구권을 포기한 경우

② 보상한도 및 지급보험금
이 특별약관에서 정한 보험금의 종류와 한도는 매 사고마다 다음과 같습니다.
1. 사망형사합의지원금 : 피보험자가 피해자를 사망케 하여 형사합의를 한 경우 피해자 1인당 3,000만원을 한도로 실제 합의된 금액을 지급합니다.
2. 부상형사합의지원금 : 피보험자가 다음 (ㄱ) 또는 (ㄴ)의 사고로 피해자를 다치게 하고 검찰에 의하여 공소제기가 되어 형사합의를 한 경우 피해자 1인당 아래 <별표>「부상형사합의지원금 보상 한도액」의 지급기준 한도에서 실제 합의된 금액을 지급합니다. 단, 한 사고가 다음 (ㄱ)과 (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험금을 중복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ㄱ)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사고
   (ㄴ) 피해자가 형법 제258조 제1항 또는 제2항,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1항 제2호의 중상해를 입은 경우

<별표> 부상형사합의지원금 보상 한도액

구 분	1급~3급	4급~5급	6급~7급	8급~14급
기본형	1,000만원	500만원	300만원	해당없음
고급형	3,000만원	700만원	500만원	해당없음
최고급형	3,000만원	700만원	500만원	100만원

㈜ 상해급수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상해구분을 따릅니다.

다만, 부상형사합의금을 수령한 후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직접적인 결과로 인해 사망한 경우에는 위 '1'과 '2'의 차액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더불어, 법원에 공탁하는 경우에는 실제 공탁금액을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지급합니다. 단, 공탁

자가 공탁금을 회수한 경우에는 지급받은 형사합의지원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3. 변호사 선임 비용 : 피보험자가 구속영장에 의하여 구속되었거나 검찰에 의해 공소 제기(약식기소 제외)되어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 500만원을 한도로 방어비용을 지급합니다. 다만, 약식명령에도 불구하고 형사소송법 제 453조의 규정에 따라 피보험자가 정식 재판을 청구하는 경우(청구가 취하 또는 각하되는 경우 제외)와 검사에 의해 약식기소 되었으나 법원에 의해 보통의 심판절차인 공판절차에 의해 재판을 진행한 경우는 포함합니다.
4. 벌금지원금 : 피보험자가 피해자의 신체에 상해를 입힘으로써 대한민국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벌금액이 확정된 경우에는 2,000만원(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3(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치사상의 가중처벌)을 적용받는 경우 3000만원 한도)을 한도로 벌금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용어풀이

1. 형사소송법 제449조(약식명령의 청구) 약식명령의 청구는 공소의 제기와 동시에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2. 형사소송법 제453조(정식재판의 청구)
   (1) 검사 또는 피고인은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이내에 정식재판의 청구를 할 수 있다. 단 피고인은 정식재판의 청구를 포기할 수 없다.
   (2) 정식재판의 청구는 약식명령을 한 법원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3) 정식재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지체 없이 검사 또는 피고인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3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① 회사는 다음과 같은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1. 전쟁, 변란, 폭동, 그 밖의 소요나 이와 비슷한 사변으로 인하여 사고가 생긴 때
2. 지진, 분화, 태풍, 홍수,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사고가 생긴 때
3. 핵연료물질의 직접 또는 간접적인 영향으로 사고가 생긴 때
4. 피보험자동차의 운전자가 싸움, 자살 또는 고의로 사고를 일으킨 때
5. 피보험자동차의 운전자가 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한 때
6. 피보험자동차의 운전자가 자동차를 범죄의 목적으로 사용한 때
7. 피보험자동차의 운전자가 무면허운전을 하던 중 사고를 일으킨 때
8. 영리를 목적으로 요금이나 대가를 받고 피보험자동차를 반복적으로 사용하거나 빌려 준 때에 생긴 손해. 다만,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합니다.
   가. 임대차계약(계약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함)에 따라 임차인이 피보험자동차를 전속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다만, 임차인이 피보험자동차를 영리를 목적으로 요금이나 대가를 받고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나. 피보험자와 동승자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한 날의 출·퇴근 시간대(오전 7시부터 오전 9시까지 및 오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를 말함)에 실제의 출·퇴근 용도로 자택과 직장 사이를 이동하면서 '승용차 함께 타기'를 실시한 경우
9. 피보험자동차의 운전자가 음주운전 또는 마약·약물운전을 하던 중 사고를 일으킨 때
10. 보험증권에 기재된 운전가능 범위외의 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운전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11.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에 관하여 제3자와의 사이에 다른 계약을 맺고 있을 때 그 계약으로 인하여 늘어난 손해
12. 피보험자동차를 시험용 또는 경기용이나 경기를 위한 연습용으로 사용하던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② 피해자가 기명피보험자 또는 운전자의 가족인 경우에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용어풀이

이 약관에서 기명피보험자의 가족이라 함은 ① 기명피보험자의 부모와 양부모, 계부모(단, 부모, 양부모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 제외) ② 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의 부모 또는 양부모, 계부모(단, 부모, 양부모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 제외) ③ 법률상의 배우자 또는 사실혼관계에 있는 배우자 ④ 법률상의 혼인관계에서 출생한 자녀, 사실혼관계에서 출생한 자녀, 양자 또는 양녀, 계자녀(단,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가 타인과의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 제외) ⑤ 기명피보험자의 며느리 또는 사위(계자녀의 배우자 포함. 단, 자녀, 계자녀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 제외)를 말합니다.

제4조(피보험자의 범위)
이 특별약관에서 피보험자라 함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운전자 한정범위에 속하는 자를 말합니다.

제5조(대위 규정)
회사가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추가로 지급한 보험금에 대하여는 피보험자 또는 그 상속인이 제 3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를 취득하지 않습니다.

제6조(제출서류)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제2조(보상내용) ②항 '1 내지 2'의 보험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ㄱ)~(ㅁ)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제2조(보상내용) ①항 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ㅂ)~(ㅊ)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ㄱ) 경찰서에서 발행한 교통사고 사실 확인원
(ㄴ) 경찰서 혹은 검찰청에 제출된 자동차 교통사고 형사합의서(단, 합의금액 명시)
(ㄷ) 검찰에 의해 기소된 경우 검찰청에서 발행한 공소장
(ㄹ) 가해자가 법원에 공탁한 경우 법원 혹은 검찰청에 제출한 공탁(확인)서 및 공탁금 회수제한 신고서
(ㅁ) 기타 보험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ㅂ) 경찰서 혹은 검찰청에 제출된 자동차 교통사고 형사합의서(단, 합의금액이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합의금액을 장래에 지급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함)
(ㅅ) 보험금(형사합의금) 수령에 관한 위임장 및 확인서(보험회사 양식)
(ㅇ) 경찰서에서 발행한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또는 검찰에 의해 기소된 경우 검찰청에서 발행한 공소장
(ㅈ) 진단서, 소견서 등 피해자의 상해등급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ㅊ) 그 밖에 보험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제7조(보험금의 분담)
이 특별약관에서 '사망.부상 형사합의지원금, 변호사 선임비용, 벌금지원금'이 지급되는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33조(보험금의 분담)'의 '다른 보험계약(공제계약을 포함)'에 장기손해보험 및 일반손해보험을 포함하여 적용합니다.

$$\text{손해액} \times \frac{\text{이 보험계약에 의해 산출한 보상책임액}}{\text{다른 보험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 보험계약에 의해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

제8조(준용 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Ⅳ-2 법률비용지원 벌금확장 최고급형 특별약관(보장확대형) Ⅱ

제1조(가입 대상)

이 특별약관은 보통약관 '배상책임(대인배상Ⅰ, 대인배상Ⅱ, 대물배상)'이 모두 체결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 법률비용지원 벌금확장 기본형/고급형/최고급형 특별약관과 중복 가입할 수 없습니다.

제2조(보상 내용)

① 보상하는 손해

1.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동차(이하 '피보험자동차'라 합니다)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남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하여 형사상 책임을 진 경우에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단, 벌금지원금(대물)은 아래 ②항 5. 벌금지원금(대물)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합니다.
2. 다음 (ㄱ)과 (ㄴ)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형사합의금을 피해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습니다.
   (ㄱ) 피보험자와 피해자간 형사합의금액을 확정하고, 피해자가 형사합의금액을 별도로 장래에 지급받는 조건으로 형사합의를 한 경우
   (ㄴ) 보험회사가 피해자에게 형사합의금을 직접 지급하는 경우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에 따라 피해자에게 직접 지급되는 보험금(형사합의금)에 상응하는 청구권을 포기한 경우

② 보상한도 및 지급보험금

이 특별약관에서 정한 보험금의 종류와 한도는 매 사고마다 다음과 같습니다.

1. 사망형사합의지원금 : 피보험자가 피해자를 사망케 하여 형사합의를 한 경우 피해자 1인당 2억을 한도로 실제 합의된 금액을 지급합니다.
2. 부상형사합의지원금 : 피보험자가 다음 (ㄱ) 또는 (ㄴ)의 사고로 피해자를 다치게 하고 검찰에 의하여 공소제기가 되어 형사합의를 한 경우 피해자 1인당 아래 <별표> 「부상형사합의지원금 보상 한도액」의 지급기준 한도에서 실제 합의된 금액을 지급합니다. 단, 한 사고가 다음 (ㄱ)과 (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험금을 중복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ㄱ)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사고
   (ㄴ) 피해자가 형법 제258조 제1항 또는 제2항,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1항 제2호의 중상해를 입은 경우

<별표> 부상형사합의지원금 보상 한도액

상해등급	1급~3급	4급~5급	6급~7급	8급~14급
지급보험금	1억5,000만원	8,000만원	2,000만원	500만원

㈜ 상해급수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상해구분을 따릅니다.

다만, 부상형사합의금을 수령한 후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직접적인 결과로 인해 사망한 경우에는 위 '1'과 '2'의 차액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더불어, 법원에 공탁하는 경우에는 실제 공탁금액을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지급합니다. 단, 공탁자가 공탁금을 회수한 경우에는 지급받은 형사합의지원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3. 변호사선임비용: 피보험자가 구속영장에 의하여 구속되었거나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약식기소 제외)되어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 500만원을 한도로 실제 발생한 변호사선임비용을 지급합니다. 다만, 약식명령에도 불구하고 형사소송법 제453조의 규정에 따라 피보험자가 정식 재판을 청구하는 경우(청구가 취하 또는 각하되는 경우 제외)와 검사에 의해 약식기소 되었으나 법원에 의해 보통의 심판절차인 공판절차에 의해 재판을 진행한 경우는 포함합니다.
4. 벌금지원금(대인) : 피보험자가 피해자의 신체에 상해를 입힘으로써 대한민국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벌금액이 확정된 경우에는 2,000만원(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3(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치사상의 가중처벌)을 적용받는 경우 3000만원)을 한도로 벌금지원금을 지급합니다.
5. 벌금지원금(대물) : 도로교통법 제 151조(벌칙)에 따라 대한민국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벌금액이 확정된 경우,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대물 벌금을 최대 500만원 한도로 지급합니다.

용어풀이

1. 형사소송법 제449조(약식명령의 청구) 약식명령의 청구는 공소의 제기와 동시에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2. 형사소송법 제453조(정식재판의 청구)
   (1) 검사 또는 피고인은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이내에 정식재판의 청구를 할 수 있다. 단 피고인은 정식재판의 청구를 포기할 수 없다.
   (2) 정식재판의 청구는 약식명령을 한 법원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3) 정식재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지체 없이 검사 또는 피고인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3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① 회사는 다음과 같은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1. 전쟁, 변란, 폭동, 그 밖의 소요나 이와 비슷한 사변으로 인하여 사고가 생긴 때
2. 지진, 분화, 태풍, 홍수,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사고가 생긴 때
3. 핵연료물질의 직접 또는 간접적인 영향으로 사고가 생긴 때
4. 피보험자동차의 운전자가 싸움, 자살 또는 고의로 사고를 일으킨 때
5. 피보험자동차의 운전자가 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한 때
6. 피보험자동차의 운전자가 자동차를 범죄의 목적으로 사용한 때
7. 피보험자동차의 운전자가 무면허운전을 하던 중 사고를 일으킨 때
8. 영리를 목적으로 요금이나 대가를 받고 피보험자동차를 반복적으로 사용하거나 빌려준 때에 생긴 손해. 다만,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합니다.
   가. 임대차계약(계약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함)에 따라 임차인이 피보험자동차를 전속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다만, 임차인이 피보험자동차를 영리를 목적으로 요금이나 대가를 받고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나. 피보험자와 동승자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한 날의 출·퇴근 시간대(오전 7시부터 오전 9시까지 및 오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를 말함)에 실제의 출·퇴근 용도로 자택과 직장 사이를 이동하면서 '승용차 함께타기'를 실시한 경우

9. 피보험자동차의 운전자가 음주운전 또는 마약·약물운전을 하던 중 사고를 일으킨 때
10. 보험증권에 기재된 운전가능 범위외의 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운전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11.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에 관하여 제3자와의 사이에 다른 계약을 맺고 있을 때 그 계약으로 인하여 늘어난 손해
12. 피보험자동차를 시험용 또는 경기용이나 경기를 위한 연습용으로 사용하던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② 피해자가 기명피보험자 또는 운전자의 가족인 경우에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용어풀이

이 약관에서 기명피보험자의 가족이라 함은 ① 기명피보험자의 부모와 양부모, 계부모(단, 부모, 양부모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 제외) ② 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의 부모 또는 양부모, 계부모(단, 부모, 양부모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 제외) ③ 법률상의 배우자 또는 사실혼관계에 있는 배우자 ④ 법률상의 혼인관계에서 출생한 자녀, 사실혼 관계에서 출생한 자녀, 양자 또는 양녀, 계자녀(단,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가 타인과의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 제외) ⑤ 기명피보험자의 며느리 또는 사위(계자녀의 배우자 포함. 단, 자녀, 계자녀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 제외)를 말합니다.

제4조(피보험자의 범위)
이 특별약관에서 피보험자라 함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운전자 한정범위에 속하는 자를 말합니다.

제5조(대위 규정)
회사가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추가로 지급한 보험금에 대하여는 피보험자 또는 그 상속인이 제 3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를 취득하지 않습니다.

제6조(제출 서류)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제2조(보상내용) ②항 '1 내지 2'의 보험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ㄱ)~(ㅁ)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제2조(보상내용) ①항 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ㅂ)~(ㅊ)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ㄱ) 경찰서에서 발행한 교통사고 사실 확인원
(ㄴ) 경찰서 혹은 검찰청에 제출된 자동차 교통사고 형사합의서(단, 합의금액 명시)
(ㄷ) 검찰에 의해 기소된 경우 검찰청에서 발행한 공소장
(ㄹ) 가해자가 법원에 공탁한 경우 법원 혹은 검찰청에 제출한 공탁(확인)서 및 공탁금 회수제한 신고서
(ㅁ) 기타 보험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ㅂ) 경찰서 혹은 검찰청에 제출된 자동차 교통사고 형사합의서(단, 합의금액이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합의금액을 장래에 지급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함)
(ㅅ) 보험금(형사합의금) 수령에 관한 위임장 및 확인서(보험회사 양식)
(ㅇ) 경찰서에서 발행한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또는 검찰에 의해 기소된 경우 검찰청에서 발행한 공소장
(ㅈ) 진단서, 소견서 등 피해자의 상해등급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ㅊ) 그 밖에 보험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제7조(보험금의 분담)
이 특별약관에서 '사망.부상 형사합의지원금, 변호사 선임비용, 벌금지원금(대인), 벌금지원

금(대물)'이 지급되는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33조(보험금의 분담)'의 '다른 보험계약(공제계약을 포함)'에 장기손해보험 및 일반손해보험을 포함하여 적용합니다.

$$\text{손해액} \times \frac{\text{이 보험계약에 의해 산출한 보상책임액}}{\text{다른 보험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 보험계약에 의해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

제8조(준용 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Ⅳ-3 의무보험 일시담보 특별약관

제1조(가입 대상)
이 특별약관은 보통약관 '배상책임(대인배상Ⅰ 및 대물배상)'에 대하여 자동적으로 적용됩니다.

제2조(보상 내용)
① 보상하는 손해
1.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동차(이하 '피보험자동차'라 합니다)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남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경우와 남의 재물을 없애거나 훼손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통약관 '배상책임(대인배상Ⅰ 및 대물배상)'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합니다. 다만, 「대물배상」의 경우 회사가 매 사고에 대하여 지급하는 보험금은 1사고당 2,000만원을 한도로 합니다.
2. 회사는 위 '1'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가. 양도된 피보험자동차가 양수인 명의로 이전등록된 이후에 발생한 손해
   나. 양도된 피보험자동차에 대하여 양수인 명의로 유효한 대인배상Ⅰ 및 대물배상에 가입한 이후에 발생한 손해
   다. 보통약관 '제42조(보험기간)'의 대인배상Ⅰ 및 대물배상 계약이 성립한 때 설정된 보험기간의 마지막 날 24시 이후에 발생한 손해
   라. 대물배상에서 양도인의 보험증권에 기재된 운전가능 범위 또는 운전가능 연령범위 외의 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운전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3. 위 '1'에 의하여 회사가 보상한 경우에는 자동차보험요율서에서 정한 불량할증을 양수인에게 적용합니다.

제3조(보험계약자 및 기명피보험자)
회사는 보통약관 '제48조(피보험자동차의 양도)'의 규정에 불구하고(단서의 승인이 있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동차가 양도된 날로부터 15일째 되는 날의 24시까지의 기간 동안은 그 자동차를 보통약관 '배상책임(대인배상Ⅰ 및 대물배상)'의 피보험자동차로 간주하고 양수인을 보험계약자 및 기명피보험자로 봅니다.

제4조(보험료의 청구 및 납입)
① 회사는 이 특별약관 '제2조(보상내용)'에 의해 회사가 보상책임을 지는 기간에 대하여는 단기요율로 계산한 해당 보험료를 양수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② 양수인은 제①항의 보험료의 납입을 청구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회사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제5조(준용 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Ⅳ-4 대물배상 가입금액 확장 특별약관('대물배상' 대체 특별약관)

제1조(가입 대상)
이 특별약관은 보통약관의'대물배상'이 체결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제2조(보상 내용)
회사는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보통약관의 '제2절 대물배상'의 가입금액을 보험증권에 기재된 대물배상 가입금액으로 대체하여 드립니다.

제3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보통약관 '제8조(보상하지 않는 손해)'에서 정하는 사항 이외에 다음과 같은 손해에 대하여도 보상하지 않습니다.
1. 보험증권에 기재된 운전가능 범위외의 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운전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제4조(준용 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Ⅳ-5 외산차 충돌 확대보상 특별약관('대물배상' 대체 특별약관)

제1조(가입 대상)
이 특별약관은 보통약관 '제2편 자동차보험에서 보상하는 내용 제2절 대물배상'에 가입한 경우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제2조(보상 내용)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보통약관 '제2편 자동차보험에서 보상하는 내용 제2절 대물배상'에 의해 보험금이 지급되는 사고로 인하여 외국산자동차에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이 생긴 때에는 그 외국산자동차의 손해배상에 대하여는 보험증권에 기재되어 있는 외국산자동차의 대물배상 한도로 확대하여 보상하여 드립니다. 다만, 1사고로 인한 지급보험금 합계액은 외국산자동차의 대물배상 한도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용어풀이

외산차란 외국 자동차 제조회사에 의해 대한민국 내가 아닌 곳에서 제조되어 수입, 판매되는 자동차를 말합니다.

제3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보통약관 '제8조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서 정하는 사항이외에 다음과 같은 손해에 대하여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보험증권에 기재된 운전가능 범위외의 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운전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제4조(피보험자)
이 특별약관에서 피보험자라 함은 보통약관 '제7조(피보험자)'에서 정하는 자를 말합니다.

제5조(준용 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Ⅳ-6 반려동물 교통사고 위로금 기본형/고급형 특별약관

제1조(가입대상)

① 이 특별약관은 보험기간이 1년인 경우에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② 이 특별약관은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 등록된 기명피보험자 또는 그 배우자, 자녀 소유의 반려동물이 있는 경우에 한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용어풀이

1.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이란 동물보호법 제15조(등록대상동물의 등록 등) 및 동법시행규칙 제10조(등록대상동물의 등록사항 및 방법 등)에 따라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운영하는 동물등록 및 보호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시스템을 말합니다.
2. 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 :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의 법률상의 배우자 또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를 말합니다.
3. 기명피보험자의 자녀 :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의 법률상의 혼인관계 또는 사실혼 관계에서 출생한 자녀, 양자녀를 말합니다.

제2조(계약 전 알릴 의무)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이 특별약관의 계약체결 시 가입하고자 하는 반려동물의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 등록된 동물등록번호를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함)에 알려주어야 합니다.

제3조(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사용·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타인자동차와 충돌 또는 접촉한 사고로 인해 피보험자동차에 탑승중인 반려동물이 폐사 또는 부상을 입은 경우 보험증권에 기재된 반려동물당(동물등록번호 기준) 다음 <별표> 보험금 지급기준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별표> 보험금 지급기준

보험금 종류	보험금 지급기준 (반려동물당)	
	기본형	고급형
반려동물 상실 위로금 (폐사)	50만원	100만원
반려동물 부상 위로금 (부상)	20만원	50만원

단, 「반려동물 부상 위로금」은 보험기간 중 1회에 한하여 지급하며, 이후에 반려동물이 폐사하는 경우 「반려동물 상실 위로금」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가입금액에서 「반려동물 부상 위로금」의 지급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용어풀이

1. '타인자동차'란 피보험자동차 이외의 자동차로서 그 자동차의 등록번호(차량번호 또는 차대번호 등을 말함)와 사고발생 시의 운전자 또는 소유자의 신분이 확인된 경우만을 말합니다. 이 경우, '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 군수품관리법에 따른 차량, 도로교통법에 따른 원동기장치자전거,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건설기계, 농업기계화촉진법에 따른 농업기계를 말합니다.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이 특별약관의 타인자동차로 보지 않습니다.
   (1) 기명피보험자와 그 부모, 배우자, 자녀가 소유하거나 통상 사용하는 자동차
   (2) 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의 부모로서 기명피보험자 또는 그 배우자와 동거 중인 자가 소유하거나 통상 사용하는 자동차
2. '충돌 또는 접촉한 사고'란 타인자동차와 충돌 또는 접촉하여 피보험자가 가입한 보험계

약의 대물배상 또는 자기차량손해 보험금이 지급되거나 상대방이 가입한 보험회사에서 대물배상 보험금을 지급받은 사고를 말합니다.
3. '폐사'란 '3. 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하는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반려동물이 수의사법 제12조(진단서 등)에 따라 수의사가 발급한 폐사 진단서에 의해 폐사가 확인된 경우를 말합니다.
4. '부상'이란 '3. 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하는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반려동물이 상해를 입어 수의사법 제12조(진단서 등)에 따라 수의사가 발급한 진단서에 의해 부상이 확인된 경우를 말합니다.

제4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보통약관 제8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①항의 1호 내지 7호나 8호에 해당하는 손해는 보상하지 않으며, 다음의 손해도 보상하지 않습니다.
① 보험증권에 기재된 운전가능범위 외의 자가 운전하던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② 피보험자가 무면허운전(보통약관 제1조 제4호) 또는 음주운전(보통약관 제1조 제9호)을 하였을 때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③ 피보험자가 마약·약물운전(보통약관 제1조 제19호)을 하였을 때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제5조(계약의 무효)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위 '2. 계약 전 알릴의무'에 따른 동물등록번호를 허위로 알린 경우 이 특별약관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제6조(보험금 청구 시 제출서류)
보험금을 청구할 때에는 보험금 청구서와 사고를 증명하는 서류(초진차트, 진단서 등), 동물등록증, 가족관계증명서(등록된 반려동물이 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 소유로 등록된 경우에 한함), 그 밖에 보험회사가 꼭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또는 증거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7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Ⅳ-7 자동차상해 특별약관('자기신체사고' 대체 특별약관)

제1조(가입 대상)
이 특별약관은 보통약관 '자기신체사고'가 체결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보통약관의 '자기신체사고'를 이 특별약관으로 대체하여 적용합니다.

제2조(보상 내용)
①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동차(이하 '피보험자동차'라 합니다)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때[103] 그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1. 피보험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사고
2. 피보험자동차의 운행중 발생한 다음의 사고. 다만,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에 탑승중일 때에 한합니다.
가. 날아오거나 떨어지는 물체와 충돌

103) 피보험자의 신체에 이상이 있는 점을 뒷받침할 수 있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나. 화재 또는 폭발
다. 피보험자동차의 낙하

② 회사가 이 약관에 따라 지급하는 보험금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지급보험금	=	실제 손해액	+	비 용	-	공제액

1. 실제손해액은 '<별표1> 대인배상,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지급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 또는 소송이 제기된 경우 확정판결금액으로써 과실상계 및 보상한도를 적용하기 전의 금액을 말합니다.
2. 위 '비용'은 다음의 금액을 말합니다. 이 비용은 보험가입금액과 관계없이 보상하여 드립니다.
   가. 손해의 방지와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긴급조치비용을 포함합니다)
   나. 남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보전과 행사를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한 비용
3. 위 '공제액'은 다음의 금액을 말합니다.
   가. 자동차보험(공제계약을 포함합니다) 대인배상Ⅰ(정부보장사업을 포함합니다) 및 대인배상Ⅱ에 의하여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
   나.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에 의하여 지급될 수 있는 금액. 단,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보험금의 청구를 포기한 경우에는 공제하지 않습니다.
   다. 배상의무자 또는 배상의무자가 아닌 제3자로부터 이미 보상받은 금액. 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해 보상받은 금액은 제3자로부터 보상받은 금액에 포함하지 않으며 이 경우 관련 내용(업무상 재해 등)확인을 위해 보험회사가 요청한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③ 제②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배상의무자가 가입한 자동차보험(공제계약을 포함)의 대인배상Ⅰ과 대인배상Ⅱ에 의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을 포함하여 피보험자가 회사에 청구하는 경우, 이 약관에 따라 지급하는 보험금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이 약관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과 배상의무자가 가입한 자동차보험(공제계약을 포함)의 대인배상Ⅰ 및 대인배상Ⅱ의 보험금 지급기준에 의하여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을 합한 액수로 합니다.

④ 회사가 사망보험금을 지급할 경우에 이미 후유장애로 지급한 보험금이 있을 때에는 사망보험금에서 이를 공제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⑤ 다만, 보험계약자인 기명피보험자가 본인의 사망보험금 수익자를 지정하거나 변경하고 그 사실을 회사에 서면으로 통지한 경우에는 그 수익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제3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보통약관 '제14조(보상하지 않는 손해)'에서 정하는 사항이외에 다음과 같은 손해에 대하여도 보상하지 않습니다.

1. 보험증권에 기재된 운전가능 범위외의 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운전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제4조(피보험자의 범위)

① 피보험자는 회사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으로 그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보통약관 '제7조(피보험자)'의 「대인배상Ⅱ」에 해당하는 자
   2. 위 '1'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

제5조(대위 규정)

① 회사는 피보험자 또는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 보험금의 한도 내에서 제3자에 대한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합니다. 다만, 회사가 보상한 금액이 피보험자의 손해의 일부를 보상한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권리를 취득합니다.

② 피보험자는 회사가 제①항에 의하여 취득한 권리의 행사 및 보전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또한 회사가 요구하는 증거 및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6조(기타 사항)

① 보험금의 청구와 지급

1.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 '제2조(보상 내용)'의 손해를 입은 때에는 피보험자는 배상의무자에 대하여 지체 없이 서면으로 손해배상청구를 한 후, 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2. 피보험자가 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27조(제출 서류)'에서 정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7조(준용 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Ⅳ-8 부상가입금액 확장 특별약관

제1조(가입 대상)

이 특별약관은 보통약관 '자기신체사고'또는 자기신체사고 대체 특약(자동차상해 특약)이 체결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제2조(보상 내용)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동차(이하 '피보험자동차'라 합니다)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직접적인 결과로 의사의 치료를 요하는 때에는 아래와 같이 보상하여 드립니다.

1. 자기신체사고
   가. 회사는 '<별표5> 자기신체사고 지급기준 1) 상해구분 및 급별 보험가입금액표'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특별약관 <별표>의 「상해구분 및 급별 보험가입금액표」에 따라 보험증권에 기재된 부상보험가입금액에 해당하는 각 상해급별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보상하여 드립니다.
   나. 회사는 위 '가'의 부상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15조(보험금의 종류와 한도) 제②항'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2. 자동차상해
   회사가 이 특별약관에 따라 지급하는 부상보험금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합니다.

제3조(준용 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별표> 상해구분 및 급별 보험가입금액표 (단위 : 만원)

상해등급	부상보험가입금액		
	3천만원	5천만원	1억원
1급	3,000	5,000	10,000
2급	1,600	2,700	5,400
3급	1,500	2,500	5,000
4급	1,400	2,300	4,600
5급	1,000	1,650	3,300
6급	800	1,300	2,600

7급	500	800	1,600
8급	360	600	1,200
9급	280	450	900
10급	240	400	800
11급	200	300	600
12급	180	200	400
13급	130	150	300
14급	80	100	120

Ⅳ-9 여성 Care 특별약관

제1조(가입 대상)
이 특별약관은 보통약관 '자기신체사고'또는 자기신체사고 대체 특약(자동차상해 또는 수요일.주말 보상확대 특약)이 체결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제2조(보상 내용)
① 보상하는 손해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동차(이하 '피보험자동차'라 합니다)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을 때에, 보통약관 '자기신체사고'또는 자기신체사고 대체 특약(자동차상해 또는 수요일.주말 보상확대 특약)에서 보험금이 지급된 경우에 한하여 이 특별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② 보상 한도 및 지급보험금
회사가 이 특별약관에 따라 매 사고에 대하여 지급하는 보험금의 종류와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성형지원금
피보험자가 상해에 의하여 안면부, 상지, 하지 부분에 성형을 요하는 경우에 1,000만원을 한도로 성형지원금 실비를 지급합니다.

용어풀이

이 특별약관에서 안면부, 상지, 하지란 다음을 말합니다.
1. 안면부란 이마를 포함하며 목까지의 얼굴부분을 말합니다.
2. 상지란 견관절 이하의 팔부분을 말합니다.
3. 하지란 고관절이하 대퇴부, 하퇴부, 족부를 의미하며, 둔부, 서혜부, 복부 등은 제외합니다.

2. 치아보철지원금
피보험자가 상해에 의하여 치아에 손상을 입어 보철을 요하는 경우에 500만원을 한도로 치아보철지원금 실비를 지급합니다. 보험 보통약관 지급 기준(자동차 보험 진료수가 기준)의 인정 가액을 한도로 하며,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기 전에 이미 보철을 하고 있었던 경우(틀니를 포함)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3. 건강회복위로금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은 직접적인 결과로 의사의 진단에 의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에서 정한 상해등급 7급 이상의 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100만원의 건강회복위로금을 지급합니다.

제3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보통약관 '제14조(보상하지 않는 손해)'에서 정하는 사항이외에 다음과 같은 손해에

대하여도 보상하지 않습니다.
1. 보험증권에 기재된 운전가능 범위외의 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운전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제4조(피보험자의 범위)
이 특별약관에서 피보험자라 함은 다음에 열거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1. 여성인 기명피보험자
2. 남성인 기명피보험자의 법률상의 배우자 또는 사실혼관계에 있는 배우자

제5조(준용 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Ⅳ-10 부부 Care 특별약관

제1조(가입 대상)
이 특별약관은 보통약관의 '자기신체사고'또는 자기신체사고 대체 특약(자동차상해 또는 수요일.주말 보상확대 특약)이 체결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제2조(보상 내용)
① 보상하는 손해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동차(이하 '피보험자동차'라 합니다)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었을 경우 또는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보통약관의 '자기신체사고'또는 자기신체사고 대체 특약(자동차상해 또는 수요일.주말 보상확대 특약)에서 보험금이 지급된 경우에 한하여 이 특별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② 보상한도 및 지급보험금
회사가 이 특별약관에 따라 매 사고에 대하여 지급하는 보험금의 종류와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가사활동 지원금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은 직접적인 결과로 의사의 진단에 의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에서 정한 상해등급 7급 이상의 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매 사고에 대하여 1인당 20만원의 가사활동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2. 중증후유장애지원금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은 직접적인 결과로 치료를 받은 후에도 신체에 중증후유장애가 남은 경우에 매 사고에 대하여 1인당 1억원의 중증후유장애지원금을 지급합니다. 단, 중증후유장애지원금이 지급되는 경우에는 아래 '3. 사망위로금'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망위로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3. 사망위로금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은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에 매 사고에 대하여 1인당 1,000만원의 사망위로금을 지급합니다.

용어풀이

이 특별약관에서 중증후유장애라 함은 피보험자 상해를 입은 직접적인 결과로 치료를 받은 후에도 신체에 장애가 남는 경우로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에서 정한 장애등급 1급 내지 3급의 장애를 말합니다.

제3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보통약관 '제14조(보상하지 않는 손해)'에서 정하는 사항이외에 다음과 같은 손해에 대하여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보험증권에 기재된 운전가능 범위외의 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운전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제4조(피보험자의 범위)
이 특별약관에서 피보험자라 함은 다음에 열거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1. 기명피보험자
2. 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

용어풀이

이 특별약관에서 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라 함은 법률상의 배우자 또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를 말합니다.

제5조(준용 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Ⅳ-11 실버 Care 특별약관

제1조(가입 대상)
이 특별약관은 보통약관의 '자기신체사고'또는 자기신체사고 대체 특약(자동차상해 또는 수요일.주말 보상확대 특약)이 체결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제2조(보상 내용)
① 보상하는 손해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동차(이하 '피보험자동차'라 합니다)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었을 경우 또는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 보통약관의 '자기신체사고'또는 자기신체사고 대체 특약(자동차상해 또는 수요일.주말 보상확대 특약)에서 보험금이 지급된 경우에 한하여 이 특별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② 보상한도 및 지급보험금
회사가 이 특별약관에 따라 매 사고에 대하여 지급하는 보험금의 종류와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건강회복지원금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은 직접적인 결과로 의사의 진단에 의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에서 정한 상해등급 7급 이상의 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1인당 50만원을 건강회복지원금으로 지급합니다.
2. 물리치료지원금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은 직접적인 결과로 의사의 진단에 의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에서 정한 상해등급 7급 이상의 골절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1인당 50만원을 물리치료지원금으로 지급합니다.
3. 뇌기능장애위로금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은 직접적인 결과로 의사의 진단에 의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에서 정한 상해등급 1급 내지 3급의 뇌관련 상해를 입은 경우에 1인당 1,000만원을 뇌기능장애위로금으로 지급합니다.
4. 재활시설지원금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은 직접적인 결과로 의사의 진단에 의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에서 정한 장애등급 1급 내지 3급의 중증후유장애가 발생하는 경우 1인당 1억원의 재활시설지원금을 지급합니다.
5. 장례지원금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은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에는 1인당 1,000만원을 장례지원금으로 지급합니다.

용어풀이

1. 이 특별약관에서 중증후유장애라 함은 피보험자 상해를 입은 직접적인 결과로 치료를 받은 후에도 신체에 장애가 남는 경우로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에서 정한 장애등급 1급 내지 3급의 장애를 말합니다.
2. 이 특별약관에서 골절이라 함은 외력의 작용이 강하여 뼈가 부분적 또는 완전히 이단된 상태를 말합니다.

제3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보통약관 '제14조(보상하지 않는 손해)'에서 정하는 사항이외에 다음과 같은 손해에 대하여도 보상하지 않습니다.

1. 보험증권에 기재된 운전가능 범위외의 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운전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제4조(피보험자의 범위)

이 특별약관에서 피보험자라 함은 다음에 열거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1. 연령이 만 50세 이상인 기명피보험자
2. 기명피보험자의 가족 중 연령이 만 50세 이상인 자

용어풀이

1. 이 약관에서 기명피보험자의 가족이라 함은 ① 기명피보험자의 부모와 양부모, 계부모(단, 부모, 양부모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 제외) ② 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의 부모 또는 양부모, 계부모(단, 부모, 양부모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 제외) ③ 법률상의 배우자 또는 사실혼관계에 있는 배우자 ④ 법률상의 혼인관계에서 출생한 자녀, 사실혼관계에서 출생한 자녀, 양자 또는 양녀, 계자녀(단,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가 타인과의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 제외) ⑤ 기명피보험자의 며느리 또는 사위(계자녀의 배우자 포함. 단, 자녀, 계자녀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 제외)를 말합니다.
2. 이 특별약관에서 만 50세 이상이란 주민등록상의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사고일 현재 만 50세 이상을 말합니다.

제5조(준용 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Ⅳ-12 자녀 Care 특별약관

제1조(가입 대상)

이 특별약관은 보통약관의 '자기신체사고'또는 자기신체사고 대체 특약(자동차상해 또는 수요일.주말 보상확대 특약)이 체결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제2조(보상 내용)

① 보상하는 손해

보험회사는(이하 회사라 합니다.) 피보험자가 다음중 어느 하나의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죽거나 다친 경우 특별약관에 따라 보상하는 사고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자동차와 접촉한 사고

2. 자동차에 탑승 중 사고
3. 피보험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사고
4. 피보험자동차의 운행 중 발생한 다음의 사고. 다만,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에 탑승중일때에 한합니다.
   가. 날아오거나 떨어지는 물체와 충돌
   나. 화재 또는 폭발
   다. 피보험자동차의 낙하

용어풀이

이 특별약관에서 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개인형이동장치 제외), 군수품관리법에 의한 차량,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건설기계, 농업기계화 촉진법에 의한 농업기계를 말함

② 보상한도 및 지급보험금
회사가 이 특별약관에 따라 매 사고에 대하여 1인당 지급하는 보험금의 종류와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교육보충지원금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은 직접적인 결과로 의사의 진단에 의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에서 정한 상해등급 10급 이상의 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매 사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교육보충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상해등급	1급	2급	3급	4~5급	6~7급	8~10급
지급보험금	1,000만원	500만원	300만원	200만원	100만원	50만원

2. 후유장애지원금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은 직접적인 결과로 치료를 받은 후에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에서 정한 장애등급 10급 이상의 장애가 남은 경우 매 사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후유장애지원금을 지급합니다. 단, 후유장애지원금이 지급되는 경우에는 아래 '3. 사망위로금'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망위로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후유장애등급	1~3급	4~7급	8~10급
지급보험금	1억원	5,000만원	2,000만원

3. 사망위로금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은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5,000만원의 사망사고 위로금을 지급합니다.
4. 성장판관련 골절사고위로금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은 직접적인 결과로 이 특별약관의 '<별표> 성장판관련 상해종류'에 해당하는 상해를 입은 경우 500만원의 성장판관련 골절사고위로금을 지급합니다.
5. 스쿨존사고 위로금
   피보험자가 스쿨존에서 발생한 사고로 위 '2. 후유장애지원금', '3. 사망위로금'의 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 지급보험금의 2배를 적용하여 '2. 후유장애지원금', 또는 '3. 사망위로금'의 보험금을 지급하여드립니다.
6. 심리피해 회복위로금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은 직접적인 결과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에서 정한 장애등급 12급 이상의 장애가 남거나 부상등급 4급 이상의 상해를 입은 경우 매 사고에 대하여 300만원의 심리상담비용을 지급합니다.

용어풀이

이 특별약관에서 '스쿨존사고'라 함은 도로교통법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에서 발생한 사고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제11호에서 말하는 처벌특례의 예외의 사고에 해당하고 해당 사고의 관할 경찰관서에서 이를 증명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제3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보통약관 '제14조(보상하지 않는 손해)'에서 정하는 사항이외에 다음과 같은 손해에 대하여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보험증권에 기재된 운전가능 범위 외의 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운전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제4조(피보험자의 범위)

이 특별약관에서 피보험자라 함은 기명피보험자의 만 18세 이하 자녀를 말합니다.

용어풀이

이 특별약관에서 만 18세 이하의 자녀란 사고일 현재 주민등록상의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법률상의 혼인관계에서 출생한 자녀, 사실혼 관계에서 출생한 자녀, 양자 또는 양녀를 말합니다.

제5조(준용 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별표> 성장판관련 상해 종류

상해등급	상 해 부 위
2급	10. 대퇴 골두 골절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11. 대퇴골 경부 분쇄 골절, 전자하부 분쇄 골절, 과부 분쇄 골절, 경골 과부 분쇄 골절 또는 경골 원위 관절내 분쇄 골절 12. 슬관절의 골절 및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3급	11. 주관절부 골절 및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13. 대퇴골 또는 경골 골절(대퇴골 골두 골절은 제외한다) 16. 족관절 골절 및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4급	8. 상완골 경부 골절 10. 상완골 과상부 또는 상완골 원위부 관절내 골절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경과골절, 과간 골절, 내과 골절, 소두 골절 등에 해당한다) 11. 요골 원위부 골절과 척골 골두 탈구가 동반된 상해(갈레아찌 골절을 말한다) 12. 척골 근위부 골절과 요골 골두 탈구가 동반된 상해(몬테지아 골절을 말한다) 14. 요수근관절 골절 및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수근골간 관절 탈구, 원위 요척관절 탈구를 포함한다)
5급	7. 요골 골두 또는 척골 구상돌기 골절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16. 대퇴골두 골절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7. 대퇴골 또는 근위 경골의 견열골절 18. 슬관절의 골절 및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21. 족관절의 양과 골절 또는 삼과 골절(내과, 외과, 후과를 말한다)
6급	12. 상완골 대결절 견열 골절 14. 주관절부 골절 및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7. 요골간부 또는 원위부 관절외 골절

	18. 요골 경부 골절 19. 척골 주두부 골절
7급	9. 요골 골두 또는 척골 구상돌기 골절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3. 요수근관절 골절 및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수근골간관절 탈구, 원위 요척관절 탈구를 포함한다) 22. 비골 간부 골절 또는 골두 골절 24. 족관절 내과, 외과 또는 후과 골절

Ⅳ-13 안전벨트 착용 상해 특별약관

제1조(가입 대상)
이 특별약관은 보통약관의 '자기신체사고'또는 자기신체사고 대체 특약(자동차상해 또는 수요일.주말 보상확대 특약)이 체결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제2조(보상 내용)
① 보상하는 손해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동차(이하 '피보험자동차'라 합니다)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해 보통약관 '자기신체사고'또는 자기신체사고 대체 특약(자동차상해 또는 수요일.주말 보상확대 특약)에서 보험금이 지급되고, 다음 사항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 이 특별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합니다.
1. 피보험자가 사망하거나 자동차손해보상보장법 시행령에서 정한 후유장애 1급 내지 3급의 해당하는 상해를 입은 경우
2. 피보험자가 안전벨트를 착용하였다는 것이 입증된 경우

② 보상한도 및 지급보험금
회사는 매 사고에 대하여 안전벨트 착용 상해 보험금으로 1인당 1,000만원을 지급합니다.

제3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보통약관 '제14조(보상하지 않는 손해)'에서 정하는 사항이외에 다음과 같은 손해에 대하여도 보상하지 않습니다.
1. 보험증권에 기재된 운전가능 범위외의 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운전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제4조(피보험자의 범위)
이 특별약관에서 피보험자라 함은 보통약관 '제13조(피보험자)'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

제5조(준용 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Ⅳ-14 주말 자기신체사고 위로금 특별약관

제1조(가입 대상)
이 특별약관은 보통약관의 '자기신체사고'또는 자기신체사고 대체 특약(자동차상해 또는 수요일.주말 보상확대 특약)이 체결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제2조(보상 내용)
① 보상하는 손해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동차(이하 '피보험자동차'라 합니다)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해 보통

약관 '자기신체사고'또는 자기신체사고 대체 특약(자동차상해 또는 수요일.주말 보상확대 특약)에서 정한 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로, 사고가 발생한 때가 주말인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합니다.

용어풀이

이 특별약관에서 주말이라 함은 사고발생지의 표준시가 ① 금요일 18:00~월요일 06:00 및 ② 법정공휴일(임시·대체공휴일 포함) 또는 근로자의 날은 해당일 전날 18:00 ~ 다음 날 06:00인 경우를 말합니다. 상기 ①과 ②를 제외한 나머지 기간은 주말로 보지 않습니다.

② 보상한도 및 지급보험금

회사가 이 특별약관에 따라 지급하는 보험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피보험자가 상해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에는 1인당 1,000만원을 지급합니다.
2. 피보험자가 상해로 인하여 치료를 받는 경우에는 매 사고당 20만원을 지급합니다.

제3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보통약관 '제14조(보상하지 않는 손해)'에서 정하는 사항이외에 다음과 같은 손해에 대하여도 보상하지 않습니다.

1. 보험증권에 기재된 운전가능 범위외의 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운전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제4조(피보험자의 범위)

이 특별약관에서 피보험자라 함은 보통약관 '제13조(피보험자)'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

제5조(준용 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Ⅳ-15 간병비 지원 특별약관

제1조(가입 대상)

이 특별약관은 보통약관의 '자기신체사고'또는 자기신체사고 대체 특약(자동차상해 또는 수요일.주말 보상확대 특약)이 체결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제2조(보상 내용)

① 보상하는 손해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동차(이하 '피보험자동차'라 합니다)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해 보통약관 '자기신체사고'또는 자기신체사고 대체 특약(자동차상해 또는 수요일.주말 보상확대 특약)에 의한 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로, 피보험자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에서 정한 상해등급 1급 내지 3급의 상해를 입고 국내의료기관에 입원한 경우에 이 특별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간병인고용보험금」으로 보상합니다.

② 보상한도 및 지급보험금

회사는 매 사고당 30일을 한도로 입원 1일당 5만원의 「간병인 고용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단, 실제 유급 간병인 고용 여부와는 무관합니다.)

제3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보통약관 '제14조(보상하지 않는 손해)'에서 정하는 사항이외에 다음과 같은 손해에

대하여도 보상하지 않습니다.
1. 보험증권에 기재된 운전가능 범위외의 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운전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제4조(피보험자의 범위)
이 특별약관에서 피보험자라 함은 보통약관 '제13조(피보험자)'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

제5조(준용 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Ⅳ-16 자기신체사고 상급병실 이용 보상 특별약관

제1조(가입 대상)
이 특별약관은 보통약관의 '자기신체사고'또는 자기신체사고 대체 특약(자동차상해 또는 수요일.주말 보상확대 특약)이 체결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제2조(보상 내용)
① 보상하는 손해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동차(이하 '피보험자동차'라 합니다)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해 보통약관 '자기신체사고'또는 자기신체사고 대체 특약(자동차상해 또는 수요일.주말 보상확대 특약)에 의한 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로, 피보험자가 상해에 의하여 입원을 하였으나 기준병실보다 상급병실에 입원하였을 때에는 이 특별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병실료차액보험금」으로 보상합니다.

용어풀이

이 특별약관에서 상급병실이란 2인실 이상을 말하며, 특실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1인실 비용을 기준으로 병실료차액을 인정합니다.

② 보상한도 및 지급보험금
회사는 매 사고에 대하여 피보험자 1인당 30일의 범위 내에서 300만원을 한도로 입원 병실료의 차액을 지급합니다. 단, 보통약관 규정에 의하여 병실료차액이 지급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공제합니다.

제3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보통약관 '제14조(보상하지 않는 손해)'에서 정하는 사항이외에 다음과 같은 손해에 대하여도 보상하지 않습니다.
1. 보험증권에 기재된 운전가능 범위외의 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운전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제4조(피보험자의 범위)
이 특별약관에서 피보험자라 함은 보통약관 '제13조(피보험자)'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

제5조(준용 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Ⅳ-17 수요일·주말 보상확대 특별약관('자기신체사고' 대체 특별약관)

제1조(가입 대상)
이 특별약관은 보통약관 '자기신체사고'가 체결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 보험

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보통약관의 '자기신체사고'를 이 특별약관으로 대체하여 적용합니다.

제2조(보상 내용)

① 보상하는 손해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동차(이하 '피보험자동차'라 합니다)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때[104] 그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1. 피보험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사고
2. 피보험자동차의 운행중 발생한 다음의 사고. 다만,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에 탑승중일 때에 한합니다.
   가. 날아오거나 떨어지는 물체와 충돌
   나. 화재 또는 폭발
   다. 피보험자동차의 낙하

② 보험금의 종류와 한도

보험회사가 이 특별약관에서 지급하는 보험금의 종류와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사망 :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은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하였을 때에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사망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2. 부상 :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은 직접적인 결과로 의사의 치료를 요하는 때에는, 평일의 경우 부상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단, 부상확장 지정일에 발생한 사고의 경우 부상보험금은 부상보험가입금액의 2배를 한도로 합니다.
3. 후유장애 :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은 직접적인 결과로 치료를 받은 후에도 신체에 장애가 남은 때에는 '<별표5> 자기신체사고 지급기준'상의 '2) 후유장애구분 및 급별 보험가입금액표'에 따라, 보험증권에 기재된 후유장애 보험가입금액에 해당하는 각 장애등급별 보험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용어풀이

1. 부상확장 지정일이라 함은 아래의 날을 말합니다.
   (1) 주말 : 금요일 18:00~월요일 06:00을 말합니다.
   (2) 휴일 : 전일 18:00~익일 06:00을 말하며 그 해당일로는 ①법정공휴일(국가에서 정한 임시·대체공휴일 포함) ②근로자의 날을 말합니다. 상기의 주말 및 휴일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은 주말 및 휴일로 보지 아니합니다.
   (3) 수요일 : 수요일 00:00~24:00을 말합니다.
2. 평일 : 부상확장 지정일을 제외한 모든 일로 정의함.

③ 지급보험금의 계산

회사가 이 약관에 따라 지급하는 보험금은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지급보험금	=	실제 손해액	+	비용	-	공제액

1. 실제손해액은 '<별표1> 대인배상,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지급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 또는 소송이 제기된 경우 확정판결금액으로써 과실상계 및 보상한도를 적용하기 전의 금액을 말합니다.
2. 위 '비용'은 다음의 금액을 말합니다. 이 비용은 보험가입금액과 관계없이 보상하여 드립니다.
   가. 손해의 방지와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긴급조치비용을 포함합니다)
   나. 남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보전과 행사를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한 비용

104) 피보험자의 신체에 이상이 있는 점을 뒷받침할 수 있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3. 위 '공제액'은 다음의 금액을 말합니다.
   가. 자동차보험(공제계약을 포함합니다) 대인배상Ⅰ(정부보장사업을 포함합니다) 및 대인배상Ⅱ에 의하여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
   나.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에 의하여 지급될 수 있는 금액. 단,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보험금의 청구를 포기한 경우에는 공제하지 않습니다.
   다. 배상의무자 또는 배상의무자가 아닌 제3자로부터 이미 보상받은 금액. 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해 보상받은 금액은 제3자로부터 보상받은 금액에 포함하지 않으며 이 경우 관련 내용(업무상 재해 등)확인을 위해 보험회사가 요청한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4. 위 3호의 '공제액'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망의 경우 보험증권에 기재된 사망보험가입금액, 부상의 경우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 피보험자가 실제 지출한 치료비(성형수술비 포함), 후유장애의 경우 보험증권에 기재된 후유장애 보험가입금액에 해당하는 각 장애등급별 보험금액을 각각 지급합니다. 단, 부상확장 지정일에 발생한 사고의 경우 부상보험금은 부상보험가입금액의 2배를 한도로 지급합니다.

④ 보험회사가 사망보험금을 지급할 경우에 이미 후유장애로 지급한 보험금이 있을 때에는 사망보험금에서 이를 공제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다만 보험계약자인 기명피보험자가 본인의 사망보험금 수익자를 지정하거나 변경하고 그 사실을 보험회사에 서면으로 통지한 경우에는 그 수익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제3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보통약관 '제14조(보상하지 않는 손해)'에서 정하는 사항이외에 다음과 같은 손해에 대하여도 보상하지 않습니다.
1. 보험증권에 기재된 운전가능 범위외의 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운전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제4조(피보험자의 범위)
① 피보험자는 회사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으로 그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제7조(피보험자)'의 「대인배상Ⅱ」에 해당하는 자
   2. 위 '1'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

제5조(준용 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Ⅳ-18 지정기부 특별약관

제1조(가입 대상)
이 특별약관은 보통약관의 '자기신체사고'또는 자기신체사고 대체 특약(자동차상해 또는 수요일.주말 보상확대 특약)이 체결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제2조(보상 내용)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보통약관의 '자기신체사고'또는 자기신체사고 대체 특약(자동차상해 또는 수요일.주말 보상확대 특약)에 의한 기명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사망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에 이 특별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제3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보통약관 '제14조(보상하지 않는 손해)'에서 정하는 사항이외에 다음과 같은 손해에 대하여도 보상하지 않습니다.
1. 보험증권에 기재된 운전가능 범위외의 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운전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제4조(피보험자의 범위)
이 특별약관에서 피보험자라 함은 기명피보험자를 말합니다.

제5조(지급보험금)
회사는 보통약관 '자기신체사고'에서 지급되는 기명피보험자 사망보험금의 10%를 보험계약자인 기명피보험자가 지정한 수익자에게 지정기부 보험금으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제6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Ⅳ-19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별약관

제1조(가입 대상)
이 특별약관은 보통약관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가입자에 대하여 자동적으로 적용됩니다.

제2조(보상 내용)
① 보상하는 손해
1.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다음과 같은 손해에 대하여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보상하여 드립니다.
   가. 기명피보험자 또는 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가 다른 자동차를 운전중(주차 또는 정차 중을 제외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생긴 대인사고나 대물사고로 인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손해를 입은 때 기명피보험자 또는 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가 운전한 다른 자동차를 보통약관 '대인배상Ⅱ와 대물배상' 규정의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동차(이하 '피보험자동차'라 합니다)로 간주하여 보통약관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나. 기명피보험자 또는 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가 다른 자동차를 운전중(주차 또는 정차 중을 제외합니다) 상해를 입었을 때, 기명피보험자 또는 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가 운전한 다른 자동차를 보통약관 '자기신체사고' 또는 자기신체사고 대체 특약(자동차상해 또는 수요일.주말 보상확대 특약) 규정의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동차(이하 '피보험자동차'라 합니다)로 간주하여 보통약관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2. 회사는 기명피보험자 또는 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가 다른 자동차를 운전중 생긴 사고로 다른 자동차의 소유자가 상해를 입었을 때에는 보통약관 '자기신체사고' 또는 자기신체사고 대체 특약(자동차상해 또는 수요일.주말 보상확대 특약) 의 피보험자로 간주하여 보통약관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3. 회사가 보상할 위 '1' 또는 '2'의 손해에 대하여 다른 자동차에 적용되는 보험계약에 의하여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는 경우에는 회사가 보상할 금액이 다른 자동차의 보험계약에 의하여 지급될 수 있는 금액을 초과하는 때에 한하여 그 초과액만을 보상합니다.

용어풀이

1. 이 특별약관에서 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라 함은 법률상의 배우자 또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를 말합니다.
2. 이 특별약관에서 다른 자동차라 함은 비사업용자동차(관용제외)로서 피보험자동차와 동일한 차종(승용자동차(다인승 포함), 경.3종승합자동차, 초소형.경.4종화물자동차 간에는 동일한 차종으로 봅니다)으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말합니다.

(1) 기명피보험자와 그 부모, 배우자 또는 자녀가 소유하거나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자동차가 아닌 것
(2) 기명피보험자가 자동차를 대체한 경우, 그 사실이 생긴 때로부터 회사가 보통약관 '제49조(피보험자동차의 교체)'시의 승인을 한 때까지의 대체자동차

제3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보통약관 '제8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및 '제14조(보상하지 않는 손해)'에서 정하는 사항 이외에 다음과 같은 손해에 대하여도 보상하지 않습니다.
1. 기명피보험자 또는 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가 사용자의 업무에 종사하고 있을 때 그 사용자가 소유하는 자동차를 운전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2. 기명피보험자 또는 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가 소속한 법인이 소유하는 자동차를 운전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3. 기명피보험자 또는 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가 자동차 취급업무상 수탁 받은 자동차를 운전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4. 기명피보험자 또는 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가 요금 또는 대가를 지불하거나 받고 다른 자동차를 운전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5. 기명피보험자 또는 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가 다른 자동차의 사용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 자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다른 자동차를 운전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6. 기명피보험자 또는 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가 다른 자동차의 소유자에 대하여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
7. 기명피보험자 또는 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가 다른 자동차를 시험용 또는 경기용이나 경기를 위한 연습용으로 사용하던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다만, 운전면허시험을 위한 도로주행시험용으로 사용하던 중 생긴 손해는 보상합니다.
8. 보험증권에 기재된 운전가능 범위외의 자가 다른 자동차를 운전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제4조(준용 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① 다른 자동차 차량손해 추가 특별약관

제1조(가입 대상)
이 특별약관은 보통약관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가 체결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제2조(보상 내용)
① 보상하는 손해
1.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기명피보험자 또는 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가 다른 자동차를 운전중(주차 또는 정차중을 제외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생긴 다음과 같은 사고로 인하여 다른 자동차를 파손하여 법률상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손해를 입은 때 기명피보험자 또는 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가 운전한 다른 자동차를 자기차량손해 포괄 특별약관 규정의 피보험자동차로 간주하여 해당 특별약관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단, 운전 중인 다른 자동차가 비사업용자동차인 경우 다른 자동차 운전 담보 특별약관에서 정한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한하여 보상하여 드립니다.

가. 다른 차 또는 다른 물체와의 충돌, 접촉, 추락, 전복 또는 차량의 침수로 인한 손해
나. 화재, 폭발, 낙뢰, 날아온 물체, 떨어지는 물체에 의한 손해 또는 풍력에 의해 차체에 생긴 손해

2. 기명피보험자 또는 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가 운전한 다른 자동차가 사업용 자동차 중 승차정원 10인승 이하의 대여 자동차이면서 위 제1호에서 정하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 다른 자동차의 소유자인 대여사업자의 타당한 영업손해에 대해서 보통약관 <별표2> '대물배상 지급기준' 4. 휴차료에 해당하는 영업손해를 보상합니다.

용어풀이

1. 이 특별약관에서 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라 함은 법률상의 배우자 또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를 말합니다.
2. 이 특별약관에서 다른 자동차라 함은
   ① 비사업용자동차(관용제외)로서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동차(이하 '피보험자동차'라 합니다)와 동일한 차종(승용자동차(다인승 포함), 경·3종승합자동차, 초소형·경·4종화물자동차 간에는 동일한 차종으로 봅니다)으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말합니다.
      (1) 기명피보험자와 그 부모, 배우자 또는 자녀가 소유하거나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자동차가 아닌 것
      (2) 기명피보험자가 자동차를 대체한 경우, 그 사실이 생긴 때로부터 회사가 보통약관 '제49조(피보험자동차의 교체)'의 승인을 한 때까지의 대체자동차
   ② 사업용자동차중 승차정원 10인승 이하의 대여자동차로서 다음의 자동차를 말합니다.
      (1) 기명피보험자와 그 부모, 배우자 또는 자녀가 대여사업자로부터 7일 이하로 대여받은 자동차 일 것
      (2) 기명피보험자와 그 부모, 배우자 또는 자녀가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자동차가 아닌 것
3. 이 특별약관에서 '침수'라 함은 흐르거나 고인 물, 역류하는 물, 범람하는 물, 해수 등에 피보험자동차가 빠지거나 잠기는 것을 말하며, 차량 도어나 선루프 등을 개방해 놓았을 때 빗물이 들어간 것은 침수로 보지 않습니다.
4. 이 특별약관에서 '물체'라 함은 구체적인 형체를 지니고 있어 충돌이나 접촉에 의해 자동차 외부에 직접적인 손상을 줄 수 있는 것을 말하며, 엔진내부나 연료탱크 등에 이물질을 삽입하는 경우 물체로 보지 않습니다.

② 보상한도 및 자기부담금

회사는 자기차량손해 포괄 특별약관 규정에도 불구하고 보상한도 및 자기부담금은 다음을 따릅니다.

1. 회사가 지급하는 보험금의 보상한도는 사고발생 당시 보험개발원이 제시한 최근 '차량기준가액표'에 따라 정의된 다른 자동차의 차량가액과 3000만원 중 적은 금액으로 합니다.
2. 회사는 자기부담금 30만원을 공제한 후, 위 '1'에서 정한 보상한도까지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제3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① 회사는 보통약관 '제23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및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별약관 '제3조(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해당하는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다음의 경우는 대체한 내용으로 바꾸어 적용합니다.

(1)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별약관 '제3조(보상하지 않는 손해)의 1과 2'는 다음의 '1', '2'로 대체합니다.
   1. 기명피보험자 또는 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가 사용자의 업무에 종사하고 있을 때, 그 사용자가 소유하거나 대여사업자로부터 대여받은 자동차를 운전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2. 기명피보험자 또는 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가 소속한 법인이 소유하거나, 그 법인이 대여사업자로부터 대여받은 자동차를 운전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2) 다른자동차 운전담보 특별약관 '제3조(보상하지 않는 손해)의 4'는 다음의 '1', '2'로 대체 합니다.
   1. 다른 자동차가 이 특별약관의 용어풀이(다른자동차)(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기명피보험자 또는 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가 요금 또는 대가를 지급하거나 받고 다른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2. 다른 자동차가 이 특별약관의 용어풀이(다른자동차)(2)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기명피보험자 또는 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가 요금 또는 대가를 받고 다른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3) 다른자동차 운전담보 특별약관 '제3조(보상하지 않는 손해)의 6'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② 회사는 이 특별약관 '제2조(보상 내용)' 규정에도 불구하고 운전중인 다른 자동차에 적용되는 보험계약에 의하여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는 경우나, 피보험자동차 및 다른 보험계약(공제포함)의 '보험대차 운전 중 사고보상 특별약관'에 의하여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는 경우에는 회사가 보상할 금액이 다른 자동차에 적용되는 계약 또는 보험계약에 의하여 지급될 수 있는 금액을 초과하는 때에 한하여 그 초과액만을 보상합니다.

③ 보험증권에 기재된 운전가능 범위외의 자가 다른 자동차를 운전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제4조(준용 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별약관 및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①-1 다른 자동차 자녀운전자 추가 특별약관

제1조(가입 대상)
이 특별약관은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1. 보통약관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및 특별약관 '다른 자동차 차량손해 추가 특별약관'이 체결되는 경우
2. 보험증권에 기재된 운전가능 범위에 기명피보험자의 자녀가 포함된 경우

제2조(보상하는 손해)
①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별약관'의 '제2조(보상 내용)의 ①보상하는 손해의 1과 2' 및 '다른 자동차 차량손해 추가 특별약관'의 '제2조(보상 내용)의 ①보상하는 손해의 1과 2' 규정에도 불구하고 기명피보험자의 자녀가 각 특별약관에서 정의하는 다른 자동차를 운전 중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도 보상하여 드립니다.

② 위 '①' 에도 불구하고 위 '①' 의 손해가 아래의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보험금을 초과하는 손해를 보상합니다.
   1. 다른 자동차에 적용되는 보험계약
   2. 다른 자동차를 운전한 자녀가 소유하는 자동차에 적용되는 보험계약

3. 다른 자동차를 운전한 자녀의 배우자가 소유하는 자동차에 적용되는 보험계약

용어풀이

1. 이 특별약관에서 '자녀'라 함은 법률상의 혼인관계에서 출생한 자녀, 사실혼 관계에서 출생한 자녀, 양자 또는 양녀, 법률상의 혼인관계로 인한 계자녀를 말합니다.
2. 이 특별약관에서 '자녀의 배우자'라 함은 자녀의 법률상의 배우자 또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를 말합니다.

제3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① 회사는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별약관' 및 '다른 자동차 차량손해 추가 특별약관' '제3조(보상하지 않는 손해)'에서 정하는 사항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② 위 '①'을 적용함에 있어, 이 특별약관에 따라 기명피보험자의 자녀가 다른 자동차를 운전 중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위 '①'의 각 특별약관의 제3조(보상하지 않는 손해)에서 '기명피보험자 또는 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로 규정된 부분을 '기명피보험자 또는 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 또는 기명피보험자의 자녀'로 대체하여 적용합니다.

③ 기명피보험자의 자녀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운전가능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제4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및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별약관' 및 '다른자동차 차량손해 추가 특별약관' 에 따릅니다.

①-2 다른 자동차 부모운전자 추가 특별약관

제1조(가입 대상)

이 특별약관은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1. 보통약관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및 특별약관 '다른 자동차 차량손해 추가 특별약관'이 체결되는 경우
2. 보험증권에 기재된 운전가능 범위에 기명피보험자의 부모가 포함된 경우

제2조(보상하는 손해)

①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별약관'의 '제2조(보상 내용)의 ①보상하는 손해의 1과 2' 및 '다른 자동차 차량손해 추가 특별약관'의 '제2조(보상내용)의 ①보상하는 손해의 1과 2' 규정에도 불구하고 기명피보험자의 부모가 각 특별약관에서 정의하는 다른 자동차를 운전 중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도 보상하여 드립니다.

② 위 '①' 에도 불구하고 위 '①' 의 손해가 아래의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보험금을 초과하는 손해를 보상합니다.

1. 다른 자동차에 적용되는 보험계약
2. 다른 자동차를 운전한 부모가 소유하는 자동차에 적용되는 보험계약
3. 다른 자동차를 운전한 부모의 배우자가 소유하는 자동차에 적용되는 보험계약

용어풀이

1. 이 특별약관에서 '부모'라 함은 부모와 양부모, 계부모(부모의 사실혼관계 배우자 제외)

를 말합니다.
2. 이 특별약관에서 '부모의 배우자'라 함은 부모의 법률상의 배우자 또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를 말합니다.

제3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① 회사는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별약관' 및 '다른 자동차 차량손해 추가 특별약관' '제3조(보상하지 않는 손해)'에서 정하는 사항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② 위 '①'을 적용함에 있어, 이 특별약관에 따라 기명피보험자의 부모가 다른 자동차를 운전 중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위 '①'의 각 특별약관의 제3조(보상하지 않는 손해)에서 '기명피보험자 또는 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로 규정된 부분을 '기명피보험자 또는 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 또는 기명피보험자의 부모'로 대체하여 적용합니다.

③ 기명피보험자의 부모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운전가능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제4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및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별약관' 및 '다른 자동차 차량손해 추가 특별약관' 에 따릅니다.

② 실시간 다른 자동차 차량손해 추가 특별약관

제1조(가입 대상)

이 특별약관은 보통약관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가 체결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자동차가 사업용자동차 중 승차정원 10인승 이하의 대여자동차(이하 '대여자동차'라 합니다)인 경우에는 대여자동차의 임대차계약서에 기재된 계약기간의 개시시점부터 1시간 이내에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용어풀이

이 특별약관에서 다른 자동차라 함은 이 특별약관 체결 시 고지한 자동차로서

(1) 비사업용자동차(관용제외)로서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동차(이하 '피보험자동차'라 합니다)와 동일한 차종(승용자동차(다인승 포함), 경·3종승합자동차, 초소형·경·4종화물자동차 간에는 동일한 차종으로 봅니다)으로서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말합니다.
   1. 기명피보험자와 그 부모, 배우자 또는 자녀가 소유하거나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자동차가 아닌 것
   2. 기명피보험자가 자동차를 대체한 경우, 그 사실이 생긴 때로부터 회사가 보통약관 '제49조(피보험자동차의 교체)'의 승인을 한 때까지의 대체자동차

(2) 사업용자동차중 승차정원 10인승 이하의 대여자동차로서 다음의 자동차를 말합니다.
   1. 기명피보험자와 그 부모, 배우자 또는 자녀가 대여사업자로부터 7일 이하로 대여받은 자동차 일 것
   2. 기명피보험자와 그 부모, 배우자 또는 자녀가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자동차가 아닌 것

제2조(보험기간)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은 보험료를 받은 시점부터 이 특별약관에서 설정한 보험기간의 마지막 날 동일시점까지입니다.

용어풀이

이 특별약관에서 동일시점이라 함은 보험료를 받은 시각과 동일한 시각을 말합니다.

제3조(보상 내용)

① 보상하는 손해

1.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기명피보험자 또는 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가 다른 자동차를 운전중(주차 또는 정차중을 제외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생긴 다음과 같은 사고로 인하여 다른 자동차를 파손하여 법률상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손해를 입은 때 기명피보험자 또는 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가 운전한 다른 자동차를 자기차량손해 포괄 특별약관 규정의 피보험자동차로 간주하여 해당 특별약관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단, 운전 중인 피보험자동차가 비사업용자동차인 경우 다른 자동차 운전 담보 특별약관에서 정한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한하여 보상하여 드립니다.
   가. 다른 차 또는 다른 물체와의 충돌, 접촉, 추락, 전복 또는 차량의 침수로 인한 손해
   나. 화재, 폭발, 낙뢰, 날아온 물체, 떨어지는 물체에 의한 손해 또는 풍력에 의해 차체에 생긴 손해
2. 기명피보험자 또는 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가 운전한 다른 자동차가 사업용 자동차 중 승차정원 10인승 이하의 대여 자동차이면서 위 제1호에서 정하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 다른 자동차의 소유자인 대여사업자의 타당한 영업손해에 대해서 보통약관 <별표2> '대물배상 지급기준' 4. 휴차료에 해당하는 영업손해를 보상합니다.

용어풀이

1. '침수'라 함은 흐르거나 고인 물, 역류하는 물, 범람하는 물, 해수 등에 피보험자동차가 빠지거나 잠기는 것을 말하며, 차량 도어나 선루프 등을 개방해 놓았을 때 빗물이 들어간 것은 침수로 보지 않습니다.
2. '물체'라 함은 구체적인 형체를 지니고 있어 충돌이나 접촉에 의해 자동차 외부에 직접적인 손상을 줄 수 있는 것을 말하며, 엔진내부나 연료탱크 등에 이물질을 삽입하는 경우 물체로 보지 않습니다.

② 보상한도 및 자기부담금

회사는 자기차량손해 포괄 특별약관 규정에도 불구하고 보상한도 및 자기부담금은 다음을 따릅니다.

1. 회사가 지급하는 보험금의 보상한도는 사고발생 당시 보험개발원이 제시한 최근 '차량기준가액표'에 따라 정의된 다른 자동차의 차량가액과 3000만원 중 적은 금액으로 합니다.
2. 회사는 자기부담금 30만원을 공제한 후, 위 '1'에서 정한 보상한도까지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제4조(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의무사항)

①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회사가 '제1조(가입대상)'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회사가 정한 바에 따르는 서류(다른 자동차의 사진, 임대차계약서 등)를 제출하는 등 이 특별약관의 가입을 위해 회사가 요청하는 사항에 협조해야 합니다.

② 위 ①항에 따르지 않는 경우 이 특별약관에 대한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제5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① 회사는 보통약관 '제23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및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별약관 '제3조(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해당하는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다음의 경우는 대체한 내용으로 바꾸어 적용합니다.

(1)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별약관 '제3조(보상하지 않는 손해)의 1과 2'는 다음의 '1', '2'로 대체합니다.

1. 기명피보험자 또는 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가 사용자의 업무에 종사하고 있을 때, 그 사용자가 소유하거나 대여사업자로부터 대여받은 자동차를 운전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2. 기명피보험자 또는 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가 소속한 법인이 소유하거나, 그 법인이 대여사업자로부터 대여받은 자동차를 운전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2) 다른자동차 운전담보 특별약관 '제3조(보상하지 않는 손해)의 4'는 다음의 '1', '2'로대체 합니다.

1. 다른 자동차가 이 특별약관의 용어풀이(다른자동차)(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기명피보험자 또는 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가 요금 또는 대가를 지급하거나 받고 다른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2. 다른 자동차가 이 특별약관의 용어풀이(다른자동차)(2)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기명피보험자 또는 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가 요금 또는 대가를 받고 다른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생긴 사고로 인한손해

(3) 다른자동차 운전담보 특별약관 '제3조(보상하지 않는 손해)의 6'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② 회사는 이 특별약관 '제2조(보상 내용)' 규정에도 불구하고 운전중인 다른 자동차에 적용되는 보험계약에 의하여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는 경우나, 피보험자동차 및 다른 보험계약(공제포함)의 '보험대차 운전 중 사고보상 특별약관'에 의하여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는 경우에는 회사가 보상할 금액이 다른 자동차에 적용되는 계약 또는 보험계약에 의하여 지급될 수 있는 금액을 초과하는 때에 한하여 그 초과액만을 보상합니다.

③ 보험증권에 기재된 운전가능 범위외의 자가 다른 자동차를 운전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④ 이 특별약관 체결 시 고지한 자동차 외의 자동차를 운전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제6조(특별약관 계약의 무효)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제4조(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의무사항)' ①항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 이 특별약관은 무효가 됩니다.

제7조(준용 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별약관 및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Ⅳ-20 자기차량손해 포괄 특별약관('자기차량손해' 대체 특별약관)

제1조 (가입대상)

이 특별약관은 보통약관의 '자기차량손해'가 체결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 회사는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보통약관의 '자기차량손해'를 이 특별약관으로 대체하여 적용합니다.

제2조 (보상하는 손해)

① 「자기차량손해」에서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사용・관리하는 동안에 다음과 같은 사고로 인하여 피보험자동차에 직접적으로 생긴 손해를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하되 다음 제②항 내지 제⑤항의 기준에 따릅니다.

1. 다른 차 또는 다른 물체[105]와의 충돌, 접촉, 추락, 전복 또는 차량의 침수[106]로 인한 손해
2. 화재, 폭발, 낙뢰, 날아온 물체, 떨어지는 물체에 의한 손해 또는 풍력에 의해 차체에 생긴 손해
3. 피보험자동차 전부의 도난으로 인한 손해. 그러나 피보험자동차에 장착 또는 장치되어 있는 일부 부분품, 부속품, 부속기계장치만의 도난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②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107]보다 많은 경우에는 보험가액을 한도로 보상합니다.
③ 피보험자동차에 통상 붙어있거나 장치되어 있는 부속품과 부속기계장치는 피보험자동차의 일부로 봅니다. 그러나 통상 붙어 있거나 장치되어 있는 것이 아닌 것은 보험증권에 기재한 것에 한합니다.
④ 피보험자동차의 단독사고(가해자 불명사고를 포함합니다) 또는 일방과실사고[108]의 경우에는 실제 수리를 원칙으로 합니다.
⑤ 경미한 손상[109]의 경우 보험개발원이 정한 경미손상 수리기준에 따라 복원수리하거나 품질인증부품[110]으로 교환수리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한도로 보상합니다.

제3조 (피보험자)
「자기차량손해」에서 피보험자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기명피보험자입니다.

제4조 (보상하지 않는 손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해는 「자기차량손해」에서 보상하지 않습니다.
①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한 손해
②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및 이와 유사한 사태로 인한 손해
③ 지진, 분화 등 천재지변으로 인한 손해
④ 핵연료물질의 직접 또는 간접적인 영향으로 인한 손해
⑤ 영리를 목적으로 요금이나 대가를 받고 피보험자동차를 반복적으로 사용하거나 빌려 준 때에 생긴 손해. 다만, 임대차계약(계약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함)에 따라 임차인이 피보험자동차를 전속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보상합니다. 그러나 임차인이 피보험자동차를 영리를 목적으로 요금이나 대가를 받고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⑥ 사기 또는 횡령으로 인한 손해
⑦ 국가나 공공단체의 공권력 행사에 의한 압류, 징발, 몰수, 파괴 등으로 인한 손해. 그러나 소방이나 피난에 필요한 조치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보상합니다.
⑧ 피보험자동차에 생긴 흠, 마멸, 부식, 녹, 그 밖에 자연소모로 인한 손해
⑨ 피보험자동차의 일부 부분품, 부속품, 부속기계장치만의 도난으로 인한 손해
⑩ 동파로 인한 손해 또는 우연한 외래의 사고에 직접 관련이 없는 전기적, 기계적 손해
⑪ 피보험자동차를 시험용, 경기용 또는 경기를 위해 연습용으로 사용하던 중 생긴 손해. 다만, 운전면허시험을 위한 도로주행시험용으로 사용하던 중 생긴 손해는 보상합니다.
⑫ 피보험자동차를 운송 또는 싣고 내릴 때에 생긴 손해
⑬ 피보험자동차가 주정차중일 때 피보험자동차의 타이어나 튜브에만 생긴 손해.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해는 보상합니다.(타이어나 튜브의 물리적 변형이 없는 단순 오손의 경우는 제외)

105) '물체'라 함은 구체적인 형체를 지니고 있어 충돌이나 접촉에 의해 자동차 외부에 직접적인 손상을 줄 수 있는 것을 말하며, 엔진내부나 연료탱크 등에 이물질을 삽입하는 경우 물체로 보지 않습니다.
106) '침수'라 함은 흐르거나 고인 물, 역류하는 물, 범람하는 물, 해수 등에 피보험자동차가 빠지거나 잠기는 것을 말하며, 차량 도어나 선루프 등을 개방해 놓았을 때 빗물이 들어간 것은 침수로 보지 않습니다.
107) 보험가액이라 함은 보험개발원이 정한 차량기준가액표에 따라 보험계약을 맺었을 때에는 사고발생 당시 보험개발원이 정한 최근의 차량기준가액을 말합니다. 그러나 위 차량기준가액이 없거나 이와 다른 가액으로 보험계약을 맺었을 경우 보험증권에 기재된 가액이 손해가 생긴 곳과 때의 가액을 현저하게 초과할 때에는 그 손해가 생긴 곳과 때의 가액을 보험가액으로 합니다.
108) 피보험자동차의 일방과실 사고란 쌍방과실이 확정된 경우를 제외한 모든 사고를 말합니다.
109) 외장부품 중 자동차의 기능과 안전성을 고려할 때 부품교체 없이 복원이 가능한 손상
110) 품질인증부품이란 「자동차관리법」제30조의5에 따라 인증된 부품을 말합니다.

1. 다른 자동차가 충돌하거나 접촉하여 입은 손해
2. 화재, 산사태로 입은 손해
3. 가해자가 확정된 사고[111]로 인한 손해

⑭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또는 마약.약물운전[112]을 하였을 때 생긴 손해
1. 보험계약자, 기명피보험자
2. 30일을 초과하는 기간을 정한 임대차계약에 의해 피보험자동차를 빌린 임차인[113]
3. 기명피보험자와 같이 살거나 생계를 같이 하는 친족

제5조 (지급보험금의 계산)

「자기차량손해」의 지급보험금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지급 보험금	=	피보험자동차에 생긴 손해액	+	비 용	-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기부담금

① 위 '피보험자동차에 생긴 손해액'은 보험가액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결정합니다.
1.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하며, 보험가입금액이 보험사고 발생 당시 보험개발원의 자동차보험 차량기준가액표(적용요령에서 정한 기준 포함)에 정한 가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보험사고 발생 당시 가액을 한도로 보상합니다.
2. 피보험자동차의 손상을 고칠 수 있는 경우에는, 사고가 생기기 바로 전의 상태로 만드는데 드는 수리비. 다만, 잔존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값을 공제합니다.
3. 피보험자동차를 고칠 때에 부득이 새 부분품[114]을 쓴 경우에는, 그 부분품의 값과 그 부착 비용을 합한 금액. 다만, 엔진, 미션 등 중요한 부분[115]을 새 부분품으로 교환한 경우 그 교환된 기존 부분품의 감가상각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합니다.
4. 피보험자동차가 제힘으로 움직일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를 고칠 수 있는 가까운 정비공장이나 보험회사가 지정하는 곳까지 운반하는데 든 비용 또는 그 곳까지 운반하는데 든 임시수리비용 중에서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은 보상하여 드립니다.

② 위 '비용'은 다음의 금액을 말합니다. 이 비용은 보험가입금액과 관계없이 보상하여 드립니다.
1. 손해의 방지와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2. 남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보전과 행사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③ 위 '자기부담금'은 피보험자동차에 전부손해[116]가 생긴 경우 또는 보험회사가 보상하여야 할 금액이 보험가입금액 전액 이상인 경우에는 공제하지 않습니다.

④ 대물배상 책임이 발생하는 사고시 사고 당사자간 과실이 모두 있는 경우 상대방 에게 손해배상금 또는 상대방이 가입한 보험회사에서 「대물배상」 보험금을 지급받기 전에 「자기차량손해」 담보로 보험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자기차량손해」 담보에서 정한 자기부담금을 피보험자가 확정적으로 부담하는 조건으로 「자기차량손해」 보험금을

111) '가해자가 확정된 사고'라 함은 피보험자동차에 장착되어 있는 타이어나 튜브를 훼손하거나 파손한 사고로, 경찰관서를 통하여 가해자(기명피보험자 및 기명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는 제외)의 신원이 확인된 사고를 말합니다.

112) '마약. 약물운전'이라 함은 마약 또는 약물 등의 영향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을 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113)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감사 또는 피고용자(피고용자가 피보험자동차를 법인의 업무에 사용하고 있는 때에 한함)를 포함합니다.

114) 피보험자가 원하는 경우 「자동차관리법」제30조의5에 따라 품질인증부품을 사용 할 수 있으며, 피보험자동차의 단독사고(가해자불명사고 포함) 또는 일방과실사고로 보통약관 「자기차량손해」 또는 「자기차량손해 포괄 특별약관」에 따라서 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 「품질인증부품 사용 특별약관」에 따라 수리비의 일정액을 피보험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115) 중요한 부분이란 엔진, 미션, 캐빈, 적재함, 바디 및 전기차(하이브리드자동차 포함)의 모터, 감속기, 구동용배터리 등 중요한 부분품을 말합니다.

116) 피보험자동차가 완전히 파손, 멸실 또는 오손되어 수리할 수 없는 상태이거나, 피보험자동차에 생긴 손해액과 보험회사가 부담하기로 한 비용의 합산액이 보험가액 이상인 경우를 말합니다.

먼저 지급하여 드리며, 자기부담금을 부담한 피보험자는 상대방 또는 상대방이 가입한 보험회사에게 이 금액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자기차량손해」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회사는 지급한 보험금 범위에서 상대방 또는 상대방이 가입한 보험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합니다. 다만, 상대방 손해배상책임액이 보험회사가 구상한 금액보다 큰 경우에 피보험자는 상대방 또는 상대방이 가입한 보험회사에 그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⑤ 「자기차량손해」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회사가 상대방 또는 상대방이 가입한 보험회사로부터 구상금을 받은 경우 (1) 피보험자가 이미 부담한 자기부담금과 (2) 실제 손해액에서 당해 구상금을 제외한 금액을 전제로 산정된 자기부담금과의 차액을 피보험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이 경우에도 피보험자가 최종적으로 부담하는 자기부담금은 최소 자기부담금 이상으로 합니다.)

⑥ 보험회사는 피보험자동차에 생긴 손해에 대하여 보험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동의를 얻어 수리 또는 대용품의 교부로써 보험금의 지급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⑦ 보험회사가 보상한 손해가 전부손해일 경우 또는 보험회사가 보상한 금액이 보험가입금액 전액 이상인 경우에는 자기차량손해의 보험계약은 사고가 발생한 때에 종료합니다.

⑧ 보험회사가 피보험자동차의 전부손해에 대하여 보험금 전액을 지급한 경우에는 피해물을 인수합니다. 이 경우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보다 적을 때에는 보험가입금액의 보험가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피해물을 인수합니다. 그러나 보험회사가 피해물을 인수하지 아니한다는 뜻을 표시하고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피해물에 대한 피보험자의 권리가 보험회사에 이전되지 않습니다.

① 프리미엄 차량담보 추가 특별약관

제1조(가입 대상)

이 추가특별약관은 특별약관 「자기차량손해 포괄 특별약관」에 가입한 경우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 '전손 시 대체차량 취·등록세 비용지원 특별약관'과 중복하여 가입할 수 없습니다.

제2조(보상 내용)

① 회사는 「자기차량손해 포괄 특별약관」에 의한 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에 이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간접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회사가 지급하는 간접손해 보험금의 종류와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교통비

가. 회사가 지급하는 보험금은 피보험자동차를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보험증권에 기재된 1일 보험금'에 '대체교통비용 인정기간'을 곱한 액수로 합니다.

지 급 보험금	=	보험증권에 기재된 1일 보험금	×	대체교통비용 인정기간

나. 위 '대체교통비용 인정기간'은 총 30일을 한도로 다음의 기간을 말합니다.

(가) 수리가 가능한 경우 실제 수리에 소요되는 기간. 단, 외국산 자동차로서 부품 조달에 소요되는 기간과 부당한 수리지연으로 연장되는 기간은 인정기간에 넣지 아니함

(나)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 10일

(다) 도난의 경우 경찰관서에 신고한 날로부터 30일. 단, 30일 이내에 도난 자동차를 찾은 때에는 도난자동차를 발견한 날까지

2. 전손사고 취.등록세 지원

직접손해에 의한 손해가 전부손해일 경우 실제로 차량을 교환할 때 소요된 취득세 및

등록세를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의 7%와 100만원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지급합니다.

3. 원격지 사고차량 운반비용

피보험자동차가 주행불능 되었을 때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부터 영수증 등을 제출받아 보험회사가 그 지출목적, 금액, 기타 구체적 내용에 있어서 인정한 다음의 필요 타당한 비용을 20만원을 한도로 지급합니다.

가. 주행불능 된 피보험자동차를 보험증권에 기재된 기명피보험자의 주소지 근처의 정비공장이나 보험회사가 인정하는 장소에 운반 하는데 소요된 비용

나. 사고발생지 근처의 정비공장 등에서 수리를 종료한 후 보험증권에 기재된 기명피보험자 주소지 근처의 보험회사가 인정하는 장소까지 견인차 등에 의해 운반하는데 소요된 비용

제3조(피보험자의 범위)

피보험자는 회사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보험증권에 기재된 기명피보험자입니다.

제4조(준용 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자기차량손해 포괄 특별약관」및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Ⅳ-21 차량 수리비 확장 특별약관

제1조(가입 대상)

이 특별약관은 보통약관의 '자기차량손해'가 체결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단, 일부보험은 제외합니다)

제2조(보상 내용)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동차(이하 '피보험자동차'라 합니다)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보통약관 '제24조(지급보험금의 계산) 제①항의 '1'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동차를 수리하는 경우(도난은 제외합니다)에 한하여 사고당시 차량가액의 120%를 한도로 보상합니다.

용어풀이

이 특별약관에서 사고당시 차량가액이라 함은 보험개발원이 정한 차량기준가액표에 따라 보험계약을 맺었을 때에는 사고 발생 당시의 보험개발원이 정한 최근의 차량기준가액을 말합니다. 그러나 위 차량기준가액이 없거나 이와 다른 가액으로 보험계약을 맺었을 경우 보험증권에 기재된 가액이 손해가 생긴 곳과 때의 가액을 현저히 초과할 때에는 그 손해가 생긴 곳과 때의 가액을 사고당시 차량가액으로 합니다.

제3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보통약관 '제23조(보상하지 않는 손해)'에서 정하는 사항이외에 다음과 같은 손해에 대하여도 보상하지 않습니다.

1. 보험증권에 기재된 운전가능 범위 외의 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운전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제4조(피보험자의 범위)

이 특별약관에서 피보험자라 함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기명피보험자를 말합니다.

제5조(준용 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Ⅳ-22 렌터카대여비용 특별약관

제1조(가입 대상)
이 특별약관은 보통약관 '자기차량손해'가 체결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제2조(보상 내용)
① 보상하는 손해
1.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동차(이하 '피보험자동차'라 합니다)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해 보통약관 '제21조(보상하는 손해)'에 의한 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로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의 대체교통수단으로 회사가 지정하는 업체를 통하여 해당차종의 렌터카를 대여하는 때에 한하여 그 대여비용을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합니다.
2. 회사는 위 '1'에 따라 렌터카를 대여한 경우 해당 렌터카를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발생한 사고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렌터카를 보통약관 '자기차량손해' 규정의 피보험자동차로 간주하여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합니다.

용어풀이

자기차량손해에서 렌터카라 함은 대한민국에서 생산된 자동차로서 피보험자동차와 연식, 배기량, 승차정원, 차의 형태 등이 유사하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9조에 의하여 등록한 자동차대여사업자가 운행하는 대여자동차를 말합니다.

② 보상한도 및 지급보험금
1. 회사가 매 사고에 대하여 보상하는 렌터카 대여비용은 대여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차종의 대여자동차 요금에 인정기간을 곱한 금액을 지급하며, 렌터카를 대여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급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2. 렌터카 대여비용의 인정기간은 30일을 한도로 하며 다음과 같습니다.
   가. 실제수리가 완료될 때까지의 기간으로 하며, 외국산 자동차로서 부품조달에 소요되는 기간과 합의지연 또는 부당한 수리지연으로 연장되는 기간은 인정기간에 넣지 않습니다. 단,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는 10일을 한도로 합니다.
   나. 도난의 경우는 경찰관서에 신고한 날로부터 30일을 한도로 하며, 30일 이내에 도난 자동차를 찾은 때에는 도난 자동차를 발견한 날까지로 합니다.
3. 회사가 '제2조(보상내용) 제①항의 2'에 따라 지급하는 렌터카 차량손해는 피보험자동차의 보험가액과 사고가 발생한 곳과 때의 렌터카 가액 중 낮은 가액을 한도로 수리비와 교환가액만을 보상합니다.
4. 회사는 '제2조(보상내용) 제①항의 2'와 보상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가 중복되는 다른 보험계약(공제계약을 포함합니다)이 있는 경우에 위 '3'에 의한 금액에서 다른 보험계약에서 지급될 수 있는 금액을 공제한 초과액만을 보상합니다.

제3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다음과 같은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1. 보통약관 '제23조(보상하지 않는 손해)'에서 정한 사항
2. 보험증권에 기재된 운전가능 범위 외의 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운전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제4조(피보험자의 범위)
이 특별약관에서 피보험자라 함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기명피보험자를 말합니다.

제5조(준용 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Ⅳ-23 레저용품 담보 특별약관

제1조(가입 대상)
이 특별약관은 보통약관 '자기차량손해'가 체결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제2조(보상 내용)
① 보상하는 손해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동차(이하 '피보험자동차'라 합니다)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해 다음과 같은 사고로 인하여 피보험자동차에 적재중인 피보험자의 레저용품에 직접적으로 생긴 손해를 보상합니다. 다만, 레저용품만의 손해와 레저용품만의 도난으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1. 다른 차 또는 다른 물체와의 충돌, 접촉, 추락, 전복 또는 차량의 침수로 인한 손해
2. 화재, 폭발, 낙뢰, 날아온 물체, 떨어지는 물체에 의한 손해

용어풀이

이 특별약관에서 레저용품이란 등산 및 여행장비를 비롯하여 스키장비, 인라인스케이트, 자전거, 캐리어, 모터보트, 골프채, 낚시용구, 카메라 등 여가생활을 위해 주로 사용하는 물품을 말합니다.

③ 보상한도 및 지급보험금
1.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보험금은 레저용품에 발생한 손해액에서 자기부담금 10만원을 공제한 액수로 합니다. 다만, 회사는 매 사고당 200만원 한도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2. 위 '1'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배상의무자가 가입한 보험에 의하여 보상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있는 경우 이를 공제 후 지급합니다.
3. 현물 보상
회사는 레저용품에 생긴 손해에 대하여 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피보험자의 동의를 얻어 수리 또는 대용품의 교부로서 보험금의 지급에 갈음 할 수 있습니다.

제3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보통약관 '제23조(보상하지 않는 손해)'에서 정하는 사항 이외에 다음과 같은 손해에 대하여도 보상하지 않습니다.
1. 보험증권에 기재된 운전가능 범위외의 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운전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제4조(피보험자의 범위)
이 특별약관에서 피보험자라 함은 다음에 열거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1. 기명피보험자
2. 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

용어풀이

이 특별약관에서 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라 함은 법률상의 배우자 또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를 말합니다.

제5조(준용 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Ⅳ-24 신차전부손해확대 보상 특별약관

제1조(가입 대상)
이 특별약관은 보통약관 '자기차량손해'가 체결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하고, 보험기간 개시일이 피보험자동차의 최초 등록일로부터 6개월 이내인 경우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제2조(보상 내용)
① 보상하는 손해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피보험자가 '제21조(보상하는 손해)'에 의한 자기차량사고로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제24조(지급보험금의 계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② 보상한도 및 지급보험금
1. 전부 손해 확대 보상
회사는 제①항에서의 손해가 전부손해인 경우에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을 보상하여 드립니다.
2. 일부손해의 전부손해 확대 보상
회사는 제①항에서의 손해가 일부손해인 경우일지라도 그 수리비가 보험가입금액의 70%를 초과하고 피보험자가 수리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을 보상하여 드립니다.
3. 한 번의 사고로 회사가 보상하는 보험금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보통약관 '자기차량손해'에 의한 보험금은 제외합니다.
4. 회사는 위 '1 내지 3'의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은 피보험자동차의 최초 등록 당시의 보험개발원이 정한 차량기준 가액표상에 따른 차량기준가액을 말합니다. 그러나 차량기준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피보험자동차의 구입당시 차량가액으로 합니다.
5. 피보험자가 보통약관 '제49조(피보험자동차의 교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은 교체하는 자동차의 차량가액으로 변경됩니다. 그러나 교체하는 자동차가 최초 등록일로부터 6개월이 지났거나 소유권의 변동사실이 있는 자동차일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에 의한 보험 계약의 효력은 장래에 대하여 상실됩니다.

제3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보통약관 '제23조(보상하지 않는 손해)'에서 정하는 사항 이외에 다음과 같은 손해에 대하여도 보상하지 않습니다.
1. 보험증권에 기재된 운전가능 범위외의 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운전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제4조(피보험자의 범위)
이 특별약관에서 피보험자라 함은 기명피보험자를 말합니다.

제5조(준용 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Ⅳ-25 원격지사고비용 특별약관

제1조(가입 대상)
이 특별약관은 보통약관 '자기차량손해'가 체결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제2조(보상 내용)

① 보상하는 손해

1.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동차(이하 '피보험자동차'라 합니다)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의 사고로 인하여 보통약관 '자기차량손해'에 해당하는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에 따라 추가로 보상하여 드립니다.
2. 회사는 위 '1'에 의한 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로 피보험자동차가 주행불능되었을 때에는 주행불능된 피보험자동차를 기명피보험자의 거주지(보험증권에 기재된 주소지를 말합니다) 근처의 정비공장이나 회사가 인정하는 장소까지 견인차 등에 의해 운반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이 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피보험자에게 「원격지 사고 차량 운반비용 보험금」으로 보상합니다.
3. 회사는 원격지에서의 사고로 위 '1'에 의한 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가 임시로 숙박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 가까운 호텔 등 유상의 숙박시설(거주시설을 제외합니다)에 임시로 숙박하는 1박분의 객실료(음식비용을 포함하지 않습니다)를 이 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시숙박비용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4. 회사는 원격지에서의 사고로 위 '1'에 의한 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가 합리적인 경로 및 방법으로 사고장소에서 거주지까지 귀택하기 위한 교통비를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임시귀택비용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용어풀이

이 특별약관 제2조(보상내용)에서 원격지라 함은 피보험자의 거주지로부터 30km이상 떨어져 있고 피보험자의 거주지와 시 또는 군의 경계를 달리하는 장소를 말합니다.

② 보상한도 및 지급보험금

1. 원격지 사고 차량 운반비용
   가. 회사는 매 사고당 30만원 한도 내에서 운반에 소요되는 필요타당한 비용을 「원격지 사고 차량 운반비용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나. 위 '가'의 비용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부터 영수증 등을 제출받아 회사가 그 지출목적, 금액, 기타 구체적 내용에 있어서 인정한 것에 한정됩니다.
2. 임시 숙박비용
   가. 회사는 매 사고당 10만원 한도 내에서 임시로 숙박하기 위한 비용을 「임시 숙박비용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나. 위 '가'의 비용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부터 영수증 등을 제출받아 회사가 그 지출목적, 금액, 기타 구체적 내용에 있어서 인정한 것에 한정됩니다.
3. 임시 귀택비용
   가. 회사는 매 사고당 10만원 한도 내에서 귀택하기 위한 비용을 「임시 귀택비용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나. 위 '가'의 비용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부터 영수증 등을 제출받아 회사가 그 지출목적, 금액, 기타 구체적 내용에 있어서 인정한 것에 한정됩니다.

제3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보통약관 '제23조(보상하지 않는 손해)'에서 정하는 사항 이외에 다음과 같은 손해에 대하여도 보상하지 않습니다.

1. 보험증권에 기재된 운전가능 범위외의 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운전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제4조(피보험자의 범위)
특별약관에서 피보험자라 함은 기명피보험자를 말합니다. 다만, 「임시 숙박비용 보험금」및 「임시 귀택비용 보험금」규정에 있어 피보험자라 함은 피보험자동차의 정규승차용 구조장치에 탑승중인 자를 말합니다.

제5조(준용 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Ⅳ-26 지진 위험담보 특별약관

제1조(가입 대상)
이 특별약관은 '자기차량손해 포괄 특별약관'이 체결된 경우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제2조(보상 내용)
① 보상하는 손해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자기차량손해 포괄 특별약관 제4조 (보상하지 않는 손해) 제③항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동차(이하 '피보험자동차'라 합니다)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지진 또는 분화로 인하여 피보험자동차에 직접적으로 생긴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② 보상한도
회사가 지급하는 보험금의 보상한도는 사고발생 당시 피보험자동차의 보험가액과 1,000만원 중 적은 금액으로 합니다.

제3조(준용 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자기차량손해 포괄 특별약관 및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Ⅳ-27 전손 시 대체차량 취·등록세 비용지원 특별약관

제1조(가입 대상)
특별약관 「자기차량손해 포괄 특별약관」에 가입한 경우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 '프리미엄 차량담보 추가 특별약관'과 중복하여 가입할 수 없습니다.

제2조(보상 내용)
회사는 「자기차량손해 포괄 특별약관」에 의한 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 한번의 사고로 인한 손해가 전부손해[117]일때에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의 7%한도 내에서 피보험자 명의로 차량을 신규등록할 때 실제로 소요된 취·등록세를 지급하여 드립니다.

제3조(피보험자의 범위)
피보험자는 회사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보험증권에 기재된 기명피보험자입니다.

제4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117) 피보험자동차가 완전히 파손, 멸실 또는 오손되어 수리할 수 없는 상태이거나, 피보험자동차에 생긴 손해액과 보험회사가 부담하기로 한 비용의 합산액이 보험가액 이상인 경우를 말합니다.

Ⅳ-28 차량기준가액 확대보상 특별약관

제1조(가입대상)

① 이 특별약관은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단, 피보험자동차의 최초등록일(*1)이 1분기이면서 개시시점(*2)이 1분기인 경우는 제외)

1. 보통약관「자기차량손해」에 가입한 경우
2. 자기차량손해 보험가입금액을 개시시점의 보험가액과 동일하게 가입한 경우
3. 보험개발원이 정한 자동차보험 차량기준가액표상 기준가액이 있는 경우 (신차(*3)로써 차량기준가액표상 기준가액이 없는 경우를 포함)

② 단, 위 제①항의 조건을 충족하는 신차(*3)는 이 특별약관을 자동 적용합니다.

용어풀이

(*1) '최초등록일'이란 자동차관리법 제8조에 따른 신규등록일을 말하며, 단 동법 13조에 의해 말소 등록된 자동차를 신규로 등록한 경우에는 말소등록 이전에 최초로 한 신규 등록일을 말합니다.
(*2) 이 특별약관에서 '개시시점'이란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기간의 첫날 또는 보통약관 제49조(피보험자동차의 교체)에 따라 교체한 경우 그 교체일을 말합니다.
(*3) '신차'란 최초등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피보험자동차를 말합니다.

제2조(보상내용)

①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사용・관리하는 동안에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보통약관 제21조(보상하는 손해) 또는「자기차량손해 포괄 특별약관」에 의한 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상합니다.

② 보통약관 제1조(용어의 정의) 제18호 및 제24조(지급보험금의 계산)에도 불구하고 이 특별약관에 따라 다음의 금액을 보험가액으로 합니다.

1.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보험가액은 최초등록일의 당해연도 차량기준가액표상 최초로 존재하는 분기의 가액에 최초등록일부터 개시시점까지 경과된 기간을 적용한 가액으로 합니다. (단, 신차로써 차량기준가액표상 기준가액이 없는 경우 신차가액을 적용합니다.)
2. 보험계약 책임개시 이후 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가액은 최초등록일의 당해연도 차량기준가액표상 최초로 존재하는 분기의 가액에 최초등록일부터 사고발생시점까지 경과된 기간을 적용한 가액으로 합니다. (단, 신차로써 차량기준가액표상 기준가액이 없는 경우 신차가액을 적용합니다.)

③ 피보험자동차에 통상 붙어있거나 장치되어 있는 것이 아닌 부속품과 부속기계장치는 보험개발원이 정한 자동차보험 차량기준가액표상 "Ⅲ. 부록 3. 표준감가상각잔존율표"에 따라 적용합니다.

제3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Ⅴ. 친서민 / 친환경

Ⅴ-1 희망나누기/희망나눔자동차 특별약관

제1조(가입대상)
이 특별약관은 아래의 '제①항 내지 제④항'중 어느 하나의 조건에 만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일정비율이 할인된 보험료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① 기명피보험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의거한 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
② 기명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단, 기명피보험자의 연령이 만65세 이상이면서 배우자를 포함한 합산 소득이 연 2,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아래 '4'의 조건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1. 기명피보험자의 연령이 만 30세 이상일 것
   2. 피보험자동차가 비사업용으로서 배기량이 1,600cc 이하 승용차이거나 1.5톤 이하의 화물자동차일 것(단, 기명피보험자가 소유한 자동차는 반드시 1대여야 함)
   3. 피보험자동차가 최초 등록일로부터 5년 이상 지났을 것
   4. 기명피보험자에게 만20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을 것
   5. 기명피보험자 및 배우자의 합산 소득이 연 4,000만원 이하일 것
③ 기명피보험자 또는 기명피보험자의 동거가족(주민등록지 기준으로 동일 주소에 거주하는 기명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이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등록증 상 장애 정도가 중증'(2019.6.30. 이전 발급된 장애인등록증의 경우는 1~3급 장애인)인 경우로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1. 피보험자동차가 비사업용으로서 배기량이 2,000cc 이하 승용차이거나 1.5톤 이하의 화물자동차일 것(단, 기명피보험자가 소유한 자동차는 반드시 1대여야 함)
   2. 피보험자동차가 최초 등록일로부터 5년 이상 지났을 것
   3. 기명피보험자 및 배우자의 합산 소득이 연 4,000만원 이하일 것
④ 기명피보험자 및 배우자의 합산 소득이 연 4,000만원 이하로서 피보험자동차가 장애인 운송용 휠체어리프트나 슬로프가 설치되어 출고되거나 구조변경된 차량인 경우

제2조(제출서류)
이 특별약관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서류를 보험회사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가입할 수 있습니다.

① 제1조(가입대상) 제①항의 경우
   주민자치센터에서 발급하는 기초생활 수급자증명서
② 제1조(가입대상) 제②항의 경우
   1. 기명피보험자와 배우자의 소득을 증명하는 서류. 다만, 기명피보험자의 나이가 만 65세 이상인 경우에는 소득을 증명하는 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가. 기명피보험자 또는 배우자가 근로자인 경우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나. 기명피보험자 또는 배우자가 사업등록자인 경우 부가가치세과세표준 증명원. 다만, 사업소득자 중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수입증명원
      다. 기명피보험자 또는 배우자가 사업등록이 안된 인적용역제공자인 경우 사업소득원천징수 영수증
      라. 기명피보험자 또는 배우자가 무소득자인 경우 사실증명원
      마. 그 밖에 기명피보험자 또는 배우자의 소득을 증명하는 서류(예 :「국민건강보험료 영수증」(기명피보험자가 국민건강보험의 지역가입자인 경우),「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서 정하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그 밖에 보험

회사가 인정하는 서류)
2. 기명피보험자의 부양가족이 명시된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③ 제1조(가입대상) 제③항의 경우
1. 기명피보험자 또는 기명피보험자의 동거가족의 장애인증명서 또는 장애인복지카드. 다만, 갱신계약시 직전 계약에서 장애인증명서 또는 장애인복지카드를 제출했을 경우 이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2. 기명피보험자의 동거가족이 장애인인 경우 기명피보험자의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3. 기명피보험자와 배우자의 소득을 증명하는 서류(위 '제②항 1호'와 동일)

④ 제1조(가입대상) 제④항의 경우
1. 장애인 운송용 휠체어 리프트나 슬로프가 설치되어 출고되거나 구조변경된 차량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차량등록증
2. 기명피보험자와 배우자의 소득을 증명하는 서류(위 '제②항 1호'와 동일)

제3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Ⅴ-2 친환경부품사용 특별약관

제1조(가입대상)
이 특별약관은 피보험자동차가 법정승차정원 10인 이하의 승용자동차이고, '배상책임(대물배상) 또는 자기차량손해'에 가입한 경우에 자동적으로 적용합니다.

제2조(보상내용)
① 회사는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보통약관 제24조(지급보험금의 계산) 제①항의 '3'을 다음으로 대체합니다.
1. 피보험자동차를 고칠 때에 부득이 새 부분품을 사용한 경우에는, 그 부분품의 값과 그 부착비용을 합한 금액. 다만 엔진, 미션 등 중요한 부분을 새 부분품으로 교환한 경우 그 교환된 기존 부분품의 감가상각에 해당하는 금액은 공제합니다.
2. 위 '1'항의 경우에서 이 특별약관에서 정한 방법으로 친환경부품을 사용한 경우에는 해당하는 새 부분품가격의 20%를 피보험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용어풀이

이 특별약관에서 정한 방법으로 친환경부품(중고부품 또는 재제조부품)을 사용한 경우라 함은 보험개발원 또는 보험회사가 인정한 업체로부터 다음의 친환경부품을 공급받아 자동차를 수리한 경우를 말합니다.
(1) 중고부품 : 사이드미러, 프런트팬더, 보닛, 라디에이터그릴, 프런트도어, 리어도어, 트렁크패널, 프런트범퍼, 리어범퍼, 백도어, 리어피니셔, 쿨러콘덴서, 테일램프, 헤드램프, 안개등, 룸미러(하이패스 기능), 전후방센서
(2) 재제조부품 : '교류발전기, 등속조인트 등「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 촉진에 관한 법률」제22조에 의해 품질인증을 받은 재제조부품'

② 회사는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제10조(지급보험금의 계산) 제④항의 제2호'를 다음으로 대체합니다.
1. 대물배상의 경우 사고차량을 고칠 때에 부득이 엔진, 미션 등 중요한 부분을 새 부분품으로 교환한 경우 '그 교환된 기존 부분품의 감가상각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2. 위 '1'의 경우에서 이 특별약관에서 정한 방법으로 친환경부품을 사용한 경우에는 해당하는 새 부분품가격의 20%를 피보험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제3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보통약관 '제8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및 '제23조(보상하지 않는 손해)'에서 정한 경우와 다음과 같은 손해에 대하여도 보상하지 않습니다.

1. 보험증권에 기재된 운전가능 범위외의 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운전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2. 보험개발원 또는 보험회사가 인정하지 않은 업체로부터 친환경부품을 공급받아 피보험자동차 또는 대물배상 대상차량을 수리한 경우 새 부분품 가격과의 차액
3.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친환경부품을 공급받아 피보험자동차를 수리한 경우 새 부분품 가격과의 차액

제4조(피보험자의 범위)
이 특별약관에서 피보험자는 다음을 말합니다.

1. 이 특별약관 '제2조(보상내용) 제①항의 2'의 경우 기명피보험자
2. 이 특별약관 '제2조(보상내용) 제②항의 2'의 경우 대물배상 대상차량(법정승차정원 10인 이하의 승용자동차에 한함)의 소유자

제5조(보험금의 환입)

① 보통약관 제7조(피보험자) 및 제22조(피보험자)에서 정한 피보험자가 청구포기 등의 사유로 보통약관 제6조(보상하는 손해(대물배상)) 또는 제21조(보상하는 손해(자기차량손해))의 보험금을 전액 회사에 돌려줄 경우 이 특별약관에 따라 지급한 금액도 동시에 돌려주어야 합니다.

② 이 특별약관에서 정한 방법으로 친환경부품을 사용하였으나 친환경부품의 하자 등으로 이미 사용된 친환경부품을 새 부분품으로 다시 교체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에서 지급한 금액을 보험회사에 돌려주어야 합니다.

제6조(적용배제)
보험회사는 이 특별약관 '제2조(보상내용)'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1. 보험개발원 또는 보험회사가 인정한 업체가 이 특별약관에서 정한 친환경부품을 공급할 수 없는 경우
2. 친환경부품을 사용하여 지급되는 보험금(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지급된 보험금을 포함합니다)이 '배상책임(대물배상)'인 경우 사고당시 해당차량의 중고시세 또는 '자기차량손해'인 경우 보험가액(보험가액이 보험가입금액보다 클 경우에는 보험가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3. 친환경부품을 사용하여 지급되는 보험금(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지급된 보험금을 포함합니다)이 새부분품을 사용하여 지급되는 보험금을 초과하는 경우

제7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Ⅴ-3 품질인증부품사용 특별약관

제1조(가입대상)
이 특별약관은 보통약관「대물배상」,「자기차량손해」또는「자기차량손해 포괄 특별약관」에 가입한 경우에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제2조(보상내용)
보험회사(이하 "회사"라고 합니다)는 보통약관「대물배상」,「자기차량손해」또는「자기차량

손해 포괄 특별약관」에 따라서 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로서 아래 각 호에 따라 이 특별약관에서 정한 품질인증부품을 사용하여 실제 수리 시 OEM부품 공시가격의 25%를 피보험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1. 피보험자동차 또는 배상책임(대물배상) 대상 자동차가 출고 후 5년을 초과한 경우로서, 외장부품을 품질인증부품으로 교환수리하는 경우
2. 제1호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이나 피보험자가 품질인증부품으로 교환수리를 희망하는 경우

용어풀이

1. 이 특별약관에서 품질인증부품이라 함은「자동차관리법」제30조의5에 따라 인증된 부품을 말합니다.
2. 이 특별약관에서 OEM부품이라 함은 자동차제조사에서 출고된 자동차에 장착된 부품을 말하며, OEM부품 공시가격은「자동차관리법」제32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라 자동차제작사가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는 가격을 말합니다.
3. 이 특별약관에서 외장부품이라 함은 자동차의 외판을 구성하는 부품으로서 범퍼, 보닛(후드), 펜더, 트렁크리드, 도어 및 백도어를 의미합니다.

제3조(OEM부품 사용에 대한 특례)

회사는 보통약관「대물배상」,「자기차량손해」또는「자기차량손해 포괄 특별약관」에 따라서 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로서 피보험자가 OEM부품으로 교환수리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보통약관 <별표2> 대물배상 지급기준 및「자기차량손해」제24조(지급보험금의 계산)에도 불구하고 OEM부품으로 교환수리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한도로 보상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 특례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1. 경미한 손상에 해당하여 보험개발원이 정한 경미손상 수리기준에 따라 복원수리하거나 품질인증부품으로 교환수리하는 경우
2. 자동차에 이미 장착되어 있던 OEM부품 또는 품질인증부품 이외의 부품이 파손되어 교환수리하는 경우

용어풀이

1. 이 특별약관에서 경미한 손상이라 함은 외장부품 중 자동차의 기능과 안전성을 고려할 때 부품교체 없이 복원이 가능한 손상을 말합니다.
2. 이 특별약관에서 OEM부품 또는 품질인증부품 이외의 부품이라 함은「자동차관리법」제58조 제5항 제2호에 따른 중고부품, 재생부품 등을 의미합니다.

제4조(피보험자)

이 특별약관에서 피보험자는 기명피보험자 또는 배상책임(대물배상) 대상 자동차의 소유자를 말합니다.

제5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① 회사는 보통약관「대물배상」제8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및「자기차량손해」제23조(보상하지 않는 손해)에서 정하는 사항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② 보험증권에 기재된 운전 가능 범위 또는 운전 가능 연령 범위 이외의 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③ 품질인증부품을 사용하여 지급되는 보험금(이 특별약관 제2조(보상내용)에 의하여 지급되는 금액을 포함합니다)이 보통약관「대물배상」인 경우 사고 당시 해당 차량의 중고시세, 보통약관「자기차량손해」또는「자기차량손해 포괄 특별약관」인 경우 보험가입금액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보험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제6조(보험금의 환입)

① 피보험자가 청구포기 등의 사유로 보통약관「대물배상」,「자기차량손해」또는「자기차량손해 포괄 특별약관」의 보험금을 회사에 돌려줄 경우 이 특별약관에 따라 지급한 금액도 동시에 돌려주어야 합니다.

② 이 특별약관에서 정한 방법으로 품질인증부품을 사용하였으나, 품질인증부품의 하자 등으로 인하여 OEM부품으로 교환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에 따라 지급한 금액을 회사에 돌려주어야 합니다.

제7조(적용 제외)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OEM부품으로 교환수리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한도로 보상하며, 이 특별약관 제2조(보상내용)에 따른 OEM부품 공시가격의 25%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1. 품질인증부품을 공급할 수 없거나 공급 지연 등의 사유로 회사가 OEM부품으로 수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2. 품질인증부품을 사용하여 지급되는 보험금(이 특별약관 제2조(보상내용)에 의하여 지급되는 금액을 포함합니다)이 OEM부품을 사용하여 지급되는 보험금을 초과하는 경우

② 이 특별약관 제3조(OEM부품 사용에 대한 특례)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 제2조(보상내용)에 따른 OEM부품 공시가격의 25%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제8조(준용 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Ⅴ-4 마일리지 할인 특별약관(사진전송방식)

이 특별약관은 마일리지 할인 특별약관(운행정보 확인장치 방식)과 중복으로 가입할 수 없습니다.

제1조(가입대상)

① 이 특별약관은 의무보험의 보험기간이 1년인 경우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 기존 유지 중인 자동차보험 계약에 이 특별약관을 추가하는 경우에는 남은 보험기간이 90일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용어풀이

1. 이 특별약관에서 운행이라 함은 피보험자동차가 주행하여 거리의 이동이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2. 이 특별약관에서 누적운행거리정보라 함은 주행거리 확인 당시에 자동차계기판에 표시된 피보험자동차의 출고 이후 누적된 주행거리와 이를 확인한 날짜를 말합니다.

② 위'①'에도 불구하고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이면서 다른 자동차보험 계약과의 보험기간 만료일을 일치시키기 위한 계약으로 보험기간이 90일 이상 남은 경우는 이 특별약관을 가입할 수 있습니다.

③ 위 '①' 또는 '②'에도 불구하고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이 특별약관의 가입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1. 피보험차량의 운행정보를 변경하거나 다른 자동차의 운행정보 전송 등을 통해 보험료를 할인 받으려 하였거나 할인 받은 경우

2. 주행거리연동형 보험계약에 가입하여 보험료 추징사유가 발생하였으나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사실이 있는 경우

제2조(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의무사항)

① 보험계약자(또는 피보험자)는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개시일 이전 45일부터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개시일 이후 15일 이내에 피보험자동차의 최초 '누적운행거리정보'의 촬영사진(또는 자동차검사소 등 회사가 인정하는 기관의 누적운행거리 확인서)과 이를 확인한 날짜를 회사가 정하는 방법으로 전송하고 회사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② 위 ①항에도 불구하고 직전 계약에서 마일리지 할인 특별약관 정산에 사용된 최종 주행거리 정보를 회사가 보험개발원 조회를 통해 확인한 경우에는 최초 주행거리 정보를 전송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보험기간 개시일 이전 45일부터 보험기간 개시일 이후 15일 이내에 직전 계약의 최종 주행거리 정산이 완료되어야 합니다.

③ 보험계약자(또는 피보험자)는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끝나는 날 이전 45일부터 보험기간 끝나는 날 이후 30일 이내에 피보험자동차의 최종 '누적운행거리정보'를 회사가 정하는 방법으로 확인 및 전송하고 회사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④ 위 ③항에도 불구하고, 보험계약자(또는 피보험자)가 타사와 맺은 직후 계약에서 마일리지 등록에 사용된 최초 주행거리 정보를 보험개발원 조회를 통해 확인한 경우에는 보험계약자(또는 피보험자)가 최종 주행거리 정보를 송부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⑤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동차가 교체(대체)된 경우에 보험계약자(또는 피보험자)는 제①항, 제②항 및 제③항에서 정한 사항을 이행해야 합니다.

⑥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동차의 운행거리기록계가 수리 또는 교체(대체)된 경우에 보험계약자(또는 피보험자)는 제①항, 제②항 및 제③항에서 정한 사항을 이행해야 합니다.

⑦ 보험계약자(또는 피보험자)가 직접 송부한 피보험자동차의 '누적운행거리정보'의 확인일자와 송부일자간의 차이가 2일 이내일 경우 실제 확인한 날짜를 누적운행거리 확인일자로 인정합니다. 또한 보험계약자(또는 피보험자)는 '누적운행거리정보'의 확인일자와 동 정보의 송부일자가 3일 이상 차이나는 경우 피보험자동차의 '누적운행거리정보'를 재전송하고 회사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⑧ 보험계약자는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변동된 보험료를 정산할 수 있도록 보험계약자 명의의 유효한 은행계좌번호 또는 신용카드 정보를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또한 보험가입 당시 고지한 은행계좌번호 또는 신용카드 정보가 변경되거나 거래 정지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⑨ 보험계약자(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기간 내에 회사가 '누적운행거리정보' 확인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 반드시 협조해야 합니다.

제3조(연간 운행거리의 산출)

① 회사는 이 특별약관 '제2조(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의무사항)'에 따라 송부된 운행기록(또는 누적운행거리정보)을 기준으로 다음의 산식으로 연간 운행거리를 산출합니다. 다만, 피보험자동차가 교체(대체)된 경우에는 교체(대체)전 피보험자동차와 교체(대체)후 피보험자동차의 운행거리 및 경과된 일자를 각각 합산하여 연간운행거리를 산출합니다.

연간운행거리 = 일평균운행거리 × 365일
1) 일평균운행거리 = 총운행거리 / 경과된 일자
2) 총운행거리 = 최종 누적운행거리 - 최초 누적운행거리 + 가산된 운행거리
3) 경과된 일자= 최종 누적운행거리 확인일자 - 최초 누적운행거리 확인일자(단, 해외 체류 등으로 보험가입 의무를 면제받고 보험계약기간을 유예한 경우 유예기간 제외)

제4조(보험료의 정산)

① 회사는 이 특별약관 '제3조(연간 운행거리의 산출)'에서 정한 방법으로 피보험자동차의 연간운행거리를 산출하여 <별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산정한 보험료 정산금액을 보험계약자 명의의 은행계좌 또는 신용카드로 환급해 드립니다.
② 회사는 제①항에도 불구하고 이 특별약관 '제5조(특별약관 계약의 무효 등) 제①항'에 해당하는 경우와 '제2조(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의무사항) 제④항의 정보가 확인되지 않거나, 제③항과 제⑦항에서 정한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표>의 보험료 정산금액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③ 회사는 피보험자동차의 최종 누적운행거리 정보를 제공받은 날(보험기간 만료일 이전에 최종 누적운행거리 정보를 받은 경우에는 보험기간 만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보험료를 정산하여 드립니다. 다만, 1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 동안의 이자금액(보험개발원이 공시한 보험계약대출이자율)까지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등의 책임 있는 사유로 지급이 지연된 때에는 그 해당기간에 대한 이자는 더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제5조(특별약관의 무효 등)
①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자동으로 무효가 됩니다.
1. 보험계약자(또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 제2조(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의무사항) 제①항, 제②항, 제⑤항, 제⑥항에서 정한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2. 보험계약자(또는 피보험자)가 '제2조(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의무사항)'에 의하여 전송한 정보가 다른 자동차의 정보이거나 '누적운행거리정보'가 임의 변경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② 이 특별약관에 가입한 후에도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 제1조(가입대상)의 제③항에 해당하는 사실이 밝혀진 경우에 보험회사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 특별약관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제6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별표> 보험료 정산금액

연간운행거리	할인 전 최종 적용보험료의 (긴급출동서비스특약 제외)
15,000KM초과	0%
15,000KM이하 ~ 12,000KM초과	보험증권에 기재된 할인율
12,000KM이하 ~ 10,000KM초과	보험증권에 기재된 할인율
10,000KM이하 ~ 8,000KM초과	보험증권에 기재된 할인율
8,000KM이하 ~ 5,000KM초과	보험증권에 기재된 할인율
5,000KM이하 ~ 4,000KM초과	보험증권에 기재된 할인율
4,000KM이하 ~ 2,000KM초과	보험증권에 기재된 할인율
2,000KM이하	보험증권에 기재된 할인율

Ⅴ-5 마일리지 할인 특별약관(운행정보 확인장치 방식)

이 특별약관은 마일리지 할인 특별약관(사진전송방식)과 중복으로 가입할 수 없습니다.

제1조(가입대상)
① 이 특별약관은 피보험자동차에 운행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장치(이하 '운행정보확인장치'

라 합니다)를 장착할 수 있는 자동차로써 의무보험의 보험기간이 1년인 경우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 기존 유지 중인 자동차보험 계약에 이 특별약관을 추가하는 경우에는 남은 보험기간이 90일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용어풀이

1. 이 특별약관에서 운행이라 함은 피보험자동차가 주행하여 거리의 이동이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2. 이 특별약관에서 운행정보확인장치라 함은 피보험자동차의 주행거리를 포함한 운행정보를 저장하고 그 정보를 전송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춘 다음의 장치를 말합니다.
   ① 피보험자동차 출고 시 차량제조사의 표준장치 또는 옵션으로 장착된 장치
   ② 상기 '①' 이외에 보험개발원 부설 자동차기술연구소의 기술인증을 부여받은 장치
3. 이 특별약관에서 누적운행거리정보라 함은 주행거리 확인 당시에 자동차계기판에 표시된 피보험자동차의 출고 이후 누적된 주행거리와 이를 확인한 날짜를 말합니다.

② 위'①'에도 불구하고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이면서 다른 자동차보험 계약과의 보험기간 만료일을 일치시키기 위한 계약으로 보험기간이 90일 이상 남은 경우는 이 특별약관을 가입할 수 있습니다.

③ 위 '①' 또는 '②'에도 불구하고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이 특별약관의 가입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1. 피보험차량의 운행정보를 변경하거나 다른 자동차의 운행정보 전송 등을 통해 보험료를 할인 받으려 하였거나 할인 받은 경우
   2. 주행거리연동형 보험계약에 가입하여 보험료 추징사유가 발생하였으나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사실이 있는 경우

④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기간 중 운행정보 확인장치 고장, 무선통신 서비스 해지등의 사유 발생 시 계약체결일로 소급하여 마일리지 할인 특별약관(사진전송방식)'으로 전환하여 가입 할 수 있습니다.

제2조(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의무사항)

① 보험계약자(또는 피보험자)는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개시일 이후 7일 이내에 피보험자동차에 운행정보확인장치를 부착하여야 합니다.(이하 '운행정보확인장치 부착의무'라 합니다)

② 보험계약자(또는 피보험자)는 피보험자동차의 운행정보가 정상적으로 저장될 수 있도록 운행정보확인장치를 부착한 상태로 운행하여야 합니다.

③ 보험계약자(또는 피보험자)는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개시일 이후 15일 이내에 다음의 사항을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가 정하는 방법으로 송부해야 합니다. 다만 갱신계약 등 회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가. 피보험자동차의 차량정보
   나. 피보험자동차에 부착한 운행정보확인장치의 모델명과 제품식별번호
   다. 기타 회사가 요구하는 사항

④ 보험계약자(또는 피보험자)는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끝나는 날 이전 45일부터 이후 30일 이내에, 피보험자동차에 운행정보확인장치를 부착한 날로부터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이 끝나는 날까지의 운행정보를 회사가 정하는 방법으로 송부하여야 합니다.

⑤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동차가 교체(대체)된 경우에 보험계약자(또는 피보험자)는 제①항, 제②항, 제③항, 및 제④항에서 정한 사항을 이행해야 합니다.

⑥ 보험계약자(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기간 중에 운행정보확인장치를 교체하는 경우에 제①항, 제②항, 제③항, 및 제④항에서 정한 사항을 이행해야 합니다.

⑦ 보험계약자는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변동된 보험료를 정산할 수 있도록 보험계약자 명

의의 유효한 은행계좌번호 또는 신용카드 정보를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또한 보험가입 당시 고지한 은행계좌번호 또는 신용카드 정보가 변경되거나 거래 정지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⑧ 보험계약자(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기간 내에 회사가 '누적운행거리정보' 확인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 반드시 협조해야 합니다.

제3조(연간 운행거리의 산출)

① 회사는 이 특별약관 '제2조(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의무사항)'에 따라 송부된 운행기록(또는 누적운행거리정보)을 기준으로 다음의 산식으로 연간 운행거리를 산출합니다. 다만, 피보험자동차가 교체(대체)된 경우에는 교체(대체)전 피보험자동차와 교체(대체)후 피보험자동차의 운행거리 및 경과된 일자를 각각 합산하여 연간운행거리를 산출합니다.

연간운행거리 = 일평균운행거리 × 365일
1) 일평균운행거리 = 총운행거리 / 경과된 일자
2) 총운행거리 = 최종 누적운행거리 - 최초 누적운행거리 + 가산된 운행거리
3) 경과된 일자= 최종 누적운행거리 확인일자 - 최초 누적운행거리 확인일자(단, 해외 체류 등으로 보험가입 의무를 면제받고 보험계약기간을 유예한 경우 유예기간 제외)

②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동차가 시간당 60km(1일당 500km한도)를 추가로 운행한 것으로 간주합니다.(이하 '가산된 운행거리'라 합니다)

가. 이 특별약관 '제2조(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의무사항)' 제①항에서 정한 '운행정보확인장치 부착의무'를 다한 이후 보험기간 중 운행정보확인장치를 부착하지 아니한 해당 기간 및 시간

나. 운행정보의 미전송, 훼손 등 회사의 책임 없는 사유로 운행정보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 확인이 불가능한 해당 기간 및 시간

다. 운행정보확인장치의 불량.오작동 등 운행정보확인장치의 하자로 운행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확인이 불가능한 해당 기간 및 시간

③ 회사는 제②항에도 불구하고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동차를 운행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가. 회사의 책임 있는 사유로 운행정보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 확인이 불가능한 해당 기간 및 시간

나. 자동차의 고장, 사고수리 등의 사유로 인하여 피보험자동차를 운행하지 않았음을 보험계약자가 입증하는 경우

제4조(보험료의 정산)

① 회사는 이 특별약관 '제3조(연간 운행거리의 산출)'에서 정한 방법으로 피보험자동차의 연간운행거리를 산출하여 <별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산정한 보험료 정산금액을 보험계약자 명의의 은행계좌 또는 신용카드로 환급해 드립니다.

② 회사는 제①항에도 불구하고 이 특별약관 '제5조(특별약관 계약의 무효 등) 제①항'에 해당하는 경우와 '제2조(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의무사항) 제④항에서 정한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표>의 보험료 정산금액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③ 회사는 피보험자동차의 최종 누적운행거리 정보를 제공받은 날(보험기간 만료일 이전에 최종 누적운행거리 정보를 받은 경우에는 보험기간 만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보험료를 정산하여 드립니다. 다만, 1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 동안의 이자금액(보험개발원이 공시한 보험계약대출이자율)까지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등의 책임 있는 사유로 지급이 지연된 때에는 그 해당기간에 대한 이자는 더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제5조(특별약관의 무효 등)

①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자동으로 무효가 됩니다.

1. 보험계약자(또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 제2조(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의무사항) 제 ①항, 제②항, 제③항, 제⑤항 및 제⑥항에서 정한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경우
2. 보험계약자(또는 피보험자)가 '제2조(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의무사항)'에 의하여 전송한 정보가 다른 자동차의 정보이거나 '누적운행거리정보'가 임의 변경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② 이 특별약관에 가입한 후에도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 제1조(가입대상)의 제③항에 해당하는 사실이 밝혀진 경우에 보험회사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 특별약관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제6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별표> 보험료 정산금액

연간운행거리	할인 전 최종 적용보험료의 (긴급출동서비스특약 제외)
15,000KM초과	0%
15,000KM이하 ~ 12,000KM초과	보험증권에 기재된 할인율
12,000KM이하 ~ 10,000KM초과	보험증권에 기재된 할인율
10,000KM이하 ~ 8,000KM초과	보험증권에 기재된 할인율
8,000KM이하 ~ 5,000KM초과	보험증권에 기재된 할인율
5,000KM이하 ~ 4,000KM초과	보험증권에 기재된 할인율
4,000KM이하 ~ 2,000KM초과	보험증권에 기재된 할인율
2,000KM이하	보험증권에 기재된 할인율

Ⅴ-6 마일리지 선할인 특별약관(사진전송방식)

이 특별약관은 마일리지 선할인 특별약관(운행정보 확인장치 방식)과 중복으로 가입할 수 없습니다.

제1조(가입대상)

① 이 특별약관은 의무보험의 보험기간이 1년인 경우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 기존 유지 중인 자동차보험 계약에 이 특별약관을 추가하는 경우에는 남은 보험기간이 90일 이상 남은 경우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용어풀이

1. 이 특별약관에서 운행이라 함은 피보험자동차가 주행하여 거리의 이동이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2. 이 특별약관에서 누적운행거리정보라 함은 주행거리 확인 당시에 자동차계기판에 표시된 피보험자동차의 출고 이후 누적된 주행거리와 이를 확인한 날짜를 말합니다.

② 위'①'에도 불구하고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이면서 다른 자동차보험 계약과의 보험기간 만료일을 일치시키기 위한 계약으로 보험기간이 90일 이상 남은 경우는 이 특별약관을 가입할 수 있습니다.

③ 위 '①' 또는 '②'에도 불구하고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이

특별약관의 가입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1. 피보험차량의 운행정보를 변경하거나 다른 자동차의 운행정보 전송 등을 통해 보험료를 할인 받으려 하였거나 할인 받은 경우
2. 주행거리연동형 보험계약에 가입하여 보험료 추징사유가 발생하였으나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사실이 있는 경우

제2조(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의무사항)

① 보험계약자(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계약을 청약하는 경우에, 피보험자동차의 최초 '누적운행거리정보'의 촬영사진(또는 자동차검사소 등 회사가 인정하는 기관의 누적운행거리 확인서)과 이를 확인한 날짜를 회사가 정하는 방법으로 전송하고 회사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② 위 ①항에도 불구하고 직전 계약에서 마일리지 할인 특별약관 정산에 사용된 최종 주행거리 정보를 회사가 보험개발원 조회를 통해 확인한 경우에는 최초 주행거리 정보를 전송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보험기간 개시일 이전 45일부터 보험기간 개시일 이후 15일 이내에 직전 계약의 최종 주행거리 정산이 완료되어야 합니다.

③ 보험계약자(또는 피보험자)는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끝나는 날 이전 45일부터 보험기간 끝나는 날 이후 30일 이내에 피보험자동차의 최종 '누적운행거리정보'를 회사가 정하는 방법으로 확인 및 전송하고 회사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④ 위 ③항에도 불구하고, 보험계약자(또는 피보험자)가 타사와 맺은 직후 계약에서 마일리지 등록에 사용된 최초 주행거리 정보를 보험개발원 조회를 통해 확인한 경우에는 보험계약자(또는 피보험자)가 최종 주행거리 정보를 송부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⑤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동차가 교체(대체)된 경우에 보험계약자(또는 피보험자)는 [최초 및 최종 누적운행거리정보의 전송] 제①항, 제②항 및 제③항에서 정한 사항을 이행해야 합니다.

⑥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동차의 운행거리기록계가 수리 또는 교체(대체)된 경우에 보험계약자(또는 피보험자)는 [최초 및 최종 누적운행거리정보의 전송] 제1호, 제2호 및 제3호에서 정한 사항을 이행해야 합니다.

⑦ 보험계약자(또는 피보험자)가 직접 송부한 피보험자동차의 '누적운행거리정보'의 확인일자와 송부일자간의 차이가 2일 이내일 경우 실제 확인한 날짜를 누적운행거리 확인일자로 인정합니다. 또한 보험계약자(또는 피보험자)는 '누적운행거리정보'의 확인일자와 동 정보의 송부일자가 3일 이상 차이나는 경우 피보험자동차의 '누적운행거리정보'를 재전송하고 회사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⑧ 보험계약자는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변동된 보험료를 정산할 수 있도록 보험계약자 명의의 유효한 은행계좌번호 또는 신용카드 정보를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또한 보험가입 당시 고지한 은행계좌번호 또는 신용카드 정보가 변경되거나 거래 정지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⑨ 보험계약자(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기간 내에 회사가 '누적운행거리정보' 확인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 반드시 협조해야 합니다.

⑩ 보험계약자(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기간 내에 운행한 거리가 <별표>의 15,000km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 회사에 해당사실을 즉시 알려야 합니다.

제3조(연간 운행거리의 산출)

① 회사는 이 특별약관 '제2조(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의무사항)'에 따라 송부된 운행기록(또는 누적운행거리정보)을 기준으로 다음의 산식으로 연간 운행거리를 산출합니다. 다만, 피보험자동차가 교체(대체)된 경우에는 교체(대체)전 피보험자동차와 교체(대체)후 피보험자동차의 운행거리 및 경과된 일자를 각각 합산하여 연간운행거리를 산출합니다.

연간운행거리 = 일평균운행거리 × 365일
1) 일평균운행거리 = 총운행거리 / 경과된 일자
2) 총운행거리 = 최종 누적운행거리 - 최초 누적운행거리 + 가산된 운행거리
3) 경과된 일자= 최종 누적운행거리 확인일자 - 최초 누적운행거리 확인일자(단, 해외 체류 등으로 보험가입 의무를 면제받고 보험계약기간을 유예한 경우 유예기간 제외)

제4조(보험료의 선할인 및 정산)

① 회사는 보험계약자(또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동안에 일정거리 이하로 운행하기로 약정하는 경우 약정한 연간 운행거리를 기준으로 <별표>에 따라 산정한 정산금액을 보험계약 체결 시 할인해 드립니다.

② 회사는 제①항에도 불구하고 보험계약이 종료된 후 이 특별약관 '제3조(연간 운행거리의 산출)'에서 정한 방법으로 피보험자동차의 보험기간동안 연간운행거리를 재산출하여 <별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최종 적용할 정산금액을 재산정합니다. 이 때 재산정된 정산금액과 보험계약 체결 시 할인한 정산금액 간 차액이 발생한 경우 해당 사실과 차액을 보험계약자에게 통보한 후, 보험계약자가 고지한 은행 계좌 또는 신용카드에서 그 차액을 정산합니다.

③ 회사는 제①항 내지 제②항에도 불구하고 이 특별약관 '제5조(특별약관 계약의 무효 등) 제①항'에 해당하는 경우와 '제2조(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의무사항) 제④항의 정보가 확인되지 않거나, 제③항와 제⑦항에서 정한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에 따른 보험료 할인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④ 회사는 제③항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제2조(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의무사항) 제⑩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 사실을 보험계약자에게 통보한 후, 보험계약자가 고지한 은행 계좌 또는 신용카드에서 보험계약 체결 시 할인한 정산금액을 즉시 추징합니다.

⑤ 회사는 피보험자동차의 최종 누적운행거리 정보를 제공받은 날(보험기간 만료일 이전에 최종 누적운행거리 정보를 받은 경우에는 보험기간 만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보험료를 정산하여 드립니다. 다만, 1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 동안의 이자금액(보험개발원이 공시한 보험계약대출이자율)까지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등의 책임 있는 사유로 지급이 지연된 때에는 그 해당기간에 대한 이자는 더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제5조(특별약관의 무효 등)

①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자동으로 무효가 됩니다.
1. 보험계약자(또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 제2조(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의무사항) 제①항, 제②항, 제⑤항, 제⑥항에서 정한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2. 보험계약자(또는 피보험자)가 '제2조(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의무사항)'에 의하여 전송한 정보가 다른 자동차의 정보이거나 '누적운행거리정보'가 임의 변경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② 이 특별약관에 가입한 후에도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 제1조(가입대상)의 제③항에 해당하는 사실이 밝혀진 경우에 보험회사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 특별약관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제6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별표> 보험료 정산금액

연간운행거리	할인 전 최종 적용보험료의 (긴급출동서비스특약 제외)
15,000KM초과	0%
15,000KM이하 ~ 12,000KM초과	보험증권에 기재된 할인율
12,000KM이하 ~ 10,000KM초과	보험증권에 기재된 할인율
10,000KM이하 ~ 8,000KM초과	보험증권에 기재된 할인율
8,000KM이하 ~ 5,000KM초과	보험증권에 기재된 할인율
5,000KM이하 ~ 4,000KM초과	보험증권에 기재된 할인율
4,000KM이하 ~ 2,000KM초과	보험증권에 기재된 할인율
2,000KM이하	보험증권에 기재된 할인율

Ⅴ-7 마일리지 선할인 특별약관(운행정보 확인장치 방식)

이 특별약관은 마일리지 선할인 특별약관(사진전송방식)과 중복으로 가입할 수 없습니다.

제1조(가입대상)

① 이 특별약관은 피보험자동차에 운행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장치(이하 '운행정보확인장치'라 합니다)를 장착할 수 있는 자동차로써 의무보험의 보험기간이 1년인 경우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 기존 유지 중인 자동차보험 계약에 이 특별약관을 추가하는 경우에는 남은 보험기간이 90일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용어풀이

1. 이 특별약관에서 운행이라 함은 피보험자동차가 주행하여 거리의 이동이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2. 이 특별약관에서 운행정보확인장치라 함은 피보험자동차의 주행거리를 포함한 운행정보를 저장하고 그 정보를 전송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춘 다음의 장치를 말합니다.
   ① 피보험자동차 출고 시 차량제조사의 표준장치 또는 옵션으로 장착된 장치
   ② 상기 '①' 이외에 보험개발원 부설 자동차기술연구소의 기술인증을 부여받은 장치
3. 이 특별약관에서 누적운행거리정보라 함은 주행거리 확인 당시에 자동차계기판에 표시된 피보험자동차의 출고 이후 누적된 주행거리와 이를 확인한 날짜를 말합니다.

② 위'①'에도 불구하고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이면서 다른 자동차보험 계약과의 보험기간 만료일을 일치시키기 위한 계약으로 보험기간이 90일 이상 남은 경우는 이 특별약관을 가입할 수 있습니다.

③ 위 '①' 또는 '②'에도 불구하고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이 특별약관의 가입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1. 피보험차량의 운행정보를 변경하거나 다른 자동차의 운행정보 전송 등을 통해 보험료를 할인 받으려 하였거나 할인 받은 경우
   2. 주행거리연동형 보험계약에 가입하여 보험료 추징사유가 발생하였으나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사실이 있는 경우

④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기간 중 운행정보 확인장치 고장, 무선통신 서비스 해지등의 사유 발생 시 계약체결일로 소급하여 마일리지 선할인 특별약관(사진전송방식)'으로 전환하여 가입 할 수 있습니다.

제2조(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의무사항)

① 보험계약자(또는 피보험자)는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개시일 이후 7일 이내에 피보험자동차에 운행정보확인장치를 부착하여야 합니다.(이하 '운행정보확인장치 부착의무'라 합니다)
② 보험계약자(또는 피보험자)는 피보험자동차의 운행정보가 정상적으로 저장될 수 있도록 운행정보확인장치를 부착한 상태로 운행하여야 합니다.
③ 보험계약자(또는 피보험자)는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개시일 이후 15일 이내에 다음의 사항을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가 정하는 방법으로 송부해야 합니다. 다만 갱신계약 등 회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가. 피보험자동차의 차량정보
나. 피보험자동차에 부착한 운행정보확인장치의 모델명과 제품식별번호
다. 기타 회사가 요구하는 사항
④ 보험계약자(또는 피보험자)는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끝나는 날 이전 45일부터 이후 30일 이내에, 피보험자동차에 운행정보확인장치를 부착한 날로부터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이 끝나는 날까지의 운행정보를 회사가 정하는 방법으로 송부하여야 합니다.
⑤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동차가 교체(대체)된 경우에 보험계약자(또는 피보험자)는 제①항, 제②항, 제③항 및 제④항에서 정한 사항을 이행해야 합니다.
⑥ 보험계약자(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기간 중에 운행정보확인장치를 교체하는 경우에 제①항, 제②항, 제③항 및 제④항에서 정한 사항을 이행해야 합니다.
⑦ 보험계약자는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변동된 보험료를 정산할 수 있도록 보험계약자 명의의 유효한 은행계좌번호 또는 신용카드 정보를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또한 보험가입 당시 고지한 은행계좌번호 또는 신용카드 정보가 변경되거나 거래 정지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⑧ 보험계약자(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기간 내에 회사가 '누적운행거리정보' 확인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 반드시 협조해야 합니다.
⑨ 보험계약자(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기간 내에 운행한 거리가 <별표>의 15,000km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 회사에 해당사실을 즉시 알려야 합니다.

제3조(연간 운행거리의 산출)

① 회사는 이 특별약관 '제2조(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의무사항)'에 따라 송부된 운행기록(또는 누적운행거리정보)을 기준으로 다음의 산식으로 연간 운행거리를 산출합니다. 다만, 피보험자동차가 교체(대체)된 경우에는 교체(대체)전 피보험자동차와 교체(대체)후 피보험자동차의 운행거리 및 경과된 일자를 각각 합산하여 연간운행거리를 산출합니다.

연간운행거리 = 일평균운행거리 × 365일
1) 일평균운행거리 = 총운행거리 / 경과된 일자
2) 총운행거리 = 최종 누적운행거리 - 최초 누적운행거리 + 가산된 운행거리
3) 경과된 일자= 최종 누적운행거리 확인일자 - 최초 누적운행거리 확인일자(단, 해외 체류 등으로 보험가입 의무를 면제받고 보험계약기간을 유예한 경우 유예기간 제외)

②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동차가 시간당 60km(1일당 500km한도)를 추가로 운행한 것으로 간주합니다.(이하 '가산된 운행거리'라 합니다)
가. 이 특별약관 '제2조(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의무사항)' 제①항에서 정한 '운행정보확인장치 부착의무'를 다한 이후 보험기간 중 운행정보확인장치를 부착하지 아니한 해당 기간 및 시간
나. 운행정보의 미전송, 훼손 등 회사의 책임 없는 사유로 운행정보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 확인이 불가능한 해당 기간 및 시간
다. 운행정보확인장치의 불량.오작동 등 운행정보확인장치의 하자로 운행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확인이 불가능한 해당 기간 및 시간

③ 회사는 제②항에도 불구하고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동차를 운행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가. 회사의 책임 있는 사유로 운행정보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 확인이 불가능한 해당 기간 및 시간
나. 자동차의 고장, 사고수리 등의 사유로 인하여 피보험자동차를 운행하지 않았음을 보험계약자가 입증하는 경우

제4조(보험료의 선할인 및 정산)

① 회사는 보험계약자(또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동안에 일정거리 이하로 운행하기로 약정하는 경우 약정한 연간 운행거리를 기준으로 <별표>에 따라 산정한 정산금액을 보험계약 체결 시 할인해 드립니다.

② 회사는 제①항에도 불구하고 보험계약이 종료된 후 이 특별약관 '제3조(연간 운행거리의 산출)'에서 정한 방법으로 피보험자동차의 보험기간동안 연간운행거리를 재산출하여 <별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최종 적용할 정산금액을 재산정합니다. 이 때 재산정된 정산금액과 보험계약 체결 시 할인한 정산금액 간 차액이 발생한 경우 해당 사실과 차액을 보험계약자에게 통보한 후, 보험계약자가 고지한 은행 계좌 또는 신용카드에서 그 차액을 정산합니다.

③ 회사는 제①항 내지 제②항에도 불구하고 이 특별약관 '제5조(특별약관 계약의 무효 등) 제①항'에 해당하는 경우와 '제2조(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의무사항) 제④항에서 정한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에 따른 보험료 할인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④ 회사는 제③항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제2조(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의무사항) 제⑨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 사실을 보험계약자에게 통보한 후, 보험계약자가 고지한 은행 계좌 또는 신용카드에서 보험계약 체결 시 할인한 정산금액을 즉시 추징합니다.

⑤ 회사는 피보험자동차의 최종 누적운행거리 정보를 제공받은 날(보험기간 만료일 이전에 최종 누적운행거리 정보를 받은 경우에는 보험기간 만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보험료를 정산하여 드립니다. 다만, 1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 동안의 이자금액(보험개발원이 공시한 보험계약대출이자율)까지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등의 책임 있는 사유로 지급이 지연된 때에는 그 해당기간에 대한 이자는 더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제5조(특별약관의 무효 등)

①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자동으로 무효가 됩니다.
1. 보험계약자(또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 제2조(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의무사항) 제 ①항, 제②항, 제③항, 제⑤항 및 제⑥항에서 정한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경우
2. 보험계약자(또는 피보험자)가 '제2조(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의무사항)'에 의하여 전송한 정보가 다른 자동차의 정보이거나 '누적운행거리정보'가 임의 변경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② 이 특별약관에 가입한 후에도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 제1조(가입대상)의 제③항에 해당하는 사실이 밝혀진 경우에 보험회사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 특별약관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제6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별표> 보험료 정산금액

연간운행거리	할인 전 최종 적용보험료의 (긴급출동서비스특약 제외)
15,000KM초과	0%
15,000KM이하 ~ 12,000KM초과	보험증권에 기재된 할인율
12,000KM이하 ~ 10,000KM초과	보험증권에 기재된 할인율
10,000KM이하 ~ 8,000KM초과	보험증권에 기재된 할인율
8,000KM이하 ~ 5,000KM초과	보험증권에 기재된 할인율
5,000KM이하 ~ 4,000KM초과	보험증권에 기재된 할인율
4,000KM이하 ~ 2,000KM초과	보험증권에 기재된 할인율
2,000KM이하	보험증권에 기재된 할인율

Ⅴ-8 전자우편 특별약관

제1조(적용대상)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험계약 안내자료를 회사가 정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수령하기로 약정하는 경우에 이 특별약관을 적용합니다.

용어풀이

이 특별약관에서 보험계약 안내자료라 함은 회사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제공하는 보험증권, 보험약관, 만기예고, 만기안내 등의 서류를 말합니다.

용어풀이

이 특별약관에서 전자적 방법이란 다음의 방법을 말합니다.
1) 전자우편
2) 휴대폰(모바일) 메시지, 모바일 메신저 등을 통한 메시지 서비스

제2조(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의무사항)
①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계약을 맺기 위하여 청약을 할 때 보험계약 안내자료를 전자적 방법으로 수령받을 지정주소를 지정하여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용어풀이

이 특별약관에서 지정주소라 함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명의의 E-mail주소와 휴대폰번호를 말합니다.

② 제①항에서 지정주소가 변경되거나 사용 정지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③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제①항 또는 제②항에서 알린 지정주소를 사실과 다르게 알리거나 알리지 아니한 경우에는 회사가 알고 있는 마지막 지정주소로 보험계약 안내자료를 교부함으로 인해 불이익을 입을 수도 있습니다.

제3조(보험계약자료의 안내)
① 회사는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지정한 지정주소로 보험계약 안내자료를 보내드립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에도 불구하고 제 법령, 보통약관 또는 특별약관에서 통지 또는 안내방법을 따로 규정하는 경우에는 해당하는 법령, 보통약관, 특별

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② 회사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계약사항 변경 등의 이유로 보험계약 안내자료의 재교부를 요청할 때에는 지정주소로 보험계약 안내자료를 재교부 할 수 있습니다.

제4조(보험료의 할인 및 특별약관의 소멸)
① 회사는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적용보험료 중 일정액을 할인하여 드립니다.
② '배상책임(대인배상Ⅰ, 대인배상Ⅱ, 대물배상),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자기차량손해'의 보험료와 제 ①항에 따른 할인된 보험료의 합계 보험료가 2천원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합니다.
③ 보험기간 중에 보험계약 안내자료를 실물(우편발송 포함)로 요청할 경우에는 특별약관이 자동 소멸되고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할인된 보험료를 회사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④ 보통약관 제52조 제①항에 의해 보험계약의 전부를 해지하는 경우는 할인된 보험료를 회사에 납입하지 않습니다.

제5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Ⅴ-9 전자우편(보험증권 서면수령형) 특별약관

제1조(적용대상)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 이외의 보험계약 안내자료를 회사가 정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수령하기로 약정하는 경우에 이 특별약관을 적용합니다.

용어풀이

이 특별약관에서 보험계약 안내자료라 함은 회사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제공하는 보험증권, 보험약관, 만기예고, 만기안내 등의 서류를 말합니다.

용어풀이

이 특별약관에서 전자적 방법이란 다음의 방법을 말합니다.
1) 전자우편
2) 휴대폰(모바일) 메시지, 모바일 메신저 등을 통한 메시지 서비스

제2조(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의무사항)
①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계약을 맺기 위하여 청약을 할 때 보험증권 이외의 보험계약 안내자료를 전자적 방법으로 수령받을 지정주소를 지정하여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용어풀이

이 특별약관에서 지정주소라 함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명의의 E-mail주소와 휴대폰번호를 말합니다.

② 제①항에서 지정주소가 변경되거나 사용 정지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③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제①항 또는 제②항에서 알린 지정주소를 사실과 다르게 알리거나 알리지 아니한 경우에는 회사가 알고 있는 마지막 지정주소로 보험계약 안내자료를 교부함으로 인해 불이익을 입을 수도 있습니다.

제3조(보험계약자료의 안내)

① 회사는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지정한 지정주소로 보험증권 이외의 보험계약 안내자료를 보내드립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에도 불구하고 제 법령, 보통약관 또는 특별약관에서 통지 또는 안내방법을 따로 규정하는 경우에는 해당하는 법령, 보통약관, 특별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② 회사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계약사항 변경 등의 이유로 보험계약 안내자료의 재교부를 요청할 때에는 지정주소로 보험증권 이외의 보험계약 안내자료를 재교부 할 수 있으며, 보험증권의 재교부는 지정주소로의 전자적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제4조(보험료의 할인 및 특별약관의 소멸)

① 회사는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적용보험료 중 일정액을 할인하여 드립니다.

② '배상책임(대인배상Ⅰ, 대인배상Ⅱ, 대물배상),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자기차량손해'의 보험료와 제 ①항에 따른 할인된 보험료의 합계 보험료가 2천원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합니다.

③ 보험기간 중에 보험증권 이외의 보험계약 안내자료를 실물(우편발송 포함)로 요청할 경우에는 특별약관이 자동 소멸되고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할인된 보험료를 회사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④ 보통약관 제52조 제①항에 의해 보험계약의 전부를 해지하는 경우는 할인된 보험료를 회사에 납입하지 않습니다.

제5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Ⅴ-10 실버교통안전교육 이수 할인 특별약관

제1조(가입대상)

이 특별약관은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① 기명피보험자가 만65세 이상인 경우

② 기명피보험자가 도로교통공단에서 실시하는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고, 인지기능검사 결과의 총점수가 42점 이상인 경우 또는 인지능력 자가진단 결과지의 운전능력검사결과표 종합 판정이 1등급 내지 3등급인 경우 (단, 온라인으로 실시되는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은 결과지의 인지능력 자가진단 결과가 「수료」등급인 경우에도 가입 가능합니다)

③ 위 제②항의 인지기능검사일로부터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기간의 첫날까지의 경과기간이 2년을 넘지 않는 경우 또는 인지능력 자가 진단일로부터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기간의 첫날까지의 경과기간이 3년을 넘지 않는 경우

④ 기명피보험자한정운전특별약관 또는 부부운전자 한정운전특별약관을 가입한 경우

제2조(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의무사항)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제1조(가입대상)의 제②항 및 제③항'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교육필증 등)를 제출하고, 보험회사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제3조(보험기간)

①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기간과 같습니다. 다만, 교육필증의 인지기능검사 검사일 또는 인지능력 자가 진단일이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기간의 첫날 이후인 경우에는 인지기능검사 검사일 또는 인지능력 자가 진단일을 이 특별약관의 보험시작일로 합니다.

② 위 제①항에도 불구하고, '제1조(가입대상)'의 모든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 기간은 보험기간에서 제외합니다.

제4조(보험료의 할인 및 정산)
①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에 한하여 보험증권에 기재된 할인율을 적용합니다.
② 이 특별약관 '제3조(보험기간) 제②항'에 의하여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이 변경되는 경우에 회사는 위 제①항에 의하여 보험료를 정산합니다.

제5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Ⅴ-11 대중교통 이용 할인 특별약관

제1조(가입대상)
이 특별약관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1. 기명피보험자 한정운전 특별약관 또는 부부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을 가입한 경우
2. 기명피보험자의 3개월간 대중교통 이용금액이 7만원 이상인 경우 다만, 부부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을 가입한 경우에는 3개월간 기명피보험자와 배우자의 대중교통 이용금액을 합한 액수가 14만원 이상인 경우로 합니다.
3.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이 90일 이상인 경우

용어풀이

1. 이 특별약관에서 대중교통이란 다음 각 호의 교통 승용구를 말합니다.
   가. 여객수송용 전철, 지하철
   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의 시내버스, 농어촌버스, 마을버스
2. 이 특별약관에서 대중교통 이용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기명피보험자 한정운전 특별약관에 가입한 경우 회사가 정한 확인 시점으로부터 이전 3개월 동안 기명피보험자 명의의 교통카드 1장으로 결제하거나 승인된 대중교통 이용금액을 말하며, 부부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을 가입한 경우 기명피보험자 명의의 교통카드 1장과 배우자 명의의 교통카드 1장의 대중교통 이용금액을 합한 액수를 말합니다. 다만, 기명피보험자 또는 배우자 명의의 교통카드가 다수인 경우에는 각자 명의의 가장 많은 이용금액의 교통카드를 기준으로 합니다.
   나. 위 '가'에서 대중교통 이용금액은 이용기간의 종기 또는 카드 승인일자의 종기가 청약일 이전 60일 이내에 포함된 경우에 한합니다.
   다. 위 '가'의 교통카드가 정부 및 지자체의 무임 혜택을 제공하는 전용카드로 대중교통 이용금액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대중교통 이용실적을 바탕으로 회사가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합니다.

제2조(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의무사항)
① 보험계약자(또는 피보험자)는 청약을 할 때 대중교통이용금액을 확인하기 위해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가 요구하는 사항(개인정보처리동의 등)에 협조하거나, 대중교통이용실적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② 기명피보험자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5조(신용카드의 양도 등의 금지)에 따라 기명피보험자의 신용카드를 양도 · 양수하거나 질권을 설정할 수 없습니다.

제3조(보험료의 할인 및 정산)

① 회사는 회사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험료를 할인하여 드립니다.
②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제4조(특별약관의 해지 및 취소) 제②항'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사실을 보험계약자에게 통보한 후, 보험계약자가 고지한 은행 계좌 또는 신용카드에서 할인한 보험료를 지체없이 정산합니다.

제4조(특별약관의 해지 및 취소)
① 보험증권에 기재되어 있는 보험기간 동안에 계약변경으로 인하여 이 특별약관 '제1조(가입대상 제②항)'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변경일 24시부터 이 특별약관은 해지됩니다.
② 회사는 기명피보험자가 '제2조(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의무사항) 제②항'를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 특별약관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제5조(준용 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Ⅴ-12 전기차 사고시 배터리 신가보상 특별약관

제1조(가입대상)
이 특별약관은 피보험자동차가 최초 차량등록일로부터 10년 이내의 전기자동차로서 보통약관 '자기차량손해'가 체결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용어풀이
이 특별약관에서 전기자동차라 함은 전기에너지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로서「환경친화적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 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를 말합니다.

제2조(보상 내용)
①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피보험자가 보통약관 제21조(보상하는 손해) 또는 자기차량손해 포괄 특별약관 제2조(보상하는 손해)에서 규정한 사고로 피보험자동차의 구동배터리가 파손되어 부득이 구동배터리 전부를 새배터리로 교체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지급하여 드립니다. 다만, 새 배터리를 포함한 수리비용이 보험가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보험가액을 한도로 보상합니다.

보상하는 손해	=	새 배터리의 가액	-	감가상각 적용 후 새 배터리의 가액

용어풀이
이 특별약관에서 '구동배터리'라 함은 전기자동차에 장착되어 구동모터에 전기를 공급해주는 배터리를 말합니다.

제3조(대위)
회사는 보통약관 제34조(보험회사의 대위)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동차가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 제3항 및 제5항의 적용대상에 해당할 경우, 피보험자동차의 전부손해 사고로 인한 잔존물 취득시 구동 배터리는 취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4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Ⅴ-13 전기차 충전중 자기신체사고 보상 특별약관

제1조(가입대상)
이 특별약관은 피보험자동차가 전기자동차로서 보통약관의 '자기신체사고' 또는 자기신체사고 대체특약(자동차상해 또는 수요일·주말 보상확대 특약)이 체결되는 경우에 한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용어풀이

이 특별약관에서 '전기자동차'라 함은 전기에너지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로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를 말합니다.

제2조(보상 내용)
①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피보험자가 정격의 전기자동차 충전설비를 이용해 피보험자동차를 충전하던 중 발생한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고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죽거나 다친 때[118] 그로 인한 손해를 피보험자가 가입한 보통약관 '자기신체사고' 또는 자기신체사고 대체특약(자동차상해 또는 수요일·주말 보상 확대 특약)에 따라 보상해 드립니다.
1. 피보험자동차의 화재 또는 폭발사고로 피보험자가 죽거나 다친 때
2. 피보험자가 감전 사고로 죽거나 다친 때

② 회사는 위 ①의 사고로 피보험자가 가입한 보통약관 '자기신체사고' 또는 자기신체사고 대체특약(자동차상해 또는 수요일·주말 보상 확대 특약)에서 보상이 가능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에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용어풀이

이 특별약관에서 전기자동차 충전설비라 함은 해당 전기자동차 정격의 휴대용 충전기 또는 가정용 충전기기 및 장치, 거주지 혹은 공공장소 등에 설치된 전기자동차 전용 완속충전기 및 급속충전기를 말합니다.

용어풀이

이 특별약관에서 피보험자동차를 충전하던 중 이라 함은 피보험자동차의 충전을 위해 충전설비를 조작한 시점부터 충전 완료 후 충전설비 조작을 종료한 시점까지를 말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피보험자동차와 충전설비의 접촉 여부는 무관합니다.

제3조(피보험자)
이 특별약관에서 피보험자라 함은 보통약관 '제13조(피보험자)'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

제4조(대위 규정)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이 특약에 의해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 보험금의 한도 내에서 제3자에 대한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합니다. 다만, 회사가 보상한 금액이 피보험자의 손해의 일부를 보상한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권리를 취득

118) 피보험자의 신체에 이상이 있는 점을 뒷받침 할 수 있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합니다.

제5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Ⅴ-14 하이브리드차 사고시 배터리 신가보상 특별약관

제1조(가입대상)
이 특별약관은 피보험자동차가 최초 차량등록일로부터 10년 이내의 하이브리드 자동차로서 보통약관 '자기차량손해'가 체결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용어풀이

이 특별약관에서 하이브리드 자동차라 함은 휘발유, 경유, 액화석유가스, 천연가스 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연료와 전기에너지를 조합하여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로서 「환경친화적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에 따른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말합니다.

제2조(보상 내용)
①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피보험자가 보통약관 제21조(보상하는 손해) 또는 자기차량손해 포괄 특별약관 제2조(보상하는 손해)에서 규정한 사고로 피보험자동차의 구동배터리가 파손되어 부득이 구동배터리 전부를 새 배터리로 교체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지급하여 드립니다. 다만, 새 배터리를 포함한 수리비용이 보험가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보험가액을 한도로 보상합니다.

보상하는 손해	=	새 배터리의 가액	-	감가상각 적용 후 새 배터리의 가액

용어풀이

이 특별약관에서 '구동배터리'라 함은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장착되어 구동모터에 전기를 공급해주는 배터리를 말합니다.

제3조(대위)
회사는 보통약관 제34조(보험회사의 대위)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동차가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 제3항 및 제5항의 적용대상에 해당할 경우, 피보험자동차의 전부손해 사고로 인한 잔존물 취득시 구동 배터리는 취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4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Ⅴ-15 차량5부제 특별약관

제1조(가입대상)
① 이 특별약관은 다음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보험자동차의 교체(대체) 등의 사유로 다음의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이 특별약관은 피보험자동차의 교체(대체)시점을 기준으로 해지되며 해지된 시점까지를 특별약관 보험기간으로 보아 보험료를 정산하여 드립니다.
1.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함)가 정한 '차량5부제 특별약관 가입신청서(이하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2. 보험계약 체결시점(차량대체시 대체시점)의 피보험자동차의 차량가액(부속품 가액 등 포함)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
3. 피보험자동차가 전기자동차 및 수소전기자동차(*1)가 아닌 경우

② 회사는 의무보험의 보험기간 중에 특별약관상 의무위반 등으로 이 특별약관을 해지한 사실이 있는 경우 이 특별약관의 가입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용어풀이

(*1) '전기자동차 및 수소전기자동차'
: 이 특별약관에서 '전기자동차 및 수소전기자동차'라 함은 「환경친화적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 및 제6호에 따른 '수소전기자동차'를 말합니다.

제2조(특별약관 보험기간)

①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은 보험계약자가 특별약관에 가입한 시점부터 '차량 5부제' 상황이 종료(국가자원안보특별법에 근거한 원유 자원안보 위기경보 단계 등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지정하는 종료일)되는 시점까지로 합니다. 이 경우 특별약관은 자동으로 해지되며 해지된 시점까지를 특별약관 보험기간으로 보아 보험료를 정산하여 드립니다.

② 위 제①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2026년 5월 중 회사가 안내한 신청서를 제출하고 2026년 6월 15일까지 이 특별약관을 가입한 경우에는 2026년 4월 1일부터 이 특별약관에 가입한 것으로 인정하여 드립니다.(2026년 6월 15일까지 회사의 부득이한 사유로 이 특별약관 가입이 어려운 경우, 2026년 6월 15일 이후에 가입하더라도 2026년 4월 1일부터 이 특별약관에 가입한 것으로 인정하여 드립니다.) 단, 2026년 4월 1일부터 신청서 제출일 사이에 비운행 요일(*1)에 운행(*2)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특별약관 가입일자부터 할인 기간을 적용하며, 신청서 제출일부터 특약 가입일 사이에 비운행 요일에 운행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특별약관 가입이 불가합니다.

용어풀이

(*1) 비운행 요일
: 이 특별약관에서 '비운행 요일'이란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별표 10] 공영주차장 승용차 5부제 시행에 관한 기준의 1-9. 출입제한 방법에 따른 차량번호판 끝자리 숫자에 따른 출입제한 차량 요일을 말합니다.

차량번호판 끝자리	1, 6	2, 7	3, 8	4, 9	5, 0	토·일요일 및 공휴일* 적용 제외
비운행요일	월	화	수	목	금	

*법정공휴일(국가에서 정한 임시/대체공휴일 및 노동절을 포함합니다)

(*2) 운행
: 이 특별약관에서 '운행'이라 함은 피보험자동차가 당해 비운행 요일에 주행한 총 거리의 합이 0km를 초과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제3조(특별약관 계약 전 알릴 의무)

이 특별약관을 가입하고자 하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이하 '보험계약자 등')는 회사가 요구하는 다음의 사항에 대해 회사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제출 또는 이행하여야 합니다.

1. 신청서
2. 보험계약자 명의의 은행 계좌번호

3. 그 밖에 회사가 요구하는 사항

제4조(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의무사항)

① 보험계약자 등은 비운행 요일에는 피보험자동차를 운행하지 않아야 합니다. 비운행요일에 피보험자동차를 운행하던 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 지체없이 회사에 사고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② 보험계약자 등은 비운행 요일 운행여부 확인을 위한 절차를 이행해야 하며, 회사가 보험계약자 등에게 보험만료일 이전에 절차를 안내하면 비운행 요일 운행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보험만료일 30일 이내에 회사에 제공해야 합니다.

제5조(특별약관의 무효)

보험계약자 등은 이 특별약관 제3조(특별약관 계약 전 알릴 의무)에 따른 제출 또는 이행을 하지 않았거나, 해당 정보를 위변조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무효로 됩니다.

제6조(특별약관의 해지)

① 회사는 보험계약자 등이 이 특별약관 제4조(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의무사항)에 따른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특별약관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단, 제4조 제①항에 따른 비운행 의무 최초 1일 위반은 제외)

② 회사는 보험계약자 등이 비운행요일에 피보험자동차를 운행하던 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 특별약관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7조(보험료 정산 등)

① 회사는 이 특별약관 <별표>에서 정한 보험료 정산 금액을 이 특별약관 제2조(특별약관 보험기간)의 보험기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 보험계약자 명의의 은행계좌 등으로 정산하여 드립니다. 이 경우 회사는 제4조(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의무사항) 제②항에 따라 보험계약자 등에게 안내한 비운행 요일 운행여부 확인 정보를 제공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보험계약자에게 보험료를 환급하여 드립니다.

② 제①항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보험만료일 이전에 제4조 제②항에 따른 절차를 안내를 하지 않았거나 보험만료일 이전에 회사가 정하는 방식으로 비운행 요일 운행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보험만료일부터 10일 이내에 보험계약자에게 보험료 정산금액을 지급합니다.

③ 정산기한이 1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 동안의 이자금액(보험개발원이 공시한 보험계약대출이율)까지 더하여 지급합니다. 그러나 피보험자, 손해배상청구권자 등의 책임 있는 사유로 지급이 지연된 때에는 그 해당기간에 대한 이자는 더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별표> 보험료 정산 금액

보험료 정산금액
적용보험료* x 보험증권에 기재된 정산율(할인율)

주) 적용보험료는 긴급출동서비스 특약을 제외합니다.

④ 제③항에도 불구하고 정산시스템 미비 등 회사의 부득이한 사유로 정산이 지연되는 경우로서, 2026년 6월 30일 이전에 정산기한이 도래하는 계약은 시스템 개발 완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보험료를 정산하여 드립니다. 다만, 2026년 6월 30일까지 시스템 개발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2026년 7월 1일에 즉시 정산해 드립니다.

⑤ 회사는 제6조(특별약관의 해지)에 따라 특별약관 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료 정산금액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최초 비운행요일 운행 시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으

면 그 최초 운행 전날까지의 기간에 한하여 제7조에 따라 보험료를 정산하여 드립니다.

⑥ 단, 이 특별약관 제2조(특별약관 보험기간) 제②항에 따라 특별약관 가입일을 2026년 4월 1일로 인정하는 경우 해당일부터 실제 특별약관 가입 시점까지는 비운행 요일에 피보험자동차를 운행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⑦ 보험계약자는 제①항의 은행 계좌번호 등이 변경되거나 거래 정지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제8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Ⅵ. 기 타

Ⅵ-1 유상운송 위험담보 특별약관

제1조(보상내용)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동차(이하 '피보험자동차'라 합니다)를 유상으로 운송용에 제공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상합니다. 그러나 대인배상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제2조(보상하는 손해)
보통약관 '제8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제①항의 제6호', '제14조(보상하지 않는 손해)의 제⑦항', '제19조(보상하지 않는 손해)의 제⑦항' 및 '제23조(보상하지 않는 손해)'의 제⑤항', 법률비용지원 벌금확장 기본형/고급형/최고급형 특별약관 '제3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제①항의 제8호', 법률비용지원 벌금확장 최고급형 특별약관(보장확대형) '제3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제①항 제8호'에도 불구하고 요금이나 대가를 목적으로 피보험자동차를 사용 또는 대여한 때에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도 보상합니다.

제3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제2조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6인승 이하의 피보험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해당하는 운송을 하는 중 발생한 사고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다만, 피보험자동차가 구급용 자동차(앰뷸런스) 또는 장애인 택시로서 유상으로 운송용에 제공하는 경우 발생한 사고는 보상합니다.

제4조(준용 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Ⅵ-2 가족교통상해 특별약관

제1조(가입 대상)
이 특별약관은 보통약관의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가 체결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제2조(보상 내용)
① 보상하는 손해
1.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피보험자가 다른 사람이 운행하는 다른 사람 자동차에 의하여 상해를 입었을 때에는 이 특별약관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2. 회사는 위 '1'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에 탑승중 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용어풀이

1. 이 특별약관에서 다른 사람이라 함은 피보험자를 제외한 사람을 말합니다.
2. 이 특별약관에서 다른 사람 자동차라 함은 피보험자가 소유하거나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를 말합니다.

② 보상한도 및 지급보험금
1. 회사가 이 특별약관에 따라 지급하는 보험금은 1인당 2억원을 한도로 합니다.

2. 회사가 지급하는 보험금은 <별표1> 대인배상,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지급기준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별표3>과실상계 등' 미적용 기준)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공제한 액수로 합니다.
   가. 대인배상Ⅰ(공제계약 및 정부보장사업을 포함합니다)의 보험금지급 기준에 의해 보상될 수 있는 금액
   나. 배상의무자가 피보험자에게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자동차보험(공제계약을 포함합니다)의 대인배상Ⅱ가 있을 때에는 이러한 대인배상Ⅱ의 보험금 지급기준에 의하여 보상될 수 있는 금액
   다. 보통약관의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에 의하여 지급될 수 있는 금액
   라. 피보험자가 배상의무자로부터 이미 지급받은 금액
   마. 배상의무자가 아닌 제3자가 부담하여야 할 금액으로서 피보험자가 이미 지급받은 금액
   바. 피보험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해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
3. 회사가 사망보험금을 지급할 경우에 이미 후유장애로 지급한 보험금이 있을 때에는 사망보험금에서 이를 공제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제3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보험계약자의 고의로 인한 손해
2. 피보험자의 고의로 그 본인이 상해를 입은 때. 이 경우 해당 피보험자에 대한 보험금만 지급하지 않습니다.
3. 상해가 보험금을 받을 자의 고의로 생긴 때는 그 사람이 받을 수 있는 금액
4.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및 이와 유사한 사태로 인한 손해
5. 지진, 분화, 태풍, 홍수, 해일 등 천재지변으로 인한 손해
6. 핵연료물질의 직접 또는 간접적인 영향으로 인한 손해
7. 피보험자가 하역작업을 하는 동안에 입은 손해
8. 자동차의 수리, 점검, 정비나 청소작업을 하는 동안에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
9. 건설기계 및 농업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

② 회사는 가해 자동차의 운전자가 기명피보험자의 가족인 경우에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용어풀이

이 약관에서 기명피보험자의 가족이라 함은 ① 기명피보험자의 부모와 양부모, 계부모(단, 부모, 양부모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 제외) ② 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의 부모 또는 양부모, 계부모(단, 부모, 양부모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 제외) ③ 법률상의 배우자 또는 사실혼관계에 있는 배우자 ④ 법률상의 혼인관계에서 출생한 자녀, 사실혼 관계에서 출생한 자녀, 양자 또는 양녀, 계자녀(단,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가 타인과의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 제외) ⑤ 기명피보험자의 며느리 또는 사위(계자녀의 배우자 포함. 단, 자녀, 계자녀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 제외)를 말합니다.

제4조(피보험자의 범위)

이 특별약관에서 피보험자라 함은 다음에 열거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1. 기명피보험자
2. 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
3. 기명피보험자 또는 그 배우자의 동거중인 부모
4. 기명피보험자 또는 그 배우자의 동거중인 자녀

용어풀이

이 특별약관에서 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라 함은 법률상의 배우자 또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를 말합니다.

제5조(준용 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Ⅵ-3 지정대리청구 특별약관

제1조(가입대상)
이 특별약관은 보통약관「자기신체사고」또는 자기신체사고 대체특약(자동차상해 또는 수요일.주말 보상확대 특약),「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자기차량손해」중 어느 하나를 가입한 경우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제2조(지정대리청구인의 지정)
① 보험계약자는 보통약관의 피보험자가 동의하는 경우,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해당 피보험자의 지정대리청구인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② 제①항의 피보험자에게「자기신체사고」또는 자기신체사고 대체특약(자동차상해 또는 수요일.주말 보상확대 특약),「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자기차량손해」에서 정하는 보험금(사망보험금을 제외하며, 보장범위 관련 특별약관의 보험금은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하였으나, 피보험자가 보험금을 청구할 수 없는 사정(의식불명상태의 회복을 기대할 수 없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는 경우 등을 말합니다)이 있으면서 대리인도 없는 때에는 제③항 내지 제④항에서 정하는 각 피보험자의 지정대리청구인이 피보험자를 대신하여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③ 피보험자의 지정대리청구인 순위는 민법 제1000조, 제1003조에서 정한 상속순위에 따릅니다.
④ 제①항에도 불구하고 위 ③항에서 정한 동일한 순위의 지정대리청구인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동일한 순위의 자 전부로부터 동의를 얻은 1인에 한하여 지정대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제3조(지정대리청구인의 지정 취소)
보험계약자는 이 특별약관 제2조(지정대리청구인의 지정) 제①항에 의하여 지정대리청구인을 지정한 피보험자의 동의를 얻어, 해당 피보험자의 지정대리청구인 지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제4조(지정대리청구인의 보험금 청구 등)
① 지정대리청구인은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제출서류>
1. 기명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청구할 수 없는 사정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진단서 등)
2. 지정대리청구인과 기명피보험자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3. 보험금지급청구서(회사양식)
4. 지정대리청구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부착된 정부기관 발행 신분증
5. 동일순서의 지정대리청구권자가 있는 경우, 제2조(지정대리청구인의 지정) ③항에서 정한 동일순서의 다른 지정대리청구권자들로부터 지정(동의)을 받았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6. 기타 보험회사가 지정대리청구인의 보험금 청구에 필요하다고 회사가 요청하는 서류

② 제①항에 의해서 회사가 지정대리청구인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 이후 기명피보험자 등으로부터 보험금 청구를 받더라도 회사는 해당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제5조(지정대리청구권의 소멸)
피보험자가 사망하거나 제3조(지정대리청구인의 지정 취소)에 의하여 지정대리청구인 지정을 취소한 경우 해당 지정대리청구권은 소멸합니다.

제6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Ⅵ-4 블랙박스장착 특별약관

제1조(가입대상)
① 이 특별약관은 피보험자동차에 블랙박스를 장착한 경우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용어풀이

이 특별약관에서 블랙박스란 피보험자동차의 운행 영상을 저장 또는 제공할 수 있는 장치로서 피보험자동차에 상시 고정 장착된 전용기기를 말합니다. 다만, 휴대전화 또는 휴대용PC 등의 기기에 관련 어플리케이션(응용프로그램)을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②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이 특별약관의 보험시기부터 과거 3년 이내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제2조(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의무사항)'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하여 회사가 해당 특별약관을 무효 또는 해지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의 가입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제2조(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의무사항)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다음의 사항을 회사가 정하는 방법으로 지체 없이 알리거나 이행해야 합니다.
[계약체결 전]
① 블랙박스의 제조사, 모델명, 제품번호(또는 시리얼번호), 부속품가액 중 회사가 요청하는 사항
② 블랙박스가 피보험자동차에 장착되어 있는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
③ 피보험자동차의 운행 정보가 블랙박스에 정상적으로 저장될 수 있도록 피보험자동차에 블랙박스를 상시 고정 장착 및 작동
④ 위 제①항 내지 제②항에도 불구하고 블랙박스가 차량 출고시 자동차제조사의 표준장치 또는 옵션으로 장착되어 회사가 장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사진 제출 등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계약체결 후]

①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동차의 블랙박스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경우 이와 관련한 내용
②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동차의 블랙박스를 교체하는 경우에는 '[계약체결 전] 알릴의무'에서 정한 사항
③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고 회사가 피보험자동차의 사고와 관련한 블랙박스 정보를 요청하는 경우 해당 블랙박스의 영상 정보

제3조(특별약관 계약의 무효)
① '제1조(가입대상) 제②항'에도 불구하고 이 특별약관이 체결된 경우에 이 특별약관은 무효가 됩니다. 이 경우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을 가입한 때 이 특별약관에 의해 할인받은 보험료를 회사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②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제2조(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의무사항) [계약체결 전]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 이 특별약관은 무효가 됩니다. 이 경우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이 특별약관에 의해 할인받은 보험료를 회사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③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 회사는 제①항 및 제②항에 따라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회사에 반환할 보험료를 피보험자에게 지급할 보험금에서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습니다.

제4조(특별약관의 해지)
①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 '제2조(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의무사항) [계약체결 후]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회사는 이 특별약관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제2조(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의무사항) [계약체결 후]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날로부터 이 특별약관에 의해 할인받은 보험료를 회사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다만,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블랙박스 또는 영상기록이 파손 또는 훼손된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②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 '제2조(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의무사항) [계약체결 후] 의무사항 제①항'에 따라 회사에 알린 경우 회사는 이 특별약관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블랙박스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은 날로부터 이 특별약관에 의해 할인 받은 보험료를 회사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③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 회사는 제①항 및 제②항에 따라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회사에 반환할 보험료를 피보험자에게 지급할 보험금에서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습니다.

제5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Ⅵ-5 자녀할인 특별약관

제1조(가입 대상)
이 특별약관은 기명피보험자에게 만 13세이하의 자녀나 출산 예정인 자녀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단, 자녀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을 가입한 경우에는 가입할 수 없습니다.

용어풀이

이 특별약관에서 자녀 연령은 자녀의 주민등록상의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시작일 현재의 만나이를 말합니다.

제2조(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의무사항)
①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가 '제1조(가입대상)의 제① 항'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회사가 정한 바에 따르는 서류를 제출하는 등 이 특별약관의 가입을 위해 회사가 요청하는 사항에 협조해야 합니다.
② 위 ①항에 따르지 않는 경우 이 특별약관에 대한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제3조(보험기간)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기간과 같습니다. 다만, 자녀를 출산예정인 경우에는 '임신확인서'(임신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포함)의 임신확인일을 이 특별약관의 보험시작일로 합니다.

제4조(보험료의 할인 및 정산)
①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에 한하여 회사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험료를 할인하여 드립니다.
② 이 특별약관 '제3조(보험기간) 제②항'에 의하여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이 변경되는 경우에 회사는 위 제①항에 의하여 보험료를 정산합니다.

용어풀이

이 약관에서 자녀라함은 ① 법률상 기명피보험자의 자녀 ② 사실혼 관계에서 출생한 자녀 ③ 양자 또는 양녀 ④ 법률상의 혼인 관계로 인한 계자녀 ⑤ 기명피보험자 또는 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 명의의 임신확인서를 통해 확인된 태아를 말합니다.

제5조(특별약관 계약의 취소 및 무효
① 이 특별약관 가입 시 확인한 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회사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 특별약관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② 위 ①항에 의해 이 특별약관이 취소되는 경우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이 특별약관으로 할인받은 보험료를 즉시 회사에 반환해야 합니다.
③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 회사는 제 ②항에 따라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회사에 반환할 보험료를 피보험자에게 지급할 보험금에서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습니다.

제6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Ⅵ-6 보험대차 운전 중 사고보상 특별약관

제1조(적용대상)
이 특별약관은 보통약관 '대인배상Ⅱ', '대물배상(또는 대물배상 가입금액 확장 특별약관)', '자기신체사고(또는 자동차상해 특별약관), '자기차량손해(또는 자기차량손해 포괄 특별약관),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가입 시 해당 담보에 한하여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제2조(보상하는 손해)
① 보험회사(이하'회사'라 함)는 피보험자가 보험대차를 운전 중(주차 또는 정차 중을 제외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발생한 사고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보험대차를 가입 담보의 피보험자동차로 간주하여 해당 담보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② 회사가 보상할 위 제①항의 손해 중 「자기차량손해」 또는 「자기차량손해 포괄 특별약관

」은 피보험자동차의 보험가액과 보험대차의 사고가 발생한 곳과 때의 보험대차 가액 중 낮은 가액을 한도로 보상합니다.

③ 「자기차량손해」 또는 「자기차량손해 포괄 특별약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 제①항의 사고로 인한 보험대차의 손해에 대하여 보험대차를 사용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에 발생한 해당 대여사업자의 타당한 영업손해에 대해서는 보통약관 <별표 2> 대물배상 지급기준의 '4. 휴차료' 항목의 지급기준에 따라 보상합니다.

④ 위 제③항의 영업손해의 경우 해당 보험대차 대여요금의 50%를 한도로 보상합니다.

⑤ 회사가 보상할 위 제①항의 손해에 대하여 보험대차에 적용되는 보험계약(공제계약 포함)에 따라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초과하는 때에 한하여 그 초과액만을 보상합니다. 단,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자기차량손해 또는 자기차량손해 포괄 특별약관의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제③항의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⑥ 위 제①항의 보험대차의 사고는 대여사업자로부터 보험대차를 인수한 때부터 보험대차 인정기간 마지막날의 24시를 한도로 보험대차를 반납할 때까지의 사고만을 보상합니다. 다만, 보험대차 인정기간 만료일이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기간 만료일 이후인 경우에는 보험기간 만료일까지의 사고만으로 합니다.

용어풀이

이 특별약관에서 '보험대차'라 함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그 피보험자동차가 파손 또는 오손되어 가동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에 대물배상 지급기준에 따라 다른 자동차를 대차 받은 경우 그 자동차를 말합니다.

제3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보통약관 제8조, 제14조, 제19조, 제21조 및 대물배상 가입금액 확장 특별약관 제3조, 자동차상해 특별약관 제3조, 자기차량손해 포괄 특별약관 제4조에서 정하는 보상하지 않는 손해 이외에 다음과 같은 손해에 대하여도 보상하지 않습니다.

① 보험증권에 기재된 운전가능 범위 또는 운전가능 연령 범위 이외의 자가 보험대차를 운전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② 피보험자가 보험대차의 사용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 자의 승낙을 받지 않고 보험대차를 운전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제4조(피보험자)

이 특별약관에서 피보험자란 보험증권에 기재된 운전할 수 있는 범위의 사람을 말합니다.

제5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Ⅵ-7 이동통신단말장치 안전운전 할인 특별약관

제1조(가입대상)

① 이 특별약관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1. 기명피보험자 본인 명의의 이동통신단말장치(이하 '단말기'라 합니다)에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가 인정하는 안전운전프로그램을 설치하여 사용하는 경우
2.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이 90일 이상인 경우

② 회사는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의 가입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1. 기명피보험자 본인의 단말기가 아니거나 기명피보험자 본인의 안전운전점수(이하 '점수'라 합니다)가 아닌 경우

2. 보험계약자 또는 기명피보험자가 특별약관의 무효, 해지, 취소, 철회 등으로 할인받은 보험료를 회사에 돌려주지 않은 사실이 있는 경우
3. 회사와 안전운전프로그램 회사의 제휴계약이 종료되어 회사가 인정하는 점수가 없는 경우
4. 커넥티드카안전운전할인특별약관을 가입한 경우
5. 자녀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을 가입할 경우

용어풀이

이 특별약관에서 '안전운전프로그램'이란 단말기 등에서 구현되는 안전운전 관련 프로그램으로서 특별약관 가입시점에 회사가 인정하는 네비게이션 프로그램을 말합니다.

용어풀이

이 특별약관에서 '안전운전점수'란 회사가 확인한 날을 기준으로 직전 6개월 이내에 500km 이상 주행하여 산출된 점수에 한합니다.

제2조(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의무사항)
보험계약자(또는 피보험자)는 청약을 할 때 안전운전점수의 확인을 위해 회사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본인인증을 해야 하며, 그 외 특별약관의 가입 및 적용을 위해 요청하는 사항에 협조해야 합니다.

제3조(보험료의 할인 및 정산)
① 청약을 할 때 기명피보험자의 점수(확인일 이전 6개월 이내의 점수에 한함)가 회사가 정한 기준 이상인 경우 회사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험료를 할인해 드립니다.
② 보험계약자(또는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할인을 받지 못하는 등 점수측정 상의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1. 타인이 기명피보험자의 단말기를 사용하여 안전운전프로그램을 작동한 상태에서 운전하게 한 경우
2. 피보험자동차가 아닌 다른 차량 또는 다른 교통수단에서 안전운전프로그램을 작동하여 점수 측정에 영향을 끼친 경우
③ 회사는 '제4조(특별약관의 무효 및 해지)'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사실을 보험계약자에게 통보한 후, 보험계약자가 고지한 은행 계좌 또는 신용카드에서 할인한 보험료를 지체 없이 정산합니다.

제4조(특별약관의 무효 및 해지)
① 회사가 확인한 점수가 기명피보험자 본인의 점수가 아닌 경우 이 특별약관은 무효가 됩니다. 이 경우 보험계약자(또는 피보험자)는 이 특별약관에 의해 할인받은 보험료를 회사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② 보험증권에 기재되어 있는 보험기간 동안에 계약변경으로 인하여 이 특별약관 '제1조(가입대상) 제②항 제4호 및 제5호'에 해당되는 경우 변경일 24시부터 이 특별약관은 해지됩니다. 이 경우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해지 사유 발생일로부터 이 특별약관에 의해 할인받은 보험료를 회사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③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 회사는 제①항 및 제②항에 따라 보험계약자(또는 피보험자)가 회사에 반환할 보험료를 피보험자에게 지급할 보험금에서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습니다.

제5조(준용 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Ⅵ-8 커넥티드카 할인 특별약관

제1조(가입대상)

① 이 특별약관은 피보험자동차의 사고 및 긴급 상황 발생정보를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함) 또는 자동차제조사에 통보하는 장치(이하 '사고통보장치'라 함)가 피보험자동차에 장착되고 자동차제조사와의 무선통신계약이 유효한 상태에서 <용어정의> '2'에서 규정하는 기능이 상시 작동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가입일부터 과거 3년 이내에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의 가입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1. 이 특별약관에 의해 할인받은 보험료의 추징사유가 발생하였으나, 해당 보험료를 회사에 반환하지 않은 사실이 있는 경우
2. 회사가 사고통보장치의 장착을 확인하기 위하여 이 특별약관 '제2조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의무사항'의 규정에 따라 요청한 사항을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 또는 조작하여 제출한 사실이 있는 경우

③ 제①항을 회사와 자동차제조사 간의 제휴사업계약에 따라 확인하는 경우, 해당 제휴사업계약이 종료되어 제①항을 확인할 수 없으면 이 특별약관은 가입할 수 없습니다.

용어풀이

이 특별약관에서 "사고통보장치"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장치를 말합니다.

1. 차량 출고 시 자동차제조사의 표준장치 또는 옵션으로 피보험자동차에 장착된 장치(휴대전화 등에 애플리케이션(응용프로그램)을 탑재하여 사용되는 장치는 해당되지 않음)
2. 피보험자동차의 시동을 켠 상태에서는 무선통신을 기반으로 아래의 기능이 상시 작동되어 해당 정보가 제휴 자동차제조사로 송신·수집되며, 피보험자가 자동차제조사와의 무선통신계약을 해지하지 않는 한 임의로 작동을 중지할 수 없는 장치
   가. 에어백이 전개되는 사고 발생 시 자동송신 기능
   나. 차량운행정보(운행시간, 운행속도 등) 저장 등
3. 피보험자동차의 에어백이 전개되는 사고발생 정보가 자동차제조사에 자동으로 통보됨으로서 신속한 응급조치가 가능할 것

제2조(특별약관 계약 전 알릴의무)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개인정보처리 동의를 하거나 자동차제조사가 발행한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등 '제1조(가입대상)' 확인을 위해 회사가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 협조해야 합니다.

제3조(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의무사항)

①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사고통보장치가 상시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유지 및 관리하여야 합니다.

②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사고통보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거나 피보험자동차에서 사고통보장치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해당 사실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이 경우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사고통보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될 때까지의 기간동안 이 특별약관에 따라 할인받은 보험료를 회사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③ 피보험자동차의 소유·사용·관리 중 사고로 인해 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할 경우 회사는 자동차제조사에 수집된 사고 당시 차량운행정보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이의 확인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제4조(특별약관 계약의 무효)

①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제2조(특별약관 계약 전 알릴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 이 특별약관은 무효가 됩니다. 이 경우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이 특별약관에 의해 할인받은 보험료를 회사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②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 회사는 제①항에 따라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회사에 반환할 보험료를 피보험자에게 지급할 보험금에서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습니다.

제5조(특별약관 계약의 해지)

① 회사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 '제3조(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의무사항)'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이 특별약관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제3조(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의무사항)'를 이행하지 않은 날로부터 이 특별약관에 의해 할인받은 보험료를 회사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②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 회사는 제①항에 따라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회사에 반환할 보험료를 피보험자에게 지급할 보험금에서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습니다.

제6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Ⅵ-9 커넥티드카 안전운전 할인 특별약관

제1조(가입대상)

① 이 특별약관은 피보험자동차의 사고 및 긴급 상황 발생정보를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함) 또는 자동차제조사에 통보하는 장치(이하 '사고통보장치'라 함)가 피보험자동차에 장착되고 자동차제조사와의 무선통신계약이 유효한 상태에서 <용어정의> '2'의 '나'에서 규정하는 기능이 상시 작동되어, 자동차제조사가 피보험자동차의 운행기록을 분석하여 생성한 운전습관 점수가 회사가 정한 기준 이상일 경우 가입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가입일 부터 과거 3년 이내에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의 가입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1. 이 특별약관에 의해 할인받은 보험료의 추징사유가 발생하였으나, 해당 보험료를 회사에 반환하지 않은 사실이 있는 경우
2. 회사가 사고통보장치의 장착을 확인하기 위하여 이 특별약관 '제2조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의무사항'의 규정에 따라 요청한 사항을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 또는 조작하여 제출한 사실이 있는 경우

③ 이 특별약관은 회사와 자동차제조사 간의 제휴사업계약에 따른 것으로서, 해당 제휴사업

계약이 종료되어 회사가 인정하는 점수가 없는 경우 가입할 수 없습니다.

④ 이 특별약관은 이동통신 단말장치 안전운전 할인 특별약관을 가입한 경우에는 가입할 수 없습니다.

용어풀이

이 특별약관에서 "사고통보장치"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장치를 말합니다.

1. 차량 출고 시 자동차제조사의 표준장치 또는 옵션으로 피보험자동차에 장착된 장치(휴대전화 등에 애플리케이션(응용프로그램)을 탑재하여 사용되는 장치는 해당되지 않음)
2. 피보험자동차의 시동을 켠 상태에서는 무선통신을 기반으로 아래의 기능이 상시 작동되어 해당 정보가 제휴 자동차제조사로 송신·수집되며, 피보험자가 자동차제조사와의 무선통신계약을 해지하지 않는 한 임의로 작동을 중지할 수 없는 장치
   가. 에어백이 전개되는 사고 발생 시 자동송신 기능
   나. 차량운행정보(운행시간, 운행속도 등) 저장 등
3. 피보험자동차의 에어백이 전개되는 사고발생 정보가 자동차제조사에 자동으로 통보됨으로서 신속한 응급조치가 가능할 것

제2조(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의무사항)

이 특별약관을 가입하고자 하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피보험자동차 운행기록에 근거한 안전운전점수 확인을 위해 회사가 정하는 방식에 따라 개인정보처리 동의를 하거나 자동차제조사가 발행한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용어풀이

이 특별약관에서 "안전운전점수"라 함은 제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고통보장치"가 장착되고 피보험자와 자동차제조사 간의 무선통신 계약이 유효한 상태에서, 자동차제조사가 피보험자동차 운행기록을 분석하여 생성한 운전습관 점수입니다.

제3조 (보험료의 할인 및 정산)

회사는 확인된 안전운전점수가 회사가 정한 기준 이상일 경우 별도로 정한 할인율을 적용하여 보험료를 할인해 드립니다.

제4조 (특별약관의 무효)

① 회사가 확인한 안전운전점수가 피보험자동차의 운행기록에 근거한 점수가 아닌 경우 또는 사실과 다르게 안전운전점수를 알린 경우 이 특별약관은 무효가 됩니다.

② 위 '①'의 경우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이 특별약관에 의해 할인받은 보험료를 회사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③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 회사는 위 '②'에 따라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회사에 반환할 보험료를 피보험자에게 지급할 보험금에서 이를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습니다.

제5조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용어풀이

안전운전점수 산정 기준
점수 확인일 기준 최근 90일간의 피보험자동차 운행기록을 기반으로 산정되며, 해당 기간

최소 1,000km 이상 주행한 경우 이 특별약관을 가입 할 수 있습니다. 단, 90일간 운행기록이 있을 수 없는 신차 등의 경우는 점수 확인일 기준 최근 1,000km 운행기록을 기반으로 산정됩니다.
※ 안전운전점수 산정 기준 관련 더욱 자세한 내용은 제휴 자동차제조사를 통해 안내 받으세요.

Ⅵ-10 첨단안전장치 장착 특별약관

제1조(가입대상)

① 이 특별약관은 피보험자동차에 최초 출고 시 피보험자동차에 첨단안전장치(*1)를 장착한 경우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②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이 특별약관의 보험시기부터 과거 3년 이내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제2조(특별약관 계약 전 알릴의무), '제3조(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의무사항)'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하여 '제4조(특별약관 계약의 무효)' 또는 '제5조(특별약관 계약의 해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의 가입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용어풀이

이 특별약관에서 '첨단안전장치(*1)'란 피보험자동차의 제작사에 의하여 장착되어 출고된 장치로서 아래의 각 호의 장치를 말합니다. 단, 블랙박스 등 탈부착이 가능한 장치에 해당 기능이 포함된 경우나 최초 출고 이후 사후적으로 장착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의 첨단안전장치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1. 전방충돌방지장치
   – 전방충돌경고장치(FCW: Forward Collision Warning System), 자동비상제동장치(AEB(PED+CCR): Autonomous Emergency Braking(보행자+후면추돌)), (AEB(CCR) : Autonomous Emergency Braking(후면추돌))

2. 차선이탈방지장치
   - 차선이탈경고장치(LDWS : Lane Departure Warning System), 차선유지지원장치(LKAS: Lane Keeping Assist System)

제2조(특별약관 계약 전 알릴의무)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회사가 정하는 방식에 따라 첨단안전장치가 피보험자동차에 장착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차량계기판 등) 또는 자동차등록증, 차량 구매영수증, 차량 옵션 장착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 회사가 요구하는 사항을 회사에 지체 없이 알려야 합니다.
다만, 회사가 차량정보를 활용하여 해당 장치의 장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사진 제출 등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제3조(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의무사항)

①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피보험자동차에 장착된 첨단안전장치를 상시 작동해야하며, 운전자에게 안전운전을 위한 경고효과를 충분히 발생시킬 수 있도록 경고등, 신호음, 진동의 크기나 주기 등을 유지해야 합니다.

② 또한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사고로 인해 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할 경우 위 '①'의 사항 확인을 위해 회사가 요청하는 사항에 대해서 협조해야 합니다.

③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첨단안전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거나 피보험자동차에서 첨단안전장치를 제거하는 경우 해당 사실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이 경우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첨단안전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 될 때까지의 기간 동안 이

특별약관에 따라 할인받은 보험료를 회사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제4조(특별약관 계약의 무효)

①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제2조(특별약관 계약 전 알릴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 이 특별약관은 무효가 됩니다. 이 경우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이 특별약관에 의해 할인받은 보험료를 회사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②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 회사는 제①항에 따라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회사에 반환할 보험료를 피보험자에게 지급할 보험금에서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습니다.

제5조(특별약관 계약의 해지)

① 회사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 '제3조(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의무사항)'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이 특별약관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제3조(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의무사항)'를 이행하지 않은 날로부터 이 특별약관에 의해 할인받은 보험료를 회사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다만,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사고로 인하여 첨단안전장치가 파손 또는 훼손된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②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 회사는 제①항에 따라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회사에 반환할 보험료를 피보험자에게 지급할 보험금에서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습니다.

제6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Ⅵ-11 장애인 전용 보험 전환 특별약관

제1조(적용대상)

이 특별약관은 다음 각 호의 조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 될 수 있습니다.

1.「소득세법 제59조의4(특별세액공제) 제1항 제2호」에 따라 보험료가 특별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경우

<소득세법 제59조의4(특별세액공제) >

①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해당 과세기간에 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보험의 보험계약에 따라 지급하는 다음 각 호의 보험료를 지급한 경우 그 금액의 100분의 12(제1호의 경우에는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보험료별로 그 합계액이 각각 연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각각 없는 것으로 한다.

1. 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는 장애인전용보험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
2.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료(제1호에 따른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는 제외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4 (보험료의 세액공제)>

① 법 제59조의4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란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보험·공제로서 보험·공제 계약 또는 보험료·공제료 납입영수증에 장애인전용 보험·공제로 표시된 보험·공제의 보험료·공제료를 말한다.

② 법 제59조의4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험·보증·공제의 보험료·보증료·공제료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 생명보험
2. 상해보험
3. 화재·도난이나 그 밖의 손해를 담보하는 가계에 관한 손해보험
4. 「수산업협동조합법」, 「신용협동조합법」 또는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공제
5. 「군인공제회법」, 「한국교직원공제회법」,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 「경찰공제회법」 및 「대한소방공제회법」에 따른 공제
6. 주택 임차보증금의 반환을 보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보험·보증. 다만, 보증대상 임차보증금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1조의3 (공제대상보험료의 범위)>

영 제118조의4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보험으로서 보험계약 또는 보험료 납입영수증에 보험료 공제대상임이 표시된 보험의 보험료를 말한다.

2. 기명피보험자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07조(장애인의 범위) 제 1항」에서 규정한 장애인인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07조(장애인의 범위)」에서 규정한 장애인>

1.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및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에 따른 장애아동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자 및 이와 유사한 사람으로서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
3. 제1호 및 제2호 외에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4조(장애아동의 범위) >

영 제107조제1항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제2조(증명서류의 제출)

① 이 특별약관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8호 서식에 의한 장애인 증명서의 원본 또는 사본」(이하, "장애인 증명서류"라 합니다)을 제출하여 제1조(적용대상)에서 정한 조건에 해당함을 증명하여야 합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명피보험자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해당 증명서류를 제1항의 장애인 증명서류로 대체 할 수 있습니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의 증명을 받은 사람
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은 사람

제3조(장애인 전용 보험으로의 전환)

① 회사는 보험계약자가 제2조(증명서류의 제출)에서 정한 요건에 따라 제1조(적용대상)의 적용대상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경우, 이 보험계약의 납입보험료를 「소득세법 제59조의4(특별세액공제)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으로 전환하여 드립니다.

② 제1항에 따라 장애인 전용 보험으로 전환된 이후 납입된 보험료는 당해연도 보험료 납입영수증에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료로 표시됩니다.

제4조(전환 취소)

① 보험계약자가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으로의 전환 취소를 보험회사에 요청하는 경우, 보험회사는 지체 없이 전환을 취소하여 드리며, 취소한 이후 납입한 보험료는 보험료 납입영수증에 일반 보장성 보험으로 표시됩니다.

② 제1항에 따라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 전환을 취소한 이후에는, 재전환을 요청 할 수

없습니다.
③ 최초 전환을 요청했던 당해연도에 제1항에 따라 전환 취소를 한 경우에는 당해연도에 납입된 모든 보험료는 보험료 납입영수증에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료가 아닌 일반 보장성 보험료로 표시됩니다.

제5조(준용규정)
①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 및 소득세법 등 관련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② 소득세법 등 관련법규가 제.개정 또는 폐지되는 경우 변경된 법령을 따릅니다.

Ⅵ-12 마일리지 환급금 자동적용 특별약관

제1조(가입대상)
이 특별약관은 다음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①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계약자가 '직전계약'의 보험계약자와 동일한 경우

용어풀이

이 특별약관에서 '직전계약'이라 함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와 피보험자동차가 이 보험계약의 피보험자 및 피보험자동차와 동일하고, 보험기간 만료일이 이 보험계약의 보험기간 시작일과 일치하는 동일한 보험회사의 계약을 말합니다.

② 보험계약자의 직전계약에 '마일리지 할인 특별약관(사진전송방식/운행정보확인장치방식)'이 가입되어 있고, 직전계약의 '마일리지 할인 특별약관(사진전송방식/운행정보확인장치방식)'에 따라 보험계약자가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로부터 수령할 정산금액이 있는 경우
③ 보험계약자가 위 ②의 정산금액을 이 보험계약의 보험료와 정산하기로 약정한 경우

제2조(보험료의 정산)
직전 계약의 '마일리지 할인 특별약관(사진전송방식) 제2조 제③항 및 마일리지 할인 특별약관(운행정보 확인장치 방식) 제2조 제④항' 에서 정한 사항에도 불구하고 보험계약자(또는 피보험자)가 직전계약의 보험기간 만료일 이전에 회사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피보험자동차의 최종 누적운행거리정보를 회사에 알린 경우, 회사는 송부 받은 정보를 확인하여 '마일리지 할인 특별약관(사진전송방식/운행정보확인장치방식)'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해당되는 정산금액을 이 보험계약의 보험료에서 차감하는 방법으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이 경우, 직전계약의 '마일리지 할인 특별약관(사진전송방식/운행정보확인장치방식)' 의 정산금액은 보험계약자 명의의 계좌로 별도 송금해 드리지 않습니다.

제3조(적용제한)
회사는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① 이 특별약관 '제2조(보험료의 정산)'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
② 보험계약자가 직전계약의 보험기간 만료일 이전에 '마일리지 할인 특별약관'의 정산 금액을 보험계약자의 계좌로 지급받기를 요청한 경우

제4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Ⅵ-13 걸음 수 할인 특별약관

제1조(가입대상)

① 이 특별약관은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1. 기명피보험자가 본인 소유의 이동통신 단말장치에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가 인정하는 걸음 수 측정 프로그램을 가입하여 사용하는 경우
2. 이 특별약관의 가입 시점에 걸음 수 측정 프로그램의 걸음 수가 회사가 정한 걸음 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3. 기명피보험자 한정운전 특별약관 또는 부부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에 가입한 경우

용어풀이

1) 이 특별약관에서 '걸음 수 측정 프로그램'이란 KB손해보험 앱 단말기 등 에서 구현되는 걸음 수 측정 프로그램으로서 특별약관 가입시점에 회사가 인정하는 프로그램을 말합니다.
2) 이 특별약관에서 '회사가 정한 걸음수 기준'이란 이 특별약관 가입을 위해 회사가 정한 확인 시점으로부터 직전 30일 이내에 1일 5천보를 17일 이상 달성한 경우를 말합니다.

② 회사는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의 가입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1. 기명피보험자 본인의 걸음수가 아닌 경우 또는 걸음수를 조작한 경우
2.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무효, 해지, 취소, 철회 등으로 할인 받은 보험료를 회사에 돌려주지 않은 사실이 있는 경우
3. 회사와 걸음수 측정 프로그램 회사의 제휴계약이 종료되어 회사가 인정하는 걸음 수가 없는 경우

제2조(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의무사항)

보험계약자(또는 피보험자)는 청약을 할 때 걸음 수 확인을 위해 회사가 정하는 방법(본인인증 등)에 따라 특별약관의 가입 및 적용을 위해 요청하는 사항에 협조해야 합니다.

제3조(보험료의 할인 및 정산)

① 이 특별약관에 가입할 때 기명피보험자의 걸음 수가 회사가 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회사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험료를 할인해 드립니다.

②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에 한하여 보험료를 할인해 드립니다. 단, '1. 가입대상 ① 3'의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보험기간에서 제외합니다.

③ 회사는 '제4조(특별약관의 무효 및 해지)'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사실을 보험계약자에게 통보한 후, 보험계약자가 고지한 은행 계좌 또는 신용카드에서 할인한 보험료를 지체 없이 정산합니다.

제4조(특별약관의 무효 및 해지)

① 회사가 확인한 기명피보험자의 걸음수가 기명피보험자 본인의 걸음수가 아닌 경우 또는 걸음수를 조작한 경우 이 특별약관은 무효로 됩니다.

② 위 '①'에 따라 무효가 되는 경우, 보험계약자는 '2. 보험료의 할인'에 의해 할인받은 보험료를 즉시 회사에 돌려주어야 합니다.

③ 보험증권에 기재되어 있는 보험기간 동안에 계약변경으로 인하여 이 특별약관 제1조(가입대상) 제①항 제3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변경일 24시부터 이 특별약관은 해지됩니다. 이 경우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해지 사유 발생일로부터 이 특별약관에 의해 할인받은 보험료를 회사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④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 회사는 제②항 및 제③항에 따라 보험계약자(또는 피보험자)가 회사에 반환할 보험료를 피보험자에게 지급할 보험금에서 공

제하고 지급할 수 있습니다.

제5조(준용 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Ⅵ-14 어라운드 뷰 모니터 장착 특별약관

제1조(가입대상)
① 이 특별약관은 피보험자동차에 어라운드 뷰 모니터(*1)를 장착한 경우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②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이 특별약관의 보험시기부터 과거 3년 이내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제2조(특별약관 계약 전 알릴의무), '제3조(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의무사항)'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하여 '제4조(특별약관 계약의 무효)' 또는 '제5조(특별약관 계약의 해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의 가입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용어풀이

이 특별약관에서 '어라운드 뷰 모니터(*1)'란 차량에 장착된 카메라로 촬영한 영상을 이용하여 차량 주변 360도 상황을 위에서 내려다보듯 차 안의 모니터를 통해 운전자에게 제공하는 어라운드 뷰 모니터(AVM : Around View Monitor)를 말합니다.('서라운드 뷰 모니터' 또는 다른 명칭을 사용하더라도 '어라운드 뷰 모니터'와 같이 차량에 장착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차량 주변 360도 상황을 위에서 내려다보듯 차 안의 모니터를 통해 운전자에게 제공하는 장치를 포함합니다.) 단, 블랙박스 등 탈부착이 가능한 장치에 해당 기능이 포함된 경우나 최초 출고 이후 사후적으로 장착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의 어라운드 뷰 모니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제2조(특별약관 계약 전 알릴 의무)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회사가 정하는 방식에 따라 어라운드 뷰 모니터가 피보험자동차에 장착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 또는 자동차등록증, 차량 구매영수증, 차량 옵션 장착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 회사가 요구하는 사항을 회사에 지체 없이 알려야 합니다.
다만, 회사가 차량정보를 활용하여 해당 장치의 장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사진 제출 등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제3조(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의무사항)
①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피보험자동차에 장착된 어라운드 뷰 모니터를 정상적으로 작동시켜야 하며, 운전자에게 안전운전을 위한 경고효과를 충분히 발생시킬 수 있도록 경고등, 신호음, 진동의 크기나 주기 등을 유지해야 합니다.
②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사고로 인해 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할 경우 위 '①'의 사항 확인을 위해 회사가 요청하는 사항에 대해서 협조해야 합니다.
③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어라운드 뷰 모니터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거나 피보험자동차에서 어라운드 뷰 모니터를 제거하는 경우 해당 사실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이 경우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어라운드 뷰 모니터가 정상적으로 작동 될 때까지의 기간 동안 이 특별약관에 따라 할인 받은 보험료를 회사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제4조(특별약관 계약의 무효)
①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제2조(특별약관 계약 전 알릴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 이 특별약관은 무효가 됩니다. 이 경우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이 특별약관에 의해 할인받은 보험료를 회사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②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 회사는 제①항에 따라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회사에 반환할 보험료를 피보험자에게 지급할 보험금에서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습니다.

제5조(특별약관 계약의 해지)

① 회사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 '제3조(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의무사항)'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이 특별약관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제3조(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의무사항)'를 이행하지 않은 날로부터 이 특별약관에 의해 할인받은 보험료를 회사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다만,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사고로 인하여 어라운드 뷰 모니터가 파손 또는 훼손된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②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 회사는 제①항에 따라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회사에 반환할 보험료를 피보험자에게 지급할 보험금에서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습니다.

제6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Ⅵ-15 후측방충돌방지장치 장착 특별약관

제1조(가입대상)

① 이 특별약관은 피보험자동차 최초 출고시 후측방충돌방지장치(*1)를 장착한 경우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②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이 특별약관의 보험시기부터 과거 3년 이내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제2조(특별약관 계약 전 알릴의무), '제3조(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의무사항)'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하여 '제4조(특별약관 계약의 무효)' 또는 '제5조(특별약관 계약의 해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의 가입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용어풀이

이 특별약관에서 '후측방충돌방지장치(*1)란 피보험자동차가 후측방 차량과 충돌 위험을 감지하여 운전자에게 경고하는 후측방 충돌 경고장치(BSD*) 또는 후측방 차량과 충돌 위험이 감지되면 자동으로 차량을 제어하여 충돌 회피를 도와주는 후측방 충돌 방지 보조장치(BCA**)를 말합니다. 단, 블랙박스 등 탈부착이 가능한 장치에 해당 기능이 포함된 경우나 최초 출고 이후 사후적으로 장착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의 후측방충돌방지장치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BSD : Blind Spot Detection **BCA : Blind-Spot Collision-Avoidance Assist

제2조(특별약관 계약 전 알릴의무)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회사가 정하는 방식에 따라 후측방충돌방지장치가 피보험자동차에 장착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 또는 자동차등록증, 차량 구매영수증, 차량 옵션 장착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 회사가 요구하는 사항을 회사에 지체 없이 알려야 합니다.
다만, 회사가 차량정보를 활용하여 해당 장치의 장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사진 제출 등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제3조(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의무사항)

①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피보험자동차에 장착된 후측방충돌방지장치를 정상적으로 작동시켜야 하며, 운전자에게 안전운전을 위한 경고효과를 충분히 발생시킬 수 있도록 경고등, 신호음, 진동의 크기나 주기 등을 유지해야 합니다.

②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사고로 인해 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할 경우 위 '①'의 사항 확인을 위해 회사가 요청하는 사항에 대해서 협조해야 합니다.
③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후측방충돌방지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거나 피보험자동차에서 제거하는 경우 해당 사실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이 경우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후측방충돌방지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 될 때까지의 기간 동안 이 특별약관에 따라 할인 받은 보험료를 회사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제4조(특별약관 계약의 무효)
①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제2조(특별약관 계약 전 알릴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 이 특별약관은 무효가 됩니다. 이 경우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이 특별약관에 의해 할인받은 보험료를 회사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②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 회사는 제①항에 따라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회사에 반환할 보험료를 피보험자에게 지급할 보험금에서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습니다.

제5조(특별약관 계약의 해지)
① 회사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 '제3조(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의무사항)'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이 특별약관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제3조(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의무사항)'를 이행하지 않은 날로부터 이 특별약관에 의해 할인받은 보험료를 회사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다만,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사고로 인하여 후측방충돌방지장치가 파손 또는 훼손된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②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 회사는 제①항에 따라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회사에 반환할 보험료를 피보험자에게 지급할 보험금에서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습니다.

제6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Ⅵ-16 급발진사고 변호사 선임비용 지원 특별약관

제1조 (가입대상)
① 이 특별약관은 의무보험의 보험기간이 1년인 경우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의무보험의 보험기간이 1년으로 기존 유지 중인 자동차보험 계약에 이 특별약관을 추가하는 경우에는 잔여 보험기간이 6개월 이상 남은 경우에 한합니다.
② 위 '①'에도 불구하고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이면서 다른 자동차보험 계약과의 보험기간 만료일을 일치시키기 위한 계약으로 보험기간이 6개월 이상 남은 경우는 이 특별약관을 가입할 수 있습니다.

제2조 (보상내용)
① 보험회사는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동차(이하' 피보험자동차'라 합니다.)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발생한 급발진 사고분쟁*을 다투며 다음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소장부본을 피고가 송달받은 경우, 피보험자가 실제 부담한 변호사 선임 착수금(부가가치세포함)의 80% 해당액을 보험기간 중 1회에 한하여 300만원을 한도로 지급합니다.
1. 대한민국 법원에 자동차 제조사를 피고로 포함하여 제기한 소송
2. 민사소송법에 정한 파기환송심, 재심을 제외한 1심 소송

용어풀이

이 특별약관에서 급발진 사고분쟁이란 사고의 주요 원인이 자동차의 구동력이 제동력을 초과하여 운전자의 제어를 벗어나 운전자의 의지와 관계없이 현저히 빠른 속도로 가속된 점에 있다는 사실에 대한 다툼을 말합니다.

용어풀이

이 특별약관에서 파기환송심, 재심을 제외한 1심 소송이란 대법원 법원재판사무처리규칙 및 사건별 부호문자에 관한 예규에서 가합, 가단, 가소로 구분되는 소송을 말합니다.

②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내에 발생한 급발진 사고로 보험기간 만료 후에 소를 제기한 경우도 보상합니다.

제3조 (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다음의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1.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한 손해
2.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또는 이와 유사한 사태로 인한 손해
3. 지진, 분화, 태풍, 홍수, 해일 등 천재지변으로 인한 손해
4. 핵연료물질의 직접 또는 간접적인 영향으로 인한 손해
5. 피보험자동차를 시험용, 경기용 또는 경기를 위해 연습용으로 사용하던 중 생긴 손해. 다만, 운전면허시험을 위한 도로주행시험용으로 사용하던 중 생긴 손해는 보상합니다.
6. 보험증권에 기재된 운전가능범위 외의 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운전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7. 영리를 목적으로 요금이나 대가를 받고 피보험자동차를 반복적으로 사용하거나 빌려 준 때에 생긴 손해. 다만,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합니다.
   가. 임대차계약(계약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함)에 따라 임차인이 피보험자동차를 전속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다만, 임차인이 피보험자동차를 영리를 목적으로 요금이나 대가를 받고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나. 피보험자와 동승자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한 날의 출·퇴근 시간대(오전 7시부터 오전 9시까지 및 오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를 말함)에 실제의 출·퇴근 용도로 자택과 직장 사이를 이동하면서 '승용차 함께 타기'를 실시한 경우
8. 피보험자동차의 운전자가 음주운전 또는 마약·약물운전을 하던 중 사고를 일으킨 때
9. 피보험자동차의 운전자가 자동차를 범죄의 목적으로 사용한 때
10. 피보험자동차의 운전자가 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한 때
11. 피보험자동차의 운전자가 무면허운전을 하던 중 사고를 일으킨 때

제4조 (피보험자의 범위)

이 특별약관에서 피보험자라 함은 다음에 열거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1. 기명피보험자
2. 피보험자동차의 운전자 다만, 운전자를 한정하는 다른 특별약관에 의하여 피보험자동차의 운전자가 운전가능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에는 피보험자로 보지 않습니다.
3. 위 '1'과 '2'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보험금 청구권이 중복되는 경우 기명피보험자에게 이 특별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제5조 (제출서류)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제2조(보상내용)의 보험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의 서류

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 경찰서에서 발행한 교통사고 사실 확인원
2. 법원의 소장접수증명원 및 소장
3. 변호사 착수비용 세금계산서
4. 기타 보험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제6조 (보험금의 분담)
이 특별약관에서 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33조(보험금의 분담)'의 '다른 보험계약(공제계약을 포함)'에 장기손해보험 및 일반손해보험을 포함하여 적용합니다.

$$\text{손해액} \times \frac{\text{이 보험계약에 의해 산출한 보상책임액}}{\text{다른 보험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 보험계약에 의해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

제7조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Ⅵ-17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장치 장착 특별약관

제1조(가입대상)
① 이 특별약관은 피보험자동차 최초 출고시 스마트크루즈컨트롤[*1)]장치를 장착한 경우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②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이 특별약관의 보험시기부터 과거 3년 이내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제2조(특별약관 계약 전 알릴의무), '제3조(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의무사항)'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하여 '제4조(특별약관 계약의 무효)' 또는 '제5조(특별약관 계약의 해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의 가입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용어풀이

이 특별약관에서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1)'이란 세팅된 일정 속도로 주행속도가 유지되고 앞차와의 거리를 유지하여 앞차와의 거리와 속도에 따라 정차와 출발이 제어되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ACC : Adaptive Cruise Control, 적응형순항제어장치)을 말합니다.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또는 다른 명칭을 사용하더라도 ' 컨트롤'과 같이 세팅된 일정 속도로 주행속도가 유지되고 앞차와의 거리를 유지하여 앞차와의 거리와 속도에 따라 정차와 출발이 제어되는 장치를 포함합니다.) 단, 블랙박스 등 탈부착이 가능한 장치에 해당 기능이 포함된 경우나 최초 출고 이후 사후적으로 장착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의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제2조(특별약관 계약 전 알릴의무)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회사가 정하는 방식에 따라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장치가 피보험자동차에 장착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 또는 자동차등록증, 차량 구매영수증, 차량 옵션 장착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 회사가 요구하는 사항을 회사에 지체 없이 알려야 합니다.
다만, 회사가 차량정보를 활용하여 해당 장치의 장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사진 제출 등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제3조(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의무사항)
①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피보험자동차에 장착된 스마트크루즈컨트롤 장치를 정상적으로 작동시켜야 하며, 운전자에게 안전운전을 위한 경고효과를 충분히 발생시킬 수 있도록 경고등, 신호음, 진동의 크기나 주기 등을 유지해야 합니다.

②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사고로 인해 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할 경우 위 '①'의 사항 확인을 위해 회사가 요청하는 사항에 대해서 협조해야 합니다.
③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스마트크루즈컨트롤 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거나 피보험자동차에서 스마트크루즈컨트롤 장치를 제거하는 경우 해당 사실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이 경우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스마트크루즈컨트롤 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 될 때까지의 기간 동안 이 특별약관에 따라 할인 받은 보험료를 회사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제4조(특별약관 계약의 무효)
①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제2조(특별약관 계약 전 알릴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 이 특별약관은 무효가 됩니다. 이 경우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이 특별약관에 의해 할인받은 보험료를 회사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②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 회사는 제①항에 따라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회사에 반환할 보험료를 피보험자에게 지급할 보험금에서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습니다.

제5조(특별약관 계약의 해지)
① 회사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 '제3조(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의무사항)'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이 특별약관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제3조(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의무사항)'를 이행하지 않은 날로부터 이 특별약관에 의해 할인받은 보험료를 회사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다만,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사고로 인하여 스마트크루즈컨트롤 장치가 파손 또는 훼손된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②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 회사는 제①항에 따라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회사에 반환할 보험료를 피보험자에게 지급할 보험금에서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습니다.

제6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Ⅵ-18 헤드업디스플레이 장착 특별약관

제1조(가입대상)
① 이 특별약관은 최초 출고시 피보험자동차에 헤드업디스플레이(*1)를 장착한 경우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②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이 특별약관의 보험시기부터 과거 3년 이내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제2조(특별약관 계약 전 알릴의무), '제3조(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의무사항)'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하여 '제4조(특별약관 계약의 무효)' 또는 '제5조(특별약관 계약의 해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의 가입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용어풀이

이 특별약관에서 '헤드업디스플레이(HUD : Head Up Display)(*1)'란 운전자 전면의 유리창에 계기판 및 내비게이션 시스템의 주요 정보 등 주행에 필요한 정보(차량 속도, 주행 경로 안내 등)를 표시하여 운전자의 시선을 분산시키지 않고 정면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장치를 말합니다. 단, 블랙박스 등 탈부착이 가능한 장치에 해당 기능이 포함된 경우나 최초 출고 이후 사후적으로 장착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의 헤드업디스플레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제2조(특별약관 계약 전 알릴의무)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회사가 정하는 방식에 따라 헤드업디스플레이가 피보험자동차에 장착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 또는 자동차등록증, 차량 구매영수증, 차량 옵션 장착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 회사가 요구하는 사항을 회사에 지체 없이 알려야 합니다.
다만, 회사가 차량정보를 활용하여 해당 장치의 장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사진 제출 등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제3조(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의무사항)
①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피보험자동차에 장착된 헤드업디스플레이를 정상적으로 작동시켜야 하며, 운전자에게 안전운전을 위한 영상을 제공할 수 있도록 장치를 관리해야 합니다.
②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사고로 인해 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할 경우 위 '①'의 사항 확인을 위해 회사가 요청하는 사항에 대해서 협조해야 합니다.
③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헤드업디스플레이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거나 피보험자동차에서 헤드업디스플레이를 제거하는 경우 해당 사실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이 경우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헤드업디스플레이가 정상적으로 작동 될 때까지의 기간 동안 이 특별약관에 따라 할인 받은 보험료를 회사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제4조(특별약관 계약의 무효)
①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제2조(특별약관 계약 전 알릴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 이 특별약관은 무효가 됩니다. 이 경우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이 특별약관에 의해 할인받은 보험료를 회사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②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 회사는 제①항에 따라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회사에 반환할 보험료를 피보험자에게 지급할 보험금에서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습니다.

제5조(특별약관 계약의 해지)
① 회사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 '제3조(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의무사항)'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이 특별약관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제3조(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의무사항)'를 이행하지 않은 날로부터 이 특별약관에 의해 할인받은 보험료를 회사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다만,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사고로 인하여 헤드업디스플레이가 파손 또는 훼손된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②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 회사는 제①항에 따라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회사에 반환할 보험료를 피보험자에게 지급할 보험금에서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습니다.

제6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별첨 관련 법 조문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3.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4. 정보주체와의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
5.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 이 경우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과 상당한 관련이 있고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공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있다.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제15조제1항제2호·제3호 및 제5호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③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국외의 제3자에게 제공할 때에는 제2항 각 호에 따른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하며, 이 법을 위반하는 내용으로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2조(동의를 받는 방법)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이 법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하여 정보주체(제5항에 따른 법정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동의를 받을 때에는 각각의 동의 사항을 구분하여 정보주체가 이를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알리고 각각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5조제1항제1호, 제17조제1항제1호, 제23조제1항제1호 및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라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하여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을 때에는 정보주체와의 계약 체결 등을 위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처리할 수 있는 개인정보와 정보주체의 동의가 필요한 개인정보를 구분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동의 없이 처리할 수 있는 개인정보라는 입증책임은 개인정보처리자가 부담한다.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에게 재화나 서비스를 홍보하거나 판매를 권유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를 받으려는 때에는 정보주체가 이를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④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가 제2항에 따라 선택적으로 동의할 수 있는 사항을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및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동의를 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정보주체에게 재화 또는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개인정보처리자는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이 법에 따른 동의를 받아야 할 때에는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해당 아동으로부터 직접 수집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는 세부적인 방법 및 제5항에 따른 최소한의 정보의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개인정보의 수집매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3조(민감정보의 처리 제한) ①개인정보처리자는 사상·신념, 노동조합·정당의 가입·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 그 밖에 정보주체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이하 "민감정보"라 한다)를 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정보주체에게 제15조제2항 각 호 또는 제17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알리고 다른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와 별도로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령에서 민감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
② 개인정보처리자가 제1항 각 호에 따라 민감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민감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제29조에 따른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령에 따라 개인을 고유하게 구별하기 위하여 부여된 식별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이하 "고유식별정보"라 한다)를 처리할 수 없다.
1. 정보주체에게 제15조제2항 각 호 또는 제17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알리고 다른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와 별도로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고유식별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
② 삭제
③ 개인정보처리자가 제1항 각 호에 따라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고유식별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종류·규모, 종업원 수 및 매출액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제3항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조사하여야 한다.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제4항에 따른 조사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24조의2(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 ① 제2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없다.
1.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
2.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명백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여 주민등록번호 처리가 불가피한 경우로서 행정안전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24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주민등록번호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암호화 조치를 통하여 안전하게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암호화 적용 대상 및 대상별 적용 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개인정보의 처리 규모와 유출 시 영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하는 경우에도 정보주체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원으로 가입하는 단계에서는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도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여야 한다.
④ 행정안전장관은 개인정보처리자가 제3항에 따른 방법을 제공할 수 있도록 관계 법령의 정비, 계획의 수립, 필요한 시설 및 시스템의 구축 등 제반 조치를 마련·지원할 수 있다.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정의 등)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설기계"란 건설공사에 사용할 수 있는 기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 ② 차의 교통으로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業務上過失致傷罪) 또는 중과실치상죄(重過失致傷罪)와 「도로교통법」 제151조의 죄를 범한 운전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公訴)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차의 운전자가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하고도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거나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遺棄)하고 도주한 경우, 같은 죄를 범하고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을 위반하여 음주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운전자가 채혈 측정을 요청하거나 동의한 경우는 제외한다)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같은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도로교통법」 제5조에 따른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 또는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등의 신호를 위반하거나 통행금지 또는 일시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2. 「도로교통법」 제13조 제3항을 위반하여 중앙선을 침범하거나 같은 법 제62조를 위반하여 횡단, 유턴 또는 후진한 경우
3. 「도로교통법」 제17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제한속도를 시속 20킬로미터 초과하여 운전한 경우
4. 「도로교통법」 제21조 제1항, 제22조, 제23조에 따른 앞지르기의 방법·금지시기·금지장소 또는 끼어들기의 금지를 위반하거나 같은 법 제60조 제2항에 따른 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5. 「도로교통법」 제24조에 따른 철길건널목 통과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6.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에 따른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7. 「도로교통법」 제43조,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또는 「도로교통법」 제96조를 위반하여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아니하고 운전한 경우. 이 경우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효력이 정지 중이거나 운전의 금지 중인 때에는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8.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거나 같은 법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
9. 「도로교통법」 제13조 제1항을 위반하여 보도(步道)가 설치된 도로의 보도를 침범하거나 같은 법 제13조 제2항에 따른 보도 횡단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10. 「도로교통법」 제39조 제3항에 따른 승객의 추락 방지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11. 「도로교통법」 제12조 제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의 신체를 상해(傷害)에 이르게 한 경우
12. 「도로교통법」 제39조 제4항을 위반하여 자동차의 화물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운전한 경우.

제4조(보험 등에 가입된 경우의 특례) ①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보험업법」 제4조, 제126조, 제127조 및 제128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0조, 제61조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1조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된 경우에는 제3조 제2항 본문에 규정된 죄를 범한 차의 운전자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2. 피해자가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불구(不具)가 되거나 불치(不治) 또는 난치(難治)의 질병이 생긴 경우
3. 보험계약 또는 공제계약이 무효로 되거나 해지되거나 계약상의 면책 규정 등으로 인하여 보험회사, 공제조합 또는 공제사업자의 보험금 또는 공제금 지급의무가 없어진 경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적용 대상 국가유공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다른 법률에서 이 법에 규정된 예우 등을 받도록 규정된 사람을 포함한다)은 이 법에 따른 예우를 받는다.
17.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이하 "특별공로상이자"라 한다) : 국가사회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는 사람 중 그 공로와 관련되어 상이를 입은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되어 국무회의에서 이 법의 적용 대상자로 의결된 사람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중 략)

11. "차상위계층"이란 수급권자(제5조 제2항에 따라 수급권자로 보는 사람은 제외한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계층으로서 소득인정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인 계층을 말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3조의2(차상위계층) 법 제2조 제11호에서 "소득인정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하인 계층"이란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20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생략)
8. "금융소비자"란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 체결의 권유를 하거나 청약을 받는 것(이하 "금융상품계약체결등"이라 한다)에 관한 금융상품판매업자의 거래상대방 또는 금융상품자문업자의 자문업무의 상대방인 전문금융소비자 또는 일반금융소비자를 말한다.
9. "전문금융소비자"란 금융상품에 관한 전문성 또는 소유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금융상품 계약에 따른 위험감수능력이 있는 금융소비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전문금융소비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일반금융소비자와 같은 대우를 받겠다는 의사를 금융상품판매업자 또는 금융상품자문업자(이하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라 한다)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는 경우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동의하여야 하며,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동의한 경우에는 해당 금융소비자는 일반금융소비자로 본다.
   가. 국가
   나.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
   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5항제3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투자성 상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상품계약체결등을 할 때에는 전문금융소비자와 같은 대우를 받겠다는 의사를 금융상품판매업자등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마. 그 밖에 금융상품의 유형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10. "일반금융소비자"란 전문금융소비자가 아닌 금융소비자를 말한다.

제42조(소액분쟁사건에 관한 특례) 조정대상기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를 총족하는 분쟁사건(이하 "소액분쟁사건"이라 한다)에 대하여 조정절차가 개시된 경우에는 제36조제6항에 따라 조정안을 제시받기 전에는 소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제36조제3항에 따라 서면통지를 받거나 제36조제5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조정안을 제시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일반금융소비자가 신청한 사건일 것

2. 조정을 통하여 주장하는 권리나 이익의 가액이 2천만원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일 것

제47조(위법계약의 해지) ① 금융소비자는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제17조제3항, 제18조제2항, 제19조제1항·제3항, 제20조제1항 또는 제21조를 위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 5년 이내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서면등으로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해지를 요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금융소비자에게 수락여부를 통지하여야 하며, 거절할 때에는 거절사유를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② 금융소비자는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의 요구를 따르지 않는 경우 해당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수수료, 위약금 등 계약의 해지와 관련된 비용을 요구할 수 없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계약의 해지요구권의 행사요건, 행사범위 및 정당한 사유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정의)

2. "농업인"이란 농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

도로교통법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경찰공무원(자치경찰공무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그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제45조(과로한 때 등의 운전 금지) 자동차등의 운전자는 제44조에 따른 술에 취한 상태 외에 과로, 질병 또는 약물(마약, 대마 및 향정신성의약품과 그 밖에 행정안전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영향과 그 밖의 사유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死傷)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그 차의 운전자등은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있을 때에는 그 경찰공무원에게,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없을 때에는 가장 가까운 국가경찰관서(지구대, 파출소 및 출장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운행중인 차만 손괴된 것이 분명하고 도로에서의 위험방지와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사고가 일어난 곳
2. 사상자 수 및 부상 정도
3. 손괴한 물건 및 손괴 정도
4. 그 밖의 조치사항 등

제148조(벌칙) 제54조 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48조의2(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사람
2.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 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사람

②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콜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콜농도가 0.1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6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콜농도가 0.05퍼센트 이상 0.1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③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2조(인명보호장구)

① 법 제 50조제3항에서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인명보호장구"라함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승차용 안전모를 말한다.

1. 좌우, 상하로 충분한 시야를 가질 것
2. 풍압에 의하여 차광용 앞창이 시야를 방해하지 아니할 것
3. 청력에 현저하게 장애를 주지 아니할 것
4. 충격 흡수성이 있고, 내관통성이 있을 것
5. 충격으로 쉽게 벗어지지 아니하도록 고정시킬 수 있을 것
6. 무게는 2킬로그램 이하일 것
7. 인체에 상처를 주지 아니하는 구조일 것
8. 안전모의 뒷부분에는 야간운행에 대비하여 반사체가 부착되어 있을 것

민법

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 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② 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③ 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제1003조(배우자의 상속순위) ①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제1000조 제1항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② 제1001조의 경우에 상속개시전에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배우자는 동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제1004조(상속인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자는 상속인이 되지 못한다.

1.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 그 배우자 또는 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자를 살해하거나 살해하려한 자
2.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과 그 배우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자
3.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 또는 유언의 철회를 방해한 자
4.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을 하게 한 자
5.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서를 위조·변조·파기 또는 은닉한 자

보험업법

제2조(정의) 19. "전문보험계약자"란 보험계약에 관한 전문성, 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보험계약의 내용을 이해하고 이행할 능력이 있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전문보험계약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일반보험계약자와 같은 대우를 받겠다는 의사를 보험회사에 서면으로 통지하는 경우 보험회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동의하여야 하며, 보험회사가 동의한 경우에는 해당 보험계약자는 일반보험계약자로 본다.

가. 국가
나. 한국은행
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라. 주권상장법인
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산업재해보상보험업법

사업장에서 발생된 근로자의 산업 재해 등 근로자의 업무 상의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며,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 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보험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재해예방과 그 밖에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여 근로자 보호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시행된 법입니다.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농업(작물재배업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임업 및 어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2. 광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3. 제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4.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5. 하수·폐기물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6. 건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7. 도매 및 소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8. 운수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9. 숙박 및 음식점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0.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1. 금융 및 보험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2. 부동산업 및 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다만, 지역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리를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13.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개발업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서 발생하는 소득
14.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5. 교육서비스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서 발생하는 소득
16.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사업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서 발생하는 소득
17.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8. 협회 및 단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협회 및 단체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9. 가구내 고용활동에서 발생하는 소득
20. 제1호부터 제1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

② 사업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사용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하며, 필요경비가 총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을 "결손금"이라 한다.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고, 그 밖의 사업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2. 법인의 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따라 상여로 받는 소득
3.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
4. 퇴직함으로써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② 근로소득금액은 제1항 각 호의 소득의 금액의 합계액(비과세소득의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총급여액"이라 한다)에서 제47조에 따른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

③ 근로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정의)

3. "어업인"이란 어업을 경영하거나 어업을 경영하는 자를 위하여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하거나 또는 양식산업발전법 제2조제12호의 양식업자와 같은조 제13호의 양식업종사자가 양식하는 일 또는 염전에서 바닷물을 자연증발시켜 소금을 생산하는 일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개인신용정보의 제공·활용에 대한 동의) ① 신용정보제공·이용자가 개인신용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신용정보주체로부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할 때마다 미리 개별적으로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기존에 동의한 목적 또는 이용 범위에서 개인신용정보의 정확성·최신성을 유지하기 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서면
2.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이 있는 전자문서(「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말한다)
3.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내용 및 제공 목적 등을 고려하여 정보 제공 동의의 안정성과 신뢰성이 확보될 수 있는 유무선 통신으로 개인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식
4. 유무선 통신으로 동의 내용을 해당 개인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는 방법. 이 경우 본인 여부 및 동의 내용, 그에 대한 해당 개인의 답변을 음성녹음하는 등 증거자료를 확보·유지하여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사후 고지절차를 거친다.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개인신용정보의 제공·활용에 대한 동의) ② 신용정보제공·이용자는 법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해당 신용정보주체로부터 동의를 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미리 알려야 한다. 다만, 동의 방식의 특성상 동의 내용을 전부 표시하거나 알리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나 사업장 전화번호 등 동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하고 동의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15. 9. 11.>

1.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는 자
2.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
3. 제공하는 개인신용정보의 내용

4.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는 자(신용조회회사 및 신용정보집중기관은 제외한다)의 정보 보유 기간 및 이용 기간

③ 신용정보제공·이용자는 법 제32조제1항제4호에 따라 유무선 통신을 통하여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서면, 전자우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고지하여야 한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8조(등록) ① 자동차대여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동차대여사업의 결격사유에 관하여는 제6조를 준용한다.

제29조(등록기준)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이 되는 자동차 대수, 보유 차고 면적, 영업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81조(자가용 자동차의 유상운송 금지) ①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이하 "자가용자동차"라 한다)를 유상(자동차 운행에 필요한 경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 또는 임대하거나 이를 알선할 수 있다.

1. 출·퇴근시간대(오전 7시부터 오전 9시까지 및 오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를 말하며,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인 경우는 제외한다) 승용자동차를 함께 타는 경우
2. 천재지변, 긴급 수송, 교육 목적을 위한 운행,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제2호에 따른 허가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이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허가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허가를 한 것으로 본다.

④ 제1항제2호의 유상운송 허가의 대상 및 기간 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84조(자동차의 차령 제한 등) ②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면허, 등록, 증차 또는 대폐차(대폐차: 차령이 만료되거나 운행거리를 초과한 차량 등을 다른 차량으로 대체하는 것을 말한다)에 충당되는 자동차는 자동차의 종류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종류에 따라 3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한(이하 "차량충당연한"이라 한다) 이내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가 보유 차량으로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범위에서 업종 변경을 위하여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하는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대폐차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자동차보다 차령이 낮은 자동차로서 그 차령이 6년 이내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로 충당하는 경우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도난으로 말소등록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가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임시검사에 합격한 자동차를 다시 등록하는 경우. 다만, 차령을 초과한 자동차는 제외한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03조(자가용자동차의 유상운송 등의 허가요건)

법 제81조제1항제2호에 따라 자가용자동차를 유상(有償)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할 수 있는 경우(제4호 및 제4호의2의 경우에는 유상운송으로 한정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5.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자동차로서 장애인 등의 교통편의를 위하여 운행하는 경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종류)

1.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

가. 시내버스운송사업: 주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또는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단일 행정구역에서 운행계통을 정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 이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광역급행형·직행좌석형·좌석형 및 일반형 등으로 그 운행형태를 구분한다.

나. 농어촌버스운송사업: 주로 군(광역시의 군은 제외한다)의 단일 행정구역에서 운행계통을 정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 이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행좌석형·좌석형 및 일반형 등으로 그 운행형태를 구분한다.

다. 마을버스운송사업: 주로 시·군·구의 단일 행정구역에서 기점·종점의 특수성이나 사용되는 자동차의 특수성 등으로 인하여 다른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운행하기 어려운 구간을 대상으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운행계통을 정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

라. 시외버스운송사업: 운행계통을 정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으로서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사업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업. 이 경우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고속형·직행형 및 일반형 등으로 그 운행형태를 구분한다.

2. 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다. 일반택시운송사업: 운행계통을 정하지 아니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업구역에서 1개의 운송계약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 이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형·소형·중형·대형·모범형 및 고급형 등으로 구분한다.
라. 개인택시운송사업: 운행계통을 정하지 아니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업구역에서 1개의 운송계약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 1대를 사업자가 직접 운전(사업자의 질병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 이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형·소형·중형·대형·모범형 및 고급형 등으로 구분한다.

의료법 제4조의2

제4조의2(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등)
① 간호·간병통합서비스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입원 환자를 대상으로 보호자 등이 상주하지 아니하고 간호사, 제80조에 따른 간호조무사 및 그 밖에 간병지원인력(이하 이 조에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인력"이라 한다)에 의하여 포괄적으로 제공되는 입원서비스를 말한다.

자동차관리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동차"란 원동기에 의하여 육상에서 이동할 목적으로 제작한 용구 또는 이에 견인되어 육상을 이동할 목적으로 제작한 용구(이하 "피견인자동차"라 한다)를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1의2. "원동기"란 자동차의 구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내연기관이나 전동기 등 동력발생장치를 말한다.
1의3. "자율주행자동차"란 운전자 또는 승객의 조작 없이 자동차 스스로 운행이 가능한 자동차를 말한다.
1의4. "미완성자동차"란 차대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최소한의 구조·장치를 갖춘 자동차로서 용법에 따라 사용이 가능하도록 추가적인 제작·조립 공정이 필요한 자동차를 말한다.
1의5. "단계제작자동차"란 미완성자동차를 이용하여 제2호에 따른 운행(용법에 따라 사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이 가능하도록 단계별로 제작된 자동차를 말한다.
2. "운행"이란 사람 또는 화물의 운송 여부에 관계없이 자동차를 그 용법(用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3. "자동차사용자"란 자동차 소유자 또는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자동차의 운행 등에 관한 사항을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
4. "형식"이란 자동차의 구조와 장치에 관한 형상, 규격 및 성능 등을 말한다.
4의2. "내압용기"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용기로서 고압가스를 연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자동차에 장착하거나 장착할 목적으로 제작된 용기(용기밸브와 용기안전장치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5. "폐차"란 자동차를 해체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의 장치를 그 성능을 유지할 수 없도록 압축·파쇄(破碎) 또는 절단하거나 자동차를 해체하지 아니하고 바로 압축·파쇄하는 것을 말한다.
6. "자동차관리사업"이란 자동차매매업·자동차정비업 및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을 말한다.
7. "자동차매매업"이란 자동차[신조차(新造車)와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의 매매 또는 매매 알선 및 그 등록 신청의 대행을 업(業)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8. "자동차정비업"이란 자동차(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의 점검작업, 정비작업 또는 튜닝작업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작업은 제외한다.
9.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이란 폐차 요청된 자동차(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의 인수(引受), 재사용 가능한 부품의 회수, 폐차 및 그 말소등록신청의 대행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10. "사고기록장치"란 자동차의 충돌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고 전후 일정한 시간 동안 자동차의 운행정보를 저장하고 저장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장치 또는 기능을 말한다.
11. "자동차의 튜닝"이란 자동차의 구조·장치의 일부를 변경하거나 자동차에 부착물을 추가하는 것을 말한다.
12. "표준정비시간"이란 자동차정비사업자 단체가 정하여 공개하고 사용하는 정비작업별 평균 정비시간을 말한다.
13. "전손(全損) 처리 자동차"란 피보험자동차가 완전히 파손, 멸실 또는 오손되어 수리할 수 없는 상태이거나 피보험자동차에 생긴 손해액과 보험회사가 부담하기로 한 비용의 합산액이 보험가액 이상인 자동차로서 「보험업법」 제2조에 따른 보험회사(이하 "보험회사"라 한다)가 다음 각 목으로 분류 처리한 경우를 말한다.
가. 도난 또는 분실 자동차로 분류한 경우
나. 수리가 가능한 자동차로 분류한 경우
다. 수리가 불가능하여 폐차하기로 분류한 경우
14. "자동차경매"란 제60조에 따라 경매장을 개설하여 자동차(신조차와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를 경매(競賣)의 방식(「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전자거래를 통한 경매를 포함한다)으로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제8조(신규등록) ① 신규로 자동차에 관한 등록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신규자동차등록(이하 "신규등록"이라 한다)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신규등록 신청을 받으면 등록원부에 필요한 사항을 적고 자동차등록증을 발급하여

야 한다.
③ 자동차를 제작·조립 또는 수입하는 자(이들로부터 자동차의 판매위탁을 받은 자를 포함하며, 이하 "자동차제작·판매자등"이라 한다)가 자동차를 판매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원부 작성에 필요한 자동차 제작증 정보를 제69조에 따른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즉시 전송하여야 하며 산 사람을 갈음하여 지체 없이 신규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 사람이 직접 신규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자동차제작·판매자등이 제1항에 따라 신규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를 산 사람으로부터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제2조(건설기계의 범위)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건설기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건설기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덤프트럭
2. 타이어식 기중기
3. 콘크리트믹서트럭
4. 트럭적재식 콘크리트펌프
5. 트럭적재식 아스팔트살포기
6. 타이어식 굴삭기
7.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에 따른 특수건설기계 중 다음 각 목의 특수건설기계
가. 트럭지게차
나. 도로보수트럭
다. 노면측정장비(노면측정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을 말한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2조(정의) 2. "운행"이란 사람 또는 물건의 운송 여부와 관계없이 자동차를 그 용법에 따라 사용하거나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3. "자동차보유자"란 자동차의 소유자나 자동차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자로서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자동차손해배상책임)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승객이 아닌 자가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자기와 운전자가 자동차의 운행에 주의를 게을리 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 또는 자기 및 운전자 외의 제3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으며, 자동차의 구조상의 결함이나 기능상의 장애가 없었다는 것을 증명한 경우
2. 승객이 고의나 자살행위로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

제5조(보험 등의 가입 의무) ① 자동차보유자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피해자(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책임보험이나 책임공제(이하 "책임보험등"이라 한다)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자동차보유자는 책임보험등에 가입하는 것 외에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의 재물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에 피해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이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책임보험등에 가입하는 것 외에 자동차 운행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피해자에게 책임보험등의 배상책임한도를 초과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이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면허를 받거나 등록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8조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자동차 대여사업자
3.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및 제29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및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자
4. 「건설기계관리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등록한 건설기계 대여업자
④ 제1항 및 제2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와 도로(「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도로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아닌 장소에서만 운행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제1항의 책임보험등과 제2항 및 제3항의 보험 또는 공제에는 각 자동차별로 가입하여야 한다.
제5조의2(보험 등의 가입 의무 면제) ① 자동차보유자는 보유한 자동차(제5조 제3항 각 호의 자가 면허 등을 받은 사업에 사용하는 자동차는 제외한다)를 해외체류 등으로 6개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에서 장기간 운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동차의 등록업무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자동차의 등록업무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된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 그 운행중지기간에 한하여 제5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에의 가입 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자동차보유자는 해당 자동차등록증 및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시·도지사에게 보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에의 가입 의무를 면제받은 자는 면제기간 중에는 해당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에의 가입 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는 승인 기준 및 신청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10조(보험금등의 청구) ① 보험가입자등에게 제3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면 그 피해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회사등에게 「상법」 제724조 제2항에 따라 보험금등을 자기에게 직접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피해자는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해당하는 금액은 진료한 의료기관에 직접 지급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② 보험가입자등은 보험회사등이 보험금등을 지급하기 전에 피해자에게 손해에 대한 배상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보험회사등에게 보험금등의 보상한도에서 그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장애인복지법

제2조(장애인의 정의 등) ①"장애인"이란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말한다.

② 이 법을 적용받는 장애인은 제1항에 따른 장애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가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신체적 장애"란 주요 외부 신체 기능의 장애, 내부기관의 장애 등을 말한다.
2. "정신적 장애"란 발달장애 또는 정신 질환으로 발생하는 장애를 말한다.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안전성의 확보의무) ①금융회사등은 전자금융거래가 안전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하여야 한다.

② 금융회사등은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를 위한 인력, 시설, 전자적 장치, 소요경비 등의 정보기술부문, 전자금융업무 및 「전자서명법」에 의한 인증서의 사용 등 인증방법에 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전자서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자문서"란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적 형태로 작성되어 송신 또는 수신되거나 저장된 정보를 말한다.
2. "전자서명"이란 다음 각 목의 사항을 나타내는 데 이용하기 위하여 전자문서에 첨부되거나 논리적으로 결합된 전자적 형태의 정보를 말한다.
   가. 서명자의 신원
   나. 서명자가 해당 전자문서에 서명하였다는 사실

통계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통계"란 통계작성기관이 정부정책의 수립·평가 또는 경제·사회현상의 연구·분석 등에 활용할 목적으로 산업·물가·인구·주택·문화·환경 등 특정의 집단이나 대상 등에 관하여 직접 또는 다른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이하 "기관등"이라 한다)에 위임·위탁하여 작성하는 수량적 정보를 말한다. 다만, 통계작성기관이 내부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작성하는 수량적 정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량적 정보를 제외한다.
2. "지정통계"란 제17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지정·고시하는 통계를 말한다.
3. "통계작성기관"이란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및 제15조에 따라 지정을 받은 통계작성지정기관을 말한다.
4. "통계자료"란 통계작성기관이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수집·취득 또는 사용한 자료(데이터베이스 등 전산자료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5. "공공기관"이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나.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다.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각 급 학교
   라.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
6. "통계종사자"란 통계작성기관에서 통계의 작성 또는 보급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7. "행정자료"란 통계자료를 제외한 것으로서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대장 및 도면과 데이터베이스 등 전산자료를 말한다.

제15조(통계작성지정기관의 지정) ①통계청장은 통계의 작성·보급 및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정부정책의 수립·평가 또는 경제·사회현상의 연구·분석 등에 이용되는 수량적 정보를 작성하고 있거나 작성하고자 하는 기관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 해당 기관등을 통계작성지정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정요건은 통계작성 조직 및 예산, 통계작성계획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통계청장은 정부정책의 수립·평가 또는 경제·사회현상의 연구·분석 등에 이용되는 수량적 정보를 작성하고 있는 공공기관(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이 제1항에 따른 지정신청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통계작성지정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6. 12. 27.>

③ 통계작성지정기관의 지정신청, 지정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지정통계의 지정 및 지정취소) ①통계청장은 통계작성기관의 장의 신청에 따라 정부의 각종 정책의 수립·평가 또는 다른 통계의 작성 등에 널리 활용되는 통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통계를 지정통계로 지정한다.
1. 전국을 대상으로 작성하는 통계
2. 지역발전을 위한 정책수립 및 평가의 기초자료가 되는 통계
3. 다른 통계의 모집단자료로 활용 가능한 통계
4. 국제연합 등 국제기구에서 권고하는 통일된 기준 및 작성방법에 따라 작성하는 통계
5. 그 밖에 지정통계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통계청장이 인정하는 통계

② 통계청장은 지정통계가 제1항에 따른 지정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③ 통계청장은 지정통계를 지정하거나 지정통계의 지정을 취소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④ 지정통계 지정의 절차 및 방법과 제3항에 따른 고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3

제5조의13(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의 운전자가 [도로교통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13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58조(중상해, 존속중상해) ①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③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전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사소송법

제450조(보통의 심판) 약식명령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그 사건이 약식명령으로 할 수 없거나 약식명령으로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하여야 한다.
제453조(정식재판의 청구) ① 검사 또는 피고인은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의 청구를 할 수 있다. 단 피고인은 정식재판의 청구를 포기할 수 없다.
② 정식재판의 청구는 약식명령을 한 법원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정식재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지체 없이 검사 또는 피고인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3조(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 등) ①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57조(차량충당조건) ①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및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의 신규등록, 증차 또는 대폐차(대폐차: 차령이 만료된 차량 등을 다른 차량으로 대체하는 것을 말한다)에 충당되는 화물자동차는 차령이 3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한 이내여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차량은 차량충당조건을 달리 할 수 있다.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13조(차량충당 연한) ① 법 제57조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및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에 충당되는 화물자동차는 차령(車齡) 3년 이내의 차량으로 한다.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 촉진에 관한 법률

제22조(환경설비 및 재제조 제품의 품질인증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환경설비 및 재제조 제품의 품질과 기술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환경설비 및 재제조 제품에 대한 품질·성능평가와 공장심사를 거쳐 품질인증을 할 수 있다. 다만, 품질인증을 할 때에 다른 법률에서 재제조 제품에 대한 품질기준 및 인증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로 정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환경설비와 재제조 제품을 구매하는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에 대하여 제1항에 따라 품질인증을 받은 환경설비와 재제조 제품을 우선하여 구매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품질·성능평가와 공장심사를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기관 또는 단체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대행기관 또는 단체에 품질·성능평가 및 공장심사와 관련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인신용정보 제공·이용에 대한 고객 권리 안내

1. 금융서비스 이용 범위

가. 고객의 개인신용정보는 금융거래의 설정.유지여부 판단 목적 및 고객이 동의한 목적만으로 이용됩니다.

나. 고객은 영업장.인터넷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금융거래를 체결하거나 금융서비스를 제공받는 과정에서 1) 금융회사가 본인의 개인신용정보(이하 '본인정보')를 제휴.부가서비스 등을 위해 제휴회사 등에 제공하는 것 및 2) 해당 금융회사가 금융상품 소개 및 구매권유(이하 '마케팅')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에 대해 동의를 하지 않는 경우에도 금융거래를 체결하거나 금융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동의를 하지 않으신 경우에는 제휴.부가서비스 및 신상품.서비스 등을 제공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상의 고객 권리

가. 본인정보의 제3자 제공사실 통보 요구

고객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금융회사가 본인정보를 전국은행연합회, 신용조회회사, 타 금융회사 등 제3자에게 제공한 경우 제공한 본인정보의 주요 내용 등을 알려주도록 금융회사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신청방법 · 전화 : ☎ 1544 - 0114
  · 서면 : 061-34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17 KB손해보험빌딩

나. 금융거래 거절 근거 신용정보 고지 요구

고객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라 금융회사가 전국은행연합회, 신용조회회사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연체정보 등에 근거하여 금융거래를 거절.중지하는 경우에는 그 거절.중지의 근거가 된 신용정보, 동 정보를 제공한 기관의 명칭.주소.연락처 등을 고지해 줄 것을 금융회사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 본인정보의 제3자 제공 및 마케팅 목적의 전화 등의 중단 요구

고객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라 가입 신청한 때 동의를 한 경우에도 본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 및 해당 금융회사가 마케팅 목적으로 본인에게 연락하는 것을 전체 또는 사안별로 중단 시킬 수 있습니다.(다만, 고객의 신용도 등을 평가하기 위해 전국은행연합회 또는 신용조회회사 등에 제공하는 것에 대해서는 중단시킬 수 없습니다.)

- 신청방법 · 전화 : ☎ 1544 - 0114 · 인터넷 : http://www.kbinsure.co.kr
  · 서면 : 061-34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17 KB손해보험빌딩
- 신청자 제한 : 신규 거래고객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간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라. 본인정보의 열람 및 정정 요구

고객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라 전국은행연합회, 신용조회회사, 금융회사 등이 보유한 본인정보에 대해 열람 청구가 가능하며, 본인정보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이의 정정 및 삭제를 요구할 수 있으며, 그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방법 · 전화 : ☎ 1544 - 0114 · 인터넷 : http://www.kbinsure.co.kr
  · 서면 : 061-34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17 KB손해보험빌딩

마. 본인정보의 무료 열람 요구

고객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9조에 따라 본인정보를 신용조회회사를 통하여 연간 일정 범위 내에서 무료로 열람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각 신용조회회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연락처 · 코리아크레딧뷰로㈜ : ☎ 02)708-6000 인터넷 www.koreacb.com
  · NICE평가정보㈜ : ☎ 02)2122-4000 인터넷 www.nice.co.kr

바. 본인정보의 유출시 피해보상 요구

KB손해보험의 고의 또는 과실 등 귀책사유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로 고객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 관계 법령 등에 따라 보상 받으실 수 있습니다.

3. 위의 권리행사와 관련하여 불편함을 느끼시거나 애로가 있으신 경우 아래의 담당자 앞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당사 개인신용정보 보호담당자	손해보험협회 개인신용정보 보호담당자	금융감독원 금융민원센터
전화	02)6900-2114	02)3702-8500	(국번없이)1332
주소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298, 9층 정보보호파트	서울시 종로구 종로5길 68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38

고객정보 취급방침

KB금융그룹을 아끼고 사랑해 주시는 고객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KB금융그룹은 금융지주회사법령에 의해 그룹사간에는 고객정보의 제공 및 이용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안내하여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융지주회사법 제48조의 2 (고객정보의 제공 및 관리)

① 금융지주회사등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 및「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32조, 제33조에도 불구하고「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금융거래의 내용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신용정보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방법과 절차(이하 "고객정보제공절차"라 한다)에 따라 그가 속하는 금융지주회사등에게 신용위험관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부 경영관리상 이용하게 할 목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

1. 제공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
2. 고객정보의 암호화 등 처리방법
3. 고객정보의 분리 보관
4. 고객정보의 이용기간 및 이용목적
5. 이용기간 경과 시 고객정보의 삭제
6. 그 밖에 고객정보의 엄격한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등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해당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를 통하여 증권을 매매하거나 매매하고자 하는 위탁자가 예탁한 금전 또는 증권에 관한 정보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이하 "증권총액정보등"이라 한다)를 고객정보제공절차에 따라 그가 속하는 금융지주회사등에게 신용위험관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부 경영관리상 이용하게 할 목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

1. 예탁한 금전의 총액
2. 예탁한 증권의 총액
3. 예탁한 증권의 종류별 총액
4. 채무증권의 종류별 총액
5. 수익증권으로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229조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의 종류별 총액
6. 예탁한 증권의 총액을 기준으로 한 위탁자의 평균 증권 보유기간 및 일정기간 동안의 평균 거래회수

이에 따라 KB금융그룹은 KB금융지주회사를 중심으로 고객정보를 그룹사간에 제공 및 이용하기 위하여 「고객정보 취급방침」을 제정·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객정보의 제공 및 이용은 고객 여러분의 금융거래에 따른 불편함을 해소하고 더욱 더 만족스러운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시행하는 것이며 만에 하나 발생할지도 모르는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제공되는 정보의 종류 및 제공처를 한정하고, 정보의 엄격한 관리를 위한 제도를 마련하였습니다.

I. 제공되는 고객정보의 종류

1.『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금융거래의 내용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
2.『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에 따른 개인신용정보
3.『금융지주회사법』 제48조의2 제2항에 따른 증권총액정보등(위 금융지주회사법 제48조의2 제2항 참조)

II. 고객정보의 제공처

KB금융그룹 중 금융지주회사법령에 의한 고객정보의 제공 및 이용이 가능한 회사는 KB금융지주(금융지주회사), KB국민은행(은행 및 외국환업), KB증권(금융투자업), KB손해보험(손해보험업), KB국민카드(신용카드업), KB라이프생명(생명보험업), KB자산운용(집합투자업, 투자일임 및 투자자문업), KB캐피탈(리스, 할부금융업), KB저축은행(상호저축은행업), KB부동산신탁(신탁업), KB인베스트먼트(투자 및 융자업), KB데이타시스템(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

급업)입니다.

Ⅲ. 고객정보의 보호에 관한 내부방침

KB금융그룹에서는 고객 여러분의 고객정보를 최대한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그룹사간 정보 제공 및 이용이 아래와 같이 엄격한 절차와 관리·감독 하에 이루어지도록 하였습니다.

① 고객정보의 제공 및 이용은 신용위험관리 등 내부 경영관리 목적으로만 이용되도록 하였습니다.

② 그룹사의 임원 1인 이상을 고객정보관리인으로 선임하여 고객정보의 제공 및 이용에 관련된 일체의 책임을 지도록 하였습니다.

③ 그룹사별로 소관부서 및 담당자를 지정하여 체계적이고 집중적인 관리를 도모하였습니다.

④ 고객정보의 요청 및 제공 시 서면 또는 전자결재시스템을 통하여 고객정보관리인의 결재를 받은 후 요청 및 제공하도록 하는 등 업무 프로세스의 정형화를 통해 엄격한 관리 및 통제가 이루어지도록 하였습니다.

⑤ 그룹사간 고객정보의 요청 및 제공, 이용 등과 관련한 업무에 대하여 금융지주회사 고객정보관리인에게 총괄관리 역할을 부여함으로써 고객정보의 보호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⑥ 고객정보의 제공 및 이용 관련 취급방침의 제·개정 시 2개 이상의 일간지에 공고하고, 각 영업점(본점 해당부서 포함), 그리고 각 그룹사 홈페이지등에 게시하는 등 고객공지 의무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⑦ 고객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고객정보조회시스템을 구축하고 연1회 이상 통지하는 등 고객의 자기정보 접근권을 제공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⑧ 위법·부당한 방법으로 인해 피해를 입게 된 고객 분을 위해 적정한 보상 및 처리가 이루어지도록 민원사항에 대한 안내 및 상담, 처리, 그리고 결과 및 통지 등 민원처리 관련 일체의 업무를 수행할 소관부서를 그룹사마다 두었습니다. 그리고 소관부서 외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제도를 통하여 구제받으실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⑨ 고객정보 제공 및 관리에 대한 권한이 부여된 자만 고객정보에 접근하고, 고객정보의 송·수신, 보관 등에 있어 암호화하여 관리하며, 천재지변 및 외부로부터의 공격·침입 등 불가항력에 대비한 보안시스템을 구축하였고, 고객정보와 관련된 임직원에 대하여는 정기적으로 보안 교육을 실시하는 등 철저한 보안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KB금융그룹은 그룹사간 고객정보의 제공 및 이용을 허용한 것이 금융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나아가 우리나라 금융산업을 선진화시키기 위한 조치임을 명심하고 고객정보의 교류를 토대로 고객 여러분들께 보다 편리하고 질 높은 선진금융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약속드리며, 고객 여러분의 고객정보의 보호 및 엄격한 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K B 금 융 그 룹

KB금융지주	고객정보관리인	KB국민은행	고객정보관리인	KB증권	고객정보관리인
KB손해보험	고객정보관리인	KB국민카드	고객정보관리인	kb라이프생명	고객정보관리인
KB자산운용	고객정보관리인	KB캐피탈	고객정보관리인	KB부동산신탁	고객정보관리인
KB저축은행	고객정보관리인	KB인베스트먼트	고객정보관리인	KB데이타시스템	고객정보관리인

본 약관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당 회사의 내부통제 절차를 거쳐 제작되었습니다.

KB손해보험

06134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17 (역삼동, KB손해보험빌딩) | 고객콜센터 1544-0114